

V.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the 1990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UK who are employed in the public sector has increased by 1.5 million (1990–1999) and the number of people in the public sector has increased by 2.5 million (1990–1999). The public sector has become a major employer in the UK,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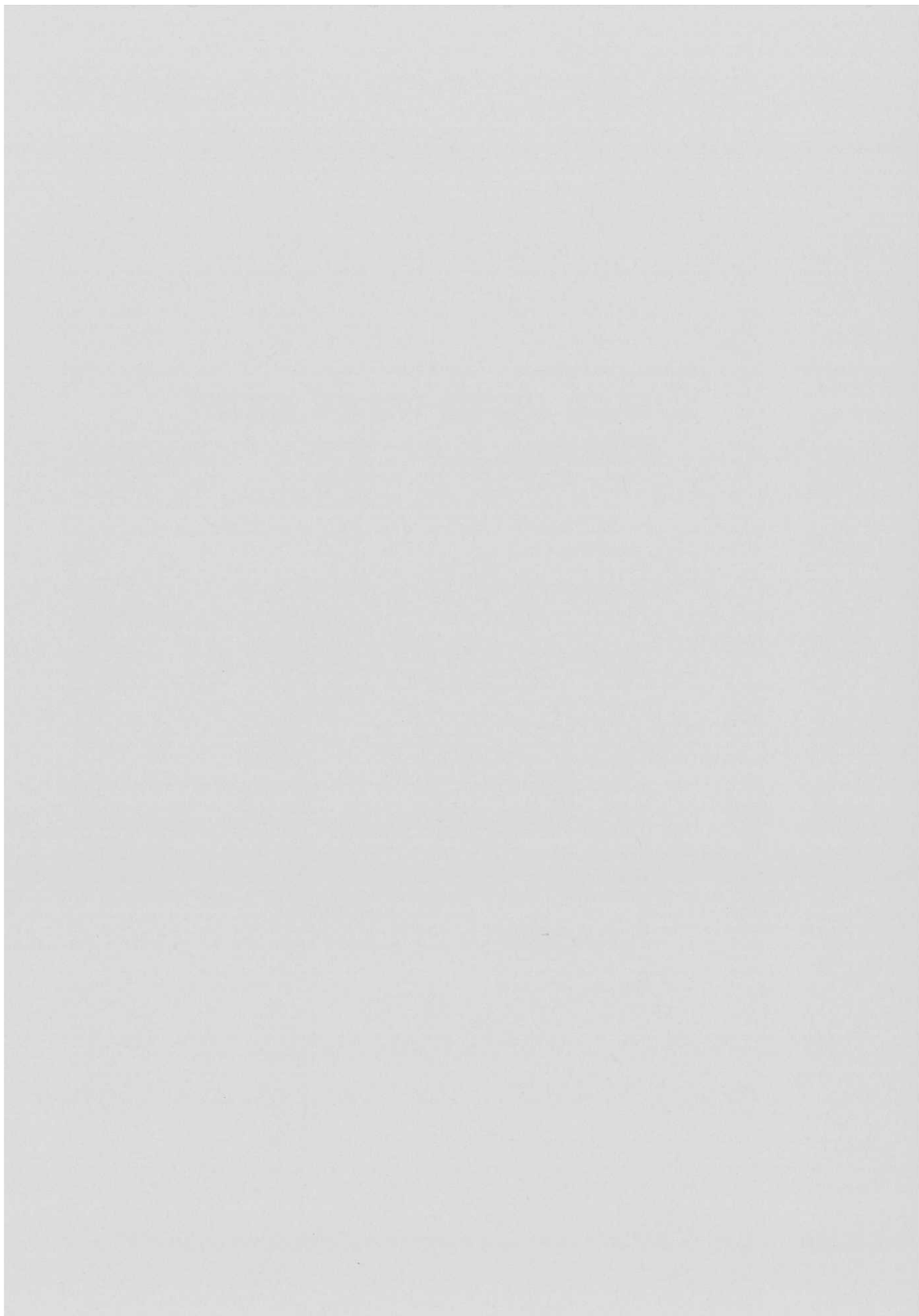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The public sector has also become a major provider of social services, and its growth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overall growth of the UK economy.

**1.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안건, 2013. 7. 9.)**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13. 7. 9.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13. 7. .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13. 7. 9.(화),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보고사유

- 종합편성·보도전문 PP가 '13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한 '12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2. 주요경과

- '11. 3. 30 TV조선, JTBC, 뉴스 Y 승인 및 승인조건 부과
- '11. 4. 20 채널A 승인 및 승인조건 부과
- '11. 5. 6 MBN 승인 및 승인조건 부과
- '13. 1. 31 종편 및 보도전문PP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
- '13. 3. 18 종편 및 보도전문PP 이행실적 보정자료 제출
- '13. 5. 10 종편 및 보도전문PP 이행실적에 대한 외부전문가 점검*

* 방송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3인이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점검

- '13. 6. 25 종편 및 보도전문PP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법률자문

3. 이행실적 점검 대상

① 종편PP의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편성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

② 종편·보도전문PP의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방송분야별 편성비율, 재방비율 등)
- ②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방송장비 국산화 등)
- ③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방안(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지역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 등)
- ⑤ 소수시청자 지원방안(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등)
- ⑥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등)
- ⑦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4. 총평

① 종편PP의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국내제작 편성비율은 모두 준수하였고, 외주제작 편성비율의 경우는 TV조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수하였음

국내제작 편성 비율		TV조선	JTBC	채널A	MBN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상반기	81.5%	94.7%	96.1%	99.3%
	하반기	86.0%	95.6%	94.8%	100%

외주제작 편성 비율		TV조선	JTBC	채널A	MBN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상반기	46.2%	42.2%	63.9%	41.6%
	하반기	32.3%	35.4%	59.3%	36.2%
매반기 주시청 시간대의 10% 이상	상반기	55.6%	39.7%	71.5%	70.4%
	하반기	38.9%	41.1%	67.4%	59.9%

② 종편·보도전문PP의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주요 세부 이행계획 중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TV조선), 편성위원회 운영(뉴스Y) 등이 이행되지 않았음
- 사업계획 대비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고 (TV조선, 채널A, MBN) 전반적으로 재방비율이 높게 나타났음(뉴스Y 제외)
- ②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전반적으로 이행실적이 미흡
- ③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 : 펀드 투자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전체 약 3,453억원으로 계획대비 47.4% 수준임

콘텐츠 투자액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계
'12년 계획	1,575억	2,196억	1,804억	1,660억	50억	7,285억
이행 실적	604억	1,129억	985억	711억	24억	3,453억(47.4%)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⑤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⑥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⑦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5. 방송사업자별 점검결과

□ TV조선

①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승인조건 상 국내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을 준수하였으나 '12년 하반기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32.3%로 승인조건 35%에 미달함

편성비율(%)	국내제작 매 반기 전체방송시간의 60%이상		외주제작 매 반기 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		외주제작 매 반기 주시청시간대 10%이상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행실적	81.5	86.0	46.2	32.3	55.6	38.9

②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세부 이행계획 중 공정 선거방송특별위원회 구성,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이 이행되지 않았음

-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사업계획 대비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낮고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높으며, 재방비율은 56.2%로 사업계획 (26.8%)보다 높음

방송분야 편성비율(%)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4.8	36.2	39.0
이행실적	35.9	33.5	30.6

- ②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전반적으로 이행실적이 미흡

- ③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 : 펀드 투자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604억원으로 사업 계획(1,575억원)에 못미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⑤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⑥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⑦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JTBC

①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승인조건 상 국내제작 편성비율,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을 준수하였음

편성비율(%)	국내제작 매반기 전체방송시간의 60%이상		외주제작 매반기 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		외주제작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10%이상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행실적	94.7	95.6	42.2	35.4	39.7	41.1

②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사업 계획 대비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낮고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높으며, 재방비율은 58.99%로 사업계획(5.6%)보다 높음

방송분야 편성비율(%)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3.7	44.8	31.5
이행실적	20.2	38.2	41.6

- ②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전반적으로 이행실적이 미흡

- ③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펀드 투자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1,129억원으로 사업 계획(2,196억원)에 못미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⑤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⑥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⑦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채널A

①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승인조건 상 국내제작 편성비율,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을 준수하였음

편성비율(%)	국내제작 매반기 전체방송시간의 60%이상		외주제작 매반기 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		외주제작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10%이상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행실적	96.1	94.8	63.9	59.3	71.5	67.4

②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사업 계획 대비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낮고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높으며, 재방비율은 56.1%로 사업계획(23.6%)보다 높음

방송분야 편성비율(%)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3.6	42.5	33.9
이행실적	34.1	33.4	32.5

- ②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전반적으로 이행 실적이 미흡

- ③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콘텐츠 유통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985억원으로 사업 계획(1,804억원)에 못미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⑤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⑥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⑦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MBN

①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승인조건 상 국내제작 편성비율,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을 준수하였음

편성비율(%)	국내제작 매반기 전체방송시간의 60%이상		외주제작 매반기 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		외주제작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10%이상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행실적	99.3	100	41.6	36.2	70.4	59.9

②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사업 계획 대비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낮고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높으며, 재방비율은 40%로 사업계획(32.9%)보다 높음

방송분야 편성비율(%)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2.7	35.9	41.4
이행실적	51.5	27.2	21.3

- ②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전반적으로 이행 실적이 미흡

- ③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펀드 투자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711억원으로 사업 계획(1,660억원)에 못미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⑤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⑥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⑦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뉴스Y

①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세부 이행계획 중 편성위원회 운영이 이행되지 않았음

- 재방비율은 7.04%로 사업계획(11.61%)을 준수하였음

- ②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전반적으로 이행실적이 미흡

- ③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펀드 투자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24억원으로 사업계획(50억원)에 못미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⑤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⑥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⑦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6. 조치 기본방향

①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미이행

- 승인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종편PP 도입 목표인 콘텐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②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미이행

<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 세부 이행계획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며, 이행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초반에 이행해야 할 주요한 사항이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해당항목)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구성,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 편성위원회 운영

- 재방프로그램이 사업계획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한 종편PP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함
-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보도전문PP와 차별되게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하도록 이행을 촉구함

< ②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③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방안 >

- 일반적으로 사업초기 사업실적 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미디어 시장 전체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항목 중 콘텐츠 투자계획은 종편PP 도입 목표인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 함

7. 조치 계획

☐ 시정명령 부과

- (내용)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구성, 공정 보도특별위원회 도입, 편성위원회 운영,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 미흡
- (사업자)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 이행 촉구

- (내용)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방안, 방송분야별 편성비율 등 미흡
- (사업자)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8. 향후일정

- 이행촉구 공문 발송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7월)
- 시정명령(8월)
- 사업자로부터 이행촉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 접수(8월말)

붙임 1. 승인조건 중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 사항 끝.

승인조건 중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 사항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종편PP만 해당)

-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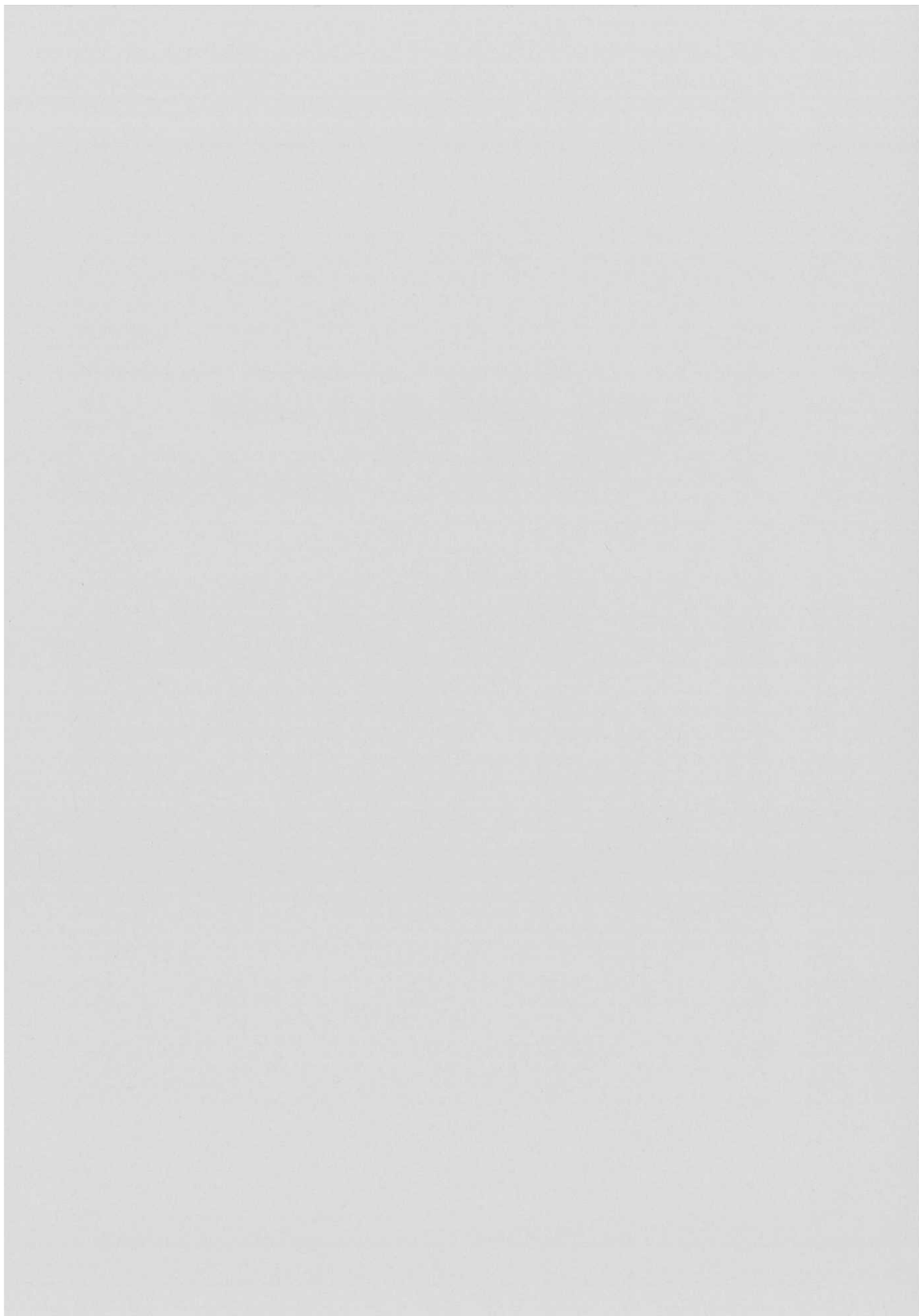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2.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속기록, 2013. 7. 9.)**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7. 9(화) 15: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PP가 '13년 1월 31일까지 방통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했는데 '12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면 '11년 3월~5월에 걸쳐 종합편성PP 4개사와 보도전문PP 뉴스Y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또 이 당시 승인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3년 1월 31일 종편 및 보도전문PP는 '12년도의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했고, '13년 3월 18일 그 이행실적에 대한 보정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이행실적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전문가 점검단을 구성해서 외부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졌고, 다시 6월 25일 그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법률자문도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종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편PP의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편성토록 승인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실적 점검 대상입니다. 이것은 종편·보도전문PP 모두에 해당하는데,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7개 이행항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이나 재방비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과 연구개발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방송장비 국산화 등이 주요내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이 주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수시청자 지원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이나 장애인 지원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로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은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개의 종편사 및 보도PP사업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먼저 종편PP의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제작 편성비율은 모든 사업자가 잘 준수했습니다. 다만, 외주제작 편성비율의 경우에는 TV조선이 준수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다 준수했습니다. TV조선은 하반기에 <표>로 보시는 대로 제시한 35%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편·보도PP의 사업계

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입니다. 실현방안의 주요 세부이행 계획 중에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도입한다든가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가 이러한 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분야별 편성비율과 관련해서는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TV조선, 채널A, MBN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 재방비율은 보도PP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뉴스Y를 제외한 종편은 전반적으로 재방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과 연구개발 방안은 전반적으로 이행실적이 계획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펀드 투자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며, 특히 콘텐츠 투자액 이 부분은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구매를 포함하는 콘텐츠 투자액은 5개사가 모두 3,453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계획대비 47.4%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균형 발전방안, 다섯 번째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여섯 번째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일곱 번째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전문가평가단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방송사업자별로 대체적인 총평을 토대로 한 방송사업자별 점검결과입니다. 먼저 TV조선을 말씀드리면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는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제작 비율과 외주제작 주 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은 잘 지켜졌습니다. 다만, '12년 하반기의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이 승인조건은 35%였지만 TV조선은 32.3%에 그쳐 약 2.7%를 미달했습니다. 다음 TV조선의 사업계획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는 먼저 첫 번째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과 관련해서는 세부이행 계획 가운데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편성비율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고,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로 보시는 대로 사업계획서상으로 TV조선은 보도 부분의 편성비율을 약 24.8% 제시했는데 실제 이행에는 35.9%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방비율이 56.2%로 사업계획의 26.8%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또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콘텐츠 투자액이 1,575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604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미달했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JTBC입니다. 국내제작과 외주제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는 총평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 비율을 잘 준수했습니다. 7개 항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해서는 분야별 편성비율에서 JTBC는 보도나 교양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오히려 사업계획 대비 낮았습니다. 특히 보도를 보시면 사업계획에서 23.7%를 제시했습니다만 실제 보도는 20.2%에 그쳤습니다. 다만, 재방비율이 58.99%로 사업계획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산 방송장비 등과 같은 부분은 총평과 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콘텐츠 투자액이 1,129억원으로 원래 계획 2,196억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평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채널A입니다. 총평 보고대로 국내제작이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잘 준수를 했습니다. 7개 사업계획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된 분야에서 먼저 편성비율에서 교양과 오락의 비율이 낮고,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계획에서는 23.6%였지만 34.1%로 높았고, 재방비율이 56.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역시 총평과 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투자액이

사업계획으로 1,804억원이었습니다만 985억원으로 미흡했고, 나머지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목은 총평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MBN입니다. MBN의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역시 그 비율을 잘 준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7개 항목의 내용을 보시면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해서는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는 22.7%입니다만 이행실적에는 51.5%로 높게 나왔고, 재방비율도 40%로 사업계획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장비 산업 기여 계획 역시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행실적이 미흡했고, 콘텐츠 투자액은 1,660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711억원에 그쳤습니다. 기타 네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은 총평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PP 뉴스Y입니다. 뉴스Y는 사업계획서 주요 7개 항목 부분만이 해당됩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해서는 세부 이행계획 가운데 편성위원회 운영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종편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재방비율은 사업계획서를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이행실적이 미흡했고, 콘텐츠 투자액 역시 사업계획에 못 미쳤습니다.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목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잘 이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승인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미흡에 대한 조치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승인조건에 구체적으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 도입의 목표가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외주제작의 편성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편성비율을 잘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의 미흡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의 세부 이행계획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의 유연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책임 부분은 사업 초반에 이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서 재방프로그램, 재방이라는 수치나 재방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을 취지로 하는 종편 도입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종편의 특성이 보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보도전문PP와 차별된 방송분야를 편성하는 것이 방송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방안의 미흡과 관련해서는 통상 일반적으로 사업초기에는 사업실적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지난 1년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 또는 광고 여건, 미디어 시장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고 어려웠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항목 중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은 종편 도입 목표인 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핵심적인 해당사항이고, 또한 중대한 상황변화에 따른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규제기관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러한 기본 조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승인조건 미이행 또는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꼭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드리면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구성,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 편성위원회 운영,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인조건의 이행의 미흡으로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부과코자 하고 그 대상사업자는 종편4사와 보도PP 전 사업자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행촉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나 연구개발, 콘텐츠 투자계획은 시정명령 내용에 있습니다만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이나 방송분야별 편성비율 미흡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행촉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역시 대상사업자는 종편4사와 보도PP 1사를 포함한 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물론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가겠습니다만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다소 변경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접수해 주시면 7월 중에 이행촉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면 현재 계획으로는 8월경에 시정명령을 하고, 8월 이른 시간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8월 말 사업자들에게 이행촉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접수코자 합니다. 일정은 다소 변경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으로 승인조건 중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전체적으로 종편이 출범한 이후에 최초의 자가 점검 같은 것인데, 종편이 안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2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따기만 하면 뭐든 해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도 발전시키고, 국산장비 R&D도 지원하게 될 것이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서 국민들을 즐겁게 해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지금 점점해 놓은 결과를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콘텐츠의 산업 기여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치의 47% 밖에 못 했습니다' 스스로 공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방비율은 높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작비, 출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재탕, 3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던 공약은 값싼 정치평론가들 모아놓고 보도프로그램을 위장한 내용을 대신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추진력으로 정치평론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종편의 경영현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시장, 미디어 전체가 그렇지만 적분의 시대에서 미분의 시대로 가는 그런 미디어 상황에서 종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전망을 밝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광고시장은 어떤가? 단기적으로 경제야 한없이 나쁘지만 향후의 광고시장도 그렇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다선정하고 정치에 휘말린 판단으로 자업자득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시정명령을 해서 어떻게든 행정책임을 다 하겠다는 것은 도리 없는 일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방송정책국장,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 YTN에서 봤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오늘 아침에 YTN를 보다가 이것이 미디어 간에 혈투기이고 충돌인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 리서치뷰라는데 한 1,000명 여론조사를 했더니 종편에 대한 불신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49%, 그리고 종편 재승인 심사해서 아예 없애라고 하는 사람이 41.7%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려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첫째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적인 측면에서 정말 어지러운 종편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방통위의 책임이고 우리의 자업자득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시정명령을 통해 연말까지 시정조치가 잘되어서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또 완벽을 기하도록 사무국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종편이 3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글로벌 미디어그룹 등장, 콘텐츠의 세계시장 경쟁력 증진 이 3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종편을 밀어붙였는데 이 3가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공정방송, 품격 있는 방송을 유도하기 위해 줄지에 심각한 규제의 대상으로 전략해 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결과는 참담하다는 표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종편4사가 다 제작투자액이 반 토막 이하 정도인데, 2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자기들이 처음에 투자계획을 낼 때 한두 개가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과감하게 써냈다가 4개가 되면서 시장에 적응 못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나왔던 것이지요. 스스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의지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꺾였던 이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정부정책의 실패와 종편의 과욕들이 한꺼번에 물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항목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평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들을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로 해서 나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재평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현재 우리가 재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이행평가 속에서 재승인의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큰 주제 속에서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 당시에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평가내용을 그렇게 치밀하게 논의했고, 그다음에 주요 3대 과제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평가내용에 다 넣었는데 이러한 큰 덩어리 핵심주제들이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이쪽 부분으로 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치밀하게 봐야겠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고서에서 7개의 요목들 중에 1번 요목이 가장 심각해졌습니다. 첫 번째 보도·교양·오락이라는 장르 구분들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도와 교양과 오락은 사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오락과 관련해서만 편성 규제가 있었고 예전에 오락을 많이 하려고 '쇼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양 영역의 장르를 확대시키고 오락 영역의 장르가 적은 것처럼 보이려고 지상파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쇼양이라는 장르가 있느냐고 비하시킨 적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도·교양·오락이라는 장르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락은 기본적으로 예능 플러스 드라마를 오락이라고 하고,

교양은 시사와 일반 자연 이러한 부분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출했던 23.7%, 교양 44.8% 이것이 통상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상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더 잘게 쪼개서 요목화를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단지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부분을 보는 의미도 있지만 재승인을 위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을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 주고, 그다음에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방송특별위원회,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즉 공정방송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신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2가지가 지적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보고를 받고 오전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훑어 봤는데, 구성이 안 돼도 아주 형식적으로 자기 회사 사람들 한 대여섯 명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체 위원회가 있고 외부위원들이 결합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속기록들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그다음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말 했는지, 허위로 했다고 신고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만들었다고 하는 곳이라도 정확하게 회의록에 대한 근거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허위보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방비를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 그다음에 보도 과잉 문제도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 장르별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지금 말 그대로 우리는 보도전문 채널은 뉴스Y에만 준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 종합편성을 하라고 했으면 대표적인 장르인 보도와 교양과 오락이라는 장르의 유지와 안정성, 그러면서 그 안정성이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들이 바로 콘텐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 이러한 일련의 유기적 관련들 속에서 문제를 봐주고 교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보자, 지금 방대한 양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방송정책국에서 많이 생고생했다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기왕 고생하는 것 좀 더 요목을 더 잘게 쪼개서 기존의 정책적 목표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방송환경 매체환경 속에서 어떤 부분을 봐 주어야 실질적으로 종편과 더불어서 전체 유료방송PP들이 생존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관점을 가지고 심사하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질문을 다 받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평가나 여론이 있었는데 이행실적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대체로 맞는다,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는데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곧 재승인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재승인을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 이행실적이 기본자료가 될 텐데 두 분이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도편성이 아주 과다하다, 어딘가는 50% 이상 보도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보도채널이지 이것이 종편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방비율이 아주 높다, 그래서 종편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다양한 문화, 다양성이 있는데 매우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또 국산장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앞으로 있을 재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행정조치하고 이행각서를 받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최소한 중편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반을 하나 꾸려서라도 방통위가 방향을 제시하자, 제시된 방향을 가지고 재승인에도 나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만, 물론 초기에 중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고 고민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방송이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이행 실적점검, 또 다가오는 재승인을 계기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연구반 운영을 제안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중편을 놓고 개인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정보공개만 해도 참여한 상임위원들 간에 반대의견들과 쟁점들이 존재했었는데, 이행점검 실적을 놓고 일치된 의견들을 보인다는 것이 현재 중편의 현주소라고 명확하게 의미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홍성규 위원 말씀하셨던 연구반을 구성하고 재승인 심사 앞까지 집중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해 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의 영역들은 바로 바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더 요목을 세분화해서 또 시정명령 부과할 것 있으면 계속 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승인까지 이 점검을 계속 해 나가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제가 아직 발언도 안 했는데 4명의 상임위원의 의견이 똑같다고 미리 양 위원께서 예단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평가가 중편이 출범한 이후 첫 연도에 대해 한 것이고,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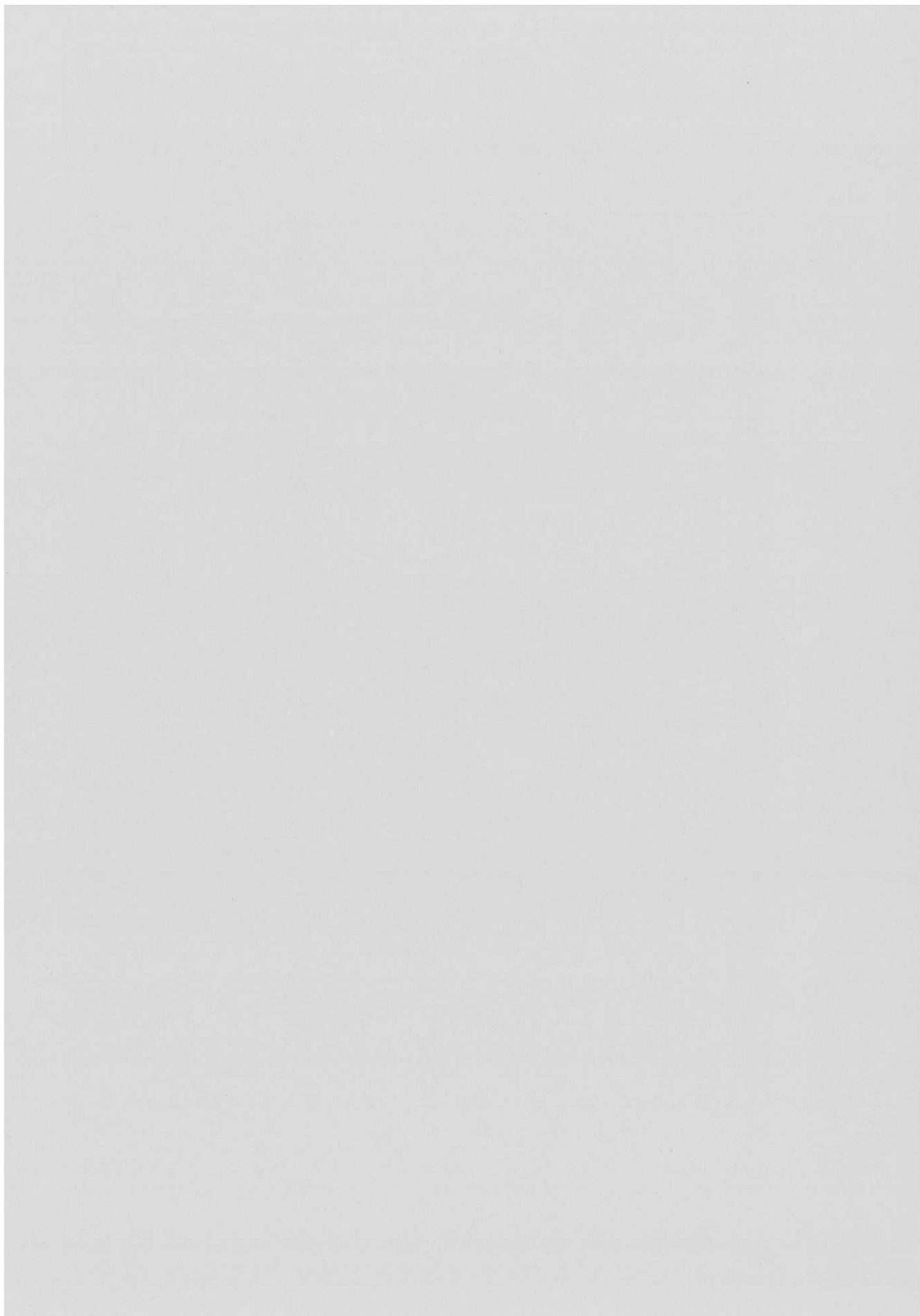
○ 김대희 상임위원

- 물론 첫 번 자료를 가지고 사무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욕심껏 좀 더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매년 평가에 좀 더 보완해서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당초에 약속한 대로 콘텐츠에 대한 투자들이 의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물론 경기가 안 좋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방송사 내부에서도 그런 원인은 부분적으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재방비율이 높다든지, 보도가 과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빨리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방송사에서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말도 많은 종편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도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고, 다만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면밀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아니고 제3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별도의 위원회나 검증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제3자에게 의뢰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끝.

**3.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안건, 2014. 2. 28.)**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14. 2. 28.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공 개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14. 2. .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14. 2. 28.(금),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보고사유

- 종합편성·보도전문PP 5개 사업자*에 대한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종편PP 4개 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 및 보도PP 1개 사업자(뉴스Y)

2. 주요경과

- '11.3~5월 종합편성·보도전문PP 5개 사업자 승인 및 승인조건 부과

※ TV조선·JTBC·뉴스Y('11.3.30) / 채널A('11.4.20) / MBN('11.5.6)

- '13. 7. 9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 '13. 8.23 '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 '13년도 사업계획 중 콘텐츠 투자계획('12년도 미이행금액 포함)과 재방비율 이행을 명령함

- '14. 1.29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종편PP 4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 '14.1~2월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접수('14.1.17)
- '13년도 이행실적 점검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14.2.10~11)
- 외부 점검 자문반*을 통한 '13년도 이행실적 점검('14.2.6/2.12)

* 방송전문가(2), 변호사(1), 회계사(2) 5인이 이행 여부 점검

3. 점검 결과

□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및 ‘③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은 5개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사업계획 보다 높아 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TV조선, 채널A, MBN)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	24.8	35.6	39.6	23.2	45.4	31.4	23.6	42.6	33.8	24.3	34.8	40.9
이행실적(%)	48.2	34.6	17.2	14.2	39.7	46.1	43.2	30.8	26.0	39.9	29.9	30.2

- 재방비율은 뉴스Y를 제외한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 사업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특히 JTBC의 재방비율이 타 사에 비해 높음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사업계획(%)	23.8	16.9	22.6	29.2	11.6
이행실적(%)	43.5	62.2	46.9	48.4	7.2

- ‘④지역균형 발전방안’은 지역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대체로 이행하였으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등은 일부 미흡함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TV조선, 채널A), 지역뉴스 네트워크 운영(TV조선), 지역콘텐츠 발굴 및 지역프로그램 편성 존 설정(JTBC), 일부 방송시간의 지역 할당(뉴스Y) 등 일부 미흡

- ‘⑤소수 시청자 지원방안’은 대체로 이행했으나 다문화가정 교육(채널A),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편성(MBN) 등이 일부 미흡함

- ‘⑥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의 방송장비 국산화 등은 대체로 이행했으나 R&D 실적은 일부 미흡함

- ‘⑦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은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콘텐츠 투자실적이 사업계획 대비 미흡함

구 분(억원)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사업계획	1,609	2,322	1,872	1,815	54
이행실적(이행률)	414(25.7%)	1,511(65.1%)	493(26.3%)	770(42.4%)	51(94.4%)

□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종편PP 4개 사 모두 승인조건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60%이상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35%이상(주시청시간대 10%이상) 편성을 준수함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국내제작 편성 비율(%) - 전체 방송시간의 60%이상 -		상반기	97.0	98.7	97.5	100
		하반기	93.5	99.7	98.7	100
외주제작 편성비율 (%)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상반기	43.7	52.6	39.2	52.7
		하반기	37.3	51.3	42.4	52.9
	주시청시간대의 10% 이상	상반기	52.0	46.0	34.9	61.4
		하반기	49.1	51.7	48.8	70.0

4. 조치 방향

- 이행이 미흡한 항목 중 재방비율과 콘텐츠 투자실적은 이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
 -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재승인 심사사항 중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항목에서 감점 처리(계량 평가)
- 나머지 이행 미흡 항목들은 MBN을 제외한 4개 사업자의 승인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이행 미흡 항목은 그 불이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관련 심사사항 평가에 반영(비계량 평가)
 - MBN은 승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행 미흡 항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 후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14.11월 예정)에 반영

※ 승인유효기간 : TV조선·JTBC·뉴스Y '14.3.31 / 채널A '14.4.21 / MBN '14.11.30

5. 향후 계획

- '14. 3월 재승인 심사에 반영 ⇨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 '14. 3월 이행촉구 후 '14.11월 재승인 심사에 반영 ⇨ MBN

붙임 : 사업자별 점검결과 및 승인조건 중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 사항 끝.

방송사업자별 점검 결과

□ (주)조선방송(TV조선)

가.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아 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방비율도 사업계획에 비해 매우 높음

구 분	방송분야별 편성비율(%)			재방비율(%)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4.8	35.6	39.6	23.8
이행실적	48.2	34.6	17.2	43.5

- ②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③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⑤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 지역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대체로 이행했으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지역뉴스 네트워크 운영 등이 일부 미흡함

- ⑥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장비 국산화 비율(25.4%)이 사업계획(32.5%)에 다소 미치지 못하며 R&D실적이 대체로 미흡함

- ⑦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이행실적이 미흡하며 콘텐츠 투자금액은 414억원으로 사업계획(1,609억원, 25.7%)에 미치지 못함

나.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승인조건 중의 하나인 국내제작(매반기 60%이상) 및 외주제작(매반기 35% 이상, 주시청시간대 10%이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함

국내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주시청시간대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97.0	93.5	43.7	37.3	52.0	49.1

□ (주)제이티비씨(JTBC)

가.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재방비율이 사업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구 분	방송분야별 편성비율(%)			재방비율(%)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3.2	45.4	31.4	16.9
이행실적	14.2	39.7	46.1	62.2

- ②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③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⑤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 지역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대체로 이행하였으나 지역콘텐츠 발굴, 지역 프로그램 편성 존 설정 등이 일부 미흡함

- ⑥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대체로 이행하였으나 방송장비 국산화 비율(20%)이 사업계획(31%)에 다소 미치지 못함

- ⑦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이행실적이 미흡하며 콘텐츠 투자금액은 1,511억원으로 사업계획(2,322억원, 65.1%)에 미치지 못함

나.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승인조건 중의 하나인 국내제작(매반기 60%이상) 및 외주제작(매반기 35% 이상, 주시청시간대 10%이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함

국내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주시청시간대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98.7	99.7	52.6	51.3	46.0	51.7

□ (주)채널에이(채널A)

가.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아 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방비율도 사업계획에 비해 매우 높음

구 분	방송분야별 편성비율(%)			재방비율(%)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3.6	42.6	33.8	22.6
이행실적	43.2	30.8	26.0	46.9

- ②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③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⑥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대체로 이행하였으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은 이행실적이 일부 미흡함
- ⑤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대체로 이행했으나 다문화가정 교육,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실적 등이 사업계획 대비 일부 미흡함
- ⑦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이행실적이 미흡하며 콘텐츠 투자금액은 493억원으로 사업계획(1,872억원, 26.3%)에 미치지 못함

나.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승인조건 중의 하나인 국내제작(매반기 60%이상) 및 외주제작(매반기 35% 이상, 주시청시간대 10%이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함

국내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주시청시간대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97.5	98.7	39.2	42.4	34.9	48.8

□ (주)매일방송(MBN)

가.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아 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방비율도 사업계획에 비해 매우 높음

구 분	방송분야별 편성비율(%)			재방비율(%)
	보도	교양	오락	
사업계획서	24.3	34.8	40.9	29.2
이행실적	39.9	29.9	30.2	48.4

- ②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③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④ 지역 균형 발전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함

- ⑤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대체로 이행했으나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편성 등이 일부 미흡함(소수자 대상이 아닌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이행실적에 포함)

- ⑥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방송장비 국산화 비율 등은 이행했으나 방송기술연구소 운영실적 등은 일부 미흡함

- ⑦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이행실적이 미흡하며 콘텐츠 투자금액은 770억원으로 사업계획(1,815억원, 42.4%)에 미치지 못함

나.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 승인조건 중의 하나인 국내제작(매반기 60%이상) 및 외주제작(매반기 35% 이상, 주시청시간대 10%이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함

국내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주시청시간대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00	100	52.7	52.9	61.4	70.0

□ (주)연합뉴스티브이(뉴스Y)

<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 >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②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 방안, ③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⑤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및 ⑦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함
- ④ 지역균형 발전방안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뉴스 편성비율 등 대체로 이행했으나 일부 방송시간의 지역방송 할당은 미이행됨
- ⑥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방송장비 국산화 등은 이행했으나 연구개발(R&D) 방안 이행실적은 일부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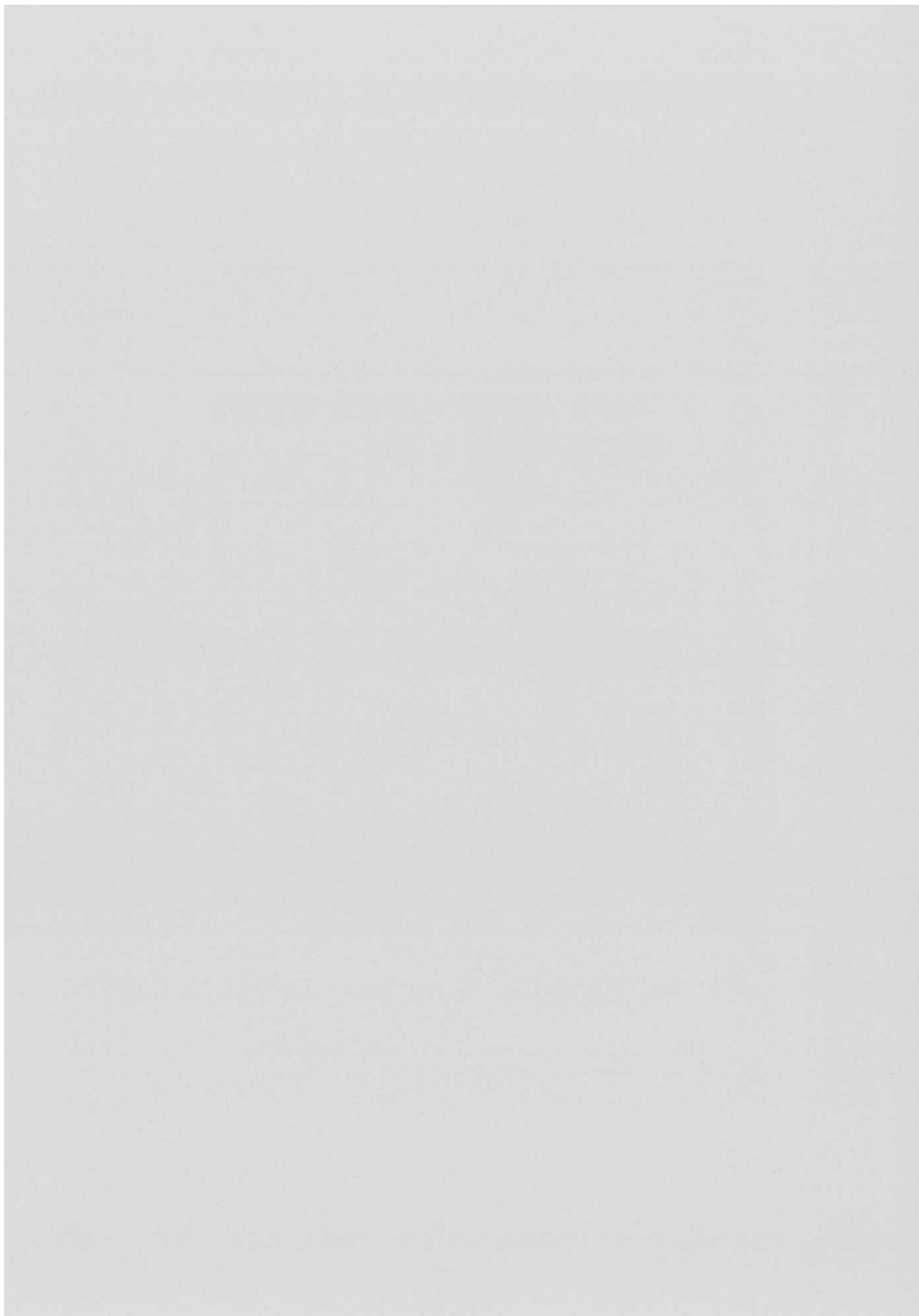
승인조건 중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 사항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중편PP만 해당)

**4.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속기록, 2014. 2. 28.)**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2. 28(금) 09: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중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중편 4개 사업자와 뉴스Y 보도PP 1개 사업자에 대해서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입니다.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두 번째,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및 세 번째,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은 5개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사업계획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십시오. 재방비율은 뉴스Y를 제외한 중편PP 4개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특히 JTBC의 재방비율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 발전방안은 지역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대체로 이행되었다고 봐집니다만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등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은 대체로 이행하였습지만 채널A의 다문화가정 교육, MBN의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편성 등이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의 방송장비 국산화 등은 대체로 이행하였습지만 R&D 실적은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은 중편PP 4개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실적이 사업계획에 대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입니다. 중편PP 4개사 모두 승인조건인 국내제작 프로그램 60% 이상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의 목표를 대체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치 방향입니다. 이행이 미흡한 항목 중 재방비율과 콘텐츠 투자실적은 이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코자 합니다. 나머지 이행 미흡 항목들은 MBN을 제외한 4개 사업자의 승인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MBN은 승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행 미흡 항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 후에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코자 합니다. 오늘 보고를 마친 후에 TV조선·JTBC·채널A·뉴스Y에 대해서는 3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MBN에 대해서는 이행촉구를 한 후에 11월 재승인 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점검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중간에 재방비율이 JTBC가 제일 높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잘 봐야 할 것이 제가 알기로는 JTBC가 재방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JTBC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재방하려다 보니까 재방비율이 높고, 다른 사들은 예를 들어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방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재방비율이 높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보도를 많이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자가 승인을 시 조건을 제시했던 목표, 여기에서 보면 사업계획서상 JTBC는 재방비율을 16.9%를 하겠다고 했는데 62.2%를 했다는 그 면을 봤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종편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가장 많이 노력하는 사 중의 하나가 JTBC이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다 보니까 재방비율이 많은 것으로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재방비율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고 과징금 처분했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승인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이런 수치만 가지고 볼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재승인 심사에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반영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지난 9월 의결해 주신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 또는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요컨대 2011년, 2012년도 것은 정리가 되어서 확정되어 있고, 방송평가가 안 된 2013년도분을 집계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심사위원단에게 넘겨서 종합적인 종편의 3년 실적에 대한 평가로서 참고하도록 넘긴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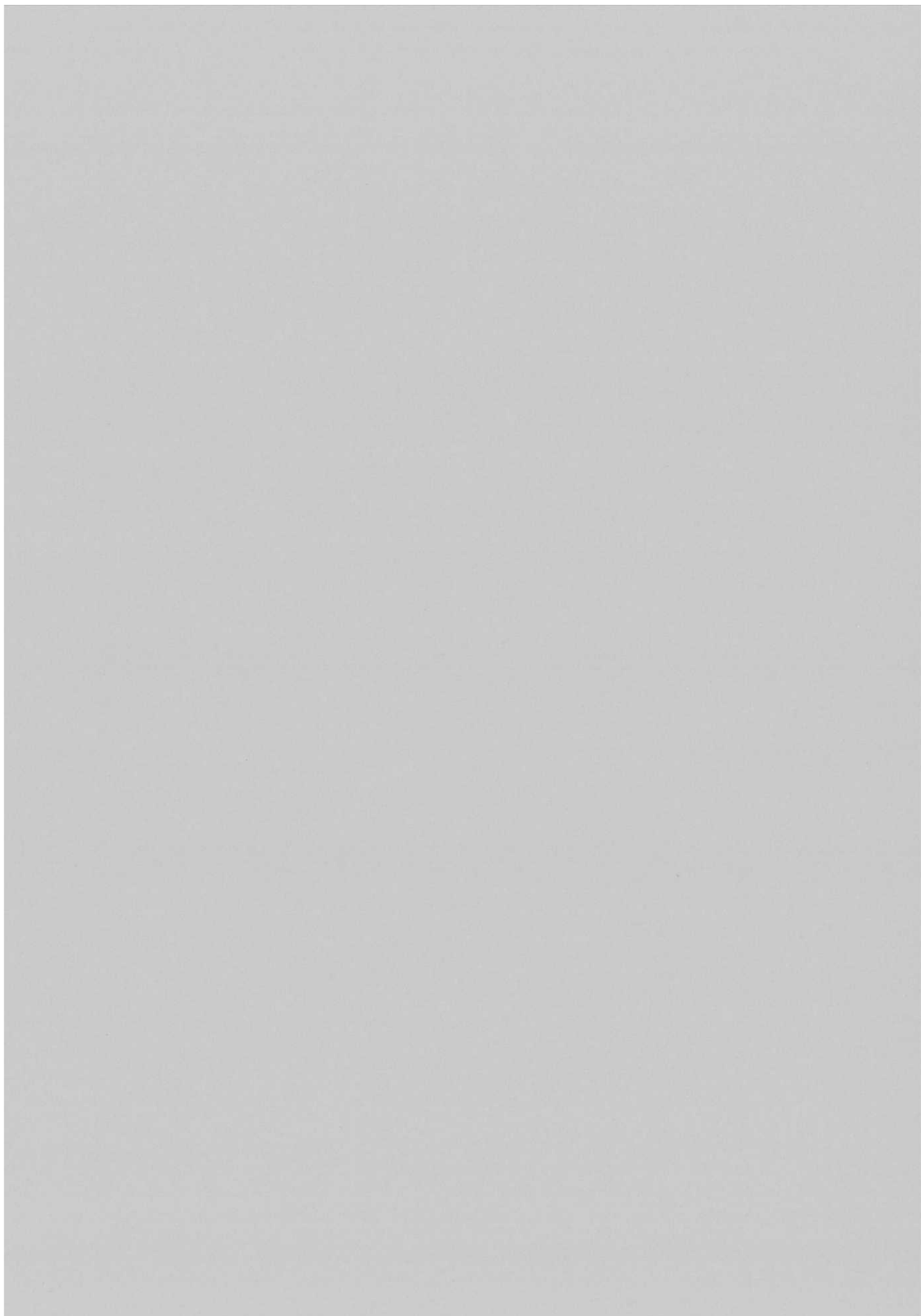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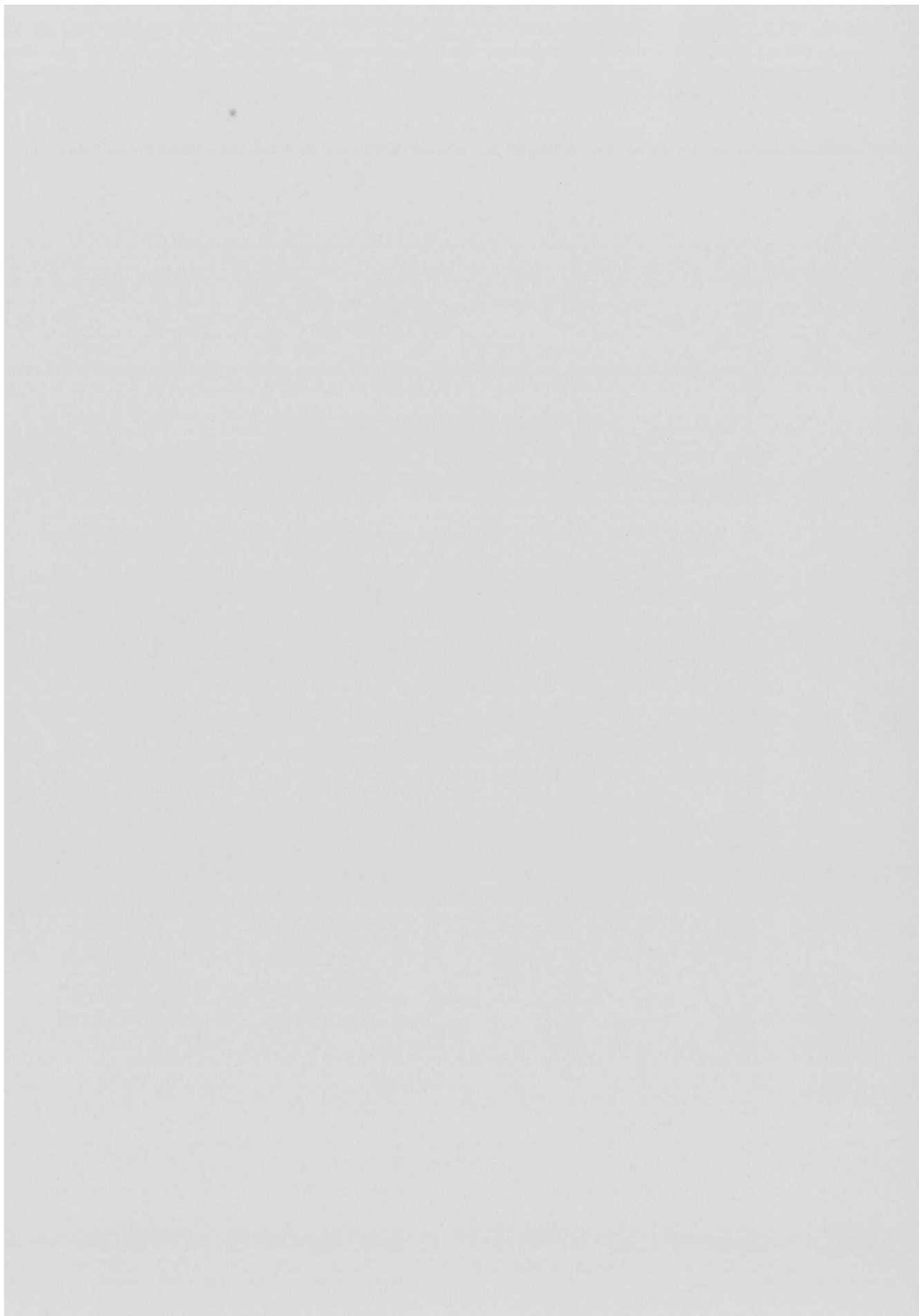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끝.

Ⅵ. 재승인 심사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순번	분야	성명	현직	추천 구분
1	위원장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
2	방송	류춘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통위원
3	방송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4	방송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외부기관
5	법률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기관
6	법률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외부기관
7	법률	이상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외부기관
8	기술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방통위원
9	기술	차지훈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외부기관
10	경영·회계	류길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방통위원
11	경영·회계	배기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외부기관
12	경영·회계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외부기관
13	시청자·소비자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14	시청자·소비자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위원
15	시청자·소비자	황선옥	소비자 시민모임 부회장	방통위원

2. 심사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1.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 심사위원회 주요 직무

-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심사기준 및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회의 운영방안

- 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 의결

☐ 의견청취 계획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결정
- (청취대상자) 재승인 대상 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배석하는 실무자는 4인 이내로 제한)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 3일차 수요일에 진행(의견청취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함 : ①TV조선, ②뉴스Y, ③채널A, ④JTBC)

2. 세부 심사기준

□ 세부 평가방법

-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하고,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구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세부 심사항목 구성

- 세부 심사항목은 심사항목의 과거실적과 미래계획으로 구분하되 일부 심사항목*은 과거 실적만 반영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재정적 능력

- 합계 총점 중 실적과 계획의 비중은 종편PP의 경우 실적 675점, 계획 325점, 보도PP의 경우 실적 650점, 계획 350점으로 구성

<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종편 배점, 보도 배점)	종편PP		보도PP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 350)	350	-	35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140, 180)	45	95	60	120
시청자 권익보호(70, 80)	25	45	25	55
신청법인의 적정성(20, 20)	20	-	20	-
기획·편성의 적절성(70, 60)	25	45	20	40
수급의 적절성(50, 35)	20	30	10	25
제작·협력의 적절성(40, 35)	15	25	10	25
재정적 능력(65, 40)	65	-	40	-
기술적 능력(15, 10)	5	10	5	5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30, 30)	10	20	10	20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 15)	5	10	5	10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 15)	5	10	5	1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30, 20)	10	20	5	15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20, 40)	5	15	15	25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70, 70)	70	-	70	-
합 계	675	325	650	350

□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

【 신청법인의 적정성 】

- (대상법인)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법인 및 최대주주
- (평가방법)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사업추진의지,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최대주주의 재정적 능력, 최대주주의 방송·통신, 신문·뉴스통신, 콘텐츠·저작권, 노무, 공정거래, 금융, 조세 및 중소기업 분야 등에 있어 법위반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 종편 및 보도PP는 승인 유효기간('11년, '12년, '13년) 중 '12년도에만 방송평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점수만 반영
-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심사 시 350점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TV조선, JTBC와 채널A 각각의 방송평가 점수를 50%로 환산
-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심사 시 350점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뉴스Y의 방송평가 점수를 70%로 환산하여 반영

【 관련법령 위반사례 】

- (적용대상 및 기간) '11.3.31 ~ '14.1.31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관련법령 범위)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2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
- 다만, 동일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방송

평가에 이미 반영된 '12년도 법 위반사항은 제외

< 행정처분별 감점 기준 >

법령위반	행정처분		종편PP 감점점수	보도PP 감점점수
방송법 위반	과태료		-2점	-2.8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점	-7점
		5천만원 초과	-7.5점	-10.5점
	심의제재	주의	-0.5점	-0.7점
		경고	-1점	-1.4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당 각 -2점, 병과시 -3점	1건당 각 -28점, 병과시 -4.2점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3점	-4.2점
	과태료		-4.5점	-6.3점
	과징금		-6점	-8.4점
그 외 법령 위반	과태료		-1점	-1.4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2.5점	-3.5점
		5천만원 초과	-3.75점	-5.25점
	시정명령		-2점	-2.8점

※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기준을, 그 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

- 실제 평가 시에는 총점에서 방송평가 점수가 반영된 비율(350/700, 300/500)을 고려하여 종편PP의 경우 방송평가 점수의 50%로, 보도PP의 기준점수의 70%를 반영

○ (소송 중인 행정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 재정적 능력 】

○ (세부 심사항목)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선정

-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11년도의 경우 주로 사업 준비기간으로서 수익 관련 항목이 단기(1달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제외

- (평가방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와 대상회사의 지표값(A)을 비교

※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 계산시 특정 업종의 과대평가 방지를 위해 업체수를 가중치로 계산

- 다만, '13년도에 대해서는 대상회사의 지표값(A)은 산출되지만 비교 기준인 한국은행 자료(m, a)가 아직 발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12년도 기준을 준용

- (최저점 설정) 심사항목(재정적 능력) 배점의 30%를 최저점수로 산정

【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 (적용 대상 및 기간) '11.3.31 ~ '14.1.31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범위)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중복성 배제를 위해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12년)은 제외

< 행정처분에 따른감점 기준 >

행정처분		종편PP 감점점수	보도PP 감점점수
시정명령		-4점	-5.6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점	-7점
	5천만원 초과	-7.5점	-10.5점

※ 방송평가 감점기준을 따르되 방송평가 점수의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종편PP는 50%, 보도PP는 70%를 반영

3. 시청자 의견 접수

- '13.11.29~12.30까지 접수된 총 39건(개인 37건, 법인 2건)의 시청자 의견 중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만 명시한 12건과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3건을 제외한 24건을 접수

4.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내역

- 재승인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에 대해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2개 기관의 방송, 상사, 공정거래 등 분야별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내역 조사(대상기간 : '11. 3. 31~'14. 1. 30)
- 법무부 등 9개 기관은 재승인 신청법인 및 최대주주에 대한 소관 분야 행정처분 내역이 없음을 통보했으며 검찰청도 형사처벌 내역이 없음을 알려옴
- 방통위 및 중앙전파관리소는 재승인 신청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단위 : 건)

구분	방송 심의제재	광고 심의제재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TV조선	○	○	○	○	○
JTBC	○	○	○	○	○
채널A	○	○	○	○	○
뉴스Y	○	○	○	○	○

* ○의 ○ ○건은 재심절차를 위해 집행정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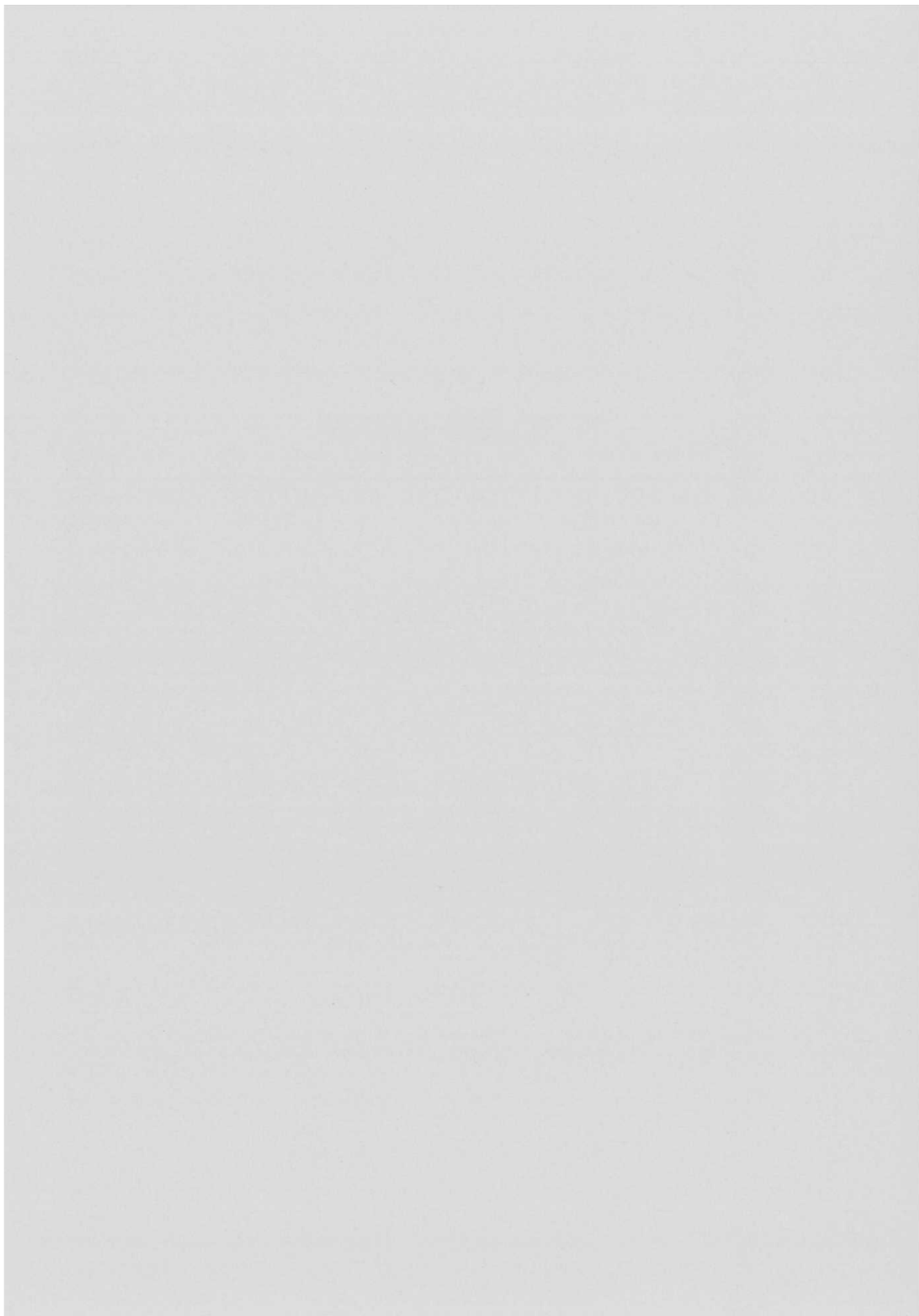
5.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사업자의 계량평가 결과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평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			재정적 능력	시정명령 및 불이행
			행정처분	심의제재	합계		
1	TV조선	273.35	○	○	-18.5	37	-4
2	JTBC	279.82	○	○	-22	37	-4
3	채널A	271.30	○	○	-24	37	-4
4	뉴스Y	277.63	○	○	-6.3	22.5	-5.6

6.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의견서 채택

-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14인이 작성한 심사의견서 채택

3. 세부 심사기준



2014년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

2014. 3.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1

개 요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분류되며,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서는 심사사항, 심사항목과 배점만 제시
-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그에 따른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2

세부평가 방법

- (기본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4인)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세부평가 시 시정명령, 법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하여 계량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
- (평가유형)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평가 :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법령위반사례 및 시정명령 위반사례 등의 심사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 비계량평가 : 계량평가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등급 구간 내에서 적절한 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부여

구 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점수계산)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함

-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재승인여부 결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다만,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일부 심사사항이 특정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재승인 여부 결정방안 >

총점	심사사항 점수	재승인 여부
650점 이상	심사사항 중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①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②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등의 두 개 심사항목을 제외한 개별 심사사항(대분류)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재승인 / 조건부 재승인
650점 미만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 세부심사항목 구성 】

- (구성방안) 심사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심사항목의 내용을 ①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②단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나

- 각 심사항목을 과거실적과 미래계획 간 균형있게 심사평가 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 구성

◆ 제1안 : 실적, 계획으로 구분(사례 : 2013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

- 방통위에서 의결한 기본계획 심사항목을 실적, 계획으로 구분하여 구성

심사항목(예시)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세부심사항목	-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u>이행실적</u> -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u>실현 계획의 적정성</u>

- (장점) 과거실적과 미래계획에 대한 균형있는 심사배점 가능
○ (단점)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중에서 특정분야가 소홀히 평가될 우려

◆ 제2안 : 심사항목을 단위별로 세분화(사례 : 2010년도 종편 · 보도PP 승인심사)

- 방통위에서 의결한 기본계획 심사항목을 하위 단위별로 세분화하여 구성

심사항목(예시)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세부심사항목	- 방송의 <u>공적책임</u> 실현 - 방송의 <u>공정성</u> 확보 - 방송프로그램의 <u>공익성</u> 확보

- (장점)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항목 간 균형있는 심사배점이 가능
○ (단점) 과거실적 · 미래계획 중에서 특정분야가 편중되어 평가될 우려

- 일부 심사항목*은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실적만 반영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재정적 능력

【 세부심사항목 배점 】

- (배점비중) 방송평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서 과거실적만 평가하므로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 계획의 비중을 1 : 2로 부여

* 4개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면 종편PP는 505점, 보도PP는 480점임

- 합계 총점 중 실적과 계획의 배점비중은 종편PP의 경우 실적 675점, 계획 325점이며 보도PP의 경우 실적 650점, 계획 350점이 되도록 구성

※ 2013년도 지상파 재허가는 실적 675점, 계획 325점임

<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 >

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 350)	350	-	35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140, 180)	45	95	60	120
시청자 권익보호(70, 80)	25	45	25	55
신청법인의 적정성(20, 20)	20	-	20	-
기획·편성의 적절성(70, 60)	25	45	20	40
수급의 적절성(50, 35)	20	30	10	25
제작·협력의 적절성(40, 35)	15	25	10	25
재정적 능력(65, 40)	65	-	40	-
기술적 능력(15, 10)	5	10	5	5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30, 30)	10	20	10	20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 15)	5	10	5	10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 15)	5	10	5	1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30, 20)	10	20	5	15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20, 40)	5	15	15	25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70, 70)	70	-	70	-
합 계	675	325	650	350

【 신청법인의 적정성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종편	보도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신청법인의 적정성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	20	비계량

○ (대상법인)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법인 및 최대주주로 결정

○ (평가방법)

-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사업추진의지
-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 최대주주의 재정적 능력

※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은 심사항목 「재정적 능력」에서 평가

- 최대주주의 방송·통신, 신문·뉴스통신, 콘텐츠·저작권, 노무, 공정거래, 금융, 조세 및 중소기업 분야 등에 있어 범위반 사항

※ 신청법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심사항목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에서, 기타 위반 사항은 심사항목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 반영하여 심사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종편	보도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	350	350	계량

- 방송평가 점수는 승인 유효기간('11년, '12년 '13년) 중 '12년도 방송평가 점수만 있으므로 이를 반영
 - 종편PP의 '12년도 방송평가 점수(700점 만점)는 TV조선 546.70점, JTBC 559.63점, 채널A 542.60점이며,
 - 보도PP 뉴스Y의 방송평가 점수(500점 만점)는 396.61점임
-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심사 시 350점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TV조선, JTBC와 채널A 각각의 방송평가 점수를 50%로 환산
 -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심사 시 350점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뉴스Y의 방송평가 점수를 70%로 환산하여 반영

< 재승인 심사에 적용되는 방송평가 점수 >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방송평가 (700점, 500점 만점)	546.70점	559.63점	542.60점	396.61점
재승인 환산점수 (350점 만점)	273.35점	279.82점	271.30점	277.63점

※ JTBC 환산점수 279.815과 뉴스Y 환산점수 277.627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관련법령 위반사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종편	보도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관련 법령 위반사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감점	계량

- (적용대상 및 기간) '11.3월 ~ '14.1월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최대주주는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심사

- (관련법령 범위)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2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

- 다만, 동일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방송 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

- (참조기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

법령위반	기준점수
방송법 위반	· 과태료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10점, 5천만원 초과 - 15점 · 심의제제 : 주의 - 1점, 경고 -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당 각 -4점, 병과시 - 6점
공정거래법 위반	· 시정명령 : -6점, · 과태료 : -9점, · 과징금 : -12점
그 외 법령 위반	· 과태료 : -2점, · 시정명령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5점, 5천만원 초과 - 7.5점

- (감점기준) 실제평가 시에는 방송평가 점수가 반영된 비율(350/700, 300/500)을 고려하여 종편PP의 경우 방송평가 기준점수의 50%로, 보도PP의 기준점수의 70%로 환산하여 반영

법령위반	행정처분		종편PP 감점점수	보도PP 감점점수
방송법 위반	과태료		-2점	-2.8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점	-7점
		5천만원 초과	-7.5점	-10.5점
	심의제재	주의	-0.5점	-0.7점
		경고	-1점	-1.4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당 각 -2점, 병과시 -3점	1건당 각 -28점, 병과시 -4.2점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3점	-4.2점
	과태료		-4.5점	-6.3점
	과징금		-6점	-8.4점
그 외 법령 위반	과태료		-1점	-1.4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2.5점	-3.5점
		5천만원 초과	-3.75점	-5.25점
	시정명령		-2점	-2.8점

-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여부) 재승인 기본계획('13.9월)에서는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토록 하나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심사위원회 의결 필요

- (법령위반 및 소송현황) '13.1월 ~ '14.1월까지 재승인 대상 사업자들의 법령위반 건수는 TV조선 ○건, JTBC ○건, 채널A ○건, 뉴스Y ○건이며, 이 중 소송중인 경우는 ○ ○건, ○ ○건, ○ ○건임

※ '11년 법령위반 건수는 없으며 '12년 법령위반 건수는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됨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법령위반 건수	○	○	○	○
소송현황	○	○	○	○

- (관련규정)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이라 할 지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은 유지된다고 규정

- 다만, 타 행정처분과 달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적용사례) '00년 이후 방통위(구 방송위 포함)는 방송평가, 지상파 재허가 등 관련업무 수행에 있어 소송이 제기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유예

- '12년도 방송평가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CBS의 방송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감점을 유예하고 '13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반영

- '10년 종편·보도PP 승인심사 시에도 세부심사기준에서 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은 배제한다는 점을 명시

- (법률자문 검토결과) 방송평가, 지상파재허가 등에서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을 유예하여 행정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2개 법인)
- 소송중인 행정처분을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해 재승인 불허로 방송사업 자체의 가부가 변경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1개 법인)
- (검토의견) '14.3월 현재 이의가 제기된 ○ 처분(○건), 기타 집행정지가 인용된 행정처분(○건)은 효력이 상실 또는 정지되므로 감점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
- 다만, 집행정지 신청없이 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 ○건, ○ ○건)은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제1안)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유예
 - ⇒ (장점) 선례를 고려한 일관된 행정행위가 가능하며 확정된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안정된 심사평가가 가능
 - ⇒ (단점) 감점유예로 인한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있고 감점을 유예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행정소송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음
- (제2안) 소송중인 행정처분도 감점대상에 포함
 - ⇒ (장점) 종전 행정관행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심사평가가 가능하며 감점 회피목적의 행정소송 남용도 방지 가능
 - ⇒ (단점)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 재승인 심사결과의 번복우려 및 추후 지상파 재허가, 방송평가 등 다른 심사에도 동일하게 감점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심사위원회 의결 : 제1안)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을 유예

【 재정적 능력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종편	보도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50)	재정적 능력 (65, 40)	부채비율	25	15	계량
		자기자본순이익율	20	15	계량
		총자산증가율	20	10	계량

- (세부심사항목)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마련

※ '10년 종편·보도PP 승인심사 시 재정적 능력 평가지표와 동일

※ 지상파 재허가, 방송평가, 종편·보도PP 최초 승인 등의 사례에서는 안정성(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수익성(③자기자본순이익율, ④매출액영업이익율), 성장성(⑤총자산증가율, ⑥매출액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사용

- (대상기간)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11년도의 경우 주로 사업 준비기간으로서 수익 관련 항목이 단기(1달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

- (평가방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와 대상회사의 지표값(A)을 비교

※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 계산시 특정 업종의 과대평가 방지를 위해 업체수를 가중치로 계산(방송평가 시 적용)

- 다만, '13년도에 대해서는 대상회사의 지표값(A)은 산출되지만 비교기준인 한국은행 자료(m, a)가 아직 발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12년도 기준을 준용

- (최저점 설정) ①'10.12월 최초 승인심사 시와 같이 최저점을 40% 부여하는 방안과 ②방송평가와 같이 최저점을 20% 부여하는 방안이 가능
- 신생매체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저점을 40%로 부여함이 적절

◆ 제1안 : 최저점수를 40%로 부여하는 방안(종편·보도PP 승인심사, IPTV 허가·재허가 심사)

- (장점) '10년 승인심사 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생매체로서의 특수성이 고려됨
- (단점) 지상파재허가 등과 비교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 가능

세부심사항목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A < m-2a$	$m-2a \leq A \leq m+2a$	$A > m+2a$
부채비율(25점, 15점)	25점, 15점	$[0.7 + 0.6 \times (m-A)/4a] \times \text{배점}$	10점, 6점
자기자본순이익율(20점, 15점)	8점, 6점	$[0.7 + 0.6 \times (A-m)/4a] \times \text{배점}$	20점, 15점
총자산증가율(20점, 10점)	8점, 4점		20점, 10점

◆ 제2안 : 최저점수를 20%로 부여하는 방안(방송평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 (장점) 지상파재허가, 방송평가 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음
- (단점) '10년 승인심사 시와 비교하여 환경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형평성 저해 우려

세부심사항목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A < m-2a$	$m-2a \leq A \leq m+2a$	$A > m+2a$
부채비율(25점, 15점)	25점, 15점	$[0.6 + 0.8 \times (m-A)/4a] \times \text{배점}$	5점, 3점
자기자본순이익율(20점, 15점)	4점, 3점	$[0.6 + 0.8 \times (A-m)/4a] \times \text{배점}$	20점, 15점
총자산증가율(20점, 10점)	4점, 2점		20점, 10점

- (심사위원회 의결) 최저점을 30%로 부여

- 신생매체로서의 특수성과 지상파재허가 심사와의 형평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저점을 30%로 부여

【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종편	보도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량

- (적용 대상 및 기간) '11.3월 ~ '14.1월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범위)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중복성 배제를 위해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12년)은 제외
- (참조기준)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

구분	기준점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 -8점 · 시정명령 불이행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10점 5천만원 초과 - 15점

- (감점기준)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의 환산비율을 고려하여 적용
 - 종편PP는 기준점수의 50%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보도PP는 기준점수의 70%로 환산하여 반영

행정처분		종편PP 감점점수	보도PP 감점점수
시정명령		-4점	-5.6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점	-7점
	5천만원 초과	-7.5점	-10.5점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350점)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를 35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 청자 권익보호 등 (230, 280)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140, 180)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45점, 60점)	·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 실적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실적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실적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 실적의 적정성 ·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 재난방송 편성실적 적정성 · 방송언어 순화실적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의 적정성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95점, 120점)	·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 방안의 구체성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실현 계획의 적정성 ·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 재난방송 실현계획의 적정성 · 방송언어 순화계획의 구체성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시청자 권익보호 (70, 80)		및 실현가능성 · 공익적 프로그램 실현계획의 적정성 ·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 주주의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의지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25점, 25점)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 실적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이행실적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실적(방송법 제89조) ·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실적 ·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 실적(방송법 제86조)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5점, 55점)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계획의 적정성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 계획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적정성(방송법 제89조)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 시청자 불만처리 향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방송법 제86조)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점, 20점)	· 신청법인, 최대주주의 사업 추진의지 · 신청법인, 최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 최대주주의 재정적 능력 · 신문·뉴스통신, 콘텐츠·저작권, 노무, 공정거래, 금융, 조세,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최대주주의 범위반 사항(시정 명령 포함)
	관련 법령 위반 사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감점)	· 신청법인이 위반한 범위반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반영된 범위반 건수는 제외하고 평가함 · 종편PP 감점기준(방송법 위반시) - 과태료 : -2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 심의제재 : 주의 -0.5점, 경고 -1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당 각 -2점, 병과시 -3점 ※ 기타 법령 위반 시 방송법 위반 대비 50% 반영하며 시정명령 감점기준은 -2점임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 보도PP 감점기준(방송법 위반시) - 과태료 : -2.8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7점 5천만원 초과 -10.5점 - 심의제재 : 주의 -0.7점, 경고 -1.4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당 각 -2.8점, 병과시 -4.2점 ※ 기타 법령 위반 시 방송법 위반 대비 50% 반영하며 시정명령 감점기준은 - 2.8점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160, 130)	기획, 편성의 적절성(70, 60)	기획, 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25점, 20점)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방송 분야, 장르별 편성 포함) 이행 실적의 적절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방송법 제4조)
		기획, 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45점, 40점)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방 송분야, 장르별 편성 포함) 향후 계획의 적절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의 실현가능성(방송법 제4조)
	수급의 적절성 (50, 35)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20점, 10점)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이행실적의 적절성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30점, 25점)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계획의 적절성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제작·협력의 적절성(40, 35)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15점, 10점)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25점, 25점)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향후계획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향후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향후계획
재정 및 기술적 능력(80, 50)	재정적 능력(65, 40)	부채비율(25점, 15점)	· 부채총액/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20점, 15점)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총자산증가율(20점, 10점)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
	기술적 능력(15, 10)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5점, 5점)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실적의 적정성 · 국산장비 도입실적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적의 적정성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10점, 5점)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국산장비 도입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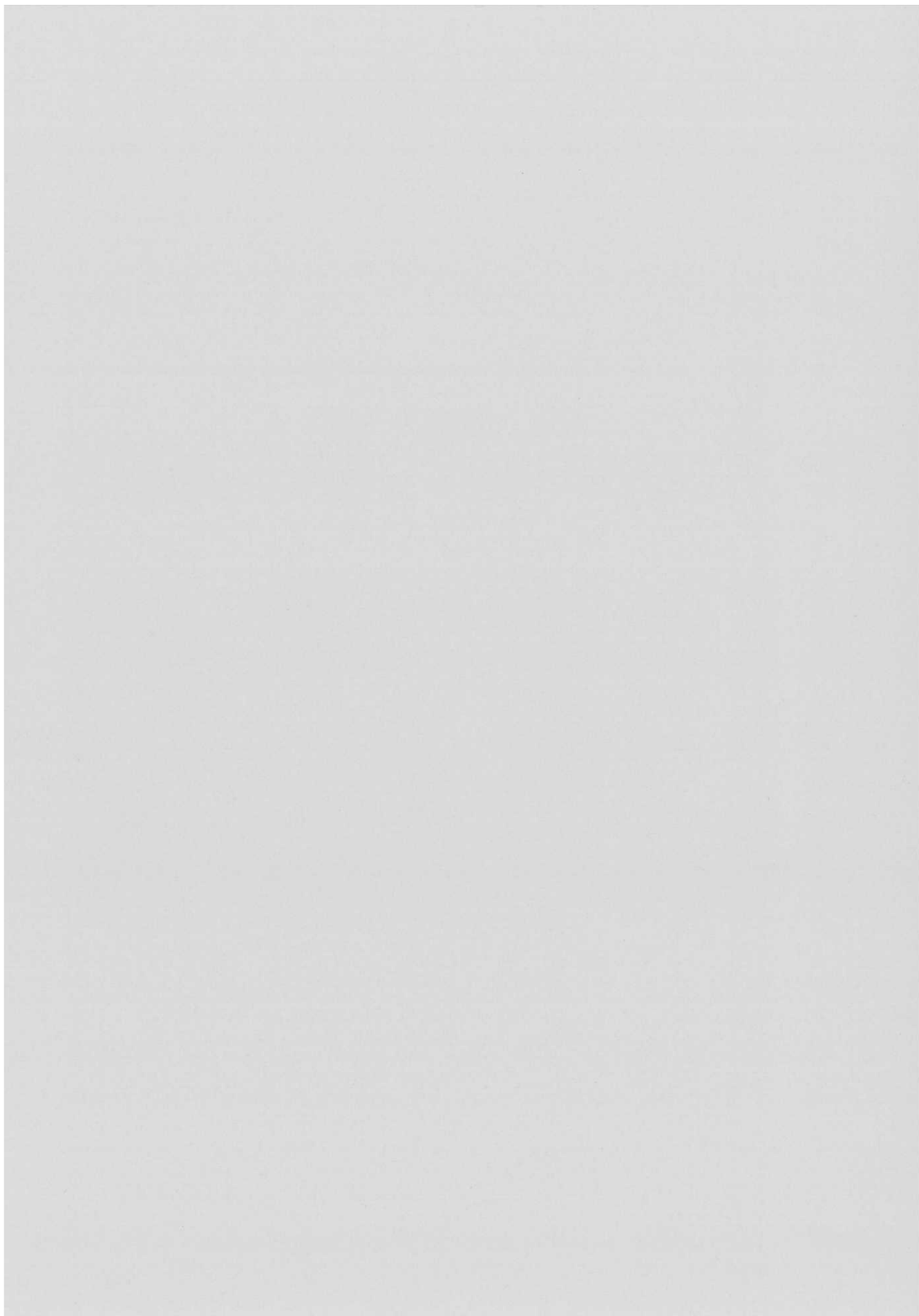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60, 60)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30, 30)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10점, 10점)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전략의 이행실적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20점, 20점)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전략의 향후계획의 적정성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향후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향후 투자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규모의 실현가능성 ·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 15)	조직, 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5점, 5점)	· 조직 및 인력운영 실적 · 교육훈련 실적의 우수성
		조직, 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10점, 10점)	· 향후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정성 · 교육훈련 계획의 우수성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 15)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실적의 적정성(5점, 5점)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10점, 10점)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향후계획의 적정성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30,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 계획 (30,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10점, 5점)	· 방송장비산업 및 연구개발 이행실적의 적정성 · 방송인력 양성에 대한 이행 실적 · 유료방송 시장활성화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실적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에 대한 이행실적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20점, 15점)	· 방송장비산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적정성 · 유료방송 시장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향후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에 대한 향후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 40)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도 (20, 40)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5점, 15점)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점, 25점)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승인 당시 방송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70)	승인시 부여한 준수 사항 이행여부 (70, 70)	승인조건 이행실적의 적정성 (70점, 70점)	· 승인 당시 부과한 조건 이행의 적정성 - 방송법 준수여부 -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여부 - 승인장 교부 후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여부 - 승인장 교부 후 1년 이내 방송 개시 여부 · 사업계획서 성실히 이행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취득여부 · 사업계획 주요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여부 · 경영감시기구, 경영진, 조직·인력 구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에 대한 자료제출 등 필요사항 협조여부 · 종편PP의 경우 국내제작 전체방송시간의 65% 이상, 외주제작 전체 방송시간의 35%,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편성 여부 · 보도PP의 경우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제공받지 않았는지 여부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 신청법인이 부여받은 시정명령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반영된 시정명령은 제외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 시정명령은 방송법 위반에 한정 · 중편PP 감점기준 - 시정명령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 유효기간단축, 업무정지 및 광고중단 : -10점 · 보도PP 감점기준 - 시정명령 : -5.6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7점 5천만원 초과 -10.5점 - 유효기간단축, 업무정지 및 광고중단 : -14점

4. 심사평가 결과



2014년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 점		평가지표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량	273.35	279.82	271.30	277.63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280		131.19	141.38	127.21	188.12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실적 및 계획)	140	180	비계량	87.70	97.61	88.70	121.88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45	60	비계량	26.01	30.65	25.88	39.33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95	120	비계량	61.69	66.96	62.82	82.55
2-2. 시청자 권익보호(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47.52	51.44	47.84	57.79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25	비계량	16.06	17.71	16.29	17.58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55	비계량	31.46	33.73	31.55	40.21
2-3.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14.47	14.33	14.67	14.75
2-3-1.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	20	비계량	14.47	14.33	14.67	14.75
2-4. 관련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량	-18.50	-22.00	-24.00	-6.30
2-4-1.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감점	계량	-18.50	-22.00	-24.00	-6.3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30		103.18	119.59	108.00	93.86
3-1. 기획·편성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42.09	49.51	44.75	44.33
3-1-1.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	25	20	비계량	12.94	15.88	13.71	13.83
3-1-2.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	40	비계량	29.15	33.63	31.04	30.50
3-2. 공급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33.01	38.50	35.46	24.59
3-2-1. 프로그램 공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10	비계량	12.30	14.75	13.38	6.92
3-2-2. 프로그램 공급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25	비계량	20.71	23.75	22.08	17.67
3-3. 제작·협력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28.08	31.58	27.79	24.94
3-3-1.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	15	10	비계량	10.06	11.48	9.98	6.92
3-3-2.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25	25	비계량	18.02	20.10	17.81	18.02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50		47.28	48.96	47.20	28.81
4-1.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37.00	37.00	37.00	22.50
4-1-1. 부채비율	25	15	계량	25.00	25.00	25.00	15.00
4-1-2. 자기자본순이익율	20	15	계량	6.00	6.00	6.00	4.50
4-1-3. 총자산증가율	20	10	계량	6.00	6.00	6.00	3.00
4-2.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10.28	11.96	10.20	6.31
4-2-1.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	5	5	비계량	3.05	3.75	3.01	2.98
4-2-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5	비계량	7.23	8.21	7.19	3.33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60		45.03	47.65	45.40	42.50
5-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30	30	비계량	22.43	23.54	22.21	21.29
5-1-1.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6.71	7.46	6.38	6.96
5-1-2.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15.72	16.08	15.83	14.33
5-2.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10.72	11.94	11.00	9.85
5-2-1. 조직·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	5	5	비계량	3.19	3.73	3.29	3.02
5-2-2. 조직·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7.53	8.21	7.71	6.83
5-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11.88	12.17	12.19	11.36
5-3-1.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	5	5	비계량	3.81	3.63	3.90	3.65
5-3-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8.07	8.54	8.29	7.71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20		21.79	23.29	21.87	13.98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21.79	23.29	21.87	13.98
6-1-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	10	5	비계량	7.04	7.46	6.90	3.21
6-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20	15	비계량	14.75	15.83	14.97	10.77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40		15.26	15.86	15.39	29.25
7-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20	40	비계량	15.26	15.86	15.39	29.25
7-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5	15	비계량	3.58	3.74	3.60	10.75
7-1-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25	비계량	11.68	12.12	11.79	18.50
8. 승인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70	비계량	51.65	54.46	52.29	51.21
9. 시청명령의 횟수와 시청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량	-4.00	-4.00	-4.00	-5.60
합 계				684.73	727.01	684.66	719.76

■ (주)조선방송(TV조선)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평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계량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73.35
2.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 등		230		119.75	145.50	172.50	128.50	128.75	115.50	45.50	144.50	143.50	129.25	152.50	148.50	43.50	198.50	131.19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실적 및 계획)		140	비계량	76.75	100.00	120.60	89.00	88.75	72.50	34.00	91.00	100.50	70.25	108.00	99.00	36.00	135.00	87.7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45	비계량	29.25	29.00	35.10	22.50	27.00	20.25	11.00	29.25	29.25	22.50	32.00	25.00	11.00	42.00	26.01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95	비계량	47.50	71.00	85.50	66.50	61.75	52.25	23.00	61.75	71.25	47.75	76.00	74.00	25.00	93.00	61.69
2-2. 시청자 권리보호(실적 및 계획)		70	비계량	47.50	50.00	54.80	40.00	45.50	46.50	19.00	56.00	46.50	60.50	49.00	57.00	17.00	62.00	47.52
2-2-1.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3.75	16.00	19.25	17.50	16.25	15.00	7.00	20.00	15.00	20.00	18.00	17.00	6.00	18.00	16.06
2-2-2.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비계량	33.75	34.00	35.55	22.50	29.25	31.50	12.00	36.00	31.50	40.50	31.00	40.00	11.00	44.00	31.46
2-3. 선정법인의 적정성		20	비계량	14.00	14.00	15.60	18.00	13.00	15.00	11.00	16.00	15.00	17.00	14.00	11.00	9.00	20.00	14.47
2-3-1. 선정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	비계량	14.00	14.00	15.60	18.00	13.00	15.00	11.00	16.00	15.00	17.00	14.00	11.00	9.00	20.00	14.47
2-4. 관련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2-4-1.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160		87.00	129.00	131.85	94.00	96.50	100.00	56.00	132.00	119.00	74.50	127.00	98.00	42.00	138.00	103.18
3-1. 기획·편성의 적정성(실적 및 계획)		25	비계량	32.50	55.00	55.05	35.00	43.00	32.50	19.00	59.50	52.50	30.25	50.00	41.00	21.00	61.00	42.09
3-1-1.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0.00	14.00	19.50	12.50	13.75	10.00	4.00	21.25	16.50	10.00	13.00	11.00	6.00	19.00	12.94
3-1-2.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비계량	22.50	41.00	35.55	22.50	29.25	22.50	15.00	38.25	36.00	20.25	37.00	30.00	15.00	42.00	29.15
3-2. 수급의 적정성(실적 및 계획)		50	비계량	30.50	38.00	42.60	31.00	29.00	35.00	23.00	36.50	36.50	25.00	42.00	31.00	12.00	43.00	33.01
3-2-1.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4.00	11.00	15.60	10.00	11.00	14.00	8.00	14.00	14.00	10.00	19.00	11.00	5.00	15.00	12.30
3-2-2.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6.50	27.00	27.00	21.00	18.00	21.00	15.00	22.50	22.50	15.00	23.00	20.00	7.00	28.00	20.71
3-3. 제작·협력의 적정성(실적 및 계획)		40	비계량	24.00	36.00	34.20	28.00	24.50	32.50	14.00	36.00	30.00	19.25	35.00	26.00	9.00	34.00	28.08
3-3-1.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00	13.00	11.70	10.50	8.25	11.25	7.00	13.50	11.25	6.75	13.00	8.00	3.00	11.00	10.06
3-3-2.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정성		25	비계량	15.00	23.00	22.50	17.50	16.25	21.25	7.00	22.50	18.75	12.50	22.00	18.00	6.00	23.00	18.02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47.00	50.00	48.70	47.50	46.25	45.25	42.00	47.50	50.50	49.00	48.25	45.00	44.00	48.00	47.28
4-1. 재정적 능력		65	계량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1-1. 부채비율		25	계량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4-1-2. 자기자본순이익률		20	계량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1-3. 총자산증가율		20	계량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2. 기술적 능력		15	비계량	10.00	13.00	11.70	10.50	9.25	8.25	5.00	10.50	13.50	12.00	11.25	8.00	7.00	11.00	10.28
4-2-1.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00	4.00	3.90	3.50	2.75	2.25	2.00	3.50	4.50	4.00	3.75	1.00	2.00	2.00	3.05
4-2-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9.00	7.80	7.00	6.50	6.00	3.00	7.00	9.00	8.00	7.50	7.00	5.00	9.00	7.23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40.25	55.00	53.20	42.00	37.50	39.00	27.00	50.50	50.25	50.50	52.00	42.00	33.00	51.00	45.03
5-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30	비계량	20.50	27.00	26.60	19.00	18.50	19.00	13.00	27.00	24.50	25.00	26.00	20.00	19.00	25.00	22.43
5-1-1.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50	8.00	9.00	5.00	5.50	6.00	3.00	9.00	7.50	8.00	8.00	6.00	4.00	7.00	6.71
5-1-2.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	비계량	14.00	19.00	17.60	14.00	13.00	13.00	10.00	18.00	17.00	17.00	18.00	14.00	15.00	18.00	15.72
5-2.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0.50	14.00	13.30	9.50	9.25	10.00	6.00	10.75	12.75	12.00	13.00	9.00	7.00	12.00	10.72
5-2-1. 조직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50	4.00	4.50	2.50	2.75	3.00	2.00	3.75	3.75	4.00	4.00	2.00	2.00	3.00	3.19
5-2-2. 조직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10.00	8.80	7.00	6.50	7.00	4.00	7.00	9.00	8.00	9.00	7.00	5.00	9.00	7.53
5-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9.25	14.00	13.30	13.50	9.75	10.00	8.00	12.75	13.00	13.50	13.00	13.00	7.00	14.00	11.88
5-3-1.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25	4.00	4.50	4.50	3.25	3.00	3.00	4.25	4.00	4.50	4.00	4.00	2.00	4.00	3.81
5-3-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10.00	8.80	9.00	6.50	7.00	5.00	8.50	9.00	9.00	9.00	9.00	5.00	10.00	8.07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17.00	28.00	27.00	21.00	17.50	16.50	16.00	25.50	23.50	25.00	26.00	18.00	16.00	27.00	21.79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비계량	17.00	28.00	27.00	21.00	17.50	16.50	16.00	25.50	23.50	25.00	26.00	18.00	16.00	27.00	21.79
6-1-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9.00	9.00	7.00	5.50	4.50	5.00	8.50	7.50	8.00	8.00	5.00	5.00	9.00	7.04
6-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0.00	19.00	18.00	14.00	12.00	12.00	11.00	17.00	16.00	17.00	18.00	13.00	11.00	18.00	14.75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15.00	18.00	17.60	18.00	13.75	12.50	9.00	17.00	17.75	15.00	17.00	12.00	10.00	18.00	15.26
7-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20	비계량	15.00	18.00	17.60	18.00	13.75	12.50	9.00	17.00	17.75	15.00	17.00	12.00	10.00	18.00	15.26
7-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3.75	4.00	4.40	4.50	4.00	2.75	2.00	4.25	4.00	3.75	4.00	2.00	2.00	4.00	3.58
7-1-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11.25	14.00	13.20	13.50	9.75	9.75	7.00	12.75	13.75	11.25	13.00	10.00	8.00	14.00	11.68
8. 승인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비계량	35.00	63.00	55.30	35.00	45.50	56.00	42.00	56.00	63.00	63.00	66.00	40.00	24.00	66.00	51.65
9. 시청명령의 횟수와 시청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 계			630.35	757.85	775.50	655.35	655.10	654.10	506.85	742.35	736.85	675.60	758.10	672.85	481.85	815.85	684.73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4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위원은 無 順 임

■ (주)제이티비씨(JTBC)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평균
1. 방송기획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제량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79.82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 등		230		112.00	187.00	164.65	126.00	143.00	126.25	139.75	138.00	141.00	133.50	153.00	148.50	140.50	148.00	141.38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실적 및 계획)		140	비계량	84.00	135.00	110.60	90.00	98.00	84.00	98.00	96.00	91.00	95.75	111.00	105.00	84.00	105.00	97.61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45	비계량	24.00	42.00	35.55	29.00	31.50	27.00	31.50	29.00	29.25	29.25	35.00	33.75	27.00	30.00	30.65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95	비계량	60.00	93.00	75.05	61.00	66.50	57.00	66.50	67.00	61.75	66.50	76.00	71.25	57.00	75.00	66.96
2-2. 시청자 권리보호(실적 및 계획)		70	비계량	42.00	60.00	58.05	45.00	49.00	51.25	47.75	50.00	56.00	46.75	51.00	52.50	60.50	54.00	51.44
2-2-1.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5.00	18.00	22.50	16.00	17.50	17.50	16.25	18.00	20.00	17.50	17.00	18.75	20.00	16.00	17.71
2-2-2. 시청자 권리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비계량	27.00	42.00	35.55	29.00	31.50	33.75	31.50	32.00	36.00	29.25	34.00	33.75	40.50	38.00	33.73
2-3. 신정보인의 적정성		20	비계량	8.00	14.00	18.00	13.00	18.00	13.00	16.00	14.00	16.00	13.00	13.00	13.00	18.00	11.00	14.33
2-3-1. 신정보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	비계량	8.00	14.00	18.00	13.00	18.00	13.00	16.00	14.00	16.00	13.00	13.00	13.00	18.00	11.00	14.33
2-4. 관련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4-1.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160		102.00	137.00	144.00	96.00	94.00	113.50	123.25	132.00	144.00	114.00	128.00	126.75	109.25	113.00	119.59
3-1. 기획·편성의 적정성(실적 및 계획)		25	비계량	38.00	60.00	63.00	41.00	35.00	36.00	48.75	57.00	63.00	50.25	49.00	55.75	44.25	50.00	49.51
3-1-1.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1.00	19.00	22.50	12.00	12.50	11.25	15.00	16.00	22.50	18.75	18.00	17.50	15.00	13.00	15.88
3-1-2.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비계량	27.00	41.00	40.50	29.00	22.50	24.75	33.75	41.00	40.50	31.50	31.00	38.25	29.25	37.00	33.63
3-2. 수급의 적정성(실적 및 계획)		50	비계량	37.00	43.00	45.00	29.00	31.00	45.00	42.50	40.00	45.00	35.50	43.00	39.00	28.00	33.00	38.50
3-2-1.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6.00	15.00	18.00	10.00	10.00	18.00	17.00	13.00	18.00	16.00	18.00	15.00	10.00	11.00	14.75
3-2-2.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21.00	28.00	27.00	19.00	21.00	27.00	25.50	27.00	27.00	19.50	25.00	24.00	18.00	22.00	23.75
3-3. 제작·협력의 적정성(실적 및 계획)		40	비계량	27.00	34.00	36.00	26.00	28.00	32.50	32.00	35.00	36.00	28.25	36.00	32.00	28.00	30.00	31.58
3-3-1.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10.00	11.00	13.50	9.00	10.50	11.25	12.00	12.00	13.50	12.00	13.00	12.00	10.50	10.00	11.48
3-3-2.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정성		25	비계량	17.00	23.00	22.50	17.00	17.50	21.25	20.00	23.00	22.50	16.25	23.00	20.00	17.50	20.00	20.1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47.00	48.00	50.50	47.00	47.50	45.50	50.50	52.00	51.25	46.25	50.50	50.25	51.25	47.00	48.96
4-1. 재정적 능력		65	계량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1-1. 부채비율		25	계량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4-1-2. 자기자본순이익율		20	계량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1-3. 총자산증가율		20	계량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2. 기술적 능력		15	비계량	10.00	11.00	13.50	10.00	10.50	8.50	13.50	15.00	14.25	9.25	13.50	13.25	14.25	10.00	11.96
4-2-1.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00	2.00	4.50	3.00	3.50	2.50	4.50	5.00	4.75	2.75	4.50	4.25	4.75	3.00	3.75
4-2-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9.00	9.00	7.00	7.00	6.00	9.00	10.00	9.50	6.50	9.00	9.00	9.50	7.00	8.21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39.00	50.00	54.00	38.00	42.00	43.50	46.50	57.00	55.50	40.50	52.00	48.75	53.25	45.00	47.65
5-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30	비계량	20.00	24.00	27.00	19.00	19.00	21.00	24.00	28.00	27.00	21.00	26.00	23.50	26.00	23.00	23.54
5-1-1.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7.00	9.00	5.00	5.00	7.00	8.00	9.00	9.00	7.00	8.00	7.50	8.00	7.00	7.46
5-1-2.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	비계량	13.00	17.00	18.00	14.00	14.00	14.00	16.00	19.00	18.00	14.00	18.00	16.00	18.00	16.00	16.08
5-2.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0.00	12.00	13.50	10.00	9.50	11.00	12.00	15.00	14.25	9.75	13.00	12.50	13.75	11.00	11.94
5-2-1. 조직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00	3.00	4.50	3.00	2.50	3.00	4.50	5.00	4.75	3.25	4.00	4.00	4.75	3.00	3.73
5-2-2. 조직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9.00	9.00	7.00	7.00	8.00	7.50	10.00	9.50	6.50	9.00	8.50	9.00	8.00	8.21
5-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9.00	14.00	13.50	9.00	13.50	11.50	10.50	14.00	14.25	9.75	13.00	12.75	13.50	11.00	12.17
5-3-1.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2.00	4.00	4.50	2.00	4.50	3.50	3.50	4.00	4.75	3.25	4.00	3.75	4.50	2.00	3.63
5-3-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10.00	9.00	7.00	9.00	8.00	7.00	10.00	9.50	6.50	9.00	9.00	9.00	9.00	8.54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18.00	27.00	27.00	21.00	21.00	18.00	15.00	29.00	28.50	18.50	27.00	26.00	28.00	20.00	23.29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비계량	18.00	27.00	27.00	21.00	21.00	18.00	15.00	29.00	28.50	18.50	27.00	26.00	28.00	20.00	23.29
6-1-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9.00	9.00	7.00	7.00	6.00	5.00	9.00	9.50	5.50	9.00	8.00	9.00	5.00	7.46
6-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2.00	18.00	18.00	14.00	14.00	12.00	10.00	20.00	19.00	13.00	18.00	18.00	19.00	15.00	15.83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10.00	18.00	15.60	12.00	18.00	14.25	15.00	19.00	19.00	13.75	17.00	17.50	16.00	15.00	15.86
7-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20	비계량	10.00	18.00	15.60	12.00	18.00	14.25	15.00	19.00	19.00	13.75	17.00	17.50	16.00	15.00	15.86
7-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2.00	4.00	3.90	2.00	4.50	3.75	3.75	4.00	4.75	4.00	4.00	4.00	4.00	3.00	3.74
7-1-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8.00	14.00	11.70	10.00	13.50	10.50	11.25	15.00	14.25	9.75	13.00	13.50	12.00	12.00	12.12
8. 승인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비계량	42.00	66.00	63.00	35.00	49.00	56.00	45.50	60.00	63.00	49.00	67.00	63.00	56.00	41.00	54.46
9. 시청명령의 횟수와 시청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 계			645.82	808.82	794.57	650.82	690.32	692.82	711.32	762.82	778.07	691.32	770.32	756.57	721.07	704.82	727.01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4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위원은 無順임

■ (위체 널에이(체널A)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평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계량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134.50	193.00	38.00	150.00	151.00	115.75	128.75	135.00	117.25	122.25	132.00	161.90	138.00	37.00	127.21
2-1.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실적 및 계획)		140	비계량	93.50	135.00	36.00	100.00	110.00	70.25	95.75	91.00	79.50	88.75	89.00	110.60	100.00	31.00	88.70
2-1-1.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45	비계량	27.00	42.00	11.00	25.00	30.00	22.50	29.25	29.25	22.50	27.00	22.50	35.55	29.00	8.00	25.88
2-1-2.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95	비계량	66.50	93.00	25.00	75.00	80.00	47.75	66.50	61.75	57.00	61.75	66.50	75.05	71.00	23.00	62.82
2-2. 시청자 권익보호(실적 및 계획)		70	비계량	49.00	62.00	17.00	60.00	50.00	53.50	43.00	56.00	47.75	45.50	49.00	55.30	48.00	19.00	47.84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7.50	18.00	6.00	18.00	18.00	17.50	13.75	20.00	16.25	16.25	17.50	19.75	16.00	7.00	16.29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비계량	31.50	44.00	11.00	42.00	32.00	36.00	29.25	36.00	31.50	29.25	31.50	35.55	32.00	12.00	31.55
2-3. 시청법인의 적정성		20	비계량	16.00	20.00	9.00	14.00	15.00	16.00	14.00	12.00	14.00	12.00	18.00	20.00	14.00	11.00	14.67
2-3-1. 시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	비계량	16.00	20.00	9.00	14.00	15.00	16.00	14.00	12.00	14.00	12.00	18.00	20.00	14.00	11.00	14.67
2-4. 관련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1.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15.50	139.00	42.00	111.00	124.00	72.50	120.50	136.00	113.25	100.00	88.00	133.80	132.00	56.00	108.00
3-1. 기획·편성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25	비계량	44.00	62.00	21.00	46.00	48.00	30.25	54.75	63.00	39.50	43.00	35.00	60.00	56.00	19.00	44.75
3-1-1.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2.50	19.00	6.00	13.00	12.00	10.00	18.75	22.50	12.50	13.75	12.50	19.50	15.00	4.00	13.71
3-1-2.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	비계량	31.50	43.00	15.00	33.00	36.00	20.25	36.00	40.50	27.00	29.25	22.50	40.50	41.00	15.00	31.04
3-2. 수급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50	비계량	41.00	43.00	12.00	35.00	42.00	25.00	36.50	45.00	42.50	31.00	25.00	42.60	40.00	23.00	35.46
3-2-1.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7.00	15.00	5.00	13.00	15.00	10.00	14.00	18.00	17.00	13.00	10.00	15.60	13.00	8.00	13.38
3-2-2.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비계량	24.00	28.00	7.00	22.00	27.00	15.00	22.50	27.00	25.50	18.00	15.00	27.00	27.00	15.00	22.08
3-3. 제작·협력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40	비계량	30.50	34.00	9.00	30.00	34.00	17.25	29.25	28.00	31.25	26.00	28.00	31.20	36.00	14.00	27.79
3-3-1.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10.50	11.00	3.00	10.00	11.00	6.00	10.50	10.50	11.25	9.75	10.50	11.70	12.00	7.00	9.98
3-3-2.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25	비계량	20.00	23.00	6.00	20.00	23.00	11.25	18.75	17.50	20.00	16.25	17.50	19.50	24.00	7.00	17.81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46.00	48.00	44.00	46.00	48.25	49.00	47.75	48.75	44.25	46.25	49.50	48.70	50.00	42.00	47.20
4-1. 재정적 능력		65	계량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1-1. 부채비율		25	계량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4-1-2. 자기자본순이익율		20	계량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1-3. 총자산증가율		20	계량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2. 기술적 능력		15	비계량	9.00	11.00	7.00	9.00	11.25	12.00	10.75	11.75	7.25	9.25	12.50	11.70	13.00	5.00	10.20
4-2-1.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00	2.00	2.00	2.00	3.75	4.00	3.25	3.75	2.25	2.75	3.50	3.90	4.00	2.00	3.01
4-2-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9.00	5.00	7.00	7.50	8.00	7.50	8.00	5.00	6.50	9.00	7.80	9.00	3.00	7.19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49.50	51.00	33.00	44.00	51.00	50.50	44.75	48.25	41.00	38.00	42.00	53.25	54.00	24.00	45.40
5-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30	비계량	24.00	25.00	19.00	20.00	26.00	25.00	22.00	24.00	19.00	18.50	19.00	27.00	26.00	10.00	22.21
5-1-1.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8.00	7.00	4.00	4.00	7.00	8.00	7.00	7.00	6.00	5.50	5.00	9.00	8.00	3.00	6.38
5-1-2.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	비계량	16.00	18.00	15.00	16.00	19.00	17.00	15.00	17.00	13.00	13.00	14.00	18.00	18.00	7.00	15.83
5-2.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3.50	12.00	7.00	11.00	12.00	12.00	11.00	10.75	10.50	9.75	9.50	13.50	13.00	6.00	11.00
5-2-1. 조직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4.50	3.00	2.00	3.00	3.00	4.00	3.50	3.25	3.50	3.25	2.50	4.50	4.00	2.00	3.29
5-2-2. 조직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9.00	9.00	5.00	8.00	9.00	8.00	7.50	7.50	7.00	6.50	7.00	9.00	9.00	4.00	7.71
5-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2.00	14.00	7.00	13.00	13.00	13.50	11.75	13.50	11.50	9.75	13.50	12.75	15.00	8.00	12.19
5-3-1.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4.00	4.00	2.00	4.00	4.00	4.50	3.75	4.50	3.50	3.25	4.50	3.75	5.00	3.00	3.90
5-3-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8.00	10.00	5.00	9.00	9.00	9.00	8.00	9.00	8.00	6.50	9.00	9.00	10.00	5.00	8.29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18.00	27.00	16.00	19.00	26.00	27.50	25.50	23.50	14.00	19.50	21.00	23.40	28.00	16.00	21.87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비계량	18.00	27.00	16.00	19.00	26.00	27.50	25.50	23.50	14.00	19.50	21.00	23.40	28.00	16.00	21.87
6-1-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9.00	5.00	5.00	8.00	8.50	7.50	7.50	4.00	6.50	7.00	7.80	9.00	5.00	6.90
6-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2.00	18.00	11.00	14.00	18.00	19.00	18.00	16.00	10.00	13.00	14.00	15.60	19.00	11.00	14.97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15.25	18.00	10.00	15.00	17.00	16.00	16.50	16.75	11.75	13.75	18.00	17.25	18.00	9.00	15.39
7-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20	비계량	15.25	18.00	10.00	15.00	17.00	16.00	16.50	16.75	11.75	13.75	18.00	17.25	18.00	9.00	15.39
7-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4.00	4.00	2.00	3.00	4.00	4.00	3.75	4.00	2.75	4.00	4.50	3.75	4.00	2.00	3.60
7-1-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11.25	14.00	8.00	12.00	13.00	12.00	12.75	12.75	9.00	9.75	13.50	13.50	14.00	7.00	11.79
8. 승인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비계량	42.00	66.00	24.00	40.00	66.00	63.00	63.00	52.50	45.50	52.50	35.00	63.00	63.00	42.00	52.29
9. 시장명령의 횟수와 시장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 계			688.05	809.30	474.30	692.30	750.55	661.55	714.05	728.05	654.30	659.55	652.80	768.60	750.30	493.30	684.66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4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위원은 無順임

■ (주)연합뉴스티브이(뉴스Y)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평점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계량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77.63
2.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80		182.70	228.30	157.70	169.70	166.20	219.70	191.95	234.70	213.70	188.70	120.70	152.70	164.95	232.70	188.12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실적 및 계획)		140	비계량	120.00	147.60	90.00	111.00	105.00	150.00	126.00	153.00	147.00	124.00	85.00	90.00	108.00	153.00	121.88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비계량	36.00	54.00	30.00	33.00	33.00	48.00	42.00	51.00	48.00	40.00	30.00	30.00	36.00	45.00	39.33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120	비계량	84.00	93.60	60.00	78.00	72.00	102.00	84.00	102.00	99.00	84.00	55.00	60.00	72.00	108.00	82.55
2-2. 시청자 권익보호(실적 및 계획)		70	비계량	55.00	72.00	56.00	52.00	53.50	60.00	57.25	72.00	59.00	57.00	36.00	55.00	49.25	68.00	57.79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6.00	22.50	17.50	16.25	15.00	18.75	18.75	22.50	18.00	17.00	12.00	17.00	16.25	18.00	17.58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55	비계량	39.00	49.50	38.50	35.75	38.50	41.25	38.50	49.50	41.00	40.00	24.00	38.00	33.00	50.00	40.21
2-3. 신장법인의 적정성		20	비계량	14.00	15.00	18.00	13.00	14.00	16.00	15.00	16.00	14.00	14.00	6.00	14.00	14.00	18.00	14.75
2-3-1. 신장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	비계량	14.00	15.00	18.00	13.00	14.00	16.00	15.00	16.00	14.00	14.00	6.00	14.00	14.00	18.00	14.75
2-4. 관련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2-4-1.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30		111.00	108.50	72.00	84.50	90.50	108.00	93.75	106.50	93.00	89.00	88.00	79.00	75.25	110.00	93.86
3-1. 기획,편성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25	비계량	50.00	51.00	30.00	39.00	38.00	51.00	44.00	54.00	45.00	44.00	42.00	38.00	39.00	51.00	44.33
3-1-1.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6.00	15.00	10.00	13.00	12.00	17.00	14.00	18.00	15.00	14.00	14.00	10.00	11.00	15.00	13.83
3-1-2.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0	비계량	34.00	36.00	20.00	26.00	26.00	34.00	30.00	36.00	30.00	30.00	28.00	28.00	28.00	36.00	30.50
3-2. 수급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50	비계량	32.00	29.75	17.50	22.75	26.25	28.50	25.75	28.00	24.00	22.00	23.00	17.00	17.50	30.00	24.59
3-2-1.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10	비계량	9.00	8.50	5.00	6.50	7.50	8.50	7.00	8.00	7.00	6.00	7.00	5.00	5.00	7.00	6.92
3-2-2.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		25	비계량	23.00	21.25	12.50	16.25	18.75	20.00	18.75	20.00	17.00	16.00	16.00	12.00	12.50	23.00	17.67
3-3. 제작,협력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40	비계량	29.00	27.75	24.50	22.75	26.25	28.50	24.00	24.50	24.00	23.00	23.00	24.00	18.75	29.00	24.94
3-3-1.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		10	비계량	8.00	9.00	7.00	6.50	7.50	8.50	6.50	7.00	6.00	5.00	7.00	7.00	5.00	7.00	6.92
3-3-2.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25	비계량	21.00	18.75	17.50	16.25	18.75	20.00	17.50	17.50	18.00	18.00	16.00	17.00	13.75	22.00	18.02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		30.50	30.00	29.50	28.50	27.25	28.50	28.50	30.00	30.00	27.50	27.50	28.50	28.50	28.50	28.81
4-1. 재정적 능력		65	계량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4-1-1. 부채비율		15	계량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4-1-2. 자기자본순이익율		15	계량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1-3. 총자산증가율		10	계량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2. 기술적 능력		15	비계량	8.00	7.50	7.00	6.00	4.75	6.00	6.00	7.50	7.50	5.00	5.00	6.00	6.00	6.00	6.31
4-2-1.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4.00	3.75	3.50	2.75	2.25	3.00	2.75	3.50	3.75	2.00	2.50	3.00	3.00	2.00	2.98
4-2-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비계량	4.00	3.75	3.50	3.25	2.50	3.00	3.25	4.00	3.75	3.00	2.50	3.00	3.00	4.0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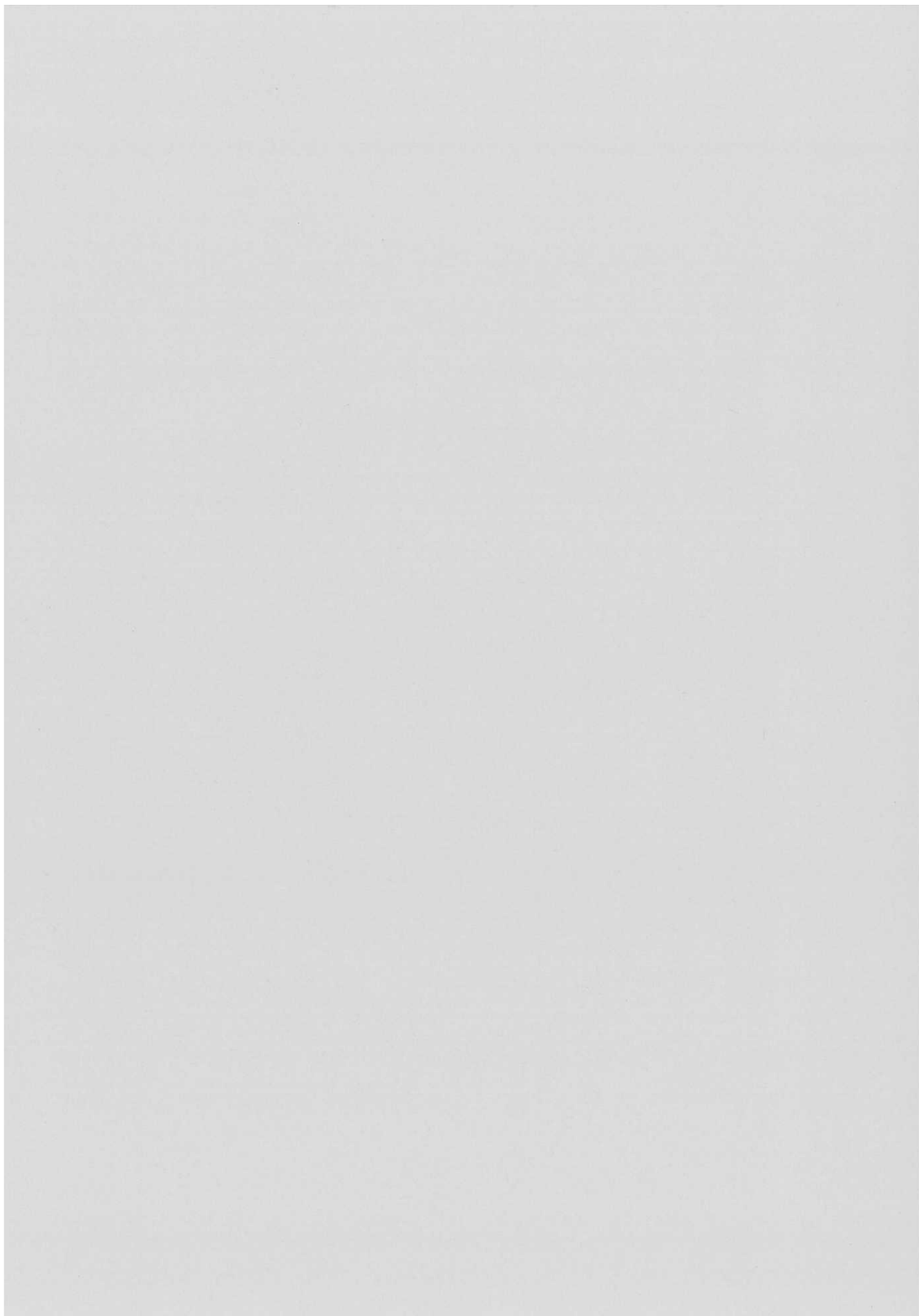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50.00	51.75	42.00	40.50	37.50	43.50	46.75	46.00	40.00	39.00	36.00	41.00	32.50	45.00	42.50
5-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30	비계량	25.00	27.00	19.00	21.00	18.50	24.00	23.50	21.00	20.00	22.00	18.00	21.00	15.50	22.00	21.29
5-1-1.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8.00	9.00	5.00	7.00	6.50	8.00	7.50	7.00	6.00	7.00	7.00	7.00	5.50	7.00	6.96
5-1-2.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	비계량	17.00	18.00	14.00	14.00	12.00	16.00	16.00	14.00	14.00	15.00	11.00	14.00	10.00	15.00	14.33
5-2.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2.00	11.25	9.50	9.75	7.25	9.75	11.75	11.50	8.00	7.00	11.00	10.00	8.50	10.00	9.85
5-2-1. 조직, 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4.00	3.75	2.50	3.25	2.25	3.25	3.75	3.50	2.00	2.00	2.00	3.50	3.00	3.00	3.02
5-2-2. 조직, 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8.00	7.50	7.00	6.50	5.00	6.50	8.00	8.00	6.00	5.00	7.50	7.00	6.00	7.00	6.83
5-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3.00	13.50	13.50	9.75	11.75	9.75	11.50	13.50	12.00	10.00	7.00	10.00	8.50	13.00	11.36
5-3-1.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4.00	4.50	4.50	3.25	3.75	3.25	3.50	4.50	4.00	3.00	2.00	3.00	3.00	4.00	3.65
5-3-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9.00	9.00	9.00	6.50	8.00	6.50	8.00	9.00	8.00	7.00	5.00	7.00	5.50	9.00	7.71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20		16.00	18.00	14.00	12.50	9.00	15.00	16.50	18.25	12.00	12.00	10.00	13.00	10.00	18.00	13.98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비계량	16.00	18.00	14.00	12.50	9.00	15.00	16.50	18.25	12.00	12.00	10.00	13.00	10.00	18.00	13.98
6-1-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4.00	4.50	3.50	2.75	2.25	3.75	3.75	4.00	3.00	1.00	2.00	3.00	2.50	4.00	3.21
6-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2.00	13.50	10.50	9.75	6.75	11.25	12.75	14.25	9.00	11.00	8.00	10.00	7.50	14.00	10.77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0		34.00	30.00	36.00	26.00	20.00	28.00	31.25	32.50	32.00	31.00	21.00	27.00	22.75	36.00	29.25
7-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20	비계량	34.00	30.00	36.00	26.00	20.00	28.00	31.25	32.50	32.00	31.00	21.00	27.00	22.75	36.00	29.25
7-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15	비계량	13.00	11.25	13.50	9.75	7.50	10.50	11.25	11.25	12.00	10.00	8.00	10.00	9.00	13.00	10.75
7-1-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25	비계량	21.00	18.75	22.50	16.25	12.50	17.50	20.00	21.25	20.00	21.00	13.00	17.00	13.75	23.00	18.50
8. 승인대상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비계량	60.00	52.50	35.00	49.00	42.00	49.00	63.00	63.00	58.00	45.00	49.00	49.00	35.00	66.00	51.21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합 계			756.23	791.08	658.23	682.73	664.48	763.73	743.73	802.98	750.73	704.23	624.23	662.23	640.98	808.23	719.76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4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위원은 無順임

5. 심사의견서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총 평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시청자 권익보호 부문의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유보함. 점수의 배점은 높지 않으나 방송법은 제3조(시청자의 권익 보호)에서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를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평가에 있어서 시청자가 제시하는 의견과 사업자의 계획 및 이행정도를 반영했음
- 제시된 시청자 의견을 종합하면 종편 3사 모두가 공정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재방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음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방안은 승인 당시 종편으로서의 역할로 다양한 교양, 오락 등을 함께 편성하기로 하였으나 JTBC를 제외하고 모두 보도에 편중되어 시청자에게 다양한 선택권 확보와는 거리가 먼 방송이 이행되었음. 원래 종편의 의도를 반드시 지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익적 책임을 하는 방송이 되어야 함
- 재방비율 역시 승인 시 계획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전체 방송시장의 왜곡을 가져와 방송발전의 저해가 되었음
- 시청자 참여가 다양한 위원회 등으로 자정시스템이 있으나 걸러지지 않고 편향방송, 막말방송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람

- 전체적으로 종합편성채널 모두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들이 아닌 실질적인 제어 장치들과 불공정보도에 대한 심의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기구 즉 장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향임(내부 비판보다는 운영의 보조 기구로 전락) 따라서 시스템 설치 못지 않게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함 예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와 관련한 자체 심의 기구에서 언급을 찾기 힘들
- 자체 심의기구를 통한 다양한 사전, 사후 검증제도가 있음에도 시청자 불만접수 건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수가 상당수가 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규제 및 수습에 초점이 잡혀있는 바 그 결과는 천편 일률적 방송으로 호를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제작자를 포함한 방송인력의 자질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자체교육, 연수, 파견 및 외부 기관에서의 정기적 필요연수제도 운용 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제도나 기구 설치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전략 수립과 최고 경영층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중편PP)

< 지난 3년간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

- 프로그램 공급·제작에 있어서는 당초 제시한 의욕적인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높은 재방비율,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지나친 편성 등은 종합편성 출범 이후 기대되었던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는 매우 거리가 먼 상태임. 이에 대한 종편채널사업자들에 대한 강한 조건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국내제작편성비율, 외주제작편성비율, 외주제작주시청 시간대 편성비율은 잘 준수한 편임
-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소외계층의 지원방안 등은 어느 정도 수행함
- 금번 심의대상 4사 공히 콘텐츠 투자 및 첨단 방송기술 연구개발 부문에서 취약한 실적을 나타냄
- 재승인 심사 대상 종편 채널 3개사 모두 최초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했던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분야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계획,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등 방송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초기 사업승인계획서에서 과도하게 높은 성과목표를 제시해, 지난 3년간의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광고수입과 프로그램 수급계획은 당초 기대하기 힘든 목표로 보임. 이러한 문제점은 재승인 계획서의 향후 5년 계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좀 더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향후 조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요구됨

< 향후 5년간 계획 >

-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 이행실적에 대비하였는데 이는 계획만으로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까지의 실행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향후 5년간 계획이 실적과 비교하여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아주 적음 방송사들의 개선의지가 희박해 보임
- 개국 승인 당시 제출된 계획 및 지금까지 이행실적 대비 향후 계획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보이지 않음
- ‘국산장비 도입실적’은 국산 방송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계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는데, 금번 심의대상인 4사는 국산 장비 도입 실적에 방송장비 및 솔루션 외에 시설설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래의 취지를 위하여 향후에는 보다 엄격한 방송장비 계상 및 증빙자료 첨부가 요구됨
- 개국 초기 방송을 위한 기본 설비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는 등 일부 그 사유가 인정되나 금번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향후 계획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가 요구됨
- 재승인신청서에 제시된 향후 사업계획은 이전에 비해 타당성이 높아졌으나 국내외 경제 상황과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액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재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사 미디어랩 등 자회사 설립이 많이 예정되고 있음.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관리 등 실적관리의 범위를 이들 자회사의 업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는 연결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재승인 신청서상 사업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등 Contingency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마련 또한 요구됨(중편PP)

< 기타 사항 >

- 감점사유인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재승인 심사기간 중에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법령위반 건을 당해 재승인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차년도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이는 비록 이러한 감점유예가 방송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으나 사전에 이를 포함시켜 심사결과를 내린 후 인용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또 확정되지 않은 다툼이 있고 확정되지 않은 법령위반(행정처분)을 반영하여 얻는 이익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기 때문임
 - 특히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건을 차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송을 통한 평가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재승인 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 단, 평가서에 이러한 사항은 명시하기로 함

- KI시청자 평가에 따르면 JTBC의 경우 흥미성, 창의성이 높았으며 채널A는 다양성, 공익성 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TV조선은 모든 항목에서 낮은 경향을 보임
- 종편 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편의 비정상적 광고 영업의 우려 예상, 비정상적 영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 대책과 발생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사업자의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신청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여 각 재승인 의견임
- 방송시장의 경쟁을 통한 발전과 언론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종편 및 보도PP의 승인은 장기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서에 분류가 적절치 않은 자료(예로서 노약자, 다문화, 외국인 프로그램에 TBC 31년만의 귀환, TBC 추억여행 등, 다른 방송 사업자도 대동소이)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
- 종편의 정상적인 역할을 위하여는 모두가 염려하는 대로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임
- 시청률 제고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등 방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균형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시청자층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종편PP)
- Globalization을 포함한 종편·지상파 등과 차별화된 전략 실행을 통해 보도전문 채널로서의 조기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보도PP)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주)조선방송

< 지난 3년간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

- 계획 대비 ○%대의 투자실적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균형 있는 방송을 편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사 기획 편성의 목표를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실현'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편성이 당초 계획인 ○%를 훨씬 상회하는 ○%, ○%, ○%(각 ○○○○, ○○○○, ○○○○년)를 보이고 있으며 재방비율도 동기간 당초 목표인 ○%대를 상회하는 ○%~○%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장비 국산화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계획 대비 각각 ○% 및 ○%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임
 - 방송발전을 위한 콘텐츠 투자액이 ○원으로 계획에 비하여 ○%로 미흡한 것과 방송투자 실적도 ○%로 미흡한 것이 앞으로의 종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 의심스러움
- ※ CEO의 5년간 투자계획 지키겠다는 것이 조건으로 확보되어야 함
- 최초 승인 당시 제시했던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함.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했던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계획대로 현실성있게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승인신청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의 운영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공적 약속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방송시설 투자 계획 대비 실적이 0%에 그쳐 계획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연도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급실적이 저조하여 (0~0% 수준) 종편의 출범 목적 중 하나였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방송 초기 시청률 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음
- 초기 장비투자가 계획 대비 현저히 낮음
- 프로그램 수급의 문제가 보임.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예측의 실패가 보수적 경영을 선택하게 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급 계획의 차질을 초래했다고 봄

< 향후 5년간 계획 >

- 최근 시청률 상승에 따라 경영수지 개선이 예상되는 바,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종합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람
- 승인조건 불이행의 사유가 예측하지 못한 방송시장 상황에 있다면 재승인 계획서에서는 구체화되어 제시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과 구체성이 타사에 비하여 떨어져 낮은 평가를 받았음

- 특히 종합편성채널로서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보도로만 일관하면서 특별히 보도비율이 높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후의 편성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방송기술이나 인력운영의 면에서 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투자지나 계획도 낮고 앞으로의 계획이 모든 면에서 타사에 비해 소극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했음
- 재방비율이 높은 것은 향후 5년 계획에서도 ○○○○년(○%) 높게 잡고 있어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음
- 광고매출은 높게 잡고 있어 비정상적인 광고판매가 우려되며 현 종편시장에서 계획된대로의 투자는 어렵다고 하는 자세가 시청자를 위한 방송발전을 위한 방송사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의심스러움
- 지난 3년간의 광고매출실적에 비추어, 향후 5년간 예측 광고매출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도리어 높은 광고매출액 목표성취를 위해 불공정광고 판매 행위(프로그램 연계 판매와 같은)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방송발전을 위한 기술 및 콘텐츠 투자 계획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투자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의 비현실성이 우려됨. 특히 종합편성채널로서 편성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콘텐츠투자계획이 소극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제출된 사업계획이 현실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한 사업자임

- 개국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방비율이 높고 향후 5년 간의 재방비율 관련 계획도 0%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방송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이 미흡함
-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확대, 특히 오락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재방비율 감축과 보도 프로그램 비중을 감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나 수익성 개선(광고매출 확대 등)이 전제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기획의 적절성은 지켜져야 함
- 스마트 생태 및 VoD서비스의 도입 및 미래 계획이 취약한 수준으로 보임
- 시청률 제고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투자확대가 필요하나 과거 투자실적이 저조하여 재승인 신청서상 투자계획으로 목표하는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시됨

<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 >

- ‘시사고양이 특화된 종합편성채널’을 표방하였지만, 실제 데일리 띠편성 프로그램들을 보면 <신율의 시사열차>, <돌아온 저격수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등 주로 시사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이라고 보기보다 ‘보도’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은 보도전문채널 성격이 강함. 종합편성채널의 성격에 맞추어 균형있는 프로그램 장르 편성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보도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면서 초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외주제작비율 〇~〇% 수준을 크게 밀돌고 있음. 그러므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보도비율은 줄이고, 편성다원화를 통해 외주 제작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통위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에서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편성계획에서도 보도 프로그램이 편성비율이 높아 종합편성채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됨
- 보도프로그램의 비율이 과다하고 재방송의 비율이 높음
- 원래 계획에 비해 보도 프로그램이 과도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사업 계획상 수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임. 따라서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한 책임이 있고 보도프로그램 비율을 당분간 더 가져가겠다는 계획은 올바르지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보도 전문 채널로 전향해야함. 더구나 장기 계획에는 보도를 줄인다고 하지만 이를 위한 투자 수익 증대 계획은 없거나 현실성이 없음
- 종편에 걸맞지 않게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방비율도 사업 계획에 비해 매우 높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바, 신청서상의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 정립과 실천의지가 강하게 요구됨
- 보도프로그램에 편중될 수 밖에 없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콘텐츠 투자금액이 매우 미흡하여 양질의 품격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는데, 경영진의 적극적 투자의지와 재원유치 노력이 필요함

- 편성비율에 있어 시사·보도 프로그램 비중이 높고 채널 이미지상 50대 이상 장년층이 주시청자군으로 평가되는 바, 편성의 다양화를 통한 시청층 다변화 노력이 요구됨

<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관련 >

- 보수성향의 출연자가 많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사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아 편성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 및 관련 심의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방송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팩트체커제, 공정보도가이드라인 등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말방송, 인신공격 등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음
- 편성위원회가 간부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제작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방송의 공정성 확립 의지가 약함
- 공정성 강화를 위한 편성위원회 회의가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회의내용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회의 성격이라기보다 프로그램 운영상의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임
-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선 기자나 PD 등 현장을 이해하는 실무라인이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팩트체커 시스템을 뉴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도 적용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도프로그램을 하는 종합편성 방송으로서 내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는 내부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인데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있음

< 기타 사항 >

- 조선방송 기술직 직원 수가 너무 적어서 안정적 서비스와 미래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이 어려워 보임
-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에 기여하고 방송 시장의 규모를 확장한 점은 종편 방송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
- 방송의 품위를 좀 더 높이고 시청자의 불만 사항을 낮추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수적인 경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자규모가 적어 어느 정도 투자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전문기술직 임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 최소한의 전문기술직 확보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프로그램 경쟁력, 투자, 수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종편의 유지에 대한 방송 생태계 차원의 우려 있음

- 공익 기여에서 대주주 관련 기관을 통한 행위가 있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인 문제 있음.
- 각종 공적 프로그램 분류에서 상관성이 적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음
- 보수적 대외 이미지로 인하여 연령별 시청자층의 보편화가 미약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요구됨.
- 자체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높은 것은 자체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14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주)제이티비씨

< 지난 3년간 사업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 5년간 계획 >

- 콘텐츠, 네트워크, 저장/편집, 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동 분류대로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첨단 방송기술 R&D도 관련 7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UHD 방송기술 개발 등 향후의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권고함
- 통합사회센터의 활용을 통해 여러 가지 공익적 목표(○○○○○○, ○○○○○)를 오락을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계획 등이 구체화 되었으면 하며, 그 외의 이제까지의 문화적 기여 실적은 미비함
- 직원 고용면이나 기술분야도 예산과 함께 적극 추진하였으며 경영의 건전성과 종편의 역할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계획하고 있음
-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사후 자체심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심의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 ○○○ ○○○ 사업 진출 계획은 본 재승인 심사와 관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타사에 비해 최초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면에서 성실한 실천의지가 지난 3년간 현출된 점은 높이 평가함
- ○○○○년까지 ‘○○○○○○○○○○ ○○, ○○○○○○ ○○ ○○, ○○○ ○○ ○○’ 등으로 시청자 권익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음. 필히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해야하며 자체시스템의 가동이 투명해지고 특히 「뉴스 품질 평가제도」에 외부인과 시청자의 참여로 폭넓은 평가가 추진되기를 바람

< 콘텐츠 투자 >

- 신생 방송사로서 근간의 어려운 환경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하여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인정됨
-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나 종편 중 가장 많은 콘텐츠 투자실적은 조기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JTBC의 공격적인 투자계획이 경영이나 회계의 측면에서는 감점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투자를 통한 방송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싶음
- 다양한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제작하여 시청자의 선호도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면 JTBC가 계획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 생각됨
- 콘텐츠에 대한 투자의지가 타 종편 방송사에 비해 높은 편이고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제작 계획이 구체적임

- 프로그램 제작에 우선 순위를 두어 방송제작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청자의 선택에 도움을 준 점은 종편 방송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
- 종편의 선순환을 위해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외적 환경 변화 가능성과 무관하게 투자계획이 현실화 되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 등 방송환경의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 방송분야 간 균형편성 >

-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장르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종편 사업자의 취지에 맞도록 조절하여 균형을 이루고 지나치게 높은 재방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함
- 유사한 맥락에서 보도 프로그램 일색으로 편성을 채우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방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방송 차별화와 방송철학면에서는 높이 평가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재방률 수치와 시청자 의견을 감안하였음
- 계획 대비 오락 프로그램 편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보도, 교양, 오락을 균형적으로 방송하여 종편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의도가 좋았음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오락프로그램에 집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시청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투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방송편성에서도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보도나 교양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높아 종합편성채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기획·편성 측면에서 보도·교양·오락 등 균형있는 편성 노력이 요구되며, 지나치게 높은 재방비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편성을 애초 계획과 종합편성채널 다운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으나 오락 프로그램 과다로 인한 상업성이 두드러질 위험 있음
- 교양, 오락 등 비교적 다양한 편성요소간 균형을 가하도록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도프로그램의 비율이 낮은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 재방비율 >

- 재방비율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함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방송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 JTBC가 당초 제시한 계획안에는 ○○○○년까지 재방비율을 ○%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 → ○% → ○%로 점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가 제작원가가 높은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편성 기조가 계속된다면 ○○○○년 ○%까지 낮추기로 한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재방비율이 ○○○○년 기준으로 ○%를 차지해 지나치게 높음.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재방송의 비율이 높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제작비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경영상의 선택으로 볼 여지가 있음. 초기 시장 예측이 실패한 점도 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이행에 장애가 된 것으로 보임
- Prime Time 대 본방비율이 높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방비율이 종편 중 최상위인 점은 향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함

<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 >

- JTBC가 다른 종합편성채널들과 달리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의욕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됨. 그렇지만 초기 자본 만큼의 증자 혹은 재투자를 통한 사업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모델이 불투명할 경우에 대비해, 좀더 치밀하고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확대해가는 균형있는 방송사업 경영이 요구됨
-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재무구조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본금 규모 대비 한해 투자규모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됨
- 예정된 유상증자가 무산되는 경우, 별도의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향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점은 희망적이지만 시장 상황이 계속 여의치 않을 경우 경영상태의 악화는 우려할 점임
- 사업초기 누적 적자로 자본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회사가 계획한 자본금의 〇%에 달하는 유상증자의 성공여부가 자본 확충 및 투자재원 확보의 관건임

- 또한 재승인 신청서상 사업계획에 의하면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상증자 성공 이후라도 사업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자본 확충 방안 등 Plan B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 소유 경영 분리 >

- JTBC는 사업계획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방송과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렇지만 현재 JTBC 공동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사실상 소유주인 중앙일보 ○○○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경영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사업계획서상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스스로 강조하였는 바, 외형적,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대주주로(실질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 공동 대표에 올라 있는 것은 소유·경영 분리를 강조하는 JTBC의 방침에 위배되고 외부 신뢰를 잃을 소지 있음 조치가 필요함

< 기타 사항 >

- 보도 담당 사장에게 인사권과 편집권을 보장한 것은 타당한 방향으로 생각됨
- 방송심의제재와 관련하여 사전, 사후 검증제도보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외부 의무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규제 일변도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임

- 시청자 불만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고무적이나 심의 제재가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바, 시청자 민원을 해결하고 심의제재 건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초기 보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달리 보도 공정성을 갖추려 노력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한 세심한 주의 필요함

2014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주)채널에이

< 지난 3년간 사업계획 이행실적 >

- 공익적 프로그램은 ○○○○~○○○○년 ○분→○분→○분이 편성되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면을 보였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실적도 ○○○○년 ○원, ○○○○년 ○원 및 ○○○○년 ○원이 집행되어 체계적이지 않은 운영 현황을 보여줌
- 시청자의 선택을 넓히고 방송 시장의 규모를 확장한 점은 종편 방송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
- 지난 3년간 콘텐츠 투자실적이 계획대비 매우 저조함. ○○○○년 목표하는 시청률 ○% 달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도·시사 중심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투자를 통한 편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채널A의 방송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다른 종편들과 차별화된 특성화나 투자의욕이 보이지 않아 보임. 때문에 지나치게 시사보도에 의존하는 현상유지전략이 아닌 차별화된 채널특성화와 브랜드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5년간 계획 >

- UHD 제작환경 구축 등 첨단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이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되었으나 2011~2013년 실적이 계획대비 미비한 점과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 등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편성의 다양성과 재방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콘텐츠 포맷을 통한 공익성 강화와 같은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 감안하여 평가함
-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한 면도 있지만 재방 비율 축소와 공익적 편성 증가 계획이 향후 5년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당초계획서에 의하면, 광고매출액이 ○○○○년에 ○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에 ○원, ○○○○년에는 ○원의 광고매출을 전망하고 있어 현실적인 목표치라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사후 검증에 대한 강화가 필요해 보임
- 개국 이후 재방비율이 지난 2년 간 ○%와 ○%를 기록해 재방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그런데 재방비율을 앞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의심됨
- 신규 인허가시 수립하였던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함(대표자)
- 향후 5개년 사업계획에서 투자 예정금액은 신규 인허가 때와는 달리 대표자의 신중한 판단이 감안된 최적의 투자규모로 평가하였는 바, 재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년 손익분기점 달성 목표는 과거실적과 현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낙관적으로 보이는 바, 사업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광고매출 확대가 사업계획 달성의 핵심이므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시청률 제고 외에도 과거 안 좋은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특화된 광고 영업기법의 개발이 요구됨
-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매출 증대 등의 대책이 불투명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있음
- 방송 기술 측면에서 실적도 부족하지만 대책(계획)이 추상적으로 나열되고 있음
- 개선계획에도 불구하고 ‘막말방송’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의지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건전한 종편 환경 확립을 위해 공적 책임 내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구체화됨을 조건으로 하여 재승인(조건부 재승인) 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함

<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 >

- 시사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아 편성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방비율도 높아 향후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콘텐츠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보도프로그램의 비율이 과다하고 재방송의 비율이 높아서 프로그램 수급의 문제가 보임. 낮은 시청률과 광고시장의 협소함이 보수적 경영을 선택하게 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희생하게 했다고 봄
- 보도프로그램에 재미를 도입하여 시청자의 흥미와 선택의 다양성에 기여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청자의 불만이 존재하는 만큼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보도프로그램의 과다한 편성으로 인해 외주제작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여 방송산업에 기여한 바를 인정 할 수 없음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
- 방통위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도 분야 편성이 너무 높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자료의 향후 편성계획에도 보도 분야 편성이 오락이나 교양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종합편성채널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심의제재 사항 개선 노력 >

-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하여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자체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운영의 효과나 스스로의 자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됨
- 채널A의 심의체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부족함 출연자의 자질부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기조 유지'를 고수하려 한다는 평가를 내림

- 방송심의 규제 등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시청자위원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 등이 제대로 작동되어 사전에 걸러지거나 사후 처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종편으로서의 자격이 될 것임
- 채널A의 '시사보도프로그램'들이 적지 않은 심의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내부자정시스템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 프로그램은 ○건의 심의제재를 받고 있고, 그 내용도 대부분 '사회자와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임. 출연자 사전 검증, 사회자 제재 등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생방송 프로그램을 교체하거나 프로그램 폐지 등이 강구되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내부자율규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프로그램에서 공정성 논란 및 관련 심의제재 사실이 있는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송심의 제재건수가 종편 채널 중 가장 많은 편이고 방송심의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출연자 관련 심의제재가 많았고 사전검증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바, 철저한 사전검증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체 자정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됨
- 보도 공정성 위반에 대한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이지만 내부 위기 의식이 많지 않아 보임. 잘 짜여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서 외부 지적을 전달하거나 자체적으로 걸러

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동일한 프로그램이 0번 가량 지적받는 동안 관련 진행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 미래에 대한 신뢰 어려움

- 시사, 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인신공격과 막말 등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를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떨어뜨림. 차후 계획에도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음

< 시청자위원회 및 권리보호소위원회 >

- 시청자의 의견 역시 대표가 매일 검토하고 있으나 모든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대표가 참석하는 타사와는 달리 시청자 의견 전달경로도 제한적임
- 특히 많은 비판적 여론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국 이래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동일인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이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낮은 점수를 부여함
-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인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개국 이후 지금까지 채널A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맡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시청자 권리보호위원회의 권리침해구제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신속한 권리구제 효과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청자 권리보호 소위원회 설치계획은 고무적인데 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가칭)의 임무와 권한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칫 명목상의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시청자 보호’이념에 걸맞게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사항 >

- 프로그램 편성, 기술개발 등 운영의 여러 면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임
- 채널A의 기술직 직원 수가 너무 적어 안정된 서비스 유지와 향후 미래 기술 도입이 원활할 것 같지 않음
-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실적에 건축환경 공사가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최대주주가 공동대표로 있어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관련 쟁점이 주된 사항일 것이므로 법원 판례 등 객관적 자료가 토대로 된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014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연합뉴스티브이

< 지난 3년간 사업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 5년간 계획 >

- 장애인 방송 등은 법정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이의 증대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노약자·다문화 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과 각종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공익 캠페인 제작 및 편성을 확대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이 요구됨
- 미미한 첨단 방송기술 연구개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향후 5개년 간의 연구개발 계획의 실현에 의구심을 갖게 되며, 제안한 연구개발의 성실한 수행이 요구됨
- 고품질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며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중요한데 직원교육 투자가 낮음
- 방송기술 확보부문 역시 투자가 적을뿐만 아니라 계획도 부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함
- 사회적 소수자,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부문에서는 높게 평가함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시간이 개국 후 줄어들고 있어 방송의 공익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낮음

- 외주제작 비율이 낮아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여도가 미비함
- 지역문화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계획이 미흡함
-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이 대체로 양호함

<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

-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공정보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함
- 공정한 보도를 위한 공정보도위원회,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 보도채널로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 반드시 구성되어야 함
- 보도채널의 핵심은 공정성에 있음. 때문에 뉴스를 다루는 방송매체의 경우 보도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TV는 초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공정보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음. 특히 그 이유가 노조가 구성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보도의 공정성 확보 노력이 부족함

<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 뉴스제공 금지 >

-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인 뉴스 제공을 받지 말아야 함

- 개국 승인조건 중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뉴스를 제공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바, 기자 간 인적관계에 의한 사전정보 공유, 사내망의 공동이용, 송고 전 기사 공유 등은 승인 조건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협업모델의 객관적 준칙을 정립하여 그 한계를 명백히 정립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 보도채널로서 건실하게 운영되는 점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연합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점은 우려됨
- 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방송 플랫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송고된 기사공유 등 불공정 내부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연합뉴스티브이는 대주주인 연합뉴스와 관계설정을 명확히 해야함.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 특혜를 안 받았다고 했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지만 연합뉴스 인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차별적 특혜임. 연합뉴스와 관계를 공식화해서 연합뉴스 방송플랫폼으로 가는 사회적 인정을 받든지 연합뉴스와 관계 정리를 위해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든지 선택이 이루어져야 함

< 차별화된 보도 형식 >

-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을 승인시부터 약속하였으나 별다른 차별화된 형식이 없어 기존 방송사의 보도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함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없다면 시청자에게 다양한 뉴스방송의 권익 보다는 전체 광고시장의 혼란으로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함.

- 연합뉴스TV가 초기 사업계획서에서 ‘차별화된 포맷의 보도형식’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실제 지난 3년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차별화된 포맷을 발견할 수 없음. 도리어 연합뉴스에서 제작된 뉴스 중 TV플랫폼을 통해 재활용하는 역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때문에 모기업이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됨
- 보도 전문채널로서 차별화된 포맷의 보도 형식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차별화된 포맷의 보도형식을 찾아보기 어려움
- 종편과 보도프로그램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제작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보도 프로그램의 개발, Globalization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면 보도전문채널로서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합뉴스티브이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음. 계획서에는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콘텐츠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기존 보도채널과 차이가 없다는 점도 약점임
- 뉴스Y가 연합뉴스의 TV플랫폼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됨

<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 >

- 종편의 자사 미디어랩 도입 등 광고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과 개국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초기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금액이 0%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연합뉴스티브이가 재승인 기간 중 목표로 하는 수익을 적절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 재정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초기 자본규모가 보도전문채널임을 고려하더라도 작아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구조의 어려움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했다고 평가함

< 인력구조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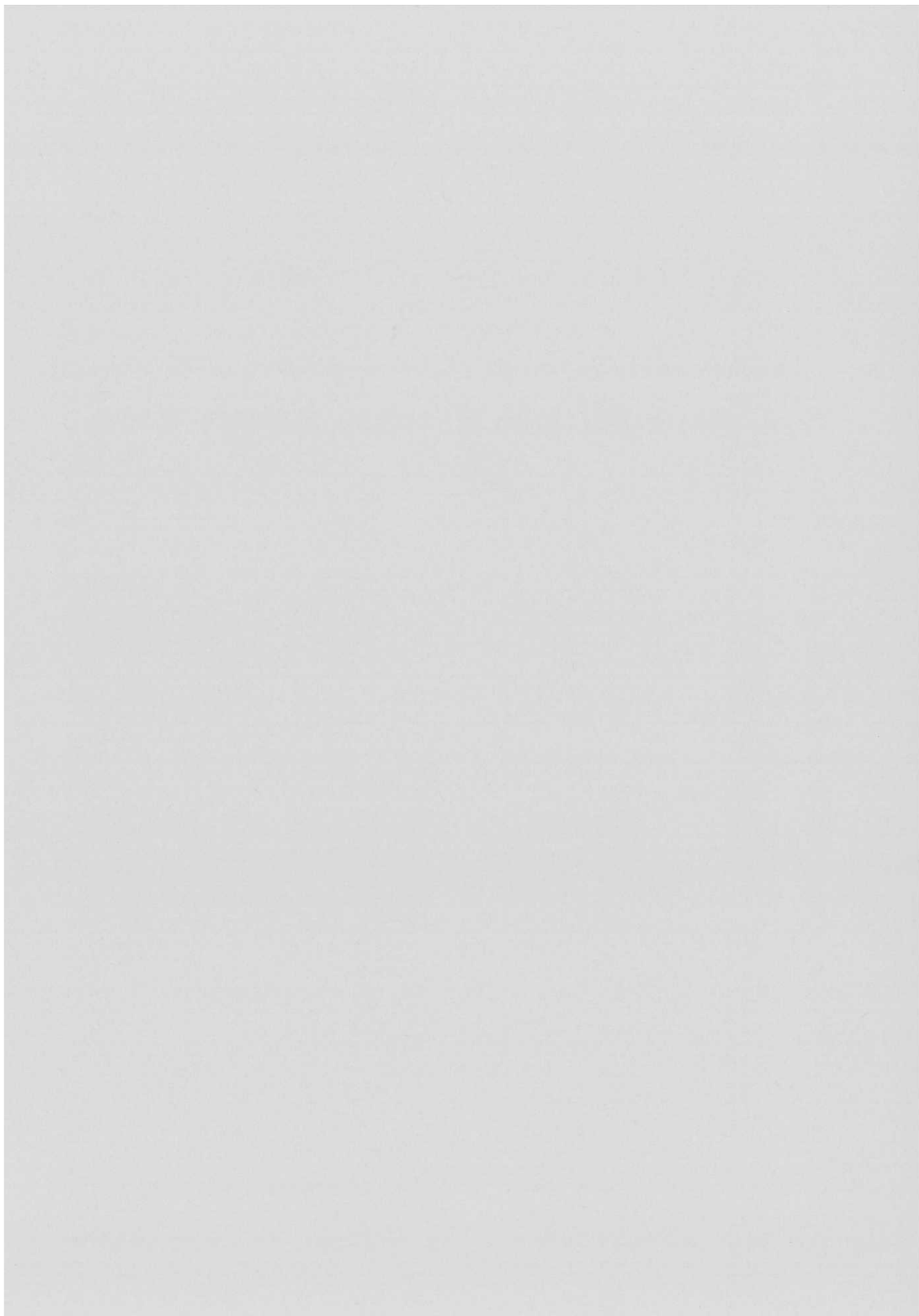
- 정규직보다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방송제공이 위협받을 수 있음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연구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연구직이 전무하며, 비정규직 비중이 타 방송 대비 높은 바, 청년 실업문제 해소 기여 차원에서의 채용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타 사항 >

-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실적에서 환경 설비는 제외되어야 하며, IT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위성수신 시스템이 기타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신규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청자에게 방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방송시장을 확장하는 승인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임
- 적자는 지속되었으나 2013년 당초 계획대비 매출을 초과달성한 것은 신생 보도PP로서의 자생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사료됨
- 국산장비 도입을 위한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실제 방송환경 시설비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해 향후 방송장비 국산화 항목을 정확히 계상할 것이 요구됨

6.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4. 3. 10. (월) 15: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14. 3. 10.(월) 11: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 출석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류춘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이상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차지훈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류길주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배기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11시 00분 개최】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소개는 이어서 하겠는데 우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항인 것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4박 5일 동안은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불편하신 것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그 범위 내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 심사위원장

- 상견례를 갖춰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에서 ○○년 근무하다가 ○○○○년에 정년퇴임을 하고 그 이후로 ○~○년 동안 ○○○○ ○○○○○○○○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할 일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작업의 결과가 어떤 결말에 이르든 간에 분명히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은 힘들겠지만 가능한 한 즐기면서 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사지원반에서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님 15명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최선언

○ 심사위원장

- 그러면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표지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목차가 있고, 개요와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계획은 <붙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주요일정입니다. 오늘이 1일차가 되었고, 금요일이 5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고, 세부심사 기준을 오후에 의결하게 됩니다. 내일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들 의견청취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3일차에는 4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일차에는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평가표와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5일차에는 심사의견서 의결하고, 건의사항 논의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세부일정은 뒤에 <붙임>으로 있으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에 의결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해서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안건은 심사위원장이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별 평가결과와 심사의견은 개별 심사위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익명으로 백서 등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추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하게 됩니다. 의견청취 계획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청취대상자는 재승인 대상 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3인이 기본적으로 참석하고, 실무자 4인 이내로 배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청취일시는 심사위원회 3일차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의견청취 순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지난 3월 7일 사전 추첨을 통해 1, 2, 3, 4번 순서로 순서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처리입니다. 의견청취 결과는 별도 배점 없이 심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는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회의를 기재한 것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별도 회의는 심사위원장께서 주관해서 진행을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제1차 회의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의가 되겠고, 서류는 이미 제출하셨고 적재함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의결사항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은 지금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고, 추후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 지난해 9월 5일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세부 심사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기준 관련해서 보고드리고 오후에 세부 심사기준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에서 심사자료로 시청자의견 접수 결과 등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으로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의견청취 준비를 하는 회의를 진행할 텐데 보고사항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기본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고, 사업자별로 사업계획서를 보게 될 텐데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자료를 리스트업해서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사항이 있고, 3페이지 보시면 회의 의견청취 결과가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입니다. 심사 4일차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점심식사 후에 13시부터입니다. 의결사항으로 기존의 방송평가나 계량평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마지막 날 심사위원회 의견서를 의결해서 방통위에 제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 보고사항

가. 재승인 심사기본계획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가>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입니다.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입니다.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개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승인유효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MBN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과사항입니다. ‘11년 3월~5월까지 「종편·보도PP 승인」을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13년 7월 17일에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을 구성했고, ‘13년 8월 5일 심사기준 초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3년 8월 9일에 종편·보도PP 의견수렴을 연구반에서 했으며, ‘13년 8월 23일에 최종 심사기준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9월 2일에 연구반의 최종 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방통위에서 개최했습니다. 3페이지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입니다. <가> 종편·보

도PP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입니다.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합니다. '10년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는 ①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였습니다.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서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으며, '10년 종편·보도PP 최종 선정 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입니다.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 채널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첫 번째, 구성 원칙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합니다. 구성방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합니다. 전문분야는 밑에 <표>를 보시면 심사위원장, 방송 분야 3인, 법률 분야 3인, 경영·회계 분야 3인, 기술 분야 2인, 시청자·소비자 단체 분야 3인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3> 위촉기준입니다.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는 미리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다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본방향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업무입니다.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 논의·결정,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평가,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가 있는 사항, 그리고 청취대상자는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취일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가 되겠고, 결과처리하는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평가원칙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계량평가 사항은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점을 부여합니다. 비계량 평가사항은 다른 항목평가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로 평

점을 환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평점 환산비율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합니다.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기준입니다. <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에 있는 9개 심사사항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입니다. 방송법 제17조에 규정된 방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입니다. 다음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방송법 제10조와 방송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권익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법령 위반사례를 두었습니다. 관련법령 위반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이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만 감점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그리고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대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조직 인력운영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두었습니다.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과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

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입니다. 방송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 배점이 되겠습니다. 재승인 총점 1,000점 중에 350점을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중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는 중편과 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표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3페이지에 보면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재승인 여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합니다.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사항 중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점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11월에 기간 만료되는 피심사 대상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이 위원회에서 합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다시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 그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직 심사기준이나 사업계획서를 못 본 상태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성급할 수 있는데 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쯤 당구장 표시 첫 번째에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항목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심사 대상자 중에 보도PP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제 질문은 금번의 심사대상인 보도PP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심사항목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밑에 당구장 표시가 적용되는지...

○ 심사지원반

- 기존 지상과 재허가, 기존 보도PP인데 이번에 하는 보도PP는 그 위에 저희가 한 것처럼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킵니다.

○ 심사위원

- 위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과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종편·보도PP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 심사위원

- 한 가지 더 있는데 7페이지 보시면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항목을 두 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신청법인의 적정성은 보통 신규사업자 허가나 승인할 때 원래 실체가 없는 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주주를 가지고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승인의 경우 일단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허가나 재승인할 때에는 그 항목을 따로 구성주주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구성주주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일부 반영하지만 그것을 기타주주까지 확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최대주주의 적정성까지만 포함해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 심사위원

-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질문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현재 항목별 배점의 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조절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 심사지원반

- 재승인 기본계획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방통위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입니다. 밑에 세부심사기준, 방법, 평가, 그 배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점까지 의결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그러면 계량·비계량은 변화가 불가능합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불가능합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은 픽스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이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못 바꿨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바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접수하겠습니다.

2. 재승인 세부 심사기준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나> '재승인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보고이유입니다.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 심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붙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 심사기준(안)입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사항, 즉 대분류와 중분류 심사항목, 다음 소분류로는 세부심사항목으로 분류되며, 재승인 심사기본계획에서는 앞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분류인 심사사항과 중분류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그에 따른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평가 방법입니다. 기본원칙입니다.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평가 시에는 시정명령, 법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해서 계량 항목과의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유형입니다.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계량평가 방법입니다.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법령위반 사례 및 시정명령 위반사례 등의 심사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비계량평가입니다. 계량평가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등급 구간 내에서 적절한 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그에 따른 평점 환산비율을 표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점수 계산 방법입니다. 재승인 대상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여부 결정은 아까 기본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항목별 심사입니다. 세부 심사항목 구성입니다. 첫 번째, 구성방안입니다. 심사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심사항목의 내용을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단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각 심사항목을 과거 실적과 미래 계획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 계획으로 구분해서 세부 심사항목을 구성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제1안>은 실적 계획으로 구분하는 방안입니다. 사례는 2013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때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제2안>은 심사항목을 단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입니다. 사례는 2010년도 종편·보도PP 승인심사 때 했던 방안입니다. 일부 심사항목의 경우 실적,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 실적만 반영합니다. 기본계획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승인 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재정적 능력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 방안입니다. 배점 비중은 방송평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서 이미 과거 실적만 평가하기 때문에 이들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 계획의 비중을 1:2로 부여합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실적만 평가토록 한 4개 항목의 배점을 환산하면 종편PP는 505점, 보도PP는 480점입니다. 합계 총점 중 실적과 계획의 배점 비중은 종편PP의 경우 실적은 675점, 계획은 325점이고, 보도PP의 경우 실적이 650점, 계획이 350점이 되도록 구성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지상파 재허가 시에는 실적은 675점, 계획은 325점입니다. 심사항목에 따라서 실적과 계획의 배점 비중(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는 모두 실적 350점으로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실현은 실적 45점, 계획 95점 이렇게 약 1:2의 비율로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입니다. 첫 번째, 신청법인의 적정성입니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권익보호이고, 심사항목은 신청법인의 적정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심사항목까지 정했고,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세부 심사항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 심사항목으로는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을 표시했습니다. 대상법인은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신청법인 및 최대주주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방법입니다.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사업추진 의지,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최대주주의 재정적 능력, 최대주주의 방송, 통신, 신문, 뉴스통신, 콘텐츠, 저작권, 노무, 공정거래, 금융, 조세 및 중소기업 분야 등에서 법 위반사항 등을 심사평가 방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입니다. 심사사항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모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입니다. 배점은 종편·보도PP 모두 350점입니다. 방송평가 점수는 승인유효기간인 2011년, 2012년, 2013년도 중에서 2012년도 방송평가 점수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종편PP의 2012년도 방송평가 점수 700점 만점에 대해서 TV조선은 546.70점, JTBC는 559.63점, 채널A는 542.60점이었고, 보도PP 뉴스Y의 방송평가점수는 500점 만점에서 보도PP는 396.61점이었습니다.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심사 시 350점으로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TV조선, JTBC와 채널A 각각의 방송평가 점수를 50%로 환산하였습니다.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심사 시 350점으로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뉴스Y의 방송평가점수를 70%로 환산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 시 적용되는 방송평가점수는 TV조선의 경우 약 50%로 환산하면 273.35점

이 되고, JTBC는 279.82점, 채널A는 271.30점, 뉴스Y는 277.63점입니다. 참고로 JTBC 환산점수와 뉴스Y 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위반사례입니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입니다. 심사항목은 관련법령 위반사례입니다. 세부심사 항목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입니다. 배점은 특별한 배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중편과 보도PP 모두 감점처리 하였습니다. 적용대상 및 기간입니다. 2011년 3월~2014년 1월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관련법령 범위입니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2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동일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참조 기준입니다.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준 점수는 방송평가에서는 과태료의 경우 -4점,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는 -10점, 5,000만원 초과하는 -15점입니다. 그리고 심의 제재는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당 각 -4점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은 -6점, 과태료는 -9점, 과징금은 -12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법 위반보다 50% 감정한 과태료는 -2점, 시정명령은 -4점,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는 -5점, 5,000만원 초과하는 -7.5점입니다. 실제 감점 기준입니다. 실제 평가시에는 방송평가 점수가 반영된 비율, 즉 700분의 350, 500분의 300을 고려해서 중편PP의 경우 방송평가 기준점수의 50%로, 보도PP에는 기준 점수의 70%로 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건당 중편PP는 -2점, 보도PP는 -2.8점이 감점됩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는 -5점과 -7점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7.5점과 -10.5점으로 감점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여부입니다. 재승인 기본계획에서는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점토록 이미 의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및 소송현황입니다. 2013년 1월~2014년 1월까지 재승인 대상사업자들의 법령위반 건수는 TV조선 ○건, JTBC ○건, 채널A ○건, 뉴스Y ○건이고, 이 중 소송중인 경우는 ○ ○건, ○ ○건, ○ ○건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법령위반 건수가 없었고, 2012년 법령위반 건수는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되어 감점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은 유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 행정처분과 달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사례입니다. '00년 이후 방통위(舊 방송위 포함)는 방송평가, 지상파 재허가 등 관련업무 수행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을 유예한바 있습니다. '12년도 방송평가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 즉 CBS의 방송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하고 '13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10년 중

편·보도PP 승인심사 시에서도 세부심사기준에서 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은 배제한다는 점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 검토결과입니다. 방송평가, 지상과 재허가 등에서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감점을 유예하여 행정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2개 법인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개 법인은 소송중인 행정처분을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해 재승인 불허로 방송사업 자체의 가부가 변경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인 3개 모두 감점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4년 3월 현재 이의가 제기된 ○ ○건과 기타 집행정지가 인용된 행정처분 ○건은 효력이 상실 또는 정지되므로 감점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없이 소송이 제기된 행정처분 ○ ○건, ○ ○건은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국은 여기에 대해서 <제1안>과 <제2안>으로 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오후에 의결을 통해 각 안 중에 아니면 다른 <제3안>의 의견이 나오면 그 안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1안>입니다.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을 유예하는 안입니다. 장점은 선례를 고려한 일관된 행정행위가 가능하며, 확정된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안정된 심사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입니다. 감점유예로 인한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있고 감점을 유예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행정소송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2안>입니다. 소송중인 행정처분도 감점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입니다. 장점입니다. 종전 행정관행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심사평가가 가능하며, 감점 회피목적의 행정소송 남용도 방지가 가능합니다. 단점입니다.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 재승인 심사결과의 번복우려, 추후 지상과 재허가, 방송평가 등 다른 심사에도 동일하게 감점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재정적 능력입니다. 심사사항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고, 심사항목은 재정적 능력입니다. 세부심사항목으로는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총자산증가율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세부심사항목입니다. 지상과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인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마련했습니다. '10년도의 종편·보도PP 승인심사 시 재정적 능력 평가 지표와 동일합니다. 대상기간입니다.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11년도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 준비기간으로서 수익 관련 항목이 단기(1달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평가방법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해서 지표별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와 대상회사의 지표값(A)을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산업 평균(m)과 표준편차(a) 계산시 특정 업종의 과대평가 방지를 위해 업체수를 가중치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13년도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회사의 지표값(A)은 산출되지만 비교기준인 한국은행 자료(m, a)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12년도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최저점 설정 방안입니다. '10년 12월 최초 승인심사 시와 같이 최저점을 40%로 부여하는 방안과 방송평가와 같이 최저점을 20%로 부여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생매체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저점을 40%로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안>입니다. 최저점수를 40%로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종편·보도PP 승인심사 시와 IPTV 허가와 재허가 심사시 사용했던 방안입니다. <제2안>은 최저점수를 20%로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방송평가와 지상과 재허가 심사 때 사용했던 방안입니다. 오후에 위

원님들께서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입니다.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은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이고,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횡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입니다. 적용 대상 및 기간입니다. 2011년 3월~2014년 1월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입니다. 시정명령 범위는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중복성 배제를 위해서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12년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참조기준은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했습니다. 즉, 시정명령은 -8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5,000만원 이하는 -10점, 5,000만원 초과하는 -15점입니다. 감점기준입니다.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의 환산비율을 고려해서 적용했습니다. 중편PP는 기준점수의 50%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보도PP는 기준점수의 70%로 환산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명령 1건당 중편은 -4점, 과징금 5,000만원 이하는 -5점, 5,000만원 초과하는 -7.5점이고, 보도PP는 시정명령은 -5.6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은 -7점, 5,000만원을 초과한 과징금은 -10.5점입니다. 14페이지 이후는 실제 평가 시 각 항목별로 참고하실 부분들을 넣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관련법령 위반 항목에 시정명령, 과징금, 감점이 되어 있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시정명령 횡수가 나와 있는데 앞에 7페이지에 보시면 또 관련법령 위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2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해서 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중복은 아니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이쪽에서 감점하는 것으로 분리했고,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부분만 여기에서 감점하는 것으로 그 외에 방송법에 의한 위반, 또 다른 법률에 의한 위반은 7페이지에 있는 쪽에서 감점합니다.

○ 심사위원

- 공정거래법이나 기타 법은 앞에 있는 관련법령 위반사례이고, 뒤에 나온 시정명령은 방송법에 한정되는 시정명령 관련사항이다?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계량·비계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계량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혀 할 필요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계량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제 질문은 신청법인을 보고 최대주주는 맞는데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각 법인마다 지분이 다를 것 아닙니까?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준을 고려해서 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10%, 한 사람은 11%라면 당연히 11%가 최대주주지만 다른 회사는 30%를 가지고 있다면 비중이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이것은 계량평가는 아니고 비계량이기 때문에 지분을 차이에 따른 부분은 심사위원님들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에게 정보는 다 주십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실적과 계획에 대한 비중을 1:2로 한다고 했는데 1:2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까? 1:2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것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계획이 2나 됩니까?

○ 심사지원반

-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점 중에 실적만으로 빠지는 부분이 예를 들어 방송평가 350점이 이미 실적으로 빠져 있고, 재정적 능력 부분들도 과거 실적에 의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거의 500점이 넘습니다. 나머지 약 500점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1, 계획을 2 정도로 배분하면 전체 1,000점에서 볼 때 675점:325점 정도로 실적이 훨씬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 심사위원

- 논의사항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 심사위원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심사사항 <4>번이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11페이지 재정적 능력은 세부심사항목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기술적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 심사지원반

- 여기는 약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정리한 것이고, 뒤에 <표>를 보시면 각 세부심사항목마다 방법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심사지원반

- 기술적 능력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표>에 있는 것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 분들께서 보시고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저희가 다 나열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 보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논의해야 할 부분과 이미 결정된 부분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을 제시한 것이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서...

○ 심사지원반

-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심사위원

- 전부 여기 있는 것은 다 보고...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시간이 30분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일찍 하고 조금 쉬셨다가 2시부터 3시간 반, 축조심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 측에서도 답변 준비를 위해 긴급하게 할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오후에 돌아와서 회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 심사지원반

-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안전>과 <의결안전>을 나누는 이유는 <보고안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때 쟁점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변경해서 의결 때 고쳐서 <의결안전>으로 올리는 것이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쟁점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의결안전>에 반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결해 시간을 절약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세부항목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던 2:1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편성채널이 예전 승인 받을 당시에도 계획만 보고 승인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승인해서 결과를 보니까 현재 종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니 그것을 2:1로 하면 또 계획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은 비율로 하든, 예를 들면 실행실적과 이행실적과 아니면 계획의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계획의 부분에 많은 퍼센티지를 주면 서류상으로 거기에서 올라온 내용들만 보고 우리가 검토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전에 승인 받을 당시에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 나눈 부분은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논의 시작하기 전에 1페이지 보면 세부평가항목에서 비계량 평가를 하면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등급 구간 내에서 적절한 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부여라고 적절한 점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심사지원반

- 구간이 80~100점 사이에 연속적으로 아무 점수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각 심사위원당 말씀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원래 수는 100점, 우는 80점 딱 이렇게 고정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등급간 편차가 20점씩 일정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우인데 80점이 아니고 79점을 줄 수도 있고, 61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똑같이 ○○○ 위원님이 '수'를 평가하고 저도 '수'를 평가했지만 마지막에 쓸 때에는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서 9점을 줄 수도 있고 또는 8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 우, 미, 양, 가를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냐?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1페이지 <표>는 확정된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전문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 동일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동일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우'를 줬는데 '우'의 점수가 60~80점이니까 어떤 특정 전문분야에서는 심사위원이 '우'인데 75점으로 책정했는데, 다른 전문분야에서는 '우'를 60점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 심사지원반

-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를 방송분야에서는 65점을 줬지만 법률분야에서는 '우'이기는 한데 70점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이에 적절하게 판단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왜 그렇게 하지요? 20점 차이면 편차가 굉장히 큼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 수, 우, 미, 양, 가 나눌 필요도 없이 알아서 점수를 주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알아서 점수를 주시면 0~100점 사이의 구간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의 편의를 위해 드린 것이고, 굳이 거기에 구애될 것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심사사항이나 심사항목에 대해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평가합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계량 부분은 어차피 합의한 기준에 따라서 픽스가 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비계량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예를 들어 법학을 전공한 저희들로서는 특히 저는 재정 건전성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님들 사이에 자기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평가 의견을 토론했으면서 어느 정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기술적인 것도 해야 합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방송분야 법률·기술·경영·회계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되어 있고, 그쪽의 전문가 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모든 심사위원님들이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과 계획대비 1:2,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후에 하시고, 지금 문제제기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통위에 부탁할 자료 중의 하나가 저기에 가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현재 우리가 심사해야 할 항목과 방송평가에서 심사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답은 방송평가에서 실적을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 평가에서는 1:2로 가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여기에서 의견이 논의가 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비교해 보려면 방송평가의 심사항목과 우리 심사항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본격적인 논의는 오후 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1:2에 대한 변경을 제안해 주셨으니까 1:2를 유지해야 하는 논리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

- 자료를 봐야 판단이 들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3페이지를 보시면 <제1안>, <제2안>이 있는데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1안>을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 아납니까? 그런데 <제1안>으로 할지, <제2안>으로 할지, 그리고 <제1안>으로 하면 비율이 어떻게 할지, 이것이 그다음 순서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야기가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거기까지도 미리 논의하고 오후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4페이지 <표> 중간쯤에 재정적 능력이 종편 65점, 보도에는 4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실적만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 능력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능력이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재정적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다 썼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려면 추정재무제표가 나와야 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재정적 능력을 계획을 가지고 평가하려면 사후적인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하겠다는 계획만 낸 것을 가지고는 재무적인 측면 '증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지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는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따 논의가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하는데, 개인적으로 <제2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적과 계획 부분을 나눈다는 것이 분야마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실적이 앞에 잡혔다 하더라도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안일 수 있고, 사실 참고로서의 가치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안>, <제2안>에 대해서 한다면 저는 <제2안>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각 분야의 사항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나는 실적을 중시하겠다', '나는 계획을 많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그 안에 덧붙여서 물론 <제3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적책임에 관한 부분이나 공정성에 관한 부분들이 다 동일한 잣대로 할 수 없는, 공정성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심의하거나 평가할 때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기는 한데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 자의적인 평가가 과연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방통위에서 준비하신 자료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정해 보자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도 감안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제1안>, <제2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평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몇 가지 근거가 공적책임과 공정성과 공익성과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그렇게 엄격하게 딱딱 분리되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세 가지가 연동돼서 그냥 일괄적으로 학생들 설문지할 때 몽땅 ‘가’에 넣는다든지 이것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exclusive하게 소항목이 된다면 괜찮은데, 실제 제출한 재허가 승인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완전히 배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평가 항목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려 350점입니다. 나머지 항목을 거의 압도해 버리는데, 물론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보면 세 사업자가 별 차이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감안했을 때 보통 80점 정도 감점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실적계획이라는 것이 논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소모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후에 자료를 주셔야 이미 우리가 생각하려는 실적 부분에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배율을 그때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막연한 상태입니다. 방송평가에 무엇무엇이 들어갔는지, 물론 대충은 저도 몇 번 재허가 해 봐서 본 적은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반드시 세부 심사항목은 나와야 합니까?

○ 심사위원

- 그래야 소 배점이 되니까요.

○ 심사위원

- 지금 보면 심사항목이 이미 나와 있는데...

○ 심사위원

- 큰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세부항목을 우리가 꼭 정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래야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분배해서 낼 수 있지요.

○ 심사위원

- 그냥 총점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 심사위원

-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위험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심사할 때 보면 진짜 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적과 계획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실적과 계획으로 나누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베이스로 점수를 주는 것이지, 세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사항을 나누면 지금 말씀대로 공익성·공정성의 경우에 전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는 충분히 하겠지만 세부사항을 나누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1:2와 2:1과 지금 딱 의견이 나뉘지 않습니까? 실적과 계획의 경우...

○ 심사위원

-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실적과 계획을 묶어서 <제2안>으로 했을 때 그것을 세부항목으로 묶지 않고 큰 항목으로 하자면 예를 들면 실적을 강조하는 사람은 실적 하나 가지고 큰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하는 이유가 한 번에 자기의 기준 하나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심사지원반

-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사항목을 가지고 세부로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사항목 단위에서 140점, 180점 이렇게 배점이 부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워낙 점수가 크기 때문에 이 점수를 어떻게 평가할지 약간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하나로 해서 점수를 주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부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참고자료로 2013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평가의 점수들이 대충 얼마나 나왔는지, 하다못해 평균 내지는 분포도를 볼 수 있습니까? 이따 보여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그것을 지금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해 주시겠습니까?

○ 심사지원반

-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 자료는 가지고 가도 됩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심사기간 동안 가지고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세부항목들이 아주 많은데 지금 논의하면서 이것을 훑어보면서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 심사지원반

- 개별적으로 보시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 심사위원

-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오히려 일찍 끝내고 보시지요. 각자 검토할 시간을 더 주시는 것이...

○ 심사지원반

- 그리고 검토는 주로 검토실에서 하시고, 방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 심사위원

- 이 자료만...

○ 심사지원반

- 이 자료는 전부 다 저쪽에 가지고 가서 보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장

- 방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방 말고, 검토실로...

○ 심사위원

- 이것도 못 가지고 나갑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어떤 때 보면 계획이라는 것이 2년 전 사업계획서를 냈을 텐데 그 계획이 얼마나 잘 팔로우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도 계획을 냈고, 이것이 공약사항이 아니고 숫자만 뺀튀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다시 또 2년 후에 계획대비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평가체제로 보면 2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비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계획대비 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행실적에 관해서 방통위에서 해서 나온 점수가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점수가 아니고 평가자료는 나중에 보고안전으로 드릴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작년에 한 것과 올해 초 두 번 한 것을 같이 보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의욕적으로 계획을 해서 계획대비 이행이 30%밖에 안 되는데, 어떤 데는 아주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나는 100만원만 하겠다고 하고 100만원을 다 한 경우와 나는 정말 많이 잘해 보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300만원만 하는 경우는 이행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규모에 대비해서 그런 차이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 심사위원

- 규모에 비한 계획이지요?

○ 심사지원반

- 자료는 비율자료와 총 금액자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금액보다 비율을 보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액을 얼마나 했는가, 그다음에 그 회사가 처음에 자본금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서 상호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총 자본금 중에서 얼마를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었는가, 이런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재정적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계획도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놓은 계획이 2년 후에 재평가할 때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계획과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자 허가할 때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빌링이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도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 아마 이번에도 그것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봐야지요.

○ 심사위원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승인 자료를 법원에서 행정소송한 것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써 놓았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실제 그렇게 써 놓은 것들이 많아도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엉터리로 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것이 항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 가능성도 항상 이행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링만 크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온갖 계획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실제 실현 불가능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 통과가 되어서 승인이 됐으니까 그것이 문제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지금 ○○○위원님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는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그 적절성을 지금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아주 과도한 지표를 제시하면 다음에 가서는 굉장히 고생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불이익을 받겠지요. 예를 들면 처음에 잘못된 것이 이행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 심사위원

-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렇습니다. 재정 계획의 경우 대부분 빌링을 키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허가받은 1차 끝나고 나서 2차 재허가 받을 때 보면 거의 바닥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방송시장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많이 드러난 것이 편성 쪽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겠다는 것은 계획서를 쓰면서 미사여구를 많이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해 보면 표가 많이 납니다. 재정은 의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미사여구를 많이 집어넣는 것들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실천되지 않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결국 방송이라는 것이 방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편성이 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나타난다고 보면 방송평가 부분에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항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실적도 한 번 불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조정해서 논의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논의가 특정 부분에만 집중되는데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읽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기술과 재무 쪽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전문하신 위원님들이 검토를 더 면밀히 해 주시고 저희에게 브리핑을 10~20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술과 경영·회계 쪽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들어야 쓰지, 듣지도 않고 쓸 수는 없습니다.

○ 심사위원

- 평가할 때 경영이나 기술은 저희가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두 분씩 들어오셨으니까 한 번 쪽 보시고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재승인 심사세부기준'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폐 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1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1분 폐회】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4. 3. 10. (월) 15: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14. 3. 10.(월) 15: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 출석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류춘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이상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차지훈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류길주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배기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15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접수한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문제이기도 한데 실적과 계획의 비중이 대체로 현재 준비된 안건에 의하면 1:2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심사지원반

- 아까 배포해 드렸던 세부심사기준 4페이지에 보시면, 편의상 종편PP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점 비중할 때 방송평가와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이 4개 항목을 다 합치면 종편의 경우에 이것이 다 실적에 관한 부분인데 505점입니다. 그러면 총점이 1,000점인데 나머지가 495점이 남게 됩니다. 나머지 495점을 실적 1대 계획 2로 나누면 170점과 325점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675점 대 325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이해하실 때 1,000점 만점에 실적을 1만 하고 계획을 2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배포해 드렸던 방송평가를 보시면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실적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95점에 대해서 170점 대 325점으로 나누는 비율이 1:2라고 하시면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고, 실적 대 계획의 비율이 지상과 재허가 때 비율과 비슷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 심사위원장

- 고맙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편PP 3사와 보도PP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지, 결국 이 자세한 문건을 보니까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

서 세부항목과 평가척도가 나오고 배점이 나오고, 하나하나의 변형이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점 700점을 나누기 2를 해서 350점이 방송평가 점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문제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 ‘공정성’이라는 것인데 공정성이라는 개념과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과 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다 골고루 스며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송법의 의무화된 법적 개념과 이런 영역표시 구분과 어떻게 하면 맞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확실히 됐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자유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1:2를 그대로 가지고 가자라든가, 변경하자라든가 그것도 역시 다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지탄 없이 다 표시해 주시고 토론을 하면서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만 가지고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 배점 안에 보면 실적, 계획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점수가 전체적으로 실적만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분의 점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많이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해 드린 말씀입니다. 계획을 그럴싸하게 세워 놓고 승인을 받고 나서 실제 전혀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2년 후에 다시 검사한다면 그런 논리가 또 가능합니다. 2년 후에 또 다시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 2년 연장하고, 3년 연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적 점수를 적게 하고 계획을 많이 해 놓으면 사실은 뜯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고 또 다시 승인받고 나서는 동일하게 실행하지 않는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린 1:1로 하든,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없애고 항목별 점수만 주고 심사위원이 알아서 평가하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실적과 계획을 나누지 않고 방송의 공적책임이 140점이면 140점 이런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동일한 개념으로 나눠서 점수를 분산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일률적으로 실적과 계획 비중을 1:2로 정해서 다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항목별로 이것은 계획이 중요하니까 계획에 가중치를 두고 이것은 실적이 중요하니까 실적을 두고, 나눌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정리한 것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부분이 350점인데 실질적으로 방송평가 당시

에 700점 만점을 환산한 가치입니다. 나중에 나누어 드린 것에 보면 방송평가 항목이 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방송평가 항목 중에 대충만 해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제가 넉넉잡고 해 봤더니 700점 만점에서 한 290점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방송평가를 하는 당시에 웬만큼만 해도 한 200점 후반대는 그냥 가지고 가는 점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전체 700점에서 300점대라면 반 이상 정도가 그냥 가져가는 점수라면 그것이 과거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100% 다 평가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505점이 과거 실적이고, 495점이 미래계획인데, 그중에서 350점 전체가 다 과거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1:2 비율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방송평가를 보여 달라고 했던 이유가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기는 하지만 지상파 재허가 방송평가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종편PP에 대해 방송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평가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들이 많아서 방송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실적을 제대로 평가했다, 그분들은 그 기준에 따라 정확히 평가했더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허가나 재승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준에 얼마나 잘했는가를 우리가 믿고,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만들어서 그냥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실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조금밖에 못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심사를 들어온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에 대한 나름대로,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방송평가 항목에 중복이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한 번 어떻게 실적을 쌓아 왔는가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과 계획을 1:2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실적 부분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아까 계속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정말 계획만 볼 수밖에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1:2로 나눠 놓으면 그것에 우리가 제약을 받아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소항목으로 나눠서 소항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분리해서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실적과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비중을 두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점을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종편PP에 대한 응보적 단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응보적인 단죄, 우리는 그럴 권한도 없고 패널티를.... 예컨대 방통위원회의 명의로 승인이 나가거나 승인 거부나 나가거나 처분 권한이 거기에 있지, 우리는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내부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지켜진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계획의

중요성이 덜하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지요. 예컨대 피심사 대상 채널에서 각종 계획을 최초 신청할 때 나온 계획에 나타난 사항 중에 준수된 것도 물론 많고, 또 매년 하는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등을 통해 추후에 준수가 담보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응보적인 단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기준에 아주 못 미치면 배제시켜야겠지만 다시 말해서 계획의 중요성을 전혀 도외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675:325면 그렇게 큰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 않나, 그런 견해입니다.

○ 심사위원

-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계획을 가지고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믿을 수 없으니까 가중치를 줄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모든 방송사업자 허가는 RFP를 하면 안 됩니다. RFP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면 그것은 심사 자체가 무의미해지지요. 이것은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맹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RFP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방송사업의 경우에는, 종편PP는 예외입니다만 다른 사업자들,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초기 한 4~5년에 거의 자본금을 말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는 다 4년, 5년 이내에 손익분기점, 흑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된 사업자 지금까지 없습니다. SBS 정도를 빼 놓고 없는 상황이니깐 그 RFP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RFP에 제출한 계획서 자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심의 자체에 가중치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범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RFP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방송평가 항목을 하나하나 대조해 봤습니다.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대분류 심사항목과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공익성 부분이 여러 군데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방송평가에서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의 적절성이 여기에 없습니다. 수급의 적절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수급계획인데 이것이 방송평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기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보다는 다른데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별도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방송평가에서 조금 덜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가중치를 조금 바꿔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절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중복이 많이 됩니다. 거의 똑같은 평가입니다. 물론 방송위원회가 2003년에 만들어진 방송평가를 그동안 수정하고 수정해 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년 동안 써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엉터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신용을 많이 높여온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준 갯대가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전문성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전에도 대부분 실행과 계획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 분류, 아까 이야기한 <제2안>식으로 된 적이 별로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심사지원반

- <제1안>, <제2안> 해서 재승인·재허가 때는 보통 계획, 실적으로 되어 있고, 최초 허가 때...

○ 심사위원

- 최초 허가 때에는 물론 분리돼서 나간 적도 있지만 재허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앞에 방송평가와 많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그대로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준용하고, 여기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점을 조금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조금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안 녹아있다, 녹아있는지 모르지만...

○ 심사위원

-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아까 제가 지적한 바대로 방송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공익성·공정성 이야기인데, 공익성만 하더라도 시청자 주권 확보 노력,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 우수도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시할 때 내용, 편성 운영하면 아주 칸막이는 잘 되는데 이것이 개념의 칸막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용어, 방송법에 있는 기본정신, 방송이라는 매체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개념 중심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게 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나씩은 다 보이는데 내용, 편성, 운영해도 아주 좋은데 이것은 방송의 정신을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고...

○ 심사위원

- 홍보적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정서적인 표현이 돼서,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650점이라는 기준에서 650점 미달이 돼서 조건부 재승인이 되든지, 승인 거부가 되든지 해야 할 상황인데, 현재 650점을 보면 평균이 65점입니다. 그런데 방송평가를 보니까 80점대가 됩니다. 종편과 기존 지상파가 수준이 같냐, 같지 않느냐를 떠나서 80점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평가해 봤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점수입니다. 애초부터 여기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심사한 결과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방송평가를 반영해 왔는데 그것을 잡자기 반영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실적과 계획 정도가 동일하게 나오든가, 아니면 실적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것이 일반사업자 심사가 아니고 방송사업자 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 그다음에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고 방송할 때 보면 어떤 기준이 제시됐을 때 상당히 방송사업자들은 그 기준을 제시하려고 애쓰고, 또 저희가 심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한 요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준점수가 아주 낮다든가 또는 일단 방송평가해 보니까 점수가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기준을 넘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 간당간당하게 심사해서 2명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질 확률이 30% 정도가 되더라도 방송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사실상 방송사업자가 탈락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투자비용도 크고 또 만약 탈락하는 경우에 사회적인 파장도 큼니다. 지금 판단기준이 일반사업자처럼 봐서 50%, 30%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낙제냐, 아니냐 하는 것 가지고 대개 유급을 따질 때 합격, 불합격이라기보다는 낙제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방송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편이 나와서 지난 2년, 3년 동안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JTBC도 재방도 많고 그다음에 보도채널도 많고 이런 쪽으로 방송 실적 이행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제가 볼 때에는 그 이유들을 보면 사업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도 이것이 발전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항목에 따라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제가 계속 좀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응보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신 말씀이 갖는 이 논의에서의 파장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편에 대한 생각은 있지요. 하지만 공정한 심사가 되려면 응보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또 사업자는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가했을 때 평가한 결과가 그 사업자의 운명에 전혀 좌우하지 않는다면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들어옵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사인만 하고 나가면 되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와서 심사한 것이 좋다, 그러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면 나쁘다고 평가한 것이 점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틀 자체를 다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현재 1:2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한 수치 논리가 안 맞다면 다시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이것을 자꾸만 기존의 사업자가 없어지면 망가진다고, 그렇게 치면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가 망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논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런 뜻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적과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실적을 조금 줄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심사위원이 말씀하시기를 방송평가의 배점이 지나치게 후한 점수가 나와서 실적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 심사위원

-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 심사위원

-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원래 방송의 특성상 방송사업자들이 그것을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을 재승인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면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저도 응보라는 말씀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방송평가가 이러니까 실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런 식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의 근거로 하나를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항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앞으로 더 잘하겠다, 계획에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못 했으니 너는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편성의 적절성은 실적이나 계획이나 평가와 배율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하나 제시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법률가와 다른 전문분야가 섞여 있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 저희는 이것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오는 결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면 되지, 우리가 한 것이 결정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내지는 살려야 한다, 죽여야 한다는 논의는 아예 필요가 없고, 이 심의의 공정성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니까 약간 언어사용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실적 점검결과로 보면 <1>, <2>, <3> 항목 콘텐츠, 공공성 이런 부분은 조금 점수차가 있고, 그 뒷부분 지역 균형발전, 소수 시청자 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유료시장 활성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했다고 이행점검 결과에 보면 점수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분야 말고 나머지 문제가 됐던 분야의 실적을 더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방송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기술분야에 들어가는지, 글로벌 방송시장을 한다고 해서 3D나 UHD 이런 기술방송 분야로 확산하는 부분의 평가점수는 없어서 그것이 어디에 녹아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 계획 1:2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청자들이 현재 느끼는 것은 종편을

승인해 주면서 이러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이행실적 점검한 것을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안 된 것들이 더 많고, 편향적인 방송으로 갔다거나 막말방송이나 재방송이 많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인식된 것에 비해서 실적평가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그래, 실적 그까짓 것 별 것 아니니까 계획만 멋들어지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실적 그래도 조금은 괜찮겠지' 이런 방송시장의 전체적인 왜곡과 또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 실적도 있고 계획만 잘 내면 돼' 이렇게 해서 심사에 대한 신뢰도 조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종편을 인정해 준 것은 방송시장이 지상파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시장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방송발전을 하고, 글로벌로 도약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현재 방송시장의 수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여한 부분들도 종편들이 어느어느 부분은 있다고 보지만 시청률도 그렇고, 방송방향이 '종편은 저 정도인데 지상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시장이 왜곡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문제점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더 중요시해서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서 우리가 방통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추가하겠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공정하게 심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특별히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공정하거나 불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계획 비율을 정하는데 아까 심사위원께서 방송평가의 점수가 보니까 높던데, 기존의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계획 점수를 적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적을 많이 해서 실적에 대한 평가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송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평가할 때 떨어진 방송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심사위원

- 방송평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서론 부분의 토론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말을 극단적으로 썼습니다. 방송사업자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여기에서 평가한 것이 방송사업자의 채널사업권을 박탈하게 되는 그런 결과

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송사업자의 채널권을 박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대한 문제냐 하면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를 낳든 안 낳든 절차적으로 얼마나 합당하게 이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특정 심사항목은 1:2로 가중치를 두고, 특정 심사항목은 1:1로 가고, 또 특정 심사항목은 바꾼다면 이것이 절차적으로 합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색깔이 바뀌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사업자를 심사하게 될 경우에 특정 항목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채널 색깔 때문에 거기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런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좀 더 보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누가 봐도 왜 그렇게 했는지, 왜 특정 항목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쪼개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심사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가 일정한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저는 비율이 1:2이나, 1:1이나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만 방송평가 부분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들은 법의 내용, 편성, 운영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틀에 맞춰져 있지만 방송법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요구사항들을 각 항목을 개발할 때 이미 방송법 조항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쪼개져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이 많이 녹아져 있고, 운영영역이나 아니면 편성영역 부분을 보시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실적이 과다하게 이 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1:2가 되지는 않더라도 현재처럼 실적을 중시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허가를 전에도 몇 번 와서 느꼈는데, 이것이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방송법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계량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계량적 평가는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계량적 평가만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과장 평가가 되고, 왜냐하면 결정적인 패널티가 없는 사들은 점수를 받으니까, 또 아주 후한 것 아니냐는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계량으로 하고 있는 실적평가라는 것이 대부분 여기와 달리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지요. 자기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주관적인 평가에 가중치를 아주 많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리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고 몇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종편이 베스트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콘텐츠에 상당히 불만도 있고, 아까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글로벌 부분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종편사업 허가 낼 때 첫 번째 모토로 걸었던 것이 글로벌미디어그룹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들어간 것이고,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다 끼워 넣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불만이기는 하지만, 또 의외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채널의 시청권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비판적

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런 실적평가에 주관성이 개입한 부분에 아주 많은 가중치를 주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 모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한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류가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포함해서 15명의 주관적인 의견이 물론 대표해서 오고 나름대로 공정하신 분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가중치를 주면 평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재허가 심사를 몇 번 들어가 봤을 때 느낀 것이지만 방송평가라는 것이 중요한 몫이기는 하지만 방송평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몇 점을 차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우리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축소된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종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과 계획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더 중요한데 실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이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적으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실적을 우리가 평가했는데 좋게 나오고, 방송평가와 일치하면 그것은 상관없고, 방송평가와 우리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1:2는 조금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것들을 가지고 전제한다면 처음부터 <제1안>, <제2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합니다'라고 했어야지요. 논리적으로 지금 핵심은 그쪽으로 집중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관적 평가는 실적이든 계획이든 동일하게 다, 계획도 주관적 평가이지요. 누가 하든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실적, 계획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만 평가하는 부분이 신청법인의 적절성, 재정적 능력, 승인 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총 합치면 155점입니다. 실적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실적의 퍼센티지 점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계획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퍼센티지가 많이가 있으니 균형을 맞추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계획을 우리가 평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실적이나 계획을 좀 더 균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저희가 줄 수 있는 점수가 한정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균형 있게 가서 둘 다 평가하자고 말씀드리는데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의 점수가 높은 이유는 실적만 평가하는 부분이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된 대화가 실적이 많으면 유리하고, 계획이 많으면 불리하고 이렇게 편향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뒤늦게 건의일지 모르지만 650점이라는 숫자를 오픈하지 않고 했으면 대화가 다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계량과 비계량 이야기도 나왔고, 또 실적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의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계획과 실적 측면의 비중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여기서라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각 파트별로 제안을 하시면 다른 분들도 듣고 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심사위원

- 저도 방송법을 살펴봤는데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내놓은 자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평가항목 및 척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허가의 경우에 관련 방송법을 보면 재승인·재허가 할 때에는 항목표에 나와 있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제외한 항목 전체를 참조해야 하지만 재승인·재허가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이 제31조제1항에 있는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제일 우선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고, 그 후에 다 적용되는 규정을 보면 실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정명령 횟수, 불이행 사례가 있는지, 시청자위원회의 프로그램 평가가 어땠는지, 지역사회 발전공헌,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등 모든 법적인 규제내용이 실적을 토대로 한 평가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아까 심사지원반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반영되었다면 어쨌든 법령에는 어느 항목이든지 사실상 가중치는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10점, 5점 하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다만 조항이 우선순위 정도는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대충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15명이 어느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10% 부여하고, 30% 부여하는 것은 오늘 밤새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재심사 승인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비중이라면 오늘 평가기준에 1:2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제가 질문해 보니까 이전에 대부분 관행으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1:2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1:2로 가중치를 둔다는 부분을 조정한다면 현재 얼마를 두겠습니까?

○ 심사위원

- 방송평가를 계획에는 안 쓰고 실적이라고 완전히 분리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실적과 계획에 해당하는 실적입니까?

○ 심사위원

- 방송평가는 100% 실적이지요.

○ 심사위원

- 주신 방송평가 항목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과연 실적으로만 할 수 있었을까....

○ 심사위원

- 그것은 1년치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거기에 주관적인 점수를 위원들이 일부 항목을 넣어서 점수를 낸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실적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 심사위원

- 계량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주관치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실제로 보시면 방송평가는 대부분 다 실적 계량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하신 분들 그다음에 기술하신 분들이 와서, 방송평가위원회가 있지만 평가위원회는 승인만 할 뿐 실제 실무작업들은 연구진들이 하는데 그 연구진들이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연구원처럼 분석하는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송평가제도 자체가 측정방법들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여기에서 논외지만 어느 제도나 측정의 문제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실적에 관한 것을 주로 평가하는 제도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아까 감사보고서를 꼭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당기순손실이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독 연합뉴스 한 곳만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데, 초기에 어떻게 보면 정착이 안 된 사업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세팅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실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실적에 맞춰서 한다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아주 세계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사업은 덜 하는데 플랫폼사업, 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1차 재허가 때에는 대부분 그런 문제를 많이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경영 문제는 완전히 0점입니다. 대부분 사업계획서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획서상으로 3년, 4년에 전부 BEP를 맞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3년 되면 자본금 다 까먹은 상태입니다. 제가 내용을 물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유예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몇 년 동안 심하게 나타나니까 자기네들이 공정성이든 콘텐츠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아남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까지의 재허가에서는 많은 부분 처음에는 상당히 배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조건부 부과가 많이 되는 이유가 '너희가 1차 때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자는 제가 경영실패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계속 심사기준과 심사배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이것을 살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로만 봐도 100% 실적만 가지고 평가해도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계획이라는 것,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일단 675점이라는 실적평가는 굉장히 많이 보이지만 계획에 비해 675점의 실적평가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평가해서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꼭 떨어뜨리려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으면 아닐 수 있고, 방송평가가 만약 낮게 나왔는데 우리는 해 보니까 높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평가가 낮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심사기준과 심사배점이 과연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적절한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들 초기 사업자니까 아니면 응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논의가 자꾸만 헛돌 수밖에 없지요.

○ 심사위원

- 제가 보기에는 다들 실적과 계획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실적과 계획을 1:1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실적에 치중하면 사업자들이 자본금을 다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실적보다는 계획을 많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다들 비율을 말씀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심사하고 있지만 방송평가의 경우에 대부분 정량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하면 실적평가를 정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심사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예측 가능성입니다.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심사하게 되면 그 심사를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특히 방송사업자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면 굉장히 사업내용이 나빠집니다. 방송평가의 경우 제가 보면 대부분 별점이나 아니면 장르의 비율이나 외주비율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자들이 보면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기준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맞춰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이 잘 나오게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점수가 비교적 잘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적 부분을 많이 높여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맞출 수 없지요. 심사위원회 개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사위원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지도 모르지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실적을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 정량적으로 나온 평가에 대해 그것을 상당 부분 반영해 주는 것도 저희가 심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첫 번째는 물론 말씀하신 것이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은 별로 유익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심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받은 심사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조건을 고려하면 공정성이 흐트러집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심사하는데 사업자가 초기사업자니까 힘드니까 우리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자의 형편이 어떻고, 경영적으로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고려하면 심사가 공정하게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실적 부분을 높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로 되어 있는 것에 균형을 맞추자고 말씀하신 것이지, 처음에 출발이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원래 높이 있는 것을 더 높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 드렸듯이 그것이 정말 논란이 크면 실적과 계획을 아예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점수 배점을 주고 실적, 계획을 본인이 판단하게 하든지, 계획이든 실적이든 다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면 심사위원이 판단해서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이 중요한 판단거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해야지요. 지금처럼 실적과 계획을 불균등하게 제한선을 두면 평가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아까 심사지원반에서 칠판에 쓴 숫자가 실적에 반영되는 점수가 아니라는 견해와 이만큼이 반영됐으니 우리가 하는 심사에서는 1:2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 심사위원

- 위원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습니까? 왜 뭐가 다릅니까?

○ 심사위원

- 지금 1:2라는 자체가 하나의 안이고 어떤 기준도 아니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과 실적이 1:1로 가느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1로 나온 것 자체가 논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지하자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이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한 비율로 가져가지'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에서 산출된 이 근거에서 나온 이만큼이 이미 반영됐으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650점 만점을 가지고 하는 작업에서는 실적 대 계획을 1:2로 가지고 가자,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하나의 안이고 다른 안도 있지요.

○ 심사위원

- 제 생각에 1:2라는 숫자를 오늘 처음 들어서 이것이 어떤 비율인지 아까 계산해 주실 때까지 잘 몰랐는데, 방송평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각 항목당 325점, 325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아니고, 방송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1:2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온 것이네요.

○ 심사위원

- 이제까지 해 온 논리는 기존에 670점이라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실적평가를 1:2로 하더라도 실적이 한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논리이고...

○ 심사위원

- 그러면 이 안에 나와 있는 325점은 가중치를 없애면...

○ 심사위원

- 계획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160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이것은 원점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 이야기는 그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적을 그것만 해서 정성적 평가 부분에서의 실적이 아주 적으면 그것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비율을 제일 마지막 밑에 보시면 사업추진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조직·인력 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실적 및 지원계획, 실적과 계획을 다 같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것은 1, 이것은 2라는 것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나누면, 계획과 실적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누지 않아도 저희가 왜 계획과 실적을 1:2 내지는 1:1씩 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실적과 계획을 동등하게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것은 계획이 중요해', '이것은 실적이 중요해'를 나누느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송평가제도를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舊 방송위원회가 2000년도에 출범해서 2년 작업한 이유가 2000년 방송법이 생기면서 재허가 제도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규정 자체가 이전의 방송법에는 재허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방송사가 십 몇 년 동안 재허가를 안 받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재허가가 들어가니까 재허가를 하려면 실적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적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치를 그 당시에 방송위원회니까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방송법에 지금 방송평가가 실적을 평가하는 제일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의 실적 및 이행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앞부분 방송평가에서 상당 부분의 실적 부분을 거기에서 평가해 줬으니 나머지 부분을 평가할 때에는 그것보다 계획을 좀 더 많이 비중 있게 보라고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해석인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해석이지만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송평가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 심사위원

-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요.

○ 심사위원

- 가능한데, 방송평가는 실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방송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방송평가가 300 몇 점을 실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점수에서도 실적 비중을 더 두면 실적과 계획이라는 것을 5:5로 꼭 하라는 원칙은 없지만 실적은 아주 많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적은 상당 부분 방송평가에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에서 평가해 주고 있다고 법 구성 취지 자체가 그 뜻입니다.

○ 심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세부심사항목까지 결정하시지, 왜 우리에게….

○ 심사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 심사지원반

-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내용을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고….

○ 심사위원

- 그러니까요.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들을 막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애초에 왜 이런 것들을 꺼내놓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승인 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계획을 심사할 수 없으니 나머지는 그냥 해 놓고, 나머지는 다 그것에 따라서 맞추는데 방송평가가 있으니까 실적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에서는 실적을 심사위원회에 들어와서 충분히 봐야 할 항목들을 다 1:2로 바꾸어서 해 놓으니까,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 부분인데, 실적 부분들에 대해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제대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논리를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1:1로 바꿔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많냐 적냐, 방송평가가 원래 실적을 다 담보하게 되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넘기지 말았어야지요.

○ 심사위원

-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신 자료 개요에 보면 세부심사항목 그리고 배점,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가 정하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심사항목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데 배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는 안이 큰 한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런 것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하는 큰 안이 있다, 참고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논의하실 때 계획과 실적의 비율이 실적으로밖에 못하는 네 가지 항목에 505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1:2로 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에서 합의해서 배점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이 말이 틀리다고 자꾸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을 한 번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채점할 때 실적점수와 계획점수를 별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 심사위원

- 항목을 그렇게 만들면, 뒤에 가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의 방식은 전부 실적과 계획을 각각 점수를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이제까지 해 왔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제1안>, <제2안>이 그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제2안>은 새롭게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세부심사항목을 2~3개로 더 나누어서 하고 계획과 실적을 한꺼번에 그 항목마다 본인이 평가해서 같이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앉아서 아까 기다리는 동안 해 봤더니 소항목만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만들어 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항목에 보통 배점이 많은 것은 40점, 50점, 60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두 항목 가지고 안 되고 서너 항목씩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배점은 한 10점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많은 것도 있고, 자칫하면 이것 만들다가 날 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심사위원

- 죄송합니다. 뒤에 평가표에 보면 항목에 계획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고, 실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니 그것을 1:2로 하다 보니까 15점짜리면 5점 하나, 10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실적도 봐야 하고 계획도 봐야 하니까 배점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니까 합의해서 이 실적 항목은 3점만 하고 계획 쪽에 12점을 하자, 다른 것은 실적에 8점을 두고 계획에 7점을 두자고 합의하시면 오늘 빨리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심사위원

- 취지는 좋은데 정부가 바뀌거나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기준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그대로 하자는 안은 아닐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자는 방식은....

○ 심사지원반

- 제가 말씀드리면 <제1안>, <제2안>으로 나눈 것은 관례적으로 <제1안>을 잡았고, <제2안>도 가능한데 이것이 조금 어렵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1안>을 따랐을 때 실적을 675:325로 나눈 것은 지금까지 지상과 재허가 때 저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495점을 1:2로 나누면 저렇게 되는데, 예컨대 저것을 1:1로 나누었다면 750:250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750점이라는 실적을 이 심사위원회에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675점을 적용했는데 종편 때만 750점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행을 안 따르면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렇게 바꿨다고....

○ 심사위원

-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을 때의 타당한 이유를 알려주셔야지요.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전문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4개 항목에 대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495점에 대한 배분 문제니까 그 배분 문제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영역별로 나누어서 전문가들이 계획과 실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배분 비율을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영역별로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우리 영역과 여기 영역과 또 교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다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채점할 때 예를 들면 실적과 이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 부분에도 이 사업자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니까 못 믿겠다, 그러면 계획 자체 점수를 낮게 주면 됩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현실은 맞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왜냐하면 계획에는 이행가능성이라는 것이 그 안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연아의 경우 0점도 주는데 0점 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처음에 제의한 실적, 계획을 1:2를 나누지 말고 관행도 없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도 심사위원 각자가 이행, 실적, 계획 부분을 고려해서 점수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항목으로 하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미'를 뺐다면 그 20% 레인지 안에서 그것이 모수가 크지 않을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러려면 소항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몇 사람이 앉아서 소위원회를 오늘 밤 새고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생각해 보면 다른 사업자들, 중편 이외의 사업자들 지상파사업자들이나 재승인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홈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들 채널에 적용했던 규칙, 예를 들면 그것이 몇 대 몇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수를 굳이 중편에서 바꿔야 하는지, 만약 1:2로 비중이 구성돼서 600 몇 점대로 되어 있다면 굳이 그것을 왜 중편에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한 숫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데 1:1이든 1:2든 관행이 있다는 것은 법에서 동일하게 각 방송사업자로서 대우를 하고 있다면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심사기준을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실적에 대한 비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1:1 나왔는데 1:1로 위원장님 상정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투표로 할까요?

○ 심사위원

-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바꿀 때에는 신중하게 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하는지를 전제하는 것이 심사위원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 심사위원

- 왜 바꿔야 하는지 이유를 저에게 쓰라면 쓰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적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약속이 안 지켜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2개의 이행실적 평가에도 보면 중편이 거의 대부분 실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또 다시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물론 믿어야지요. 그것을 안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평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또 다시 반복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비중을 2로 두고, 실적을 1로 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평가가 정확히 안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1:1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나누지 않고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문서로도 볼 수 있지만 사업자 대표와 최다액출자자가 오는 청문절차가 있다면 그 계획이 진실한지 안 한지, 또는 청문절차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압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충분히 구두로도 확인할 수 있고, 속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에 쓰인 것이 다 거짓말 이렇게....

○ 심사위원

-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행계획이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 거짓말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보지 않을 방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자가 와서 청문도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 거쳐 온,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행실적 안 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약속을 그분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만 보고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데 그것이 평가에 많은 부분, 2:1의 균형으로 나뉘어서 평가하게 됐을 때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을 아예 안 믿는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겠지요.

○ 심사위원

- 자꾸 대항목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대항목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를 여러 번 다녀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항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동안 몇 번에 걸쳐 심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 왔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심사를 받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전의 심사에 준해서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심사보고서를 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사를 다녀 보면 그 관행을 바꿀 때에는 저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왜 바꾸는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없이 저희가 임의대로 한다면 심사할 때마다 계속 주관적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 저희가 바꾼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 다 같이 합의하고 확실한 근거를 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관습적으로 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점수를 평가하는 와중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논의가 아까 ○○○위원님이 그 근거를 제시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거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 관행대로 가느냐 아니냐, 1:1이냐고 이야기한다면 1:1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시장이 특히 종편PP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고 계획만이 중요했고 계획의 비중이 컸다면 이제는 점점 더 앞으로 나가는데 계속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만 2점이라는 1:2로 가져간다면 계획만 잘하는 것입니다. 실적은 별로 보지도 않더라, 계획만 잘해서 내면 1:2로 가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고 해서 다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관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을 대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1:1이라는 공평한 것을 두고, 공평하게 해 놓고 각자 심사위원회의 주관성을 개입시키는 것을 인정해야지, 한쪽에 1을 주고 한쪽에 2를 주고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전혀 공평하지가 않지요.

○ 심사위원

- 그래서 실적이 675점이나 됩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저기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우리가 평가를 안 한다고 해서 꼭 실적을 평가 안 하는....

○ 심사위원장

- ○○○위원님, 제가 한 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1:1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1:1로 가는 경우에는 실적 2, 계획 1로 된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부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심사위원

-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 2...

○ 심사위원장

- 1:1로 가게 되면...

○ 심사위원

- 750:250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 심사위원

- 저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방송평가 점수 505점이라는 것을 저도 100%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제도화되어 있는 평가 실적 점수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문제되면 '앞으로 방송평가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의견을 주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실적과 아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위원님과 ○○○위원님은 바뀌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두 분은 생각하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 심사 때 바꿨습니다'라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분명한 논리를 주장하려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쪽 해 오던 것을 이번에 처음 바꾼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교황 선출하듯이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지금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를 대변하고 소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 심사위원

- 소수,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 심사위원

- 아직 의견을 안 내셨으니까...

○ 심사위원

- ○○○위원님 최대한 해석하면 한 두세 분만이라도 반대하면 못 가는 것이다, 관행을 바꾸어서...

○ 심사위원

- 그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평가를...

○ 심사위원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로 상정을...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아주 많이 나간 발언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쭙봤던 것이 지금 ○○○위원님이 주장한 대로...

○ 심사위원

-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실적과 계획이 저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에 100% 동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신 것이...

○ 심사위원장

- 이미 실적이 저만큼 반영됐는데 반영된 점수를 무시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일 모레 글피에 해야 할 채점에서 실적과 계획을 1:1로 하자고 주장하신다면 이미 실적이 방송 평가에서 저만큼 반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면 2:1로 실적이 2, 계획이 1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약간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로 바뀌도 67점에서 75로 바뀌는 것이지, 갑자기 50:50에서 75:25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심사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적평가에 자기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지요. 전체에서는 그렇게...

○ 심사위원

- 의견이 다른 부분이 이미 505점에서 충분히 실적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495점에서 1:2로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또 실적의 이행 정도에 따라 계획의 적합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관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험에 의한 어떤 틀에 대해서 지금 꼭 바뀌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꾸 응보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가 조금 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를 실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종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있겠지요. 3년 첫 돌 정도 지난 방송사를 가지고 그동안 경제상황도 아주 안 좋았고, 또 뭐라고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적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들춰내서 과거 지향적으로, 예컨대 이런 것이겠지요. 재방송 많이 하고, 보도 편성비율이 어땠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에서도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산술적으로 675점에서 325점에서 750점, 20에서 75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심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임팩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역으로 굉장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재승인 심사가 과거 지향적, 미래 지향적 이야기하셨는데 재승인 심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을 보고 그 방송이 제대로 앞으로 할 수 있을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물론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고 과거는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발언이 전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전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종편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전체 발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점수 675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방송평가가 350점이 들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법인의 적정성이나 재정능력이나 승인 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들이 현재 실적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책임이나 시청자 권익보호의 경우에는 실적과 계획이 1:2로 나누어지면 여기에서 실적 부분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실적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것을 나누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 실적의 점수를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1:2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것만 따로 1:1로 하는 형식으로 바꾸든지 해야지요. 예를 들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이 실적이 45고, 계획이 95인데 이런 부분도 계획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어디에 무엇을 만들겠다, 물론 만들겠다고 해서 안 만들어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지요.

○ 심사위원

- 숫자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보입니다. 1,000점 중에 350점이 방송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0점이 남는데 650점을 반으로 나누면 1:1로 하는 것이지요. 계획과 실적을 1:1로 하시면 325점입니다. 그러면 325점과 방송평가 350점을 더하면 똑같이 675점입니다. 지금 방송평가 이외에 3개 항목이 실적으로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왜 방통위가 이렇게 실적 비중 505점이 나왔다고 이것을 먼저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안 쓰고 방송평가 350점, 나머지는 실적과 계획이 1:1 이렇게 했으면 똑같이 675:325가 나오는데 다른 항목들은 먼저 더하고 그것을 1:2로 하니까 마치 계획과 실적이 어느 쪽에 편중된 것처럼 표현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숫자를 보면 350점을 빼고 나면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1:2를 처음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예컨대 계획을 안 집어넣은 이유는 실적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적과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1:2로 평가할만한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요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부기준 항목은 심사위원에게 넘긴다고 해놓고 관행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관행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애초부터 그것도 방통위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냈어야지요.

○ 심사지원반

- 관행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관행을 바꾸려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지상과 심사에서는 1:2로 한 나름대로의 근거나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오랜 관행이라고 합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선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피평가회사의 점수를 본 다음에 관행을 바꾸면 굉장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기 전에 결정했더라도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점수를 본 이상 사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왜냐하면 방송평가 결과 점수를 봤기 때문에 그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미 보도가 다 된 내용입니다.

○ 심사위원

- 물론 보도가 됐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세부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견, 언론관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부심사기준을 결정하는데 돌아가서 세부심사기준을 없애고 영역별로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배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존중해야 할 것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이미 기존 배점한 350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성원이 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350점 배당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터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토대로 한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적기준으로만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계획요소가 평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실적으로만 봤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계획 부분이 반영돼서 배점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결국 총점에서 차지하는 것은 실적 부분은 어쨌든 675점이 되는 것이 명백하게 데이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획이 325점인데, 실적과

계획 325점이 우리가 방송평가위원회에 350점을 뺏기는 바람에 재량이 적어진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역할 한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675:325 실적과 계획을 그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나, 그 문제만 결론 내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객관성·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이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도 있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할 항목 중에 130점 가량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점수배분을 어느 항목을 무슨 기준으로 배정할 것인가, 그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 배점 부분에서는 관행과 기타 저희들이 재량 범위 내에서 그렇게 큰 영향이 위축되거나 침해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의 권한 박인 350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650점에 대한 배분을 지금 이대로 보면 반반 1:1로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조금 의문이 생기는 합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있어서 실적 대 계획 배분을 다른 지상과방송도 이렇게 비율이 배분됐습니까?

○ 심사위원

- 비율을 1:2로 맞췄지요.

○ 심사지원반

- 그때는 보통 1:2가 아니고 4:6 정도로 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총 1,000점 만점으로 하면 675점:325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때는 방송평가가 4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에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다른 항목에 비해서 공정성 등의 실적, 계획 비율이 45:95라고 해서 계획 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 심사지원반

-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항목이 불합리하다면 그런 항목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한 사례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상과 때에는 이것을 조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부분을 4:6 정도로...

○ 심사지원반

- 그때는 전체 비율을 4:6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전체 비율 2:1이 관행이 아니네요?

○ 심사지원반

- 2:1이 관행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675점이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총 비율은 똑같고, 조금씩 나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정 안 되면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똑같이 항상 2:1로 해야 한다면...

○ 심사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평가에서 빠진 부분이, 그러니까 빠졌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명시 안 된 평가 부분이 공적책임 부분과 수급의 적절성, 이 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도 되는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아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특정 분야만 고쳤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명분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가 앉아서 계산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실적을 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 45:95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25점과 675점은 맞추되, 그 부분에 실적을 80점으로 하고 계획을 60점으로 하고 그 밑 항목에 실적을 40점으로 하고 계획을 30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을 50점으로 하고 계획을 20점으로 하고, 재정적 능력은 아까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가 여기에서 빠진 점수가 65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총 점수 325점은 같지만 제가 말한 대로 문제가 있었거나 우리가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기획·편성의 적절성 이런 부분의 실적을 좀 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 심사위원

-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근거를 대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지금 구체항목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명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렇게라도 우리들이 하겠다고 합의를 보면 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하면 계획은 1:2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2는 변함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래서 우리는 바꿨다'라고 전부 동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 그것을 여쭙보고 싶은데 그렇게 세부항목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다 근거를 대야 합니까? 전체적인 675:325 기준에 하던 룰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것은 그대로 되니까....

○ 심사위원

- 세부항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사위원

- 방통위에서 말씀하셔야지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은 대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수는 놓아두고 세부항목의 점수를 조정하는 것이니까요.

○ 심사지원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 계획 부분을 여기에서 잘라서 넣었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 계획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과 조직·인력 운영에 보면 2개가 미래 계획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계획의 이행실적과 향후 전략 부분에 재정적 부분이 계획적인 측면이 포함됩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방송평가와 중복성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두 항목 정도를, 그 점수가 큼니다. 그것을 조정해야지, 아주 많은 항목을 건드리는 것은 만약에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건잡을 수 없는 지도찾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 계획 비율 배점이 최대 1:2를 넘지 않는데 물론 5점, 15점짜리 하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배점 작으니까 논외로 하고, 공정성 부분이 45:95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 2배라고 하더라도 과하게 계획 쪽에 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하면 그렇게 큰 노력 없이 간극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여쭙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개요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사항, 심사항목까지는 심사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심사항목이지, 세부심사항목이 아닌데 해도 됩니까?

○ 심사지원반

- 그 밑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이 밑단에 가서 배점을 바꾸는 것은 되는데, 심사항목의 배점을 바꾸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인지, 아닌지...

○ 심사위원

- 배점이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이 배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적과 계획 간의 비중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심사항목의 배점은 140점이지요. 그것을 안 바꾸면 문제는 없지요.

○ 심사위원

- 개요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을 이야기하는지, 배점은 심사항목에 관한 배점이든 세부심사항목에 관한 배점이든 다 오픈되는지...

○ 심사위원장

-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배점은 총점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심사사항 대분류의 배점도 저희가 혼드는 것이지요. 심사항목의 배점도 할 수 있고....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실적과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게까지 따지면 방송평가 점수를 350점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심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이 아니고....

○ 심사위원

- 이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된 것은 방송평가는 350점, 공적책임은 140점, 시청자권익보호 70점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못 건드리고, 그 아래에서 배점이든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배점을 또 나누어주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실적과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세부심사항목이라고 분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심사위원

- 그런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그러면 저희가 총점 기준에서 실적과 계획 간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적책임·공정성 부분의 실적을 높이고, 또 나머지 어디 이야기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만 하면....

○ 심사위원

- 세 분이 했는데 의논하시고요.

○ 심사위원

- 그것은 많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시청자와 기획·편성의 적절성은 이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엉터리 평가라고 하더라도 이미 점수가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중복평가가 많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들은 잘 안 하시지만

중편PP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공정성 문제였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바꾸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편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왜 심각하냐 하면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편성 부분은 굉장히 중시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획의 배점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편성·기획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올려놓았는데 실적을 더 중시하고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렇지 않는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문제가 됐다면 아마 엄청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편성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사업자가 신경 써서 했다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배점이 계획 부분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대부분 시뮬레이션들을 다 해 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러면 공적책임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실적과 계획을 1:1 정도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정해서 총점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금 이따 보고드릴 테니까 다음 논의를 진행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그리고 한 항목 내에서 공정성...

○ 심사위원

- 그것과 나머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것만 맞추고 다른 부분을 약간 조정해서 비슷하게 맞추면...

○ 심사위원

- 아까 다른 것도 하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없는 것 수급의 적절성...

○ 심사위원

- 수급의 적절성이 여기에 없습니다. 수급의 적절성은 실적과 비슷비슷한데 그것 또한 절반 절반으로 빼지요.

○ 심사위원장

- 그 항목이 제작·협력의 적절성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제작·협력이 아니고, 제가 다 뒤져봤는데 평가에 수급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심사지원반은 그것 작업해서 다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잡혀 있는 시간에서 50분이 남았는데, 지금 1:1이나 이것 가지고 논의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제 느낌이 종편3사의 성적표가 나오는데 크게 봐서 2개로 야단을 맞더군요. 하나가 편성의 원칙을 깼다, 보도프로그램이 과다하다, 재방이 과다하다. 오락이 많고 보도는 부족하고, 그런 것이나 또는 콘텐츠 개발에 투자가 미약했다는 것이 큰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법적 의무사항의 위반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출한 계획서에서 약속이행이 미진하다는 것인지, 분명히 법을 어긴 것과 약속을 어긴 것과는 죄과가 다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채점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정보도위원회, 편성위원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요즘은 미방위에서 국회가 난맥상을 이루는데 원인이 됐던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예민한 문제인데, 편성위원회가 방송법에 있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지상파방송과...

○ 심사위원

- 승인해 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상파방송인데, 종편PP에...

○ 심사위원

- 종편PP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종편PP도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 항목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겠다, 저런 위원회를 두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표현이 조금 그러신 것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법 위반이 됐으면 이미 다른 데에서 다 감점되고...

○ 심사위원

- 법에 위법됐으면 승인 자체가 최초부터 안 됐지요.

○ 심사위원

- 이미 다른 데서 다 감점이 되고 반영됐겠지요. 어차피 법에 위반된 것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부터 법 위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평가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이 약속 위반인지, 법 위반인지….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항목이 전부 약속 위반입니다.

○ 심사위원장

- 약속 위반이지요?

○ 심사위원

- 예, 법 위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약속 위반이 더 문제지요.

○ 심사위원

- 법 위반이나, 약속 위반이나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법 위반 문제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 심사위원장

- 아까 평가서를 보니까 그것으로 도배했습니다.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공정성에서 막 말한다, 저쪽 연사나 평론가는 아예 자리에 앉히지도 않는다, 편파방송이다 이런 비난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손을 본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쉬시지요.

○ 심사위원장

- 예, 그러실까요? 그러면 그것 준비해서 한 15분 후에….

○ 심사지원반

-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 안 하십니까?

○ 심사위원

- 아까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 심사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유인물 받으셨지요? 다 이해가 되시지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원래 45:95 이었는데 60:80이 됐고, 그 다음에 시청자 권익보호가 25:45가 20:50이 됐고, 기획·편성의 적절성이 25:45였던 것이 20:50이 돼서 합계가 680:320이 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첫 번째 네모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기획·편성의 적절성에서 25:45인데 이것이 20:50의 오타입니다.

○ 심사위원

- 25:45 그대로지요?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20:50으로...

○ 심사위원

- 20:50 있습니다.

○ 심사위원

- 20:50으로 나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나와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 심사위원

- 위에 글자가 2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 다음 보도PP에서는 공적책임이 80:100으로 됐는데 원래는 60:120이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지금 세부심사기준 항목 말고 다른 항목들도 같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 말고 아까 우리가 유보했지요? 세부평가 항목에 대해서 더 토의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받은 것 중에 종편·보도PP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유인물 <보고-나> 5페이지에 보면 <4> 조치방향 밑에 '이행이 미흡한 항목 중 재방비율과 콘텐츠 투자실적은 과징금 처분했으니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 밑에서 '그 과징금 처분은 시정명령 횟수와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에서 감점처리'라는 말은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과징금에서 감점처리가 되니까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원래 감점처리하는 것으로, 계량평가하는 것으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해서 평가하는 것을 유의하라는 의미지요. 원칙적으로는 이미 점검결과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시정명령으로 몇 점 감점처리됩니까?

○ 심사지원반

- 세부심사 기준에 보시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4점인가...

○ 심사지원반

- 과징금 5,000만원 이하는 -5점입니다.

○ 심사지원반

- 시정명령...

○ 심사지원반

- 시정명령은 -4점입니다.

○ 심사지원반

- 아직 세부심사 안건이 다 안 끝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뒤에 나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여쭙보는 이유는 심사항목 배점을 조정하면서 기획·편성의 적절성에서 실적을 20점, 계획을 50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편성의 적절성은 어떤 항목을 봐야 할지, 무엇을 보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편성비율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항목의 실적이 가장 중편에서 문제가 돼서 시정명령까지 받은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는 재량은 20점으로 줄어든고, 여기에 시정명령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가장 부각되는 문제인데 평가의 폭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반영했는데 이것을 평가에 굳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배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 배점을 그대로 살리고 다른 항목 배점 실적 부분을 내리는 방안이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지금 가지고 오신 것도 하나의 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적책임율 60:80으로 가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니지요? 지금 그것을 결정하고 있지요?

○ 심사지원반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동의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점수를 만들어 오셨는데 아까 여러 분이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공적책임이 60점과 80점으로 바뀐 것은 아까 논의한 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시청자 권익보호와 기획·편성의 적절성이 계획을 5점씩 오히려 더 늘려줬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원상대로 그냥 가고, 수급의 적절성이 방송평가 부분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수급의 적절성을 25:25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니냐....

○ 심사지원반

- 그렇게 하면 실적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15점이 늘어나 있는데....

○ 심사위원

- 거꾸로 시청자 권익보호와 기획·편성의 적절성 계획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적책임은....

○ 심사위원

-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가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쪽을 할 수 없이 더 늘려 주느라고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680점, 320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것만 조정하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총점은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내부 조정을 하자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

- 675점과 325점은 매년 심사 끝날 때마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자들이 675점, 325점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실적과 계획이라는 그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이 내부 관행과 외부에서의 인지 문제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백서로 다 공개가 됩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 실적, 계획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670점을 675점으로 배점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렇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675점, 325점은 어떤 의미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675점이었고, 325점이었다고 백서에 써놓았습니까?

○ 심사지원반

- 백서에 675점으로 분명히 명시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해석하기에 실적이 이 정도 된다는....

○ 심사위원

- 또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이 백서를 보고 사업자들이 실적과 계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영했구나라는 점수 분류가 표시되니까, 아니면 공적책임성이 140점 이렇게만 백서에 나오니까?

○ 심사지원반

- 거기는 실적과 계획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는요?

○ 심사지원반

- 예, 세부심사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공적책임 부분을 140점 배점했는데 실적을 얼마 했다는 것이 백서에 나오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배점을 이렇게 바꾼 것을 가지고, 5점을 바꾸어서 나중에 밖에서 5점을 바꿨느니 말았느니 논의가 된다면 이것이 의미 있는 변화입니까?

○ 심사위원

- 차라리 안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저도 웬만하면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서 오히려 크게 개선된 것이 없으면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에 이만큼 우리가 신경을 썼다는 것은...

○ 심사위원

- 신경 쓴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역으로 무슨 이야기하고자 하면 5점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바꿀 것이면 확실하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은 딱 1:1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수치가 700점대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저도 5점을 바꾸는 것은 괜찮고, 10점은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주 자의적인 것 같습니다. 아예 못 바꾸면 못 바꾸는 것이고 바꾸면 바꾸는 것이고, 5점은 괜찮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항목을 바꾸기 위해서 밑에 시청자 권익보호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바꾸는 것은...

○ 심사위원

- 그것까지 건드려지니까 다른 데서...

○ 심사위원

- 점수가 거기에서 빠지니까...

○ 심사위원

- ○○○위원님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만 우리가 이번에 중시하게 보겠다고 해서 그것만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1:2의 총점은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만 바꾸자...

○ 심사위원

- 680점에 320점도 사실은...

○ 심사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굳이 1:1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조정하는 것이 나은지, 그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 심사위원

-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지...

○ 심사위원

- 원안과 아까 ○○○위원님 말씀을 따르다면 50:90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무엇을 50:90으로 바꿔요?

○ 심사위원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 심사위원

- 5점만 바꾼다고요?

○ 심사위원

- 5점이 더 가는 것이 1:1 비율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이 더 낫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분명한 안은 공적책임·공정성 이렇게 조금씩 바뀌서 나중에 675점, 325점을 못 맞출 것이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은 50:50으로 딱 만들어 놓고, 다른 것도 같이 흔들어서 675점이 아니라 700점 또는 710점이 나와도 우리가 감수하고 가자,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은 실적과 계획이 1:1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안이 하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에 동의...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우리가 대충 합의를 봐서 이렇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바꿨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안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전에 다들 일어나서 간 이유가, 그리고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가정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 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나가자고 하면 뭐 하려고 조금 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해야지요. 지금 이것은 됐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자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논의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되는 중에 '쉬었다 합시다'라고 해서 중단이 됐고, 저희가 확실히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제로베이스에서,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합시다.

○ 심사위원

- 저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원안으로 가는 것 <제1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 심사위원단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배점을 이것만 1:1로 바꾸었다, 그 두 가지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바꾸게 되면 다른 항목도 다 미세 조정해야 하니까....

○ 심사위원

- 조정을 안 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총점이 달라집니다.

○ 심사위원

- 5점이 달라지나 30점 달라지나 어차피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밖에서 675점, 325점으로 계속 관행이 알려졌다면....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일단 계수를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고쳐야 하니까....

○ 심사위원

- 하나만 고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공적책임 항목만 계수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총점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140점이니까 70:70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합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690점과 310점이 되네요.

○ 심사위원

- 690:310....

○ 심사위원

- 300점...

○ 심사위원장

- 300점에 왜 10점이 빠졌습니까?

○ 심사위원

- 원래 것은 안 바꾸는 것이니까...

○ 심사위원

- 다른 것들은 손 안 대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 말고 원래 나눠준 것에서 공익성 부분만 70:70 1:1로 맞추고, 그에 따른 총점의 변화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안이 제기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실적에 25점이 추가되고, 계획에서는 총점에서 25점이 빠지는, 7:3 구조가 되지요.

○ 심사위원장

-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적책임에서...

○ 심사위원

- 공적책임이 70:70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쪽 가고, 아래 총점만 700:300이 되는 형태입니다.

○ 심사위원

- 왜 이렇게 바꾼다고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라는 것이 방송의 핵심 개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1로 뒀다면 상징적인 의미 플러스 실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상징성은 있는데 법에 채승인 심사사항에 보면 균등하게 <1>부터 시작해서 쪽 나열되어 있는데, 특정 항목에 저희가 특별한 가중치를 줄 수 있는...

○ 심사위원장

- 그런데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 재량권이 심사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심사위원

-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항목당 배정된 실적과 계획의 비율을 놓고 보면 1:2가 아니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전체를 1:2로 맞췄다, 이것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까 논의할 때 원래 이 안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을 맞추고 대신에 1:2 비율을 되도록 맞춘다는 근거에서 한다고 아까 이해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되면서 이 안이 오고서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열심히 말씀드린 것이 관습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1:2라는 비율을 바꾸면 거기에 따르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원래 뭔가를 바꿀 때에는 입증할 책임이 바꾼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하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이것도 나오면 뭔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은 과거의 관행을 보고 했는데 갑자기 심사하면서 바뀌면 그 사람들은 그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네가 심사를 신청할 때 그것이 어떻게 돼서 합격하고 불합격된다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이것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타당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1:2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익성 부분이 45:95입니다. 이것 1:2 아닙니다. 시청자 권익보호도 25:45인데 1:2 아닙니다. 기획·편성의 적절성 25:45인데 1:2 아닙니다. 수급의 적절성 20:30로 1:2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1:2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1:2의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변이를 하면서 적절히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심사위원

- 1:2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675:325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비율을 대체로 지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꾸면 타당한 이유를 대야 하고, 대체적으로 실적과 계획을 1:2로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675점과 325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왕설래하니까 저희가 공정성을 바꾸어서 중요한 것을 해서 675점과 325점 비율을 대체로 맞추되, 그 중요한 비율을 우리가 좀 더 불만 있는 항목이니까 바꾸자,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바꾸면서 동시에 675점과 325점을 바꾸자고 하니까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수치는 여기에서 675점과 325점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사무국에서 한 그 안이 더 가깝다?

○ 심사위원

- 가깝지만 그것도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5점 큰 variance가 맞지 않으니까....

○ 심사위원

- 제가 내는 것은 이 점수를 지키는 한도에서 우리가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저 점수 비율을 지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을 흔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은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심사위원

- 물론 5점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조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그것을 바꾸면 점수가 크게 흔들리지요. 675점과 700점과는 받아들이는 임팩트가 다릅니다. 앞에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675점, 325점은 이전의 지상파 케이스에서 그렇게 적용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가 끝이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세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전에 할 때 타협안으로 세부안은 바꾸되, 큰 점수는 유지하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가능한지 일단 물어본 것이었고, 어쨌거나 우리가 브레이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을 때 기획·편성의 적절성과 시청자 권익보호가 여기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저는 거기도 오히려 높였으면 좋겠고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조정된 것이 겨우 5점이 조정됐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또 빠졌고, 이것은 5점 올리면서 굉장히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대전제가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하기를 이 대전제를 유지하면서 절충안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면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한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이 크게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설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만약 심사위원단의 의견이라면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견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되니까 이제까지 논의를 새로 할 것 없이 지금 나와 있는 안으로...

○ 심사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대충 서로 맞춰서 절충했는데 보라, 이것 바꿀 수 있으니 다시 또 크게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나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볼 때 이것이 오면서 이쪽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그런 결과를 받게 돼서 다들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 심사위원

- 논의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을 때 방송평가의 비중이 높아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적과 계획을 나눈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방통위 와서부터입니까?

○ 심사지원반

- 2010년 전까지는 방송평가 500점, 재승인 심사위원회 500점이었습니다. 양쪽 평가위원회 점수가 500점이었는데...

○ 심사위원

- 그리고 거기에 실적, 계획이라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요?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실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그때는 몇 점대 몇 점이었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그때의 느낌과 지금과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그때 방송평가 비중이 아주 높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제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우리 심사위원이 할 일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 심사지원반

-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실적과 계획은 작년도 지상과 재허가 때입니다.

○ 심사위원

-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관행이 아니네요.

○ 심사위원

-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재허가 심사나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실적 및 계획을 한꺼번에 평가하니깐 어떤 분들은 실적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종편PP 이전에도 계속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아마 그것 관련해서 연구반이 꾸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2008년 이후에 재승인 심사에 굉장히 자주 들어왔었는데, 그때마다 심사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나누는 제도는 나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평가 항목의 배점이 달라진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 심사위원

- 실적과 계획을 나누는 논리적인 것에서는 저도 수궁이 갑니다만 계획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32.5%를 차지해서 우리가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한 우리의 평가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저는 방통위원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난번 한 번의 사례가 있고 이번이 두 번째고 관행이 아니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675점은 지켜야 한다고 방통위에서 의결한 사항도 아니라면 적어도 실적과 계획이 1:1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총점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중요한 관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직되게 사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가 ○○○위원의 제안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장짜리로 세 항목을 조정한 것을 통과해서 680:320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한 항목에 대해서만 70:70으로 해서 그것이 700:300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안입니다.

○ 심사위원

- 말씀드렸는데 방송평가를 제외하고는 325:325로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논의했던 것인데 자꾸 1:1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350점 방송평가를 제외하면 실적과 계획이 50:50입니다. 다만, 재정적 능력과 신청법인의 적정성, 그다음에 승인 시 부여된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실적으로만 배점해 났다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근거가 실적과 계획은 1:1이어야 한다는 것이 만약 설득력을 얻으려면 방송평가를 제외하고는 1: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먼저 해야 1:1.5로 하든 1:2로 하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신청법인의 적정성도 실적, 계획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면 그것을 지금 점수는 같으니까 1:1로 하자면 이 점수 다 뒤집어서 우리가 조정해야겠지요.

○ 심사위원

-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아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장

- 두 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680:320, 700:300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좋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일 마지막 제의가 700:300입니다. 공적책임에 대해서만 70:70으로 가져가서 소계가 700:300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두 번째 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 것만 바꾸는 것...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안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세 항목을 조정해서 합계가 680:320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기존 675:325 안과 700:300 안,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것은...

○ 심사위원장

- 기존 안이 바뀌었지요. 두 번째 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680:320 안대로 수정해서...

○ 심사위원

- 한 분이 기권하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기권했는데 <제3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원안을 상정하지 않아서...

○ 심사위원

- 두 가지 안만 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원안도 만약에 안을 만드시면 그쪽으로 몇 표가 갈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원안에 대한 의견을 못 들어서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방통위에서 조정한 것이 680:320인데 기존 안이 675:325면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큰 의미 없다...

○ 심사위원

- 원래 처음에 제안했던 안을 생각하신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차라리 그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안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을 변경해야겠다고 주장하신 위원님들께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표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이 변화를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것이 맞고, 저도 원안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안을 확실히 2개로 갈지 3개로 갈지 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이미 거수로 해서 끝난 이야기인데...

○ 심사위원

- 지금 원안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 심사위원

- 기권은 한 분입니다.

○ 심사위원

- 기권은 여기이고, 지금 원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 심사위원

- 어차피 의견은 안 바뀌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시지요. 그러면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 심사위원

- 3개로 나누어서 과반수 나오는 것으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다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확실히 첩판에 <1>, <2>, <3>으로 써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되니까....

○ 심사위원

- 의결정족수 규정은 없습니까?

○ 심사위원

- 과반수 규정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8표가 안 되니까 어차피 재투표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시 재투표하겠습니다. 최종 제시된 안이 한 항목 공적책임에 대해서만 실적과 계획을 70:70으로 동등하게 되서 결국은 합계가 700:300이 되는 것이 <제1안>입니다. 그다음에 <제2안>은 아까 1장으로 조정해서 나온 것, 세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공적책임에 대해서는 60:80, 시청자 권익보호는 20:50, 기획·편성의 적절성은 20:50으로 해서 합계가 680:320이 <제2안>이고, <제3안>은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과반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심사위원

- 상위 2개 가지고 하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1안>이 공정성에 대해서만 70:70 동일하게 점수를 배점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700:300으로 만들자는 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섯 분입니다. <제2안> 3개 항목을 바꾸어서 총점이 680:320이 되게 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그다음에 <제3안>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과반수가 안 되므로 2개의 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1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한 군데 공정성 70:70을 놓고 합계가 700:300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섯 분입니다. <제3안>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제3안>으로 아무런 수정 없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 심사위원

- 그전에 <제1안>, <제2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점...

○ 심사위원

- 행정처분 하나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문제제기하신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토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나머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소송중인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어느 것이든지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9페이지 그 사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9페이지 사안 아닙니까?

○ 심사위원장

- 9페이지도 역시 감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지요?

○ 심사위원

- 10페이지에 <제1안>, <제2안>이 나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점 유예할 것이냐, 포함할 것이냐, 이 두 가지네요?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집행정지를 요구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로 저희에게 전달하신 것이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심사지원반

- 거기에는 이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심사지원반

-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논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장

- 여기에 장점, 단점해서 <제1안>, <제2안>으로 나뉘겠지요.

○ 심사위원

-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요구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것은 검토의견에 감점 유예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현재 <제1안>, <제2안>은...

○ 심사위원

- 적용하자는 이야기이고 하나는 적용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요? 적용하면 집행정지 신청이 있는 것도 감점을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논의해서 감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제1안>은 소송 중인 것에 대해 감점을 안 할 수 있고, <제2안>은 감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먼저 우려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인용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볼 때 집행효력이 일단 정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1안>, <제2안>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 나머지 소송이 제기됐지만 집행정지가 전혀 신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1안>은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유예할 것이냐...

○ 심사위원

- 제가 이해한 것이 맞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어쨌든 영업정지 방송 불허 처분을 내리면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소송을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부분은 행정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이 오더라도 어쨌든 행정처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안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요구를 결정하기 전에 행정처분을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고 다른 행정처분, 과태료보다 더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6페이지 보면 과태료, 과징금, 심의제재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예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패널티의 사유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정처분에 대해서 또 집행정지가 내려진 처분과 집행정지 신청이 안 된 처분과 갈라서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고 행정소송을 다투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회사도 있을 텐데 집행정지를 받은 회사와 집행정지 결정을 안 받고 소송을 다투는 회사를 차별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중에 있는 것은 재판 종료될 때까지 감점요인으로 안 삼는 방법이나,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집행정지 받은 것만 감점사유로 안 삼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집행력 관련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행정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행적으로 불이익한 패널티를 부과 안 했다는 과거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다투는 경우, 그다음에 집행정지를 별도로 받고 나서 소송하고 있는 경우 다 포함해서 감점요인으로 삼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첨언 드리면 집행정지는 우리가 민사상의 가처분과 같이 잠정적인 권리문제 제도입니다. 물론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판사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만 본안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했거나 혹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경우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사건을 달리 취급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없고, 우리의 경우에는 소가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행정청의 효력이 제거되지 않은데 외국의 입법 예를 보면 소제기와 더불어 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단 시까지 잠정적으로 Pending이 되는 입법 예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사소송에서 예를 들어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찌 보면 궤를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볼 때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의 인용 내지 신청 여하와 무관하게 감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컨대 감점을 해서 탈락이 됐는데 본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이 확정되면 이것은 대형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체성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송 제기 중인 것이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9페이지 <표>에 보시면...

○ 심사위원

- 법령위반 건수는 많은데 소송 중인 것은 10건이네요.

○ 심사위원

- 저도 같은 결론인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만약 감점에서 제외하면 이것 제외 받으려고 계속 소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만약 소송에서 규제기관이 졌을 때 부당하다고 했을 때의 파장이 더 큼니다. 그것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 감점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관행이 그래 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감점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영업정지 그럴리 없겠지만 했다면 정말 굉장한 엄청난 손해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남소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보니까 그 다음 해에 감점하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소송은 제기해야지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하게 놔두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내년엔 감점 받고 없으면 안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세 분의 법률가 법학자 분들께서 의견이 일치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예가 맞다, 따라서 이것은 투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예한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세 분 말씀하신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나오신 것 같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는 제 의견을 말해 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역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남소의 문제를 떠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로 탈락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3~4점짜리 때문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짝 통과하는 미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저는 지금 잠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만 조건부 승인 대신 나중에 거기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만약 본안 가서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단순히 감점을 나중에 합치는 것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 형태가 될지, 예를 들면 650점이 넘어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50점이 내려와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고, 따라서 650점이라는 기준점에서 이것에 따라 651점이 됐는데 사실은 649점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조건부 승인 개념 같은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구체적인 사안에서 라인에 걸려 있으면 소위 해제 조건부 승인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 심사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의결을 다수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 심사위원

- 거기에 제가 말씀하신 것에 많이 동의하시니까 추가로 해서....

○ 심사위원장

-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유예가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심사위원

- 거기에 지금 하신 의견을 달아야지요. 그럴 경우에 달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단서를 달자, 가령 조건부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몇 점 때문에 당연히 탈락할 방송사가 살아났다는 것을....

○ 심사위원

-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 본안 소송이 끝나서 감점이 될 수 있는 것을 합쳐야 한다면....

○ 심사위원

- 패소해서 감점대상이 됐을 경우 해제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이 되게.... 이것을 어떻게 문서로 제시합니까?

○ 심사위원

- 그런 처분은 행정청에서 다수 내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제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데....

○ 심사위원

- 해제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승인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로 달아놓은 것까지만 저희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방통위에 넘기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조건부 승인 권한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요. 의견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만약 사업자가 지면 이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방통위가 의결사항으로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하겠지요.

○ 심사위원장

-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제가 다시 리플레이징을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 심사위원

-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의결하려면 <제1안>이나, <제2안>에 대한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견 달고는 싶지만….

○ 심사위원

- <제1안>, <제2안>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제1안>, <제2안>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런 단서를 달면서 유예하는 것으로 거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려면 다음 허가승인 때까지….

○ 심사위원

- 다음 허가 만료기간까지 갑니다.

○ 심사위원

- 11페이지 보시면 재정적 능력이 있는데 대부분 다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을 구하면 다 마이너스여서 이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 총자산증가율도 총자산 초기 투자가 이루어져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유동비율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총자산증가율을 매출액증가율로 했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

- 설명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세 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재무적 안정성을 보는 지표가 있고, 두 번째는 수익성을 보는 지표, 세 번째는 성장성을 보는 지표인데 대표적인 지표가 안정성의 경우 부채비율, 부채가 얼마나 많냐를 보는 것이고, 또 금방 말씀하신 유동비율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수익성 비율이 결국 문제인데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계획에도 거의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안 났는데, 수익률이 안 나는 회사들의 수익성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성을 보는 지표가 총자산증가율이 라고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또 다른 대체 지표가 매출액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자산 역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손실이 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지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만약 성장성 지표를 쓸 것이라면 매출액 증가율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방송평가할 때 했던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했지요.

○ 심사위원

- 해서 똑같이 또 평가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회계사 분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번 심사 때 꼭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업자 심사에 꼭 들어갑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바꾸면 평가 결과 점수에 영향을 줘니까?

○ 심사위원

- 어차피 점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나니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어느 기업은 조치되고...

○ 심사위원

-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 심사위원

-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

○ 심사위원

- 왜냐하면 다 손실난 기업을 평가하라니까 평가지표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 심사위원

-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있을 수 있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지금 평가를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 심사위원

- 그래서 점수가 낮은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조금 헛갈리니까 모든 회사에 의미가 없으니까...

○ 심사위원

- 점수가 낮은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면 다 0점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최대점수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부채비율은 그것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방통위 안은 당연히 마이너스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려면 그것이 마이너스니까 다른 지표로 바꾸자는 논의를 하시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최저점 설정 <제1안>과 <제

2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시고 이 논의가 합리적이라면 한 번 더 논의해서 다른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써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이라는 것은 일단 큰 마이너스와 작은 마이너스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것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최저점일 것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러면 최저점을 <제1안> 방식으로 해서 최저점을 40%, 그러면 25점 만점이면 10점, 40%면 10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최저점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를 최저점으로 하는 것이지요. 25점에 20%면 5점, 어느 최저점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 논의를 하자고 있는 자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시고 이것도 불만족스럽고, 만일 지표 자체를 바꾸어야겠다 면 그것은 논외로 한 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데이터를 모르니까 아니면 주는데 내려가면 최저점으로 막는 것이지요. 거의 확인이 돼서 아시지만....

○ 심사위원

- 이것이 0점 처리를 안 하는....

○ 심사위원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제2안>이 되면 최하 5점은 획득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2안>이 되면 최하 5점, <제1안>이 되면 최하 10점 그런 셈이지요.

○ 심사위원장

- 위원님들이 이 항목을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방법....

○ 심사지원반

- 추가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지표 세 가지에 대해서 약간 조정 가능성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 밑에 참고표시에 보시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에 대해서 각각 지표가 2개씩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상파 재허가 때와 방송평가 때 사용했던 것을 표시해 놓았는데 방송평가 때 보시면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이 네 가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있는 2개의 지표를 썼고, 수익성 하나, 성장성 하나 이렇게 지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파 재허가 때에는 나머지 수익성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방송평가에서 평가됐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만 지상파 재허가 때 썼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중에서 방송평가에서 네 가지를 썼고, 지상파 재허가할 때 두 가지를 따로 더 추가해서 썼습니다. 저희는 이 항목을 정할 때 3년 전에 최초 승인 날 경우에 각 종류 중에 하나씩 해서 세 가지 지표 쓴 것을 참조했습니다. 또 방송평가에서 이미 평가가 됐던 네 가지 지표는 중복을 안 하려

고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수익성 중에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성 중에서 총자산증가율을 포함하고 대신에 안정성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만든 것입니다. 세 가지 지표를 쓴다는 가정 하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지표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지표를 다시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종편에게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가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물론 사업초기 단계에 가질 수 있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된 부분들을 바꿀 경우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일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보다 보니까 방송평가가 조금 높게 나온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심사위원

- 똑같습니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은 다 마이너스였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모르지만 매출액증가율은 달랐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채비율 세 가지도 다 제안에 불과하니까 고른다면, 그러나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앞에서 안 한 것에 해 보자는 취지는 동의할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첨언하면 우리 자체가 모든 회사가 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분들께서 그중에서 무엇이 가장 타당한 항목이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나중에 점수로 나타나면 상대평가가 아니고 각각 받는 숫자에서 650점 넘느냐, 안 넘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 40%로 하려는 이유가 개별 항목에 40% 이하가 되면 조건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항목이 40% 이하가 되면...

○ 심사위원

- 그것이 있네요.

○ 심사위원

- 그런데 40% 이하가 됐는데 사실은 조건부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돈 더 벌어와'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모하니까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40%라도 줘서 유예를 해 주자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20% 하면 조건부가 붙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본을 더 늘리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제 느낌에 40%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40% 이하면 일단 조건부는 기본이 되네요.

○ 심사위원

- 예, 한 항목이라도 낙제점수가 40%에 걸려 있으면 조건부에 들어갑니다.

○ 심사위원

- 그 말씀이 맞습니까? 대분류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40% 미달일 때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이 대분류 아닙니까?

○ 심사위원

- 대분류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까지 포함해야만 40%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재정·기술 합해서입니까?

○ 심사위원

- 예, 그것이 대분류 심사사항이니깐요.

○ 심사위원

- 제가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견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방송시장 환경에서 어떤 회사라도 4년 이내에 자본금 까먹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갑자기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없는 시장입니다.

○ 심사위원

- 계속 심사에 영향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현실은 맞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놓고 보면 이것을 강하게 매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4년 동안 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재무상태를 좋게 해 보려면 한국 방송시장에서는 약탈적 경영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외주제작사를 약탈 착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하라고 하면 완전히 이 시장판을 도둑질 판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데도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한국의 방송에서 평가기준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때가 많습니다.

○ 심사위원

- 약탈적인 것은 어디에서 평가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거래관계가 평가되기는 하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 심사위원

- <제1안>, <제2안>을 방통위에서 올렸는데, 둘 중에서 하나를 꼭 골라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에 상관없이...

○ 심사위원

- 그래야겠지요. 30%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심사위원

- 현재 <제1안>, <제2안>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꼭 이 2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최저점은 꼭 설정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그것도 아니지요. 그것도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그것도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은 아니고...

○ 심사지원반

- 0점으로 하면 그것이 최저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해야지요.

○ 심사위원

- 최저점 설정을 안 하면 0점이 최저점이 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신생매체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라는 것이 조건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 판단해서...

○ 심사위원

- 이것이 계량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량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전혀 없으니까...

○ 심사위원

- 정성평가가 불가능합니다.

○ 심사위원

-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 심사위원

- 방송평가의 경우에는 이 사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쓸 것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감점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모든 사업자에게 쓰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0점 처리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방송평가에서 이미 이 부분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다고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하면 할수록 부채비율이 늘어난 상황도 역설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3개 사업자를 0, 0, 0으로 간다는 것이 합당하느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사업자들이 재무적으로 불건전해도 과연 0이냐, 재무적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심사위원장

- YTN은 <제1안>입니까, <제2안>입니까?

○ 심사위원

- 채널Y?

○ 심사위원장

- 아닙니다.

○ 심사위원

- 뉴스Y요?

○ 심사위원장

- 일반 지상파나 이런 것과 비교할 때...

○ 심사위원

- 일반 지상파는 밑에 20%를 적용하지요. <제2안>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재허가 시에는 20%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YTN도 재허가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보도PP도 재승인 심사를 받는데 거기도 2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전화해서라도 YTN을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YTN은 벌써 몇 번 받았으니까 있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지상파에도 이 항목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 심사위원

- 지상파도 재무건전성이 꼭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 심사위원

- 최저점...

○ 심사위원

- 최저점은 들어갑니다.

○ 심사위원

- 부채비율, 자기자본이 지상파에도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냐고요.

○ 심사위원

- 거의 비슷한 항목이겠지요.

○ 심사위원

- 아까 지상파에 6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앞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이 두 가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③번과 ⑤번 항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 자체가 지상파할 때 들어갔습니다.

○ 심사위원

- 지상파는 총 6개가 들어갔지요?

○ 심사지원반

- 그러니까 방송평가에 4개가 들어간 것이고, 2개가 별도로 추가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신생매체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40% 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40% 이하로 주면 전부 다 탈락이라는 변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죄송한데 지상파 말고 케이블방송사들은 몇 퍼센트 적용되니까?

○ 심사위원

- 일반PP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 SO들은 할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SO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찾아봐야겠는데요. 여기에 SO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YTN의 비율은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YTN도 벌써 네 번 이상 받았습시다. 서너 번 받았으니까 그것도 한 번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YTN도 지상파와 비슷하게 오래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 심사위원

- YTN도 2002년도까지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유예했는지 봐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케이블TV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이 항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굳이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금 초기라고 빼면 나중에 집어넣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책의 연속성으로 해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도한 것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저점에 있어서 만약 0점을 주게 되면 각 방송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좋은 방송이 된다고보다는 오히려 싹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방송이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생적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자생적이 됐다는 시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 심사지원반

-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결국 주관적 판단인데 예를 들면 3년이나 4년이라면...

○ 심사지원반

- 지금 법령에 5년으로 정해져 있고, 3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이번에 한 3년 하겠네요? 5년이든 3년이든 5년 후, 3년 후에 여전히 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따라서 이것은 신생매체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시기나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안을 논의할 때 0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 0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것만 논의한 것처럼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0점을 받는다면 조건부 재승인이 되지만 조건부에서 재승인할 때 조건을 거는 것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라' 이것을 거는 것이지, 다른 것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항목 하나를 가지고 다른 항목에서는 점수를 같이 못 딸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약탈적 영업 이야기하는데 약탈적 영업은 방통위가 정확하게 제재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 이런 지표들을 들이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심사하러 온 것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0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상파도 했더니깐 20%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심사위원

- 셋 다 계량평가니까 시뮬레이션해 봤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에 못 미달한다고 가정하면 17페이지 보시면 재정 및 기술적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를 주면 65점에 20%가 13점입니다.

○ 심사위원

- 그중에 재정적 능력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재정적 능력이 13점인데, 밑에 기술적 능력 15점 만점을 받아도 28점밖에 안 됩니다. 40%가 되려면 이 항목이 32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준치를 미달하고 있다면 3개 사업자 다 무조건 조건부입니다. 지금 시뮬레이션한다면...

○ 심사위원

- 방송 전공하시는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송의 재정 건전성이 외부 경제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까?

○ 심사위원

- 광고수입이 주재원이니까 많이 미치지요. 아직은 광고시장이 한국에서는 제일 주재원입니다.

○ 심사위원

- 조금 달리 말하면 재무건전성을 굳이 보는 이유가 재무건전성을 압박하면 약탈적 영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 심사위원

-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는 사실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으면 이미 약탈적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만약에 그렇다면 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개연성을 고려하면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그 조건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경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채비율이나 순이익이익률, 자산증가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방송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자기의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营업을 해서 이익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건부로 걸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영

업 잘해'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조건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예를 들면 자기자본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왕창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경영행위를 통해 가능한 일이라면 되는데 조건부라고 해 봤자 '앞으로 장사 잘하라'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장사 아무리 해 봤자 안 되는 일인데, 물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 심사위원

-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업체들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렇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것이 힘들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불완전한 기업을 계속 신생매체니까 어려우니까라고 살려뒀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옵니다. 이런 사업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디선가 돈을 가지고 오고 필요로 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지만 그 말단에는 이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나하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신생매체이고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준을 올려야 돼라고 한다면 이것은 방송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재무건전성을 뭐 하려고 보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으면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자료 찾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재허가할 때에는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 계량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비계량으로 평가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YTN은...

○ 심사지원반

- YTN 보도PP도 비계량으로 평가하는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가가 20점, 최저점을 20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심사위원들이 비계량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O들과 YTN에 대해서도 이미 비계량을 중심으로 비슷하게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심사항목 자체가 비율이 어떠냐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정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항목이니까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 그런 능력을 보는 지표로서 오랜 업무 경험, 영업을 해 온 경험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요즘 이익이 줄고 있구나', '불필요하게 부채를 많이 조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향후에 이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보는 대표적인 그야말로 인덱스로서 비율을 보는 것인데,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신생기업이라는 특징은 처음에 인허가해 주실 때 이 정도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본금을 이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3,000억원 이상이었나, 4,000억원 이상이었는지

궁금하지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처음에 인허가해 줬고, 자기자본은 처음 출발 때에서부터 이익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손실이 나거나 부채가 더 늘거나 증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한 자본금 규모를 책정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비율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진행하셨다, 그것이 하나 감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저는 거꾸로 만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서 이것 때문에 이익 못 내면 0점 받는다, 이러면 아마 더 소비자가 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 보면 신생기업이라는 특징, 그것이 결국 자기자본금을 얼마나 감소를 최소화시키면서 비즈니스를 해왔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점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최소점을 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피해를 감안해서 일정 수준의 점수는 당분간 배분한다고 할까요, 배점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느냐, 회사가 정상적으로 됐느냐는 것을 보겠냐 하는 것은 결국 이익이 나는 시점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3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시기는 판단하기에 조금 짧은다는 정도의 주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0점이면 왜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지요?

○ 심사위원

-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반대가 돼서...

○ 심사위원

- 저는 그것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왜 0점이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는지...

○ 심사위원

- 조건부로 승인이 나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점수를 따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 심사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반대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의 다른 효과를...

○ 심사위원

- 지금 ○○○위원님도 그것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종편이 4개가 생겨서 광고시장이 어렵고 서로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2개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이야기하고 4개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지요. 저는 종편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종편에게 특정 점수를 주어야 하고 그것을 어쨌든 살려서 끌고 가야한다는 그런 개념부터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심사하면서 예를 들면 자격이 안 되고 또 능력이 안 되고 점수가 안 되면 그만 둘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논의사항이 어려우니까 계속 이것을 끌고 가고, 또 2년 동안 종합편성채널이 다른 채널에 비해 그것뿐만 아니고도 많은 특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해서 만약 자격이 안 되면 그 결과대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논의하면서 신생기업이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지표만 가지고 재정적 능력이 있다, 없음을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계량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舊방송위원회 시절의 SO도 그렇고 플랫폼 사업자 허가 기준을 처음 만들 때에도 재무 회계성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한두 달 고생한 것이 결국 계량으로 못 하고 비계량으로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냥 점수 나오면 다 0점입니다. 미안하지만 다 과락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비계량을 했는데, 그 전통이 여기는 계속 이어져 내려 온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학교 수업으로 따지면 다 F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 F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옛날에 우리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할 때 잘못해서 네 쌍둥이 낳은 사람은 4명 다 죽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4명 나온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4명 낳았다고 4명 다 죽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중에 1~2명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객관치에 들어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볼 때에는 그 기준을 박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이것은 다 과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락이 된 상태에서 무조건 과락으로 하겠다면, 물론 이 사람들이 피규제자니까...

○ 심사위원

-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과락을 해도 다른 데서 잘하는 데는 살아남는 것이고...

○ 심사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목목 자체가, 여기 20%를 제안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적용하면 기술에서 100점을 받으면 이 항목은 이 경우 하나로 무조건 재승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일단 재승인 조건을 하나 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시작할 때 전과 하나씩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하나 더 생기면 무조건 중과실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의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심의 대상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저는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종편PP를 심사할 때 이 항목이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PP의 경우에는 다들 등록제로 하면서 구태여 종편과 보도 PP만 승인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능력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안 돼서 종편PP에 내지 못한 후보자들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정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종편PP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는 종편 PP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종편이나 보도PP들도 등록제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때 등록제로 하면서 여기에 있는 기준을 딱 적용하면 그것이 등록제 하나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들은 이 조건 때문에 다 떨어져서 등록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재정적 능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심하게 말해서 첫 번째로 유명무실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제가 보건대 종편PP에서 보면 엄청나게 투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기네가 투자해서 길게 보면서 콘텐츠를 구축해 가면서 나중에 해 보겠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IT산업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거의 5년 동안 계속 적자 나면서 하다가 그래도 계속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딱 벗어나면서 갑자기 거기에서 이익도 나고 잘 되는 것이지요. 물론 중간에 망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라주는 것보다도 자기네가 하다가 안 되면 하다가다가 그만 둘 것이고, 능력이 되고 계속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갈 것입니다.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종편PP를 떠나서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만약 최저점을 준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종편PP 만들 때부터 승인제를 반대했는데 가장 큰 것들이 이것입니다.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것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재정적 능력이 없어도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지금 케이블TV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일 큰 것이 자본금을 모았느냐, 못 모았느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다른 케이블TV들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케이블TV와 종편은 조금 다르지요.

○ 심사위원

-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기업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경쟁시장에 들어와서 경쟁했고, 종편PP는 경쟁하지 않고 특혜, 지금 특혜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행정법상 특허라고 하는데 '너희만 사업할 수 있어'라고 해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감시를 하는 것이지, 이러한 기업을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항목에 묻혀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송을 잘하고 있느냐, 재무 건전성이 나쁘면 다 죽어야 하느냐? 아니지요. 공적책임을 잘 이행하면 여기에서 점수가 확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사는 것이지요. 사업자들이 비슷비슷 하기 때문에 간다라면 4개의 똑같은 사업자들이 지금 하는 형태 보도 비슷하게 하고, 재방 비슷하게 하고 비슷비슷하게 가면 살아남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특출나게 콘텐츠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에 투자하니까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투자한 것을 여기에서 상쇄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다 똑같은 잣대로만 하면 아무도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안 한다는 것이지요. 방송의 공적책임이, 너희가 종편PP이라면 종편답게 '이것 이것 이것을 해'라고 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어야지, 그냥 결과를 놓고 '결과 비슷하니까 평가도 비슷하게 해 줄게'라고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일종의 특혜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특혜를 주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재정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4개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딱 제시하고 그것을 넘으면 다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점적인 허들이 바로 재정적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능력이 있는 4개의 종편PP가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 재정적 능력이 낮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편PP들이 들어와서 다양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특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특혜를 받으면서도 안 하면 너희가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특혜를 받게 되는 주요한 근거가 바로 재정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재정적 능력만 놓고 보면 당시 재정적 능력이 훨씬 좋은 사들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것 이외에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어려움을 만드는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재정적 건전성 능력을 하는 이유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대로 시청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시청률을 올리기 어려운 시장환경이면 그런 곳에서 사업자가 많이 존재하는 한 그 사업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기준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드린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군가가 일부러 떨어뜨리는 안 되지만 누군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 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경영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빼자 내지는 다른 것으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는 하실 수 있지만 신생매체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하면 다른 것에 대한 다른 가치들이 거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것에 대해 할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 점 때문에 걱정되는데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어떤 지표를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 결정하겠지만 재정적 능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저희가 재승인에 가져와서 쓰는데, 지표로 나온 숫자 때문에 점수가 0이 된다는 것은 제가 비유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큐가 0이라면 지능이 없다고 보기는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점수가 0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재정적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와 재정적 능력이 그나마 있는 자간에 구분을 전혀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 지표를 0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상황이 어쨌든 일정한 점수 하에서 다른 조건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차이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마이너스라니까 다 통과시켜 주자는 꼴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선에서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1~2점이라도 더 받고, 그나마 노력을 덜 한 사람은 하다못해 1~2점이라도 덜 받아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만약 <제1안>이나 <제2안>을 쓰면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양쪽 다 차이가 없어집니다. 한쪽은 완전히 팽이고 한쪽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변인들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자는 것...

○ 심사위원

- 그것은 전문가 분들이 해야지, 저희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보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최저점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40%냐, 20%냐는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그것보다도 부채비율,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우리가 다른 것을 길게 논의하면서 방송평가와 중복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쪽을 줄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심사지원반 설명에 따르면 방송평가에서 이미 평가항목을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온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목을 설정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냥 가져오되 20%로 할지, 40%로 할지 극단적으로 0으로 할지에 대한 의결을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세 분은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 항목이 100% 0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사위원

- 부채비율은 아닐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부채비율은 아니고,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순이익은 순손실이 났으니까 안 나올 것이고, 총자산증가율은....

○ 심사위원

-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 심사위원

- 부채비율만 플러스가 되는데 거기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퍼센티지는 같으니까 변별은 어차피 생기는 것 아닙니까? 4개 방송사가 부채비율에서 변별력이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부채비율도 일반기업들에 비해서는 대부분 다 자기자본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지요.

○ 심사위원

- 일정 부분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세 분께서 합의하셔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이른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하나는 썩이고 하나는 만점이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이 다 0점은 아니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말을 하다가 0점이다, 다 마이너스가 됐다고....

○ 심사위원

-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30% 정도하면 나머지 점수에 따라서 누구는 간당하고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 정도 하면 기술이나 경영을 봐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차별화는 되겠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것은 지상과 재허가보다도 더 많이 부여한 것이고, 방송평가에는 안 맞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20%니까....

○ 심사위원

-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20%, 40%는 전에 썼던 기준치를 가지고 제시하셨는데....

○ 심사위원

-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표값 범위별로 취득점수표를 만들었는데 시뮬레이션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평균과 표준편차 90% 신뢰도로 했는데 그것의 지표값이 그것보다 작을 경우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도 값이 산출되도록 한 것은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마이너스도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 심사위원

- 0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는 없겠네요.

○ 심사지원반

- 이것은 일반적인 계산 산식이고, 실제로 적용해 보면 거의 최고·최저로 나누어지는 변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서 다 걸렸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러면 결국 최저점수를 얼마나 했느냐만 남겠네요.

○ 심사위원장

- 동의해 주셨습니까? 제가 푸시 하는 것 같은데 20:40으로 동의를...

○ 심사위원

- 부채비율을 40% 해도 10점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은 8점...

○ 심사위원

- 다른 비계량 평가에서 우리가 '가'를 줄 수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러면 그것과 형평성을 따져야지요. 그리고 지상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일 건전하지 못한 항목에서 40%, '양'은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안 되지요.

○ 심사위원

- <제2안>이 제가 보기에는 '가'를 줄 수 있는...

○ 심사위원

- 물론 이해는 되지만 심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런 부분을 참작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전례를 만들고,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점수를 주는 식으로 하면 책임감도 없어질뿐더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을 자기들이 하려고 더 노력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럴해저드도 생길 수 있습니다. 舊 방송위원회 시절에 iTV의 경

우도 재정적 문제 때문에 재허가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iTV도 재정적으로 어느 부분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재허가가 취소가 돼서 방송이 문을 닫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가 아주 많은 부분에 퍼센티지를 미리 줘서 점수를 받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수, 우, 미, 양, 가에서 '가'가 20%라서 한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가'는 0%~20% 미만입니다.

○ 심사위원

- 나중에 우리가 점수를 줄 때 그렇게 줄 수 있지요.

○ 심사위원

- '가'는 20% 미만이고, 20%가 되면 '양'이 되지요. 해당 점수의 20% 이상 40% 미만이니니까 '가'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 논의를 좀 더 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연 4개사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느냐, 왜냐하면 공정성을 평가하고 다른 것 평가하는데 그것이 역량 여부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재정적 능력평가는 4개사가 재정적 능력이 없냐, 없네 이러면 '가'를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본금이 몇 천억원씩 있는데 주변 환경이 상당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1년차, 2년차, 3년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너희 재정적 능력이 없다, 그래서 최저점이다, 0~20점 사이다....

○ 심사위원

-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면 20점이 아니고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40% 사이....

○ 심사위원

- 20%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평가능력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기에 그 이유 때문에 난해하다, 가급적 최저점은 낮춰서 주지, 그래서 더 잘하라고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면 그것이 40이든 30이든 관계없이 하필이면 20%를 적용하는 것이 수, 우, 미, 양, 가 중에 제일 낮은 쪽에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재정적 능력평가를 차라리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니까 최저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만약 그렇게 하면 최저점을 없애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40%를 주자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뭔가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 중에 이 정도면 그냥 가지,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 같아서...

○ 심사위원

- 그러면 그런 것 없이 평가 나온 대로 줘야지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결국 지금 나온 그 점수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요.

○ 심사위원

- 점수를 내야겠지요. 점수는 내는데 로직에 따르면 결국 최저점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이것이 다 어떤 형태든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냥 전부 과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한 문제입니다. '너 이제까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심사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역으로 너는 무조건 과락은 넘으니까...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는 40%가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되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보기는 하는데 20%라는 것은 아예 차별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앞에 있는 40%는 나머지 기술 분야와의 점수를 합하면 40%를 주더라도 이것이 과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어떤 결과가 와도 과락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과락이 되는 것이 왜 문제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는, 학교 커트라인을 선정할 때 나는 이 점수 안 되는데 다 안 받겠다면 이것은 심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과락이 조건부로 들어가면 사업자들이 다음번에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나도 중요합니다. 대충 예측을 2년이나 3년 뒤에 해 보면 다음에도 허들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서 억지로라도 비율을 맞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히려 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 능력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방송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적 능력이 충분한 사업자도 떨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이나 어떤 대기업들이 우세한 자본력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중편PP를 할 때에는 물론 그것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강해지니까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능력이 있는 콘텐츠사업자들은 중편PP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 능력 때문에 딱 허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지금 있는 중편사업자도 다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습니다. 그 시장 내 아주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평가가 될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적 특성을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중공업이나 중화학공업 기업을 만약 평가한다면 과연 짧은 기간을 주고 매년 자기자본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논의할 때 미국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최소한 5년 정도는 해야 겨우 살아남을지 말지가 결정된다는데, 지금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재정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방송학자들도 계시고, 미디어 이코노믹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영·회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정말 가감 없이 이야기하자면 4개 중편 체제가 이러한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심사위원

- 아무도 이 시장에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니다. 종교방송이나 지역민방도 마찬가지로 방송이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이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살아남기는 남습니다. 그냥 남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굶주리거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게 살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앞으로 2년 다음 재심 평가 때 자연 도태되는 채널이 한두 개 나올지 모르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을 계속 링거 꽂아서 또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면 계속 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링거를 우리가 꽂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금 투자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끌고 오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업자들을 돈을 계속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잘 될 수도 있지요.

○ 심사위원

- 최다액출자자 지분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태돼서 극단적으로 나간다, 안 간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을 결국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이 심사기준에 맞게 심사하고 조건부 재승인이 되든 어쨌든 그 결과가 나온 대로 한 다음에 자기들이 더 좋아져서 IT산업으로 더 발전하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시키든 재정 건전성을 높여가든, 그래서 또 살아남을 수 있지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거기다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줘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보기에는 20%, 40%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 2:1이 아니라면...

○ 심사위원

- 그대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 40%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인데,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의 팔을 빌려야겠습니다. 우선 20%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총 선택권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20%, 40%입니다.

○ 심사위원

- 왜 20%, 40%인지...

○ 심사위원

-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 40%가 엄청난 가이드라인인가, 아니라면 저는 30%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 있으니까 물론

재미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또 나머지는 나름대로 의지 있는 사업자는 그나마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럼 원안을 20%, 30%, 40%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

- 표결을 2단계로 나누어서 0으로 할 것이냐, 가중치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과 가중치를 준다면 조금 더 논의해서...

○ 심사위원

- 20%는 전부 다 떨어지고 40%로 하면 전부 다 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예, 계산하면 변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30%는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것이 전부 다 떨어지더라도 조건부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도 나중에 가서 상황이 이래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부적절하다 싶으면 조건을 변경하면 됩니다. 한 번은 경각심을 주어야 하는 시점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오히려 행정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 심사위원

-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방통위원회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4개 사업자가 물론 현실적으로 재정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그런 조건부를 붙였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봤다면 두 가지 이야기를 분명히 듣지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심사기준에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방송의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뽑을 때 잘못 뽑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통위원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비판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해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 심사위원

- 그것은 양쪽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다 재승인이 되어서 좋아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나쁜 쪽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야 물론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어느 한쪽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든 해 보시지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반드시 재승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20%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

○ 심사위원

- 한 항목이라도 40% 이하가 되면 그것은 조건부 재승인하도록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재정능력이라는 것을 어디에 염두에 두고, 감안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안정성, 수익성 이런 것을 대표하는 비율들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이 되면 이런 회사가 재정적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보는 뷰를 제가 추천한다면 결국 자본금입니다. 자기자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산이 부채보다 초과되어 있는 부분이 자기자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보통은 부채가 자본금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회사는 그동안 처음에 시작했던 씬짓돈 다 날려먹고 남의 돈 엄청 빌려서 허덕이겠구나, 그런 회사를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된 재정적 능력이 떨어진 회사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엄연히 자기자본이 1,000억원~3,000억원 사이로 제가 열추 열린 보고 왔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보고 너희 재정적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 우, 미, 양, 가 중에 '가'를 기준으로 채점비율을 정했노라면 '왜 이렇게 가혹했느냐?'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참고하시라고 재정적 능력이 이런 비율의 증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자본이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을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부채비율에서 평가가 될 것이고, 방송평가에서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매출액증가율들을 이미 평가를 받은 점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이 부분에서 방송평가에서 점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유리한 점수를 받은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평가에서 평가한 부분까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쪽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왜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쪽에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하는데 저쪽에서 이미 평가해서 점수를 좋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낮게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재논의하는 것은 비율을 쓴 것, 안 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부심사항목을 가지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점으로 가야 하는데 최저점을 갈 때 재정적 능력이라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최저점을 선택해 주십사 이런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최저점을 설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투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을 설정하지 말자...

○ 심사위원

- 수, 우, 미, 양, 가로 점수를 주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냥 주자...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그 안과 또 다른 안은...

○ 심사위원

- 최저점을 주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 그러면 최저점을 주지 말자에 대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그러면 주자에 대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통과됐습니다. 20%, 30%, 40%가 정식으로 동의가 된 것입니까? 20%, 30%, 40%가 나왔지요? 그러면 20%최저점을 설정하자에 대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30%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40%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30%, 40%를 가지고 재투표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이 30% 중재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뭔가 준거 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논리는 있지만 20%는 지상파와 종편과는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 심사위원

- 저는 변별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30%를 주면 그 다음에 차이가 납니까?

○ 심사위원

- 왜냐하면 기술점수에 따라서 어떤 사업자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업자는 과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까?

○ 심사위원

- 제 논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 논리로 또 설명하면 되지요.

○ 심사위원

- 여러분들께 여쭙보는 것이 논의가 각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은 설명해야 하니까 아주 힘들니까 안 되고, 이것은 관행으로 가고, 기준을 스스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행을 바꾸고 여기에 제시하는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어차피 이것이 항목별 축조를 하다 보면 또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오늘 내일 하기에는 짧으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위원님 30%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30%를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30%로 끝까지 가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점 30%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여덟 분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30%로 됐습니다. 또 다른 것 없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는데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정리해서 말씀을 남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제가 회계나 경영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20%, 40%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논의해 보니 어느 경우도 변별력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는 모조리 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과락을 받게 되어 있고, 40% 안은 모조리 다 자연스럽게 합격점을 통과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심사의 의미가 없다, 우리는 심사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의 의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있는 점수로 최저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3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이 점수로 환산되면 몇 점이 됩니까?

○ 심사위원

- 제가 계산했는데 대항목이 80점 항목입니다. 그러면 32점이 과락인데 재정능력이 65점인데 30%를 하면 19.5점을 먹습니다. 그러면 13점 정도를 기술에서 먹어야 32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15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과락을 통과할 수 있고, 조건부 승인을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재정적 능력을 좀 더 강화시켜라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이니까요.

○ 심사위원

- 기술적인 것을 봤는데 다들 안 좋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도 계량평가입니까?

○ 심사위원

- 계량은 아니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것 같은데 비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30점 가지고도 아무도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30점을 받아도?

○ 심사위원

- 30점 가지고도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클리어하게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 여쭙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7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기준점수가 다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8페이지 위에 보면 '실제 평가 시에는 방송평가 점수가 반영된 비율을 고려해서 방송평가 기준점수를 5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평가가 350점인데 700점으로 평가하는데 700점이니까 350점으로 환산하니까 50%로 할인해서 4점이면 2점만 마이너스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할 때에는 기준점수가 650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350점은 방송평가에서 나오고 650점에서 우리는 평가하게 되는데, 그때도 50%를 마이너스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왜 이해를 못 합니까?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700점 방송평가 점수, 왜냐하면 우리는 350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방송평가할 때에는 7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350점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받은 점수를 50% 감해 줘서 -4점이면 -2점을 감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50점이라는 원래의 점수에서 계산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것을 적용해서 -8점인데 -4점을 감점해야 하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동일 패널티에게 동일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2점으로 감산이 됐다면 이것도 2점을 주어야 하는 것이 동일한 패널티인데,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맞는데 저는 출발 파트가 여기는 700점에서 했기 때문에 350점으로 하니까 감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나머지 650점에서 하는데도 그 50% 감해진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만약 2012년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2012년도 방송평가에서는 -4점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방송평가 점수를 재승인 심사점수로 환산을 하면서 실제 2012년도 과태료 1건당 -2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2013년도에도 과태료 1건을 받으면 -2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점이라는 점수에서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650점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동일하게 50%를 감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총점은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법 위반에 대해서 감점이 되는 항목은 350점에서 -2점이 되고, 하나는 650점에서 -2점이 됩니다. 즉, 감점이 되는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확정을 했습니다.

○ 심사위원

- 수치상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똑같은 감점이라는 방송평가에 있는 감점과 여기와 수치를 달리 하는 것도 역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 평가 간에 감점을 다 마이너스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를 이쪽 것을 더 많이 감점하게 되는 것도 부당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 심사위원

- 그 2개만 비교하면, 그런데 기준 점수 자체는 원래 기준 점수지요. 그런데 350점으로 그것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기준 점수에서 50%를 마이너스한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기준 점수 자체를 원래의 점수에서 뺄 때에는 기준 점수에서 빼야 하고, 이것을 700에서 했으니까 350으로 나눌 때에는 기준 점수에서 50점 감해서 -2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기준 점수 자체가 원래 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50% 마이너스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 점은 불합리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과 나머지 부분에 650점, 350점을 합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4개 종편에서 다 동일한 기준에서 한다면 서로 평가항목 간에 편차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이것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가 돼서 점수 이하가 되면 재승인이 되든, 조건부 재승이든 이런 것이니까 상대평가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로 가면 예를 들면 모든 종편이 다 승인될 수도 있고, 또 모든 종편이 조건부 재승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수에 있어서 마이너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러면 오늘 종결하시고, 다음에 <보고안전> 하나 더 있고 <의결안전>이 있는데, <보고안전>은 이행실적 점검결과 나눠드린 것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고, <의결안전>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에 관한 건’만 의결하고 식사하러 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통과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의결사항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나.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자료 접수에 관한 건 -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 심사위원장

-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의결주문입니다. ‘2014년도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를 의결한다’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2013년 11월 29일~12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접수는 총 39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메일, 팩스, 우편

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37건이 접수가 됐고, 단체는 2건이 접수가 돼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라는 단체와 한국여성민우회, 이 두 기관에서 의견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접수 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심층적인 보도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편향된 보도 내용과 보도프로그램 중심의 편성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했습니다. JTBC에 대해서는 보도가 비교적 공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거나 사장의 선호에 따라 보도 주제가 선정되었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공고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나 제출된 의견 중 12건은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만 확인이 됐으며, 3건은 주민번호를 명시하지 않아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붙임>자료 요약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 심사위원

- 개인 두 사람과 단체 세 주체의 의견이 동일한데 이것은...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단체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는데, 저희가 개인에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지만 개인이 파일을 옮겨다가 의견을 접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의견청취한다는 공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심사지원반

- 공지는 저희가 공고했고, 그 다음에 종편PP 3사와 보도PP 1개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방송 중에 1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단 홀림자막이나 방송프로그램 안내 이런 것을 통해 고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 원문을 보고 싶으면 뒤에 노란색 책자가 있으니 그 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결국 의견을 접수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접수한다는 의미는 이것을 공식적인 심사자료로 결정한다는 의미이고,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주민번호, 성명, 주소는 인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받기는 했지만 이것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사자료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참고자료이지, 계량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에 관한 건을 접수하겠습니다.

3. 폐 회

○ 심사위원장

- 더 이상 다른 토의사항이 없으시면 제2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08분 폐회】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4. 3. 13. (목) 13:5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14. 3. 13.(목) 13:5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 출석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류춘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이상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차지훈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류길주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배기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13시 5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재적위원 열다섯 분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계량평가 결과는 <붙임>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량평가 결과입니다. 사업자별로 계량평가 결과를 최종 정리한 <표>이고, 방송평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 재정적 능력, 시정명령 및 불이행 사례 등에 대해서는 아래 세부사항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송평가입니다. 세 번째 방송평가, 종편은 350점, 보도PP도 350점입니다.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 제2차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평가 점수는 TV조선의 경우 273.35점, JTBC는 279.82점, 채널A는 271.30점, 뉴스Y는 277.6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배점은 있지 않고 감점항목으로 처리가 된 항목입니다. 아래 <표>의 세부평가방법을 보시면 제2차 심사위원회 의결사항과 같이 종편PP에 대한 감점기준은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점, 과징금 5,000만원 이하는 -5점, 이와 같이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입니다. 먼저 TV조선입니다. 첫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는 총○건이었습니
다. ○건에 대해서 ○점을 감점하면, 즉 ○점이 감점됩니다. 두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입니다. '○'는 총 ○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는 ○건 있었습니
다. 네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 ○는 ○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
른 '○'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TV조선은 총 18.5점이 감점됩니다. 두 번째,
JTBC입니다. 첫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는 ○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는 ○건, 방송법 위반에 따른 '○'는 ○건, 방송법 위반에 따른 '○' ○건 등을 더해
서 총 22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은 나눠드
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적 능력입니다.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로 구성됩니다. 먼저 업종 선정입
니다. 2012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종의 평균
값과 개별업종의 평균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인 업종, 즉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제외한 16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가중치는 최
근 연도, 즉 2013년, 2012년 순으로 2:1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최저점 설정입니다. 심사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서 30%로 설정했습니다. 30%로 설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
니다. 계산 산식입니다. 2012년 평가점수×1+2013년 평가점수×2를 더한 값을 3으로 나눴습
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별 재정적 능력 평가점수는 TV조선은 부채비율이 A가 M-2A보다
작기 때문에 100점에 100%를 가져가게 돼서 25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순이익
률은 A가 M-2A보다 역시 작기 때문에 배점의 최소점인 30%를 부여했고, 총자산증가율 역
시 배점의 30%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JTBC와 채널A, 뉴스Y 모두 동일하
게 부채비율 배점의 100%,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은 최저점인 배점의 30%를 부
여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역시 감점
항목입니다.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심사 평가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점은 TV조선 -4점, JTBC -4점, 채널A -4점, 뉴스Y
-5.6점입니다. 이상으로 계량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중편·보도PP 재승인 계량
평가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폐 회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제3차 공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00분 폐회】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4. 3. 14. (금) 10: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14. 3. 14.(금) 10: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 출석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류춘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이상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차지훈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류길주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배기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10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의결사항

가.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붙임>으로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3개사와 201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1> 종합소건, 사업계획 이행실적, 재승인 신청법인 4개사는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분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계획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등 방송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 종편3사의 재방비율이 높으며 (주)제이티비씨를 제외하고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음. 다만, 국내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였고, 지역균형 발전과 다양한 소외계층의 지원 방안도 어느 정도 수행. 공적책임 및 공정성, 종편3 모두 방송의 공정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제도나 기구 설치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전략 수립과 최고경영층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 자체심의 능력 강화를 위해 외부제작자를

포함한 방송 운영의 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자체교육, 연수, 파견 및 외부기관에서의 정기적 연수 계속 운영 등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경영전략 등 향후 사업계획은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이 보임. 다만, 국내의 경제 상황과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액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의 의문에 여지가 있음.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방송법상 3~5년간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필요. <2> 방송사업자별 주요 평가 의견입니다. (주)조선방송, 계획 대비 0% 등의 투자실적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균형 있는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난 3년간의 광고매출 실적에 비추어 향후 5년간 예측 광고매출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 의문. 보수성향의 출연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보도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 구축 필요. 방송발전을 위한 기술 및 콘텐츠 투자계획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투자계획이 미흡. 자체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심의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주)제이티비씨입니다.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오락프로그램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시청자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이루어져야 함.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사후 자체심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심의 규정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심의 제도의 실효성 의문. 보도담당 사장에게 인사권과 편집권을 보장한 것은 타당한 방향으로 생각됨. 재승인 신청서상 사업계획은 방송광고 시장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상증자 성공 이후에도 사업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자본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실질적인 소유주가 공동대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소유·경영 분리를 강조하는 (주)제이티비씨 경영방침에 위배되고 외부의 신뢰를 잃을 소지가 있음. (주)채널에이입니다.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인신공격과 막말 등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를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하여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심의 제도의 효과가 의문시 됨. 채널A의 방송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종편들과의 차별화된 특성이나 투자 의욕이 보이지 않고, 시사·보도에 의존하는 전략에 안주하는 것으로 보임. 재승인 신청서상 광고매출액 0000년 0원, 0000년 0원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임.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의 권리침해 구제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주)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상적 인력구조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을 승인 시부터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 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국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초기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 금액이 0%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뉴스와이가 재승인 기간 중 목표로 하는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실적에서 환경설비는 제외되어야 하며 IT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위성수신시스템이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재승인신청서에는 해외진출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콘텐츠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세 번째,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심의제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 민원을 해결하고 심의제제 건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엄격히 시행할 것.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장르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중편 사업자의 취지에 맞도록 조절하여 균형을 이루고, 지나치게 높은 재방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것. 방송사업자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주)조선방송입니다. 편성위원회가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선기자나 PD 등 현장을 이해하는 실무종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제이티비씨입니다.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주)채널에이입니다.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주)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정보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최다액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됨. 네 번째,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평가에 반영. 해당 행정처분 건을 감점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법령위반을 반영하여 얻는 이익보다 현저하게 큼.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건에 대해 차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소송을 통한 평가 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재승인 심사 시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필요. 사업계획 이행실적 매년 점검. 재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요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그다음에 재승인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국산장비 도입 실적에는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비용 외에 시설설비 투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엄격한 방송장비 분류 기준 마련이 필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된 의견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7페이지에 채널A가 다른 중편이나 보도전문 방송사에 비해서 그냥 한 줄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면 제일 우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을 조금 구체화해서 문제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재승인 조건이라면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기타라는 것, 그다음에 권고사항도 다른 데는 편성이 공익적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 심사위원

- 아주 두루뭉술하게 채널A만...

○ 심사위원

- 위에 공통사항에 나온 것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뒷부분은 권고사항에 가까운데,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라고 제목을 같이 써서 조금 혼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지원반

- 그것은 토의하시면서 정확히 나누고 싶으면 나누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은 적어주신 내용으로 해서 각 사업자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빼고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시고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내신 의견 중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문제가 남은 의견이니까 아주 하찮은 것들이 여기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잘 맞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재승인 조건이 될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만약 우리가 한다면 조금 더 각 방송사에 맞는...

○ 심사위원

- 이것이 공통사항으로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조선TV, JTBC, 채널A 각각 따로 하고, 거기에 공통사항도 넣어주고 여기에 나오는 개별사항도 넣어주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공통사항이라서 묶어서...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만사항을 보니까 뒤에 나온 것이 아주 간단해 보이니까 공통사항을 각 방송사별로 해 주면 양도 충분히 늘어나고 내용이 충실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공통사항을 없애고, 방송사업자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서 조선방송 따로따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심사위원

- 방송사업자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보니까 내용들이 연합뉴스TV를 빼고는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굳이 TV조선, JTBC, 채널A로 나누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 늘릴 것' 이것은 JTBC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도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만 못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비율의 문제는 JTBC 외에 다른 것 다 되지요? JTBC는 오락이 많고, 다른 데는 보도가 많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공익적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늘릴 것'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간부 중심으로 운영', 말을 조금 바꾸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선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각 사업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TV조선만 해야 하나,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공통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업자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사업자들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상...

○ 심사위원

- 지금 기존에 각자 낸 것을 종합해서 한 것인데 개별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각자 내신 것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선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채널A나 JTBC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채널A에만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못 들어갔습니다.

○ 심사위원

-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대강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대표적인 표현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해서 올린 것이고, 따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 사업자에서만 나온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거나 다른 사업자들도 필요하다고 조정하면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

- 결국 개별사업자에게 쓰지 않은 의견인데 지금 와서 붙여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문

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통사항들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다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개별사업자는 채널A의 경우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요. 위에 공통사항들이 많은 지적이 나왔고 대부분 공통에 다 걸리고 하나 정도가 다르게 나와서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 않느냐, 채널A가 잘해서 한 줄이 아니고...

○ 심사지원반

-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자별로 주신 의견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안 빠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보셔서 더 추가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추가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채널A에 대해서 5페이지에 방송사별로 주요 평가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 확대할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만 뜬금없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분류해서 넣은 것이고, 평가 의견이나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저희가 어제 낸 심사의견서 이야기를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을 논의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 정도면 좋은 의견은 다 들어갔다고 보고, 이것을 여기에 이 정도로 요약해 주어야 물론 문건이 완성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축약하고 분류를 잘해서 <붙임>을 보면서 평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심사위원

- 다른 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저희들이 아까 처음 받는 것...

○ 심사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7페이지 정책 건의사항인데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주요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요사업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요사업하면 알아서 하게 그냥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년의 경우 이행실적 7가지를 받은 것 있지요?

○ 심사위원

- 7가지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심사지원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심사위원

- 따로 정할 수도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평가한 내용 중에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명시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다른 것 하나 더 생각해 본 것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심사하는 과정, 청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재승인을 받으면 광고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디어랩 운영이나 광고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광고영업을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잘 감독도 하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 대부분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요약문에 꼭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공통 권고사항에...

○ 심사위원

-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심사위원

-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쓴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기존 의견을 가지고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이 기존의 의견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의견서에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워낙 다양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개인 의견과 총평이 기존에 의견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까요?

○ 심사위원장

-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상당히 중대사항이기는 합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이것이 기존 의견에 없는 것이 아니고….

○ 심사위원

- 있는 이야기지요.

○ 심사위원

- 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에 우리가 다 생각 못 했는데 중요한 의견이 나오면 넣을 수 있어야지,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에서 밤을 셀 수는 없지만 그런 것 한두 개는 꼭 들어가야겠다는 것은 여기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지요.

○ 심사위원

- 원칙적으로는 어제 쓴 것에 기반해서 잘 정리하자는 이야기지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 워딩을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이야기를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바꿀 수 없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찬반 투표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있는 것이 빠진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몇몇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더 하시고, ○○○위원님 위당을....

○ 심사위원

- 그러면 문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면....

○ 심사위원장

- 예, 그다음에 꼭 추가해야겠다는 것, 공통....

○ 심사위원

-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A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두 분입니다. 한 분이 최대주주는 맞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문서에도 분명히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JTBC....

○ 심사위원

- 채널A입니다.

○ 심사위원

- 채널A도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심사위원

- 공동대표 ○○○씨는 그날 오셨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최대주주로 오셨습니다.

○ 심사위원

- 그분이 최대주주면서 공동 대표이사입니다.

○ 심사위원

-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도 제가 여기에 코멘트를 써놓았는데 그것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 JTBC와 채널A 조건은 똑같습니다.

○ 심사위원

- 들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주요 평가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그것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 심사위원

- JTBC에서는 공동대표에 대한 사항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채널A는 빠져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올리면 둘 다 올리고 빼면 둘 다 빼고….

○ 심사위원

- 제가 채널A에 써놓았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보기에도 소유문제가 위법이 아닌 한 주요 평가내용으로 넣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빼려면 다 빼시고, 넣으려면 놓아두시고....

○ 심사위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널A, 이것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다 하십시오.

○ 심사위원

- 다 합쳐서....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권고사항이 아니고 평가 내용인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딱 집어서, 왜냐하면 채널A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채널A에는 안 쓰고 JTBC만 쓰는 것....

○ 심사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A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한 대로.... 조금 이따 이야기합시다.

○ 심사위원

- 지금 채널A를 쓰자고....

○ 심사위원

- 쓰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권고사항이 아니고 평가내용이니까 둘 다 쓰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소유와 경영에 대한 것은 JTBC는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는데, 채널A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는 꼴이 되겠지요.

○ 심사위원

- 저는 꼭 분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데 본인들은 굉장히 강조했으니까....

○ 심사위원장

- ○○○위원님!

○ 심사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널A에서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물론 저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잠깐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해프닝이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그것을 빼는 대신에 그 위원회를 쫓 보니까 각 회사에서 교체를 잘 안 합니다. 초창기 때부터 쫓 가고 있는데 정기적인 교체를 확실하게 하고 대신에 인적구성도 다양하게 하라는 대안을 제시해서 넣어 주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 심사위원장

- 이 문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심사위원

- 삭제하고 대안을....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이 문건 중에 종합 문건으로 올라올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 문건의 삭제 또는 추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이 문건에 들어갈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지금 채널A에는 무엇을 추가하자고 했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JTBC를 소유분리 문제를 주요 평가내용에서 빼자는 의견입니다. 채널A에도 넣거나 JTBC에서 빼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이 채널A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심사위원

- 둘 다 넣든가 둘 다 빼든가, 같은 입장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제 의견인데 주요 평가내용에서 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지적 자체는 필요해서 의견에 넣었는데 주요 평가내용에서 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5페이지 JTBC 맨 아래에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공동대표에 올라 있는 것' 이 항목은 주요 평가내용에서 빼는 것으로...

○ 심사위원장

-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찬성합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

- 그다음에 6페이지 ㈜연합뉴스티브이에서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실적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도 주요 평가내용의 하나의 코멘트이고, 주요 평가내용이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6페이지에 두 번째,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실적에서 환경설비는 제외되어야 하며...

○ 심사위원

- 이것은 실적과 직결됩니다. ○○% 이상...

○ 심사위원

- 그런데 저희가 빼고 이것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앞으로 이 기준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앞으로 또 재승인할 때...

○ 심사위원

-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정책 건의사항...

○ 심사위원

- 정책 건의사항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8페이지에 보시면 제도개선 사항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뿐만의 일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사가 다 공통사항이라서 굳이 이 사에만 주요 평가의견으로 꼭 넣어야 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 심사위원

- 이 회사는 아예 그것을 써놓고 조금 감추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 심사위원장

-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처음에 뉴스Y가 기타장비라고 해놓고 금액을 0원이나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많은 양의 금액인데 이것도 국산장비로 포함시켜 놓고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 내지는 약간 속이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타장비가 무엇이나고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에 의하면 기타시설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방송시설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답변할 때에는 이것은 잡자재나 랙이나 통신케이블이나 케이블 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돼서 상당히 답변도 문제가 있고 재송인 신청서 작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위당을 '방송장비 및 솔루션에서 회계에 투명할 것을 요구함'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 심사위원

- 그렇다고 해서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단언하기도 그렇고...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위당을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놓아두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팩트 짚은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

○ 심사위원

- 바뀌 봐야 얼마나 또 바꾸기도...

○ 심사위원

- 평가 의견 형식으로 위당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니까 그냥 놓아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대로 뒤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대로 좋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7페이지 주요 사업계획 이행실적 매년 점검하는 것이 4페이지에 보면 재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하지 말고 '사업계획'이라고 해놓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주요'를 빼자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앞에도 사업계획 이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 심사위원장

- 괜찮겠습니까?

○ 심사위원

-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주요'를 삭제하는 것으로,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3페이지에 종합소건 제일 위에 첫 번째 동그라미 제일 밑에 '다만, 국내제작 편성비율, 외주 제작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였음'까지만 하고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다양한 소외계층을 지원했는가는 칭찬할만한 내지는 이행 정도가 아주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고 잘 준수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형식만 하니까 지웠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도 같이 심사해야
완결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공통사항이나 방송사업자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안은
지금 있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데,
연합티브이뉴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회사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위의 부분들은
문구만 조금씩 바꾸면 3사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인데 각각 사에 나뉘어서 기재되어 있
습니다. 그 문제를 이대로 진행...

○ 심사위원장

-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이 이 회사에는 특히 두드러지는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지금 형식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나갈 때 각 사별로 별도 항목으로 나가기 때
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승인 조건은
어차피 다 분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공통사항 플러스 개별사항이 각 사별로 하나씩 붙는데 특히 연합뉴스TV에만 3개가 붙는 형
태로 되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연합뉴스TV에는 공통사항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공통사항에서 빠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균형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개별 사업자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씩 넣어
줘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TV조선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JTBC는 플랜B가 중요하
느냐, 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아주 사소하다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권고를 했나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를 여쭙보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공통사항만 남기고 개별 사업자...

○ 심사위원

- 아니면 공통사항으로 올리든지, 내용이 안 되는 것이 JTBC 정도인데 투자는 JTBC가 투자를 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투자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하겠다는 사업자에게 부과할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 올렸으면...

○ 심사위원

- 재정적 능력 보완책이라고 하면 타사들은 증자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JTBC의 경우에는 재정적 능력 보완책이 어떻게 보면 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타사에는 그것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영전략 수립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라는 보편적인 말이 쉽게 쓰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동아나 조선의 경우에는 재정이 미약한데,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조금 상황이 달라서요. JTBC는 우리가 알기로 중앙일보이면 돈 많다, 얼마든지 돈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있는데 아무리 대주주가 돈이 많아도 그 사업에 돈을 함부로 넣을 수 없습니다. 넣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떡하든 방법은 찾겠지만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고,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선이나 동아 채널A 정도는 돈을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썼다가 그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여력이 없어서 아끼고 아껴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선순환 고리, 이러면서 다 썼는데 하여튼 2014년 한 해만 2013년처럼 영업이 되면 바로 자기자본이 잠식될 것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JTBC는 인정하는데, 편성위원회가 동아나 JTBC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동아만 편성위원회가 일선기자를 안 뒀서 여기만 지적 받을 사항이나, 그것입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제가 쓴 것입니다. 실효성은 분명히 의심하지만 시스템만 놓고 보면 조선만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다가 그쪽에서 반발했는데 동아도 일선기자들이나 PD들이 들어와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조선만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제일 먼저 했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차라리 제목을 기타로 하면 어떻습니까? 방송사업자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기타로 하면 어떻습니까? 조건이라는 말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 심사위원

- 공통사항 기타가 좋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것에 Concern이 있는데, 제목 자체에 '방송사업자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사실상 권고사항인데 '재승인 조건 및'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이외에 기타로 하든가 아니면 방송사업자별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순화해서...

○ 심사위원장

- 재승인 조건을 빼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잘 정리하면 좋은데, 이것이 사안별에 따라서 재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꼭 확보하고 싶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의 내용 때문에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 심사위원

- 밑에 있는 것...

○ 심사위원

-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까지...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제 말씀은...

○ 심사위원

- 밑에 있는 것만?

○ 심사위원

- <3>번 제목은 그대로 두고 공통사항도 그대로 두되,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방송사업자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인데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권고사항 수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 <표>에 '방송사업자별 권고사항'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러면 연합뉴스TV는 조건도 들어갑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연합뉴스TV에서 조건으로 할 만한 것을 위 테이블에 붙이고, 권고사항으로 할 것은 뒤에 남겨두고...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은 공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공통이 아니지요.

○ 심사위원

- 공통 앞부분에 <3>, <4> 있고, 한 줄을 더 해서 연합뉴스TV 이렇게 하면 되지요.

○ 심사위원

- <1> 종합편성채널, <2> 이렇게 해서...

○ 심사위원

- 그것은 공통이 아니지요. 자기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 밑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하고, 그 항목을 공통사항이라는 말을 바꾸고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 TV와 연합뉴스TV <표> 하나 붙이고, 두 번째에 기타 권고사항 이렇게 하면 되지요.

○ 심사위원

- 이렇게 해도 되지요. <3>번 놓아두고 공통사항, 방송사별, 기타사항 그것 다 빼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3>번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밑을 아예 하나로 기타사항으로 쓰든지, 그러면 어차피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장

- 전부 다 조건이 되지요.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 심사위원

- 예. 그러니까 공통사항, 기타사항 이렇게 하면, 아니면 방송사별 사항 하든지...

○ 심사위원장

- 방송사업자별 기타사항...

○ 심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시한 조건 중에...

○ 심사위원

- 기타사항이라는 말도 쓸 필요 없지요? ‘방송사별’ 해 놓으면 되지요. ‘공통사항 방송사별’ 이렇게만….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은 무엇이고, 권고사항은 무엇인지를 심사위원들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승인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조금 약한 것은 권고사항으로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은 안만 낼 뿐 저희가 권한이….

○ 심사위원

- 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내서 거기에서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상관 안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방통위의 전문능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냥 내버려두고요?

○ 심사위원

- 실제로 재승인 조건으로 내 걸만한 것과 구별할 것으로 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무겁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발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무겁게 하면 갑자기 이 사안이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 돼서 정말 논의가 심각해지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공통 방송사업자별’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금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 조금 낫습니다. 편성위원회가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빼고,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목을 공통사항 밑에 '방송사업자별' 이렇게만 씁니까? '사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까 기타사항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방송사업자별 사항' 이렇게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공통사항, 방송사업자별 사항...

○ 심사위원

- 개별사항 이렇게...

○ 심사위원

- 방송사업자별을 빼고 차라리 공통사항, 기타사항으로 해서 간명하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방송사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 기타사항으로...

○ 심사위원장

- 제목이 방송사별로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기타라고 하면 위에 것이 중요하고 밑에 있는 것이 약하게 보여서 그냥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하지요.

○ 심사위원

- 이미 그 밑에 <표>가 방송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공통사항, 개별사항이 좋지요.

○ 심사위원장

- 공통사항, 개별사항...,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심사지원반

- 그리고 <표>에 구분 제일 첫 란에 있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도' 빼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놓아줘야지요.

○ 심사지원반

- 위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 심사위원

- <3>번에 딱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무엇을 뺀다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을 뺀다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3>번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는 것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구분과 이것을...

○ 심사위원

- 구분과 내용으로 바꾸면 되지요.

○ 심사위원

- 구분과 내용, 이것이 낫겠네요.

○ 심사지원반

- 테이블에 있는 제일 위 칸에 있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라는 부분을 빼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빼겠다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3>번은 안 빼는 것이지요? <3>번을 빼면 안 되지요.

○ 심사지원반

- <3>번 제목은 안 뺍니다.

○ 심사위원

- 테이블에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또 하나 <4>번 정책 건의사항에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이라는 말이 길어서 가운데 문단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행정처분 건에 감점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법령과' 이 말은 중요하지도 않은 말이라서 빼고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이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심사위원

-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중간 문단 빼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빼고....

○ 심사위원

- '또한' 말은 빼고, 앞에 문단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 심사위원

- 중요한데 안 써도 다 충분히 앞과 연결됩니다.

○ 심사위원장

- 모두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7페이지 <4>번 정책 건의사항의 첫 번째 항목이 소송중 인 것은 감점에서 빼자고 건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세 문단이 하는데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을 빼도 충분히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 차원에서 뺐으면 합니다. 제가 심사의견서에 쪽 쓴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세 번째면 충분히 되니까 두 번째 것은....

○ 심사위원

- 그것에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서 표현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예를 들면 차후 심사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여튼 좀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것은 총평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은 '정상적인 방송

광고 판매시장'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할 것 같고, 내용은 '중편 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편사업자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할 때 미디어랩 등을 통한 비정상적 광고영업의 우려가 예상됨.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과 발생 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 이에 대한 사업자의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음' 이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 심사위원장

- 어떻습니까? 방통위 측의 입장은 이러한 권고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심사위원

- 방통위에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사업자 약속을 받는 것이요?

○ 심사위원

- 방통위에 의견을 물어보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의견이니까요. 여기에 약간 정상적인 규제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것을 쓰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위원님께서 본인이 제시하신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만드는 것은 방통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정책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까, 무엇으로 넣었습니까?

○ 심사위원

- 총평...

○ 심사지원반

- 총평에 넣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총평입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에게 하는 것은 정책 건의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정책 건의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정책 건의사항으로 하지요.

○ 심사위원

- 해당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평가내용에 넣지 말고....

○ 심사위원

- 그 부분이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썼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회사인데 지금 방통위에서 실적을 관리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만 보는지, 아니면 채널A도 미디어텍이라는 투자관리하는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고, 지금 미디어랩도 각자 자회사들이 생겨나서 보니까 일종에 그룹처럼 몇 개 자회사를 거느리는 회사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모든 수치를 다 받아보려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안 쓰고 다 개별재무제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썼다가 오히려 연결이나 이런 회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5%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괜히 그런 것으로 빠져나갈까 봐 저는 오히려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미디어랩과 관련된 건은 중요한 안전이기는 한데 종합소견에 넣는 것이냐, 아니면 정책건의에 넣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정책 건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정책 건의사항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3페이지 맨 밑에 공적책임 및 공정성이 사업계획 이행실적에서 첫 번째 줄 넣은 것에 이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책임·공정성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냥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뭐라고 할까....

○ 심사위원

- 임팩트가 적습니까?

○ 심사위원

- 임팩트가 아주 가벼운 것 같아서 어떻게 강하게 이것이 잘 못 됐다, 많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과한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편3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을 위한 계획 및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 심사위원

- 제가 보기에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예전 것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한 번 비교해 보시면 하던 것 거의 그대로이고 신규로 되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실적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잘했다.

○ 심사위원

- 계획은 당초에도 잘했기 때문에 그대로 잘 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 심사위원장

- ‘매우’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행실적이 매우 부족함.’

○ 심사위원

- 좋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결과가 부족하게 보일뿐….

○ 심사위원

- 결과는 그 위에 있습니다. 이행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공정성….

○ 심사위원

-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어….

○ 심사위원

- 종편3사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에 실패함….

○ 심사위원

- 그것은 위에 있고, 이것은 계획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가 실적이니깐 이것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네요.

○ 심사위원

- 위에 이행실적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에 향후 5년 계획에 종편3사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이 부족함.

○ 심사위원

-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함' 이렇게...

○ 심사위원

- 성과 미흡한 것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아니고, 계획...

○ 심사위원

-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함' 말은 맞네요.

○ 심사위원

- 위에는 이행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두루뭉술하게 다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적책임·공정성을 따로 해서 이행...

○ 심사위원

-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문서의 구조가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공적책임 및 공정성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는지, 계획에 실패했는지 이런 논의가 아니고, 그 항목을 따로 두드러지게 봤다는 일종의 표시로 보면 저는 이 정도 문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아까 이야기한 실패라는 말이 조금 심하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종편3사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에 문제가 있음'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실효성 있는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까?

○ 심사위원

- 공정성 실현에 문제가 있음….

○ 심사위원

- ‘문제가 있음’, ‘노력이 부족함’ 그것과….

○ 심사위원

- 갑습니까?

○ 심사위원

- 다르지요.

○ 심사위원

- 실현의 구체성이 부족함….

○ 심사위원

- ‘실현의 구체성이 부족함’ 그것 좋습니다.

○ 심사위원

-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심사위원장

- 실현의 구체성이 없음?

○ 심사위원

- 실현의 구체성이 부족함….

○ 심사위원장

- 실현의 구체성이라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실현의지가 안 보임….

○ 심사위원

- 실현의지가 부족함, 의지가 안 보임….

○ 심사위원

- 의지가 안 보임….

○ 심사위원

- 그런데 계획서상에 의지는 보입니다.

○ 심사위원

- 계획만 있지, 의지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의지를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의지는 하겠다는 노력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속기를 위해서 워딩을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의지가 없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없음'입니다.

○ 심사위원

- 좋습니다.

○ 심사위원

- 뒤에 '의지가 요구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 심사위원

- 예, 원안 유지입니다.

○ 심사위원장

- 한 분이 정리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원안 유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뒤에 개별 서브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저는 이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보기에 원안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해도 의미는 전달이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뒷부분을 뺐는데 지역균형발전 다양한 소외계층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평에 보면 이것은 채널A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 '보도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으로 인해 외주제작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여 방송산업에 기여한 바를 인정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내제작 편성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어서 배치됩니다. 그래서 '국내제작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만 살리고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채널A에 관련해서 제가 쪽 비교해서 봤더니 심사지원반에서 다 쓰셨는데 두 군데 빠져 있는 것이 재방송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총평 두 군데 재방송비율에 대해 채널A만 재방송비율의 문제점을 쓰셨습니다.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국 이후 재방송비율이 2년간 ○%, ○%를 기록해 재방송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그다음 뒤에 또 한 분이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과도하고 재방송의 비율이 높아서 프로그램 수급에 문제가 보임', 그래서 이것을 방송사별 기타사항에 넣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다른 방송사도 재방송비율이 문제가 된다면 공통사항에 집어넣든...

○ 심사위원

- 공통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재방송비율이요?

○ 심사위원

- 예, 종합소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종합소견에 보면 '중편3사의 재방송비율이 높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종편3사의 재방비율이 높으며...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사항에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공통사항으로 넣지요.

○ 심사위원

- 넣어야지요.

○ 심사위원

- 제가 보기에 재승인 조건에 예를 들면 특정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 이렇게 '편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적시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서상에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부가 특별히 법으로 몇 퍼센트 이상만 하라고 하지 그것보다 더 얼마를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편성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방비율에서...

○ 심사위원

- 재방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시청자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 심사위원

- 잠깐만요. 공통사항 제일 마지막에 가면 '지나치게 높은 재방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3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 것...

○ 심사위원

- 그것 2개입니다.

○ 심사위원장

- 재방비율이 제일 심한 데가 JTBC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채널A도 들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채널A도 들어가 있지, 셋이 다 높지만 제일 높은 것이 JTBC인데 채널A를 여기다 끼집어내면 조금 억울하다는 이야기지요.

○ 심사위원

- 그래서 공통사항에 넣은 것으로...

○ 심사위원장

-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고, 아까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을 빼자고 하셨습니까?

○ 심사위원

-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 심사위원

- 두 번째에 있는 외주제작 편성비율...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사업계획 이행실적 맨 마지막 부분에 '다만, 국내제작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함'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빼고...

○ 심사위원

- 문구도 '외주제작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괜찮고...

○ 심사위원

- 그것은 대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시청시간대에는 괜찮았는데, 전체 외주제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전체 외주제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언뜻 보면 '외주제작 편성비율이 좋구나'라고 평가하는 것 같으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 심사위원

- 외주제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제작비율이 물론 방통위 권고사항들은 다 넘었습니다.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에 비해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비율은 사업자들이 원래 계획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방통위가 Prime Time Access Rule를 만들면 되지요. 주시청시간대에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지요.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 빠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 시간대에는 편성을 해라,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여러 군데 수정이 됐는데 이것까지 같이 해야 이 안건이 모두 통과가 될 텐데...

○ 심사위원

- 첨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은 원자료니까...

○ 심사위원장

- 원자료지만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루핑을...

○ 심사위원

- 저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저희에게 위임해 주면 <불임>을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할까요?

○ 심사위원

-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개념상 분리해서 원본은 손 안 대는 상태로 재분류해 달라, 그런데 보

면서 내용이 우리 계획서와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한 번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심사위원

- 주장은 말고 팩트가 틀린 부분만 빠르게 지적하고....

○ 심사위원

- 사실의 문제를 봐서 있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한 번 보시고 있으면 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만들기 전에 한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각자 자기 것을 보는 것이 빠르지요.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사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논의되는가를 확인했는데, 아까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해프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청자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정기적으로 법을 준수해서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면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왜 굳이 빼려고 합니까?

○ 심사위원

- 말씀대로 시청자위원장이 주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면 저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해프닝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이야기할 때에도 대충 보면 그런 쪽에 수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위원회, 공정정보위원회 명단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국 때 정한 다음에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다양한 인적 구성을 하라, 실제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편이 더 개선점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몇 쪽에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쪽은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페이지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표현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시청자위원회 규정이에요?

○ 심사위원
- 아니요. KBS의 경우 1년 하고 못 합니다.

○ 심사위원
- KBS가 1년입니다.

○ 심사위원
- KBS는 그렇고, 자체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BS는 3년 연임, 세 번 연임할 수 있고....

○ 심사위원
- 지역방송 가면 한 20년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 심사위원장
-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인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개국 이후 지금까지 채널A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이것을 빼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예,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해프닝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 심사위원장
-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 심사위원

- 저자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시지요.

○ 심사위원

- 제가 동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

○ 심사위원

-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시청자위원도 잘 선정해야겠구나 하는 의지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상위법에 그런 것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알아서 할 사항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 심사위원

- 저는 이것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을 빼든 안 빼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하게 의사결정하십시오.

○ 심사위원

- 전체적으로 그러시면…,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 심사위원

-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심사위원

- 어떤 개인에 대한 피해가 가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평에 그 부분을 집어넣는다면 대신 그 안에 회사와 관련 있는 분들이 시청자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총평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쓴다면 어느 특정한 방송사를 지명하지 않더라도….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워딩을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을 일단 빼서 총평에 넣자….

○ 심사위원

-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위원회…, 그것은 제가 쓰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잠시 기다리시고….

○ 심사위원

- 이것이 바람직한지 안 하는지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소액주주는 감사가 될 수 없음, 이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법에 특별하게 된다,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 심사위원

- 일반 기업에서 보면 더 관심이 많을수록 일부러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그 회사의 실적에 관심을 갖는데 그런 측면도 있으니 방송은 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 심사위원

- 경영과 방송은...

○ 심사위원

- 완전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이고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심사위원 개인의 의견이니까...

○ 심사위원

- 총평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넣는다면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바람직한지는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나...

○ 심사위원

- 저도 개별 의견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총평으로 바꿀 수준인지 그것이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요.

○ 심사위원

- 저는 이 표현이 물론 원 발제자, 이 의제를 내신 분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아주 추상화시킴으로써 확대 해석될 우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크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까 봐 우려를 하신 것 같아서 만약에 안 고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 몇 주인지 괄호로 해서 주주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괄호 열고 '(○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읽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을...

○ 심사위원

- '몇 주' 저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예를 들면 ○주 가지고 계시니까 '(○주)'를 표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제안하신 ○○○위원님의 의견은 이것 자체를 빼서 옮기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 심사위원

- 저는 옮기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문제이고 해프닝적인 문제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청자위원회를 보니까 개국 이후로 계속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기적으로 인원을 교체하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양한 시청자 의견을 더 반영할 수도 있고...

○ 심사위원

- 그 의견은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 심사위원

-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 심사위원

-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여기 있으면 평가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냥 지나가니까 저는 그냥 두고 줄을 넣든지...

○ 심사위원

- 그러면 괄호 열고 ○주...

○ 심사위원

- 괄호 열고 ○주 수만 해서...

○ 심사위원

-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여기에 딱 나온 것이 종편 재승인 심사의견서인데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일단 여기에 적히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선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여기HWP 있는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수의 의견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문항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고려해서 넣자 빼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을 총평으로 한다면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데, 개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심사위원

-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 의견이나 다 집어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총평일 때에는 우리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발언이지만...

○ 심사위원

-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목을 '재승인 개별위원 심사의견서'라고 쓰면 제 생각에는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 정도라면...

○ 심사위원장

- 그렇게 달아서, 총평하면 우리가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개별의견으로 들어가면 각자 개인의 책임이고, 그러면 개별의견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여기 나온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요약 정리해서 적절한 타이틀을 붙이면서...

○ 심사위원

- 개별의견할 것 없고 굳이 고치겠다면 '심사자 의견서' 이렇게 쓰시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개별 심사자 의견이라고...

○ 심사위원

- 로우데이터니까 심사위원 의견...

○ 심사위원장

- 그런데 심사위원 의견이라면 토털로 이해가 됩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나중에 백서로 나올 때는 이것은 개별의견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심사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스로 의미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 심사위원

- 이것은 누가 봐도 로우데이터이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 심사위원

- 그런데 로우데이터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별심사자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개별심사자 위원 의견들이 가감 없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통상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 심사위원

-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니, 동의할 수 없는 것 들어가니까, 그러면 개별의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지요.

○ 심사위원

- Disclaimer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 붙여서 이것은 개별심사위원의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어찌고 해서...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그것보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스스로 우리들의 각각 개별 심사위원의 의견이지만 그 심사의견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굳이 우리 의견을...

○ 심사위원

- 아니지요. 전체 의견으로 피평가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시청자 또는 기술 이런 각 분야의 일정한 대표 자격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개별을 굳이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자체가 다양한 논의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빼거나 아니면 포괄적인 의견으로 원래 의견서를 가진 분이 동의해서 바꾸는 것은 몰라도 전체 의견에 대한 의미...

○ 심사위원

- 처음에 심사의견서를 의결한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뭘 수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되 그냥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심사서가 전체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박이 나온 의견이 뭐냐 하면 이것은 개별 의견의 총합인데 그것을 왜 빼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이 의견에 손 대는 것을 반대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아까 사실을 확실히 하자고 했던 부분은 이 회의자료로 남게 될지, 방통위에 전달될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를 논의했지, 원자료를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논의의 폭, 대상을 약간 저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표결할 때 이것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표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 심사위원

-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의견이니까 수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그런 취지로 표결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제가 보기에 건 by 건으로 들어가면서 ‘동의하십니까?’, ‘이것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표결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에는 저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이 건 제가 보기에 하나하나 다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다른 사람이 내용을 수정이나 아니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일부 틀린 것이 있는지 보고 각자 리뷰해서 바로 잡읍시다’라고 했으면 그냥 의견 내신 분이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수정 가부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적절히 저자께서 판단하셔서...

○ 심사위원장

- 발제자께서 아까 팔호하고 ○주라는 <표>를 달고, 원안대로….

○ 심사위원

- ○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요? 그것 달아도 상관없다고….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을 내신 분이 수정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로 하고, 제가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통위의 능력과 해안을 믿고 재교통 정리하는 작업은 방통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모든 토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사항 가>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폐 회

○ 심사위원장

- 오늘 제4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 일 시 : 2014. 3. 12. (수) 09:55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견청취

□ 일 시 : 2014. 3. 12.(수) 09:55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 출석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류춘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이상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차지훈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류길주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배기수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중편·보도PP 재승인 의견청취 속기록

【09시 55분 개회】

【(주)조선방송 의견청취】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청취는 3월 7일 추첨 결과에 따라서 TV조선, 뉴스Y, 채널A, JTBC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TV조선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TV조선의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TV조선 대표자이신 ○○○님, 맞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님, 맞습니까?

○ ○○○ (주)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님, 맞습니까?

○ (주)조선방송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대표님, 맞습니까?

○ (㉞)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PP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㉞)조선방송 대표자

-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대표이사 ○○○입니다. 먼저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께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종편채널이 방송을 시작한지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종편이 기여하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종편채널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포맷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는 콘텐츠 제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개 종편사의 총 직접제작비는 민영지상파방송 규모로 커졌으며 PP 전체 제작비 규모의 20%를 상회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는 외주제작 시장의 환경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편채널의 외주제작 물량이 많아지면서 PP외주제작 시장은 2배 가량 커졌고, 방송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던 외주제작사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 여러분! 예상과 달리 4개 종편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TV조선은 개국 준비 단계부터 오랜 방송 경험과 자원 및 인력을 갖춘 막강한 지상파, 그동안 꾸준히 모집과 경쟁력을 키워온 대기업 계열의 PP, 그리고 동업 종편채널들 사이에서 가까운 어떤 방송을 지향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 제작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장르에 역량을 집중하고, 방송 매출을 고려한 적절한 제작비 투입을 통해 방송 초기의 경영 안정을 도모키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초기의 전략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신생방송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기여하는 방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TV조선 설립에 참여해 준 많은 외부 주주들의 신뢰를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인뉴스인 ‘뉴스쇼 판’은 우리나라 방송의 기존 뉴스 문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핵심 아이템을 선정 집중 보도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종편 메인뉴스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과 대담 위주의 시사프로그램 편성으로 그동안 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낮 시간대의 TV시청량 또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방송 초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청률에만 연연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 정보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작 방송한바 있습니다. 종편채널로서는 유일하게 ‘국악나락’, ‘북24’등 국악과 독서 관련 고품격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퀴즈쇼 등 나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면서 교양이 강한 채널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콘텐츠 제작의 경우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재원을 투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던 방송환경과는 크게 달라진 여건 때문이

가장 컸다는 것을 심사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일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투자했을 경우 회사 자체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깝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대담프로그램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진행이나 발언 등으로 야기된 방송품위 문제와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TV조선은 지금까지의 방송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함으로써 한층 세련되고 성숙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노력도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콘텐츠 투자를 늘려나감은 물론 장르간 균형된 편성을 위해 드라마를 포함한 예능분야 제작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도비율은 줄여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조언을 바탕으로 방송사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재미와 감동, 유익함을 주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TV조선의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미 ○○○ 대표께서 모두발언에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TV조선이 3년 전에 승인 심사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초기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콘텐츠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바로 이 부분과 연계해서 편성비율에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재방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콘텐츠 전체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당시에 종편사업자가 당시 2개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광고시장의 성장에 대해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일에 사업계획서 낸 대로 투자를 했다면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태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것은 저희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사업초기의 방송 재승인을 받기도 전에 바로 증자하는 일이 생기면 특히 외부 주주들에게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일이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결국 콘텐츠는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그것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줄였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제출한 사업 5개년 계획을 보시면 거기에서 느끼셨지만 점진적으로 늘려서 저희가 초기에 약속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

면 재방비율도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료방송이라는 24시간 방송을 하는 시스템상 재방비율이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재방비율을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지상파와 비교해 볼 때에도 재방비율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말씀을 하셨는데 TV조선은 종합편성채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간 편성실적도 보면 종합편성채널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적이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 상황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5년간의 편성계획에서도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상황과 관계없이 향후 5년간의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종합편성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종합편성채널의 원래 목적에 맞게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조정하거나 낮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중편채널의 경우에 편성비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규제라고 할까, 방송법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사·보도, 교양, 오락 크게 세 장르로 나누어서 기계적으로 33.3%씩 하는 것이 중편채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어느 장르가 특히 우리가 특징점이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시청자들이 '그래, 그 채널은 그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채널보다 강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늘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특히 방송 초기에 조금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조금 줄이고, 현재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비율이 00% 정도 금년 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이것을 줄여서 2018년 제출한 마지막 계획 연도에는 00%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00%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고, 교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오락은 상대적으로 지금의 00% 미만에서 점진적으로 00%대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사·보도와 교양이 강한 장르채널이라는 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위상에 크게 어긋나는 편성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재방비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셨고, 또 부연설명하면서 지상파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승인 신청서를 살펴보니 재방비율이 계획대비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향후 5개년 계획에서도 이를 해소할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방비율을 낮출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지금 계획서상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재방비율을 낮추는 추이가 만족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종편에 특히 초기 사업자로서 재방비율이 〇〇%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르는 사이에 재방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일어나는 재방비율은 아침 일찍 그리고 새벽에 주로 재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방비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상파들도 낮방송을 하면서 재방비율이 높아져서 25%~30%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상파만 제외한 PP만 놓고 보더라도 지상파 계열의 PP들이나 대기업 계열의 PP들의 재방비율과 비교해서 종편채널 저희뿐만 아니라 4개 채널을 다 합해도 평균 40%를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편의 재방비율이 크게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희들이 콘텐츠에 투자를 점점 늘려가면서 재방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재방비율을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서에 낸 것보다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간 광고계획 실적이 계획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 2014년 이후에 광고매출을 보면 이제까지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광고매출 확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올해부터는 자사 미디어랩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미디어랩 체제 하에서 많이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도와 광고판매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광고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떤 예방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지금까지 광고매출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광고시장이 정체 내지는 더디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종편사들의 시청률이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광고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9월부터 각 종편들의 시청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작년 말 모든 4사 종편의 시청률이 이른바 PP의 마의 1% 라는 시청률 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018년 사이에 시청률이 더 성장해서, 특히 TV조선 〇〇〇〇년경에는 가구당 평균 시청률 〇%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한 번 탄력이 불기 시작하면 금년부터 〇〇〇〇년까지 한 〇년 동안은 지난 3년간에 비해 광고신장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특히 TV조선의 경우 〇〇〇〇년이 〇〇〇〇년 〇년에 비해서 〇〇%가 넘는

광고 신장률을 보인바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랩 체제 하에서 보도가 광고 영향에 미치지 않게 공정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실제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광고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방송에 있어서는 보도의 영향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광고주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잘 아시는 바대로 광고라는 것이 홍보성 광고와 마케팅 광고가 있는데, 마케팅 광고는 철저하게 광고의 효용을 보고 하는 것이고, 홍보성 광고에 있어서 일부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그런 영향을 아주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결국 콘텐츠 경쟁력이다, 지금은 그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하는 거의 모든 광고주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보도의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절로 자정역할이라고 할까요, 광고계와 실제 광고 본사, 특히 앞으로 미디어랩 체제 하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본사의 보도 부분의 영향이라는 것은 비록 소수 부분적으로 적게 있었다 하더라도 더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로에 가깝게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편성하는 종편에서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위원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운영기구가 주로 간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 당사자나 일선 취재기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훨씬 더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도에 있어서 특히 공정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생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정성이라는 방송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성위원회는 비록 최근에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법제화되지 않았습지만 법제화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미 2011년부터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을 개국 직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간부들 위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그다음에 부장급 이하 물론 최소 차장급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5명, 부장급 이하 중간 간부가 5명 이렇게 5:5로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선기자나 PD들이 다시 편성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대표를 맡고 있는 제가 아주 수시로 일선기자들과 PD들

과 아주 자주 소통을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편성이나 보도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의견들을 직접 청취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위원회에 비록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편성위원회를 좀 더 그런 방향으로 bottom-up 의견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저희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송심의 관련 자체 검증시스템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만 TV조선 방송 자체에도 심의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국 이후 2013년까지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총 ○○건에 이르는 제재를 받았습시다. 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청자 불만접수 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TV조선 방송자체 심의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향후에 재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특별히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가 가장 역점을 최근 들어서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방금 지적하신 자체 내 내부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비록 이것을 다루는 전문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법정제재나 규제에 앞서서 저희가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는 여러 안을 가동시켜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뉴스는 팩트체커제를 일찍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사업계획 초기부터 도입하자는 합의에 의해서 개국 때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히 부분부장 정도의 레벨이 있는 간부가 해 오다가 최근에 부분부장이 회사를 떠나면서 고참 부장급 인사가 팩트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뉴스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모든 시사·대담프로그램에 팩트체커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다른 종편사와는 달리 작년 여름부터 심의팀으로 있던 것을 심의실로 격상해서 지상파에서 다년간 심의업무를 다룬바 있는 고위 간부를 심의실장으로 임명해서 직접 대표이사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실에서 체크하는 것은 매일매일 리포트를 읽어볼 정도로 하고 일주일에 세 번 있는 간부회의에서 강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불만건수는 시청자센터를 종편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건의나 불만,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제가 단 한 분 것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일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자센터와 심의실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저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외부 법정제재기관에 앞서서 자체 검증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고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의 지적에 앞서서 시청자들의 의견이나 내부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양하게 프로그

램 포맷의 변화, 진행자나 출연자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이나 앞선 질문에서 일부 내용이 언급이 되었는데, 2011년~2013년까지 총 투자실적이 당초 계획하신 것에 대비해서 약 ○○%대로 타 종편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저조한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에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부의 환경요인이 굉장히 컸다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실적이 다른 종편에 비해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투자를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첫째는 저희가 다른 종편사에 비해서 자본금이 1,000억원 정도 적게 출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자본금을 모으는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진성, 아무 문제없는 클린주주들을 모으자는 당초의 회사 강한 내부 주주모집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탓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향후 우리가 IPO를 할 때 외부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자본금이 특별히 많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3,000억원이 당시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의 자본금 규모를 보면 방송사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3,000억원 이상의 초기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콘텐츠를 투자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2012년에 집중적으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종편의 콘텐츠 투자의 포지셔닝을, 특히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야 초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편도 거의 비슷한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대기업 계열의 PP 정도 식으로 편성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져갈 것이냐, 또는 지상파와 비슷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저희가 경험부족에 의해서 드라마의 경우 예를 들면 지상파와 비슷한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종편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굉장히 저희가 참담한 실패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2012년 하반기부터 드라마 부분의 투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대신에 저희가 교양이나 프로그램에 좀 더 주력해야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락에 대한 투자가 크게 저조했던 것이 투자실적이 타 종편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약속한 부분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저희가 투자 명령을 정부가 내려 주셨음에도 작년 8월 이후에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이 워낙 잦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회사가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정도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개년의 투자 추정치를 낼 때에는 현 종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송산업 여건이나 광고매출의 시장을 감안해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내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의 투자계획은 저희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여덟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2013년도 방송장비 및 솔루션 국산화 비율이 타 연도에 비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비율은 얼마이고, 차이가 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국산장비는 전체적으로 개국 준비 단계서부터 작년 말까지 국산장비 도입은 장비도입 구매 비용으로 따지면 〇〇%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장비 개수로 아이টে으로 〇〇%가 정도 넘는 수준입니다만, 금액 대비 정확하게 〇〇%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이টে 비율로 보면 〇〇%가 넘습니다만 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진했던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카메라나 편집 기기는 국산장비를 도입하기 어려웠고, 그밖의 것은 될 수 있으면 국산장비를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장비나 솔루션을 구축할 때 TTA나 장비교육심사위원회 인증을 획득한 것을 구입해야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인증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장비나 솔루션은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가을에 완공 예정인 상암동에 스튜디오를 준비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국산장비와 솔루션을 많이 매입해서 갖출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질문의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경영회계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성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NPV를 산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현금흐름을 반영한 NPV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고, 전문가들도 실무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영구 성장률에서 〇%를 적용한 영구 가치를 반영해야만 〇원 정도 플러스 NPV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5년간은 사업성이 없다고 예측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가 금년부터는 콘텐츠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특히 오락 분야의 콘텐츠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만 광고매출도 시청률이 작년에 〇〇~〇〇%의 시청률을 올렸고, 금년의 경우에도 작년보다 시청률을 더 올릴 계획으로 있어서 〇〇〇〇년까지 평균시청률 〇%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광고매출도 점차 늘어가면서 저희 예상에는 광고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〇원을 돌파하는 순간 흑자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에 적자가 불가피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〇〇〇〇년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합니다만 앞으로 광고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유통수입이 점차 늘어갑니다. 세 번째 작년부터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방송수신료에 대한 배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어떤 시청률을 내는가, 콘텐츠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콘텐츠 제작비를 어떻게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수신료 규모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〇〇〇〇년까지는 어렵더라도 〇〇〇〇년에는 반드시 Turn around가 가능하다, 그래서 〇〇〇〇년 이후 저희가 계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사업성이 있는 종편의 비즈니스가 크게 이익을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〇〇〇〇년부터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혹은 자료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채널 이미지와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르간 균형 있는 편성을 제공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내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 시청자들의 시청욕구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성을 하는 채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TV조선의 시청층을 분석해 보셨을 텐데 주시청층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향후에 다양한 시청층을 포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가 매년 주시청층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년 3개월 남짓 제작방송을 하면서 저희의 주시청층은 50대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4개 종편 가운데 주시청층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 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인데 종편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주시청층은 50대, 60대가 주시청층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초기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청층은 주시청층대로 그대로 살려가더라도 향후 다양한 시청층을 확보하지 못하면 종편으로서의 경쟁력이 확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20~40대까지의 젊은 시청층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TV조선이 앞으로 놓여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해서 향후 5년 동안 이런 젊은 시청층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제작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장

-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광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번 질문과 연관된 부분인데 광고와 보도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줄어들 것이다, 자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사 1렘이 되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외부인사들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중영업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소위 대포광고나 홍보광고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홍보광고는 광고를 안 내보내고 돈을 받는 형태이고, 대포광고는 먼저 광고를 내보내고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형태라고 외부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영업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1사 1렘으로 갔을 때 렘을 TV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광고영업자들을 그대로 옮겨서 렘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그것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실제 광고영업률이 낮는데 그것을 미디어렘이 그런 인원으로, 또 그런 커미션을 받아서 과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표님은 어떤 입장인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실제 저희는 광고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포광고는 적어도 TV조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보광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마케팅 광고가 전면 대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력이 마케팅 광고가 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광고영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광고주들은 현명하다, 그래서 광고를 실제 하지 않고 그룹의 이미지만 가지고 광고비를 주는 시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의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상파의 경우도 홍보성 광고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편의 경우 전면적으로 이것을 줄인다고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차지하는 비중이 결국은 마케팅 광고 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되는 소비제품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특히 외국계 기업은 전혀 홍보성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광고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국적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콘텐츠의 경쟁력이 광고의 매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려를 표명하신 영업인력이 그대로 이동하는 데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종편들이 1사 1렘을 하면서 그동안 종편 회사 안에 있던 광고영업 인력이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영업 인력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부 보완해서 하나 주력 부대는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본사 보도의 영향력이 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이 과연 수수료만 받아서 되겠는가, 저희가 초기 0년 정도는 미디어렘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년이 지나면 결국 수수료로 적지만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올라가고 오락이나 타깃 광고층에 특히 주력하는 광고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락분야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이 올라가서 전체 시청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면 결국 광고매출은 연동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또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심의시스템 작동에 대해서 문제를 드렸는데 심의팀을 심의실장으로 임명해서 강한 주문을 하고 있고, 시청자 의견을 대표님이 강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의팀이 심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 많이 나타난 것은 제가 보기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또 모니터링된 내용이 피드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전문화 방안과 혹시 피드백 강화방안의 계획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혹시 지금까지 시정조치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가 내부의 시스템 작동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했고, 특히 여론정책을 오랫동안 다루었던 한 사람으로서 꼭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리 방송 초기의 핸드캡이 있다 하더라도 품위를 훼손하는 방송 진행, 또는 출연자들의 수준이 미흡한 발언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례가 있습니다만 열 분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가 있고, 또 시청자위원회 바로 산하에 공정정보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두 위원회를 할 때마다 강한 톤으로 주문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아무리 바빠도 제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시청자위원회는 개국 이래로 꾸준히 직접 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또 공정정보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공정정보특별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교수님이 반드시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게끔 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리포트를 먼저 받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두 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모니터요원들을 가동하되, 특히 교양·오락이 아닌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모니터요원들이 전체 모니터요원의 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모니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외부의 공식·비공식 각종 자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방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부족한 점들에 대한 모니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부족하지 않느냐, 모니터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바로 반영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더 한층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행자들과 출연 패널들에 대한 내부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때로는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과감한 교체 등을 포함해서 강한 조치들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잘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것은 너희가 정말 현저하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을 해 주는 시청자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시정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소년 모니터요원들도 활용해서 젊은 세대가 볼 때 TV조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받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한층 모니터들을 강화하고, 피드백에서 효과가 있도록, 성과가 나타나도록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연동되어 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도의 비중을 ○○○○년까지 많이 낮춰서 ○○%까지 낮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도프로그램이 ○○%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보도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보도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른바 재방비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점 때문에 보도프로그램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율을 앞으로 ○○%까지 내리면 결국 오락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락프로그램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결국 재방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제작비도 더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해 오신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보면 앞으로 갑자기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과 달리 방향을 틀어가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위원님이 정확하게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 그리고 해결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도 비중이 높은 여러 이유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보도를 줄이고 오락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면 제작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결론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오락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론칭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상당히 콘텐츠 경쟁력이 있겠지라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던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오락 분야의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자신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TV조선의 편성을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월 하순, 3월 초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오락분야의 드라마를 포함해서 예능, 드라마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점점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광고매출도 늘어나고 그러면 콘텐츠 투자비를 늘려 나갈 여력이 점점 더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도 비중을 낮추고 오락에 대한 비중을 높여도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손익 문제에 있어서도 큰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년 후자 전환이 최소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오락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은 콘텐츠 경쟁력, 즉 시청률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를 늘려 나가는데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쟁력 있는 재미와 감동, 유익함을 아울러 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제작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기술직 인력현황을 살펴보니 TV조선의 정규직이 ○명입니다. 특정 타 종편사와 비교하면 ○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인력을 가지고 안정적 서비스와 미래의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조선영상비전을 통해서 ○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분리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는 처음에 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술직을 본사에 안고 가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지상파 중에 SBS가 1990년대 후반에 분사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측면에서 기술인력은 처음부터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는 전액 TV조선이 출자해서 조선영상비전에 100% 자회사로 기술 부분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TV조선 본사에 기술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명밖에 없는 이유는 주로 조선영상비전과의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체를 물론 총괄하는 감독관리 역할을 합니다만 그래서 ○명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TV조선의 인력이 타 종편에 비해 적습니다. 작지만 강한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경영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기술직 인원도 타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나 조선영상비전의 규모가 이미 ○여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세 번 열리는 전체 부서장 회의에 조선영상비전의 대표나 해당 고위간부들이 항상 참여해서 방송기술, 장비개발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다섯 번째로 공정성 담보기구와 관련해서 편성위원회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앞으로 일선 취재 제작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타 종편 방송사의 경우 이미 일선 취재 제작진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계획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선방송의 계획에 그렇게 하겠다고, 따라서 대표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재승인 요청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편성의 자율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편성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편성의 자율성 기구로 밝히고 있지만 편성위원회 회의록은 편성전략팀 회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편성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지금과 어떻게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지금 편성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과 그다음에 부장급 이하 차장들로 구성된 일선에서 실제 편성제작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거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와 있고, 또 편성본부 내에서는 일선 제작진 실무자들이 이것은 거의 bottom-up으로 모든 편성이나 제작에 참여하고 있

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위원회를 일선 제작진들이 실제로 아예 구성
 멤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의지를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편성위원회의 운영실적상에는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지 자율성·독립
 성에 대한 논의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숨김없이 말씀드리
 니다만 경영진 쪽에서 편성에 대한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경영진 전체 넓은 의미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종편보다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
 서 아예 편성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보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편의 출범 이념 중의 하나가 글
 로벌 미디어 역량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높은 보도프로그램의 편
 성비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층탐사보도는 3년간의 실적을 보거나 향후 계
 획을 보더라도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제작비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인적 인프라나 네트
 워크의 미비인지, 또 전문성 부족인지, 아니면 기타 이유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TV조선에 대한 시청자들 또 TV조선을 아끼는 많은 분들
 이 공통된 주문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글로벌 뉴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루
 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뚜렷한 성과를 저희가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 TV조선에는 국제부에 아주 베테랑 기자가 부장을 맡고 적지 않은 인
 력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부터 국제부의 역
 할, 보도본부 내에서 국제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외부의 전문역량이
 있는 리포터들이 있다면 더 영입할 용의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올바로,
 심층·분석·평가해 줄 수 있는 컨트리뷰터들을 저희가 〇명 정도 전체적인 정치·경제·사회·문
 화 부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평가·분석 방송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더 확대해서 전문 프로그램도 더 만들고 뉴스에서도 글로벌 이슈를 더 많
 이 심층 다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유를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TV조선의 자체적인 특파원을 해외에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편 중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재원이 비록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〇년에 〇명씩 정도를 〇년 동안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국제적인 글로벌 감각을 강화하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심층으로 다룰 수 있는 역
 량을 구축하자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 부분은 좀 더 강

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해외 유수의 언론매체들과 프로그램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인력이 커버를 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컨트리뷰터의 적극 활용, 그다음에 해외특파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연수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인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국제부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가 나오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 종편이 처음 출발할 때 보편적 시청자를 지향한다는 것이 있기는 했는데 실제로 지상파 채널이 4개씩이나 있고, 그다음에 종편도 2개에서 4개로 늘었기 때문에 원래 케이블TV의 취지를 살리자면 좀 더 차별화된, 세분화된 시청자를 지향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20대, 40대 시청자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시청자들이 광고주에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기존에 그런 쪽으로 넓히기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당분간은 아무래도 50대나 그 이후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 현재 서비스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보도채널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청자층에 대해서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젊은 시청층, 광고 타겟 시청층들을 특히 끌어 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는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이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TV조선이 종합편성채널로서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시청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의 주시청층인 50대, 60대 나아가서는 70대까지 포함된 장년층 이상의 시청층을 확실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보도가 됐든 다른 교양·오락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시청층을 확실하게 끌고 가면서 그분들이 더 주시청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층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특히 최근에 예능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젊은 시청층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다, 시청률에는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온라인상 검색어 순위나 또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젊은 세대 시청층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조그마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어느 정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그런 방송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의 경력을 보면 언어순화나 그다음에 품위 있는 방송을 만드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체 심의시스템의 질문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TV조선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진행자와 출연자의 막말방송이나 인신공격형 방송, 또는 정치적 편향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TV조선이 외부에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회색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TV조선이 되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부 검증 시스템이 과연 진행자와 패널 선택에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둘째는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진행자와 출연자에 문제가 발생해서 심의제의를 받았고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자와 출연자가 반복해서 출연하는 경우,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여러 번의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와 출연자는 별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의 법정제재를 받으면 출연자와 진행자를 교체하려는 제도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현재 TV조선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특히 보도전문채널처럼 상세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차별성을 가져온다는 취지하에서 낮시간대의 시사·대담프로그램의 여러 포맷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심의대상이 되는 폭이 굉장히 다른 종편에 비해서 많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인을 떠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검증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바로바로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로부터의 지적을 받기 전에 내부에서 스스로 심의실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도적으로는 강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상에서 그리고 심의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피드백이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나 또는 PD들에게 바로 이것이 성과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좁아져 있는 출연자 선정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 출연자를 섭외 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조직에서 원하지 않건 또는 개인적으로 출연을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그분들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좀 더 폭넓게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아예 보도본부 안에 좀 더 폭넓게 패널들을 섭외할 수 있는 아예 전담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광범위한 여론의 다양한 것을 방송에 반영하기 위한 섭외전담팀 신설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진행자나 출연자의 자질 문제, 부족한 부분, 품위와 관련된 부분, 방송의 진행상 잘못된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별점제도를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종편이나 지상파 방송의 경우 다양한 편성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프로그램 편성량에 대한 것입니

다. 어린이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주로 어떤 시간대에 편성되는지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TV조선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지상파에서 했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뽀로로’, ‘꼬마자동차 붐붐’ 같은 기존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구매해서 트는 것이 주 어린이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구매한 어린이·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다큐 ‘사나운 녀석들’ 같은 주로 자연물이 주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답변드리면 종편이 다양한 시청층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자체 프로그램을 하거나 또는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실제 편성시간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상파가 편성하고 있는 시간대인 아침 아이들이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도 편성해 봤고, 또 오후시간에도 하교한 이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도 편성을 해 봤는데 워낙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저희가 시청률에만 연연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만 초기에 종편이라는 새로운 채널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청률에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나와도 정말 안 나와서 저희가 어린이들이 사실상 시청할 수 없는 시간대로 옮겨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자신이 정부에 있을 때 어린이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장려 차원에서 지상파 제작 책임자들을 불러서 “왜 애니메이션을 자체적으로 안 하느냐, 이런 일정한 비율을 정해라”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기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종편 책임자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종편이 지상파도 하지 못하는 애니메이션의 자체제작을 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다양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환경이 매우 달라졌다, ‘90년대 후반에 방송정책을 펼 때와 2010년대 중반에 와서 어린이 전문채널이 워낙 많아졌고,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도 수도 없이 많아진 상황에서 과연 지상파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는 어린이시청층이나 엄마들이 종편에 들어와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정부 당국에 이 부분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이나 애니메이션 방영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위반하는 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조금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제대로 이것을 지키고 있지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 심사위원장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대표님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TV조선

의 등장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한 측면의 한 가지로 외주제작사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물론 처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의욕적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외주제작 시간 계획과 외주제작비에 지출할 비용 두 가지를 따져 보면 외주제작 단가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주제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시간은 별로 안 줄었는데 제작비 지출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승인 사업계획서에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외주제작 평균단가를 떨어뜨린 결과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모두발언에서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제작비가 종편 전체로 보면 당초 사업계획서 대비 높지 않기 때문에 외주제작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TV조선만 놓고 보면 저희가 드라마를 2012년 가을 이후 2014년 1월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주제작 비용이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 면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종편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TV조선은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양, 예능의 대부분은 외주를,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전부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방송사는 편성권 위주로, 콘텐츠 제작은 외주제작사 위주로 흘러가야 반드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은 그런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외주제작의 지위가 향상됐다, 또 기여했다고 자부하느냐 하면 적어도 제작 관행, 그다음에 양자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과거 종편이 출연하기 전보다는 훨씬 이것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제가 자주 제작사 대표들과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작권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일하는 분위기가 종편과 하는 것이 특히 TV조선과의 관계는 굉장히 부드럽다, 아주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영원한 올이었던 외주제작사들이 저희와 동등하게 하고 있고, 필요 불가피하게 시청률이 워낙 안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파일릿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률을 타진한 다음에 일부 내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제작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종편과 지상파를 비교해 보면 그런 것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외주제작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드라마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이 향후 5년 동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제작비 대비해서 외주제작 비율은 2012년에 비해 2013년이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PP시장에서 외주제작비 규모가 종편 등장 이후에 대체적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시간 15분에 걸쳐 진행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 대표님께 3분 정도 마무리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까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마무리발언은 1분 정도로 간략하게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와 지적, 조언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답변이 조금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로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TV조선은 방송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성숙하고 질 높은 방송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TV조선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로부터는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그리고 다음 번 특히 종편 재승인 심사 때에는 오늘 주신 지적들이 될 수 있으면 반복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방송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시 20분 속개 】

【 12시 53분 정회 】

【 (주)연합뉴스티브이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오전에 이어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인 뉴스Y의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Y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뉴스Y의 보도전문PP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뉴스Y 대표자이신 ○○○님, 맞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님, 맞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님, 맞습니까?

○ ㈜연합뉴스티브이 최대주주(대리인)

- 저는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 연합뉴스 전무입니다.

○ 심사위원장

-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PP 재승인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 대표님, 맞습니까?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보도전문PP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입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연합뉴스TV 대표로서 심사위원님들께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스Y는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역량과 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사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보도방식과 기술 등을 도입해 개국 2년여 만에 월 평균시청률 ○%를 넘었으며 미흡하나마 보도전문채널로서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뉴스Y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국 1년여 만에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되었으며, 2년이 되는 해에는 공정성은 물론 신뢰성·유용성까지 인정받아 전통 보도채널로서의 위상을 입증 받았습니다. 또한 아직은 적자상태이기는 하지만 수지면에서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했습니다. 조직 규모를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화를 달성하면서 효율적인 제조원가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뉴스Y는 과도한 시장경쟁과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최초 사업계획서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들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뉴스Y의 보도전문PP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

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는데, 첫 번째 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뉴스Y는 한국의 영상뉴스를 ○, ○, ○와 같은 해외통신사에 제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첫째, 현재 진행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KBS, YTN 그리고 아리랑TV와 비교할 때 뉴스Y의 차별적 우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 ○○○입니다. ○, ○ 등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직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이나 주요 발표현장 그런 경우에는 ○, ○ 또는 다른 해외 방송사로부터 영상구매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매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화면을 해외 영상들이 그대로 받아서 전제를 하기도 해서 저희들은 그런 화면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YTN 공중파나 기존 보도채널과의 강점이라면 저희는 큰 길이 아닌 아주 좁은 골목도 들어갈 수 있는 방송중계 시스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는 중계차라는 큰 장비와 여러 명의 기술진들이 동원되지만 저희들은 백팩이라는 가벼운 장비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기존에 장비들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저희들은 가벼운 장비로 들어가서 그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채널의 핵심은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보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뉴스Y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합편성채널들도 전부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Y는 그동안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 위원회 구성을 못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채널의 보도 공정성 의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노조 구성이 계속 지연된다면 공정보도위원회 구성도 늦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심사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노사가 함께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됐는데 지금은 노조가 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 또 시청자게시판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만약 노조가 생기기 전이라도 기자회견 지휘장이나 사원 대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원대표와 경영진이 함께 구성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공정보도위원회가 구성돼서 미비한 점은 있지만 지금까지 공정보도와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1건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편과 차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편채널들은 뉴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편채널은 뉴스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들 채널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채널을 승인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차별화된 포맷의 보도 형식을 지향하고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3년간 그런 특징을 보여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또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현재 뉴스Y의 편성을 말씀드리면 주간 평균 〇〇〇시간 뉴스편성으로 또 하나의 경쟁 보도 채널인 YTN보다 평균 〇시간 이상 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장시간 뉴스 편성으로 언제나 뉴스가 흐르는 채널인 점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뉴스 콘텐츠로서는 국제전문뉴스, 북한 전문뉴스, 지방뉴스, 날씨 전문뉴스, 정치 전문뉴스 등 이런 부분에서 종편과 달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뉴스를 24시간 편성하여 보도채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시스템 면에서도 국내 최초의 3D 버추얼 스튜디오들을 활용한 라이브뉴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 기상전문 예보사가 전달하는 입체감 있는 날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사진전문, 베스트 컷이라고 하는데 사진 전문뉴스도 제작·편성하여 신생 보도채널로서 새로운 방식의 뉴스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차별화된 방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네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국 승인 시 부과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미 작년에 국회의 배재정 의원과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당초 승인조건에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합뉴스의 송고 전 기사와 정보보고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보공유의 방식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러한 정보공유를 한다는 것은 타사에 비해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공적기금이 지원되는 연합뉴스로부터 이러한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경쟁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우선 송고 전 기사는 보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만을 토대로 방송을 제작한다는 확고한 정책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시

시스템상에서 정보공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사업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이 바로 뉴스Y가 연합뉴스로부터 특혜나 또는 연합뉴스가 뉴스Y에 대해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굉장히 유념해서 제가 연합뉴스TV 겸임사장의 입장에서 그렇고, 연합뉴스와 연합TV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비취질 수 있는 것을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공료도 거의 타사 이상으로 연합뉴스가 뉴스Y로부터 받고 있고, 또 지역 취재망이나 특파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타사보다 한 번 리포트 할 때 〇원 정도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결코 차별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Y는 보도전문채널로서 공정한 보도 외에 공익성 실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신청서에 의한 실적을 보면 공익적 캠페인의 경우 〇〇〇〇년에는 〇회, 〇〇〇〇년에는 〇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공사 위주로 해서 전기, 가스, 여성의전화, 소방, 산림청 분야 대체로 이런 분야들에 제한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계획에 보니까 신규로 공익적 캠페인을 연 〇회 이상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 〇회 이상 더해서 제작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〇〇〇〇년에 〇회에서 〇회를 더 하겠다는 것인지, 〇회에서 〇회를 더 하겠다는 것인지 캠페인 횟수를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캠페인 내용에서도 앞으로 선거도 있고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올림픽이나 청소년·어린이 언어순화 문제, 책 읽는 사회 조성, 출산 증가 등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로 좀 더 확대할 분야가 있고 횟수를 늘려서 공익적 캠페인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그것은 편성책임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저희들이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보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기본 콘셉트는 공익입니다. 공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저희 편성원칙 중의 하나가 현장을 많이 보여 주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 간 갈등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이 서로 극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자연적인 제어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회 갈등이나 분규가 있을 때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갈등이 악화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도 공익성을 키워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캠페인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또는 스마트폰 중독예방, 기부 독려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 심사위원

-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보도전문채널로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역에 대한 기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지역밀착형 방송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역프로그램 제작실적을 보여준 것으로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축제 및 행사보도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서도 지역문화를 이해 확산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계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지역 관련해서는 평일 매일저녁 '지방시대'를 특별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방시대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언론들의 협조요청이기도 하지만 지역 언론들이 지역 주요 신문매체들이 자기들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협조 요청을 받아서 '지방시대'에 주요 지방 언론사의 헤드라인 뉴스를 특별코너로 매일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지만 ○들과의 프로그램 협조도 ○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개발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 심사위원

- 2011년, 2012년, 2013년 방송장비 도입 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이 국산 방송장비 도입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그 부분은 담당 배석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연합뉴스TV 방송기술팀장

- 연합뉴스TV 방송기술팀을 맡고 있는 ○○○입니다. 2011년도 기타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잡자재라고 합니다. 케이블이나 커넥터 아니면 그 이외 위에서 열거한 IT시스템이나 송출에 큰 물건들이 아닌 조그마한 물건들, 소모품적인 물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에 국산비율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장비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렉이라는 장비를 설치하는

곳에 PB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국산 제품을 쓰는 것이어서 그렇게 구석구석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장비들은 국산화를 많이 해서 국산화 비율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심사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상황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질문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세 번째 종편 차별화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말씀과 그다음 제작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제나 그다음에 어떠한 다양성을 추구한다든가 보도 방향이 어떤 식으로 종편과 차별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혹시 편성책임자께서 그동안 뉴스Y에서 가지고 있던 차별화에 대한 고민과 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연합뉴스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송분야의 원칙은 첫째 뉴스가 흐르는 채널입니다. 저희는 연합뉴스 송고기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입니다. 결국 같은 콘텐츠가 제공되지만 다른 사들은 자체 취재 내용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연합뉴스의 콘텐츠를 우선으로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뉴스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항상 뉴스가 흐르는 채널이 첫 번째 콘셉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있는 채널입니다. 현장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판단하는 것과 현장을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것과 판단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현장을 가급적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콘셉트는 겸손한 방송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매체들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만 지금 시청자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매체가 시청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겸손한 방송, 가르치지 않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종편과 다른 점이라면 저희는 뉴스 위주로 하고, 또 대담을 하고, 패널을 초청하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의 찬반의견을 가진 분을 동시에 부르거나, 아니면 지금 찬성한 분을 부르면 반대의견을 가진 분을 다시 부르거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매체환경이 복잡해져서 이것이 뉴스인지, 주장인지 또 소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합뉴스가 만드는 TV로 그런 부분을 이것이 과연 팩트인지 확인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방향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연합뉴스의 모토인 중심을 잡는 언론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사실확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제출하신 재승인 계획서에 보면 사실확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장치든 위원회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다른 종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물론 뉴스전문채널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교양이나 시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주제작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년 기준에 전체 ○%, 구매가 ○%, ○○○○○년이 돼도 외주가 ○%, 그다음에 구매는 ○%, 자체제작은 ○%입니다. 이것은 뉴스 뿐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까지 해도 자체제작이 외주보다 많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종편이나 보도PP를 우리가 허가하면서 콘텐츠 생산이나 콘텐츠 개발 부분에 대한 지원의 정책도 같이 있었는데, 외주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편성비율을 높여서 콘텐츠를 진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㉞)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사실확인 시스템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 보도의 근간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연합뉴스 내부에 사실확인 시스템이 편성위원회, 공정보도위원회 등 아주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연합뉴스에서 송고된 기사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기사라고 1차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센터나 또는 자체 심의실에서 사후작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뉴스가 흐르는 채널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전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듣고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주제작 편성비율이 낮은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뉴스가 강점이고 뉴스가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뉴스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주비율이 낮았는데, 앞으로 콘텐츠 투자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계획에 맞춰서 작년에는 ○원의 콘텐츠 투자를 했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조금 초과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원 이렇게 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주로 저희는 ○○, ○○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작게는 두 가지 질문인데 크게는 시청자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신청서에 보면 소수 시청자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약 ○분에서 ○○○○○년에 ○분까지 늘려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현재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분에서 ○분대의 프로그램을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계획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소수자면 소외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명칭은 재승인 신청서에 나와 있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안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과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여쭙보는 것입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어린이·청소년 관련은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나 수능대비, 수능대비가 청소년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폭력에 관해서 특별대답이나 제작물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문화는 '무지개 Y'라고 해서 인터뷰 프로그램, 또 '하모니'라고 해서 적십자와 같이 하는 다문화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규정에 맞춰서 자막방송을 신생사지만 ○시간을 하고 있고, 화면해설방송을 매일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방송도 ○시간씩 하고 있는데 수화방송의 경우 다른 방송사들은 수화하시는 분이 틀에 갖춰서 하는데 저희는 그 틀을 없애고 크기도 키워서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두 번째 질문은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방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애인방송 종류에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이 있는데 비교적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은 제작이 쉬운 반면에 수화방송은 그것보다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방송 등을 제외하고 수화방송을 보면 현재 ○시간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시대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작은 질문이지만 특히 수화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시청자들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해서 편성한 것인지, 그다음에 해야 하니까 ○○시대부터 ○시간 동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화방송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화방송의 분량비율이 연간 ○%에서 물론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라는 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비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중요도를 대비해 보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정보를 적시에 보다 많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것이 정부가 제시하는 ○% 안에 딱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 특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매출실적이나 영업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치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편성하는 것도 오히려 뉴스채널에서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장애인 수화방송을 하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청자위원회 대표 한 분은 장애인단체

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갇힌 형태로 하느냐, 열린 형태로 할 것인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 전체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들었어야 하는 점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의사는 들어보고 그 시간대와 그런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정한 기준만 지키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많이 하라는 지적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편성된 것 이외에 예를 들면 지방선거방송이나 월드컵이나 특별한 수가 있을 때 특별히 더 편성해서 0%를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상황이 허락되면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화면구성에 좀 더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법인의 대표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송사도 그렇겠지만 질 높고 품격 있는 뉴스 제작을 위해서는 안정된 고용환경 하에 있는 적정 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서상에 <고용현황표>에 의하면 고용계획의 달성이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족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질이 조금 다르겠지만 종편과 비교해서 보면 엄청나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습니다. 정규직 고용실적은 계획대비 실적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장차 계획에 부응하는 정규직의 증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내부적 요소를 제외하고 신규 채용계획이 전무합니다. 비록 총원 규모가 소수이겠지만 국가적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 혹은 청년실업 해소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편성책임자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시청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점점 다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보도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점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Y에는 연구직이 전무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고용인력을 0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실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0% 초과한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0명입니다. 초기에 투자비도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인원이 계획보다 엄청 늘어나고, 그것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또 재무상태나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방송여건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상태가 나아지면서 올해도 상당부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많은 부분을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정여건이 더 좋아지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신규 인력채용 문제에서 계획이 없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업계획 제출보다 많은 인

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규인력 채용은 현재의 여러 가지 회사 경영 여건상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연합뉴스에서 파견된 사원이 한 〇여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파견사원도 본사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나머지 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〇~〇명 신규채용했습니다만 본사로 파견인력이 다시 돌아가고 또 회사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신규채용도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비 투자가 현저히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적자상태로 상당히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육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선 교육투자부터 늘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입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R&D 분야입니다. 실적에 보면 〇〇〇〇년에 〇원, 〇〇〇〇년에 〇원, 〇〇〇〇년에 〇원 해서 총 〇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실적은 〇〇〇〇년에 〇원만 하였고, 〇〇〇〇년은 〇월 〇일 기준으로 〇〇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계획에 보시면 그림이 대단히 좋습니다. 〇〇〇〇년까지 〇원이 계획되어 있고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제대로 될지, 현재 계획상에서 〇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 질문은 2013년은 과연 방송장비산업 기여하는 연구개발 분야에 얼마가 투자되었으며 이제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〇원 계획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정말 대표님께서 제대로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위원님 지적대로 회사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당초 계획대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표자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〇원 정도 연구개발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 2013년도….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2013년에 〇원….

○ 심사위원

- 2013년이 〇원이고, 2014년은 〇원입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기술팀장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 연합뉴스TV 방송기술팀장

- 연합뉴스TV 방송기술팀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시 2011년에 ○원, 2012년에 ○원, 2013년에 ○원 정도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2011년 12월 1일에 개국을 시작하면서 2011년에서 2012년을 걸치면서 한 ○원이 넘는 돈을 방송장비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을 거치면서 사옥을 이전하면서 한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따져보면 ○원 가까운 돈을 저희가 방송장비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저희 자본금이 600억원인데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의 경우 개국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못 했고, 2012년은 일단 개국을 했기 때문에 방송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다른 분야 쪽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송이 나간 것이 우선이고 연구개발은 그 당시에 방송에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에는 미비한 숫자이지만 ○원 정도만 투자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연구개발을 이행 못 하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이행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와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행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항목은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켰고, 항목 대신 다른 면에 투자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시스템이나 장애인 자막자동송출시스템 또 연합뉴스미디어랩과 공동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원원 정도의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기록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출했고, 일단 항목은 다르지만 연구개발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방송 안정화를 위해 방송이 필요한 쪽으로 비용을 먼저 쓴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향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그렇게 어려우면 이 계획은 다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까? 대표님이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물론 재정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5개년 계획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그 의지는 갖고 임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기술 분야 쪽 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시설이 잡자재나 커넥터나 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2011년도에 ○원, 거의 ○원 정도를 기타시설에 썼고, 계획도 보면 2014년도에 ○원, 2015년에 ○원, 2016년에도 ○원, ○원,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런 잡자재, 커넥터나 랙들이 ○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합뉴스TV 방송기술팀장

- ○○○입니다. 잡자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블뿐만 아니라 부조시설을 꾸밀 수 있는 데스크나 월 장치들 아니면 기계실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랙이나 랙을 보완할 수 보완 장비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는 인건비도 어느 정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2011년에 ○○원을 투자해서 기타시설에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조시설이나 스튜디오 내부 시설을 위한 장비들, 장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은 액수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잡자재나 랙을 가지고 ○원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연합뉴스TV 방송기술팀장

-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비용 시트를 보면...

○ 심사위원

-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TV 방송기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 공통질문과 관련된 사항인데 뉴스라는 상품이 원래 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정보상품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창구를 다원화하는 전략은 뉴스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중요한 생존전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뉴스Y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외 주요 방송사들의 해외시장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실제 KBS월드와 YTN과 아리랑TV 간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은 상당한 갈등도 유발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뉴스Y가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가 있으면 있는지, 또 그 부서의 플랫폼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담당자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 그런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글로벌 전략은 연합뉴스가 가진 전 세계 ○명 정도의 특파원과 통신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콘셉트였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글로벌 Y를, 글로벌 뉴스를 오전, 저녁에 편성하고, 특파원

리포트는 종편·보도채널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국제뉴스를 국내에 소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 ○○과 ○○○ 쪽의 매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전역으로 ○○○를 통해 송출하고 있고, ○○에는 ○○○○나 ○○○들과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방송인과 본사와 협력체제가 있는데 그 망을 활용해서 해외 진출한 국내 방송인들과의 콘텐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해외 취재본부는 연합뉴스 국제국의 특파원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국이 그것을 도와주고 있고, 해외진출 부분은 저희 경영기획실에 매체사업팀이 있는데 그 사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취재보도에 아주 오래된 관행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당일에 발생한 사건이나 하루 이틀 된 것은 날짜를 박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고, 일주일이면 넘으면 녹화일자를 귀퉁이에 반드시 밝혀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자료화면이라고 딱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없어서는 상황의 오도,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인천공항에서 내리면서 환한 얼굴로 웃고 내리는 것과 아주 침울한 얼굴을 가지고 내리는 것은 한·미 관계의 기상도를 나타내는 좋은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 것도 자료화면이라는 단서를 안 달고 보도를 해서 시청자에게 주는 오도가 굉장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인터뷰 취재 대상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음성을 변조한다든지, 내건 목적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취재 보도하는 매체에 숨은 의도가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려는 방향에 걸맞게 취재대상은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방송사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원을 가려주는, 하지만 그것이 방송사의 이익을 진작시키기 위해 그러한 이상한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얼마 전에도 저희 시청자위원 몇 분이 그런 지적을 제가 편성책임자에게, 또 그런 사례도 몇 번 있고 특히 자료화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로서 편성책임자에게 그런 것을 주지시킨 적도 있고, 편성책임자가 나름대로 보도국이나 드라마 편성 쪽에 지시를 내리고 중점을 두고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어도 뉴스Y나 연합뉴스 만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적인, 저희가 판단할 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네 번째로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처음에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은 당시에 연합뉴스가 1차 뉴스 제공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론들이 연합뉴스가 방송을 갖는 것에 대해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도전문방송으로 출발한 뉴스Y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방송과의 공정함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이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의심을 받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답변하신 중에 계속 나왔지만 사실상 우리로서는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연합뉴스의 방송플랫폼이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표자께서 부정하셨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정보공유도 같이 하고, 기자끼리 서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예 솔직하게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포기한다고 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인적교류 부분들을 최소화하거나 특히 다른 종편들이나 방송들을 보면 언론에서 소유·경영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소유자와 경영자를 분리하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아예 신청법인의 대표자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연합뉴스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같은 달에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직하면서 느낀 것이 처음 취임하기 전에도 연합뉴스TV도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연합뉴스인포맥스는 자회사라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자 대표로 해서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건이 저희 주주들도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연합뉴스TV가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연합뉴스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합뉴스TV가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제대로 잡힐 때까지는 사장이 겸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주들도 서서히 중요한 파견사원을 금년에도 많이 돌려보냈습니다만 연합뉴스의 인적교류 차원에서 파견사원들도 돌려보내고, 뉴스Y의 자체인력을 더 뽑는 식으로 해서 연합뉴스TV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연합뉴스TV가 어느 정도 빨리 정착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표자로서의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승인 계획서를 보고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은 연합뉴스의 TV플랫폼이라는 인식을 정말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유·경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뉴스Y가 내보내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존의 연합뉴스에 나온 스트레이트 뉴스를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연합뉴스에서 만들어진 뉴스를 재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나름대로의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고, 시장에서 값어치 나가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채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에 치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 어떻게 보면 편하게 그냥 가는 상태입니다. 뉴스는 연합뉴스 것을 받아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서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인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재가공 상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뉴스 자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연합뉴스 기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라는 말씀은 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연합뉴스 기사만을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 취재기자들이 자체제작해서 단독해서 많이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매체가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사는 3년이지만 개국은 2년 조금 넘어서 그런 부분이 외부에 잘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뉴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이지, 연합뉴스의 또 다른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향하는 편성방향이 아닙니다. 즉, 뉴스Y는 연합뉴스의 콘텐츠를 토대로 방송매체로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시청률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외부에 잘 안 나타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개국 이래 이 작은 여건 속에서도 수십 건의 단독 기사를 냈고, 영상도 단독 기사를 많이 취재해서 종편뿐만 아니라 지상파까지 저희 뉴스Y 인용이라고 해서 영상을 전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연합뉴스의 또 다른 플랫폼이 아니냐는 지적은 굉장히 아픈 지적이고, 그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로 말이 잘 안 맞는데 현재 저희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사실확인 시스템이나 팩트 체크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내용이 연합뉴스의 기사를 주로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 부분은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기사가 어떻게 100% 공정하고, 100% 정확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답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이 재승인 과정에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인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은 조건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표현 가지고는 그것이 심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편과의 차별화를 내세웠고, 종편도 어차피 종합편성채널이기 때문에 뉴스를 하고 시사·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편이 초창기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뉴스Y도 보도전문채널로서 경쟁관계가 되다 보니까 외부의 시선 속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종편과의 경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뉴스Y가 선정성,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의제재 현황을 보면 뉴스Y가 선거방송심의 위원회로부터 ○번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정성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번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뉴스Y만이 독특하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히 뉴스 보도전문PP이기 때문에 보도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별한 뉴스Y만의 독특한 또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나름대로 방안들 또 계획들이 지금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아까 제가 연합뉴스의 검증시스템을 거쳤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합뉴스 기사가 나오지만 저희 자체로 확인을 거칩니다. 다만, 연합뉴스 기사가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부연설명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체검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에서 일보 같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취재기자가 현장에 전화도 걸고, 가거나 해서 반드시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향 평준화된다는 말씀이 제가 사실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방송이 여러 매체들이 생기면서 방송 전체가 하향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저도 들었고, 뉴스Y가 그런데 한 요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편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청률 만능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역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역술인을 불러서 특정인에 대한 운세나 특정 정국에 대한 해법을 듣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 시청률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팩트의 전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가 흐르는 채널, 또 현장에 있는 채널에 비중을 두고 담론을 하더라도 치우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과의 차별화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별화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스인지, 소문인지, 주장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뉴스Y는 팩트다, 그리고 100% 믿을만하다고 말씀드리면 오만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뉴스를 전달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편과의 차별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심의도 받았는데 선거방송심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하는 대상이나 기관을 설명하거나 또는 CG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저희가 한 번 나갔는데 곧바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에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경영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채비율에 있어서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비용 등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방법, 상환재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위원님 지적대로 워낙 초기 자본금이 적게 출발하다 보면 초기에 방송장비 시설투자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항상 유동성 위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융부채나 미지급금 관련해서 일단 본사와의 관계도 있어서, 그 전에 부채비율도 높지만 저희 손익계산서상 〇〇〇 〇〇〇〇년도에 〇원 정도 적자가 예상 이 되고 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유동성 위기와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〇〇〇〇년도 계획에도 〇원 정도 적자폭을 잡고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〇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초기 장비와 그다음에 작년에 본사 사옥 이전하면서 들어갔던 아카이브 사업 등 이런 것이 실제 유동성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했던 매출목표나 또 비용절감 노력을 하면 금융부채나 미지급금을 갚아나가는 데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보도채널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가 전문직의 기자들이고, 그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 교육투자 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〇〇〇〇년에는 〇원을 사용했고, 〇 〇〇〇년에는 〇원 가량 사용했고, 〇〇〇〇년에는 〇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〇원대로 쪽 잡혀 했는데, 현재 비정규직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정규직이-〇명인데 이렇게 〇원이라는 적은 액수로 지속적으로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가능할지, 교육훈련투자비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기본적인 리포트 훈련이나 또는 발성법이나 소양 교육보다는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출범할 때 하고 그 후에는 기자들이 숙련되다 보니까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육비 투자가 늘어납니다. 계획서에는 올해 〇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〇〇뿐만 아니라 〇〇나 〇〇도 전문교육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〇 〇들은 〇〇〇〇〇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위탁교육을 반드시 보냅니다.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았지만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불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 투자도 점점 늘어갈 계획이고,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〇원 정도 해서 〇〇〇〇, 〇〇 〇〇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것은 보정자료 〇〇〇쪽을 보면 향후 교육훈련 계획에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〇〇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〇원으로 이해했는데 〇원라고 말씀하시면 〇〇〇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자료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㉞)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다시 정교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1시간 10분에 걸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 대표님께 3분간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가능한 한 기타시설, 잡자재 ○원의 세무내역과 교육비 두 항목에 대해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가급적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간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 (㉞)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

-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하게 답변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뉴스Y는 이번 재승인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특히 오늘 청문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를 이행하는데 구성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소명감을 갖고, 뉴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보도전문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구조의 안정화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뉴스Y는 보도전문채널이지 종합편성을 하는 종편은 아닙니다. 채널 성격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행실적과 계획을 검토하실 때 종편과는 다른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Y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 (주)채널에이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이어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채널A의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널A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채널A의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채널A의 대표자이신 ○○○님, 맞습니까?

○ ㈜채널에이 대표자

- 예, ○○○입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님, 맞습니까?

○ ㈜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님, 맞습니까?

○ ㈜채널에이 최대주주

-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견청취는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심사위원회가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대표님, 맞습니까?

○ ㈜채널에이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PP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채널A 대표 ○○○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채널A는 개국 이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종편을 대표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종편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방송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방송시장 상황이 신생 방송사에게 녹록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채널A는 지상파와 기존 케이블채널과는 차별화되는 신선하면서도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음식문화를 바꾼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데일리 생방송 시사토크의 장을 연 '쾌도난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4회나 수상했으며, 정보

통신정책연구원의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조사에서는 2012년~2013년까지 8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개국 이후 총제작비의 〇을 외주제작에 투자하고, 독립제작사와 판권을 공동소유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승인 이후에는 매년 투자를 확대해서 콘텐츠의 양과 질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넓은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장르간 균형 있는 편성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채널A의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지적을 받으며, 뼈를 깎는 개선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생 방송사로서 부족했던 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재승인 이후 더욱 발전할 채널A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채널A의 종편채널PP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널A는 3년 전 승인심사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채널에이 대표자

- 채널A는 2011년도 승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쟁여건과 또 방송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예측 없이 사업승인의 의욕과 사업승인에 대한 경쟁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경영계획을 수정하여 사업계획서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영자로서 중장기 회사 정책을 또는 경영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수정 보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승인 이후에 또 저희가 예측했던 사업계획서상에서 예측한 그러한 수익규모와 또 투자에 대한 열망 그리고 콘텐츠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2014년 이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에 미흡했던 여러 가지 투자와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승인 이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신청서에 표시되어 있었던 편성실적을 보면 보도프로그램의 비율과 보도 이외의 재방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는 채널A에 대한 외부 비판의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채널A는 향후 본방송 비율을 높이고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본방송 비율을 높이면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또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보도프로그램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작비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많은 제작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제작비를 증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한다는 액수가 현실 가능한 것인지, 두 번째로는 만약 증액한다면 증액한 액수를 가지고 본방송 비율을 높이고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수치 판단을 해 보신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편성본부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편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채널A 편성전략은 장르간 균형 있는 편성입니다. 일단 이것이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보도프로그램의 재방비율, 보도 편성비율이 높아진 이유 중의 하나는 데일리 생방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생방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오전시간과 밤 시간대에도 재방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도와 재방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과 2013년 초의 경우에는 대선 전후로 해서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보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장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잠시 수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국 이후 지금까지의 보도비율은 〇〇%, 교양은 〇〇%, 오락은 〇〇%였습니다. 그리고 주시청시간대는 〇〇%, 교양은 〇〇%, 오락은 〇〇%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간에 일시적으로 보도와 재방비율이 특히 증가했습니다. 〇〇〇〇년 상반기에는 〇〇%까지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반기부터는 〇〇%, 〇〇% 그리고 최근에는 〇〇%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저희가 편성비율을 맞추고 재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〇〇〇〇년에는 재방비율을 〇〇%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보도프로그램, 현재 생방송 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보도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생활밀착형, 생활정보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으로 바꿀 예정이고, 재방 부분에 있어서는 한 동안 개국 초기에 구매물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구매물이 많지 않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콘텐츠나 해외의 좋은 콘텐츠들을 편성하고, 또 어린이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재방비율은 충분히 낮출 현실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작비를 투여하면서 저희는 기획중심의 개방형 방송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제작사와 함께, 그리고 외부의 창작 집단과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계획을 지금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라면 저희가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제작비 안에서 재방비율과 보도비율은 충분히 균형을 맞춘 편성비율로 실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어서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출하신 재승인 신청서를 살펴보면 자체심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 ○○○○’ 프로그램이 이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막말방송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심의제재 현황을 보면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서 2013년으로 갈수록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자체심의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심의제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자체심의제도라는 것 또는 내부 자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널A 편성책임자

- 편성본부장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자체심의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A는 시청자정책심의팀이 있습니다. 2014년 올해부터는 이 팀이 독립된 조직으로 시청자정책심의센터로 사장 직속의 심의센터로 독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대비 심의위원들의 인원도 계속 충원해 나가고 있고, 장르별 심의위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 심의시스템은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나뉩니다. 사전심의를 방송은 예능이나 교양프로그램을 3일 전에 대본 등을 먼저 받아서 사전심의하고, 그리고 방송 하루 전에는 방송 완제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사항은 없는지 지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전심의를 쉽지 않은 생방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프로그램의 경우 보도본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게이트키퍼 시스템을 통해 사전심의에 준하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히 보도프로그램이 심의가 특정기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심의가 많이 걸린 부분이 출연자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세 번 이상 자체심의의기구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적이 있을 때 그전에 경고하고 그리고 출연제재를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적절한 발언, 아니면 공정성에 어긋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부터 자체 논의를 거쳐 출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그동안 출연자로 인한 여러 가지 심의제재가 있었던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고, 출연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심의시스템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청자 의견 반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A가 시청자들의 흥미, 보는 재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 시청자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기구들이 열릴 때 대표자께서 거기에 참석해서 의견을 직접 들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또 그런 지적사항이 전달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한 사례가 있다면 성공적인 사례를 한두 개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자께서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생방송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MC의 자정능력이 실수를 범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논란 이후에 게이트키퍼 시스템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사실상 2년 4개월 남짓 방송을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어시스템에 대해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청자모니터시스템, 사전·사후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개국 초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또 저는 분기에 한 번씩 참석해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들과 대화를 그리고 제작본부나 보도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일 모니터제도가 있는데 시청자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아침 시청률과 더불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 정도의 시청자불만처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답변했고, 또 무엇을 제기했다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이트키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 공정성 훼손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걸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 삼았던 것은 막말방송이나 검증되지 않은 패널리나 또 여러 가지 방송용어가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극 편향적인 출연자를 제재해 달라는 시청자들의 민원을 그때그때 보도본부, 제작본부, 편성본부에 하달이 돼서 그 지적사항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더 받고, 이 게이트키퍼 시스템은 공정성 보도 및 여러 가지 심의에 걸릴 수 있는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재정비 강화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국 이후 총 일곱 차례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편성위원회의 구성문제가 국회를 통과 못해서 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가 주로 간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방송 편성과 제작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작 당사자나 일선 취재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성위원회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취재 당사자들이나 제작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취재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편성본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편성의 자율과 독립에 대해서는 채널A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노력도 하고, 일단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이 참여하고, 일선에 있는 PD와 기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회의가 분기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런 회의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채널A는 이런 편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매주 편성회의라는 이름의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편성제작회의라고 했다가 올해부터는 편성회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이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외에도 각 본부의 실무진 PD와 기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작본부의 경우 5팀이 있는데 5팀을 대표하는 PD들이 모두 참석하고, 편성본부에도 2명의 PD가 참석하고, 보도본부에서도 기자가 참석해서 11명의 인원이 매주 모여서 편성에 관한 의견과 제작에 관한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매주 회의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편성위원회에 보도본부 소위가 구성되어서 특히 공정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포맷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들이, 물론 이도 간부진과 기자들이 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성위원회 산하 보도본부 소위에서도 기자들과 보도본부 간부진과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채널A가 표방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종편사에 없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특이한 기구가 신청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내에 시청자 권리보호소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능으로는 시청자 권익에 대한 사전적 내지 예단적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케 하는데, 우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사후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참여에 관한 계획 중에 시청자위원회의 직무와 역할을 강화해서 산하에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청자가 예를 들어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 시청자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와 방송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열리고 있고,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 안에서도 시청자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바로 그 점입니다. 권리구제라고 우리가 용어를 쓸 때에는 물론 조정이나 중재를 포함하지만 용어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든지, 전형적인 사법부의 권한을 소위원회에서 담당하겠다, 다시 말해서 시청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전을 다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구제라는 용어에 충실하면 그 부분을 소위원회가 담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표현을 씌으로써 소위원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과장 포장되어서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취재널에이) 편성책임자

- 지적 감사합니다.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큰 청사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거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일곱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난 3년간 장비도입 및 국산장비 도입 실적에 건축 환경 공사와 같은 기타시설을 포함하였는데 이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기타시설을 제외하고 2013년도 방송장비 및 솔루션의 국산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취재널에이) 대표자

- 저희 방송시설은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종편 출범하기까지 동아일보 사옥에 방송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송 제작시설과 송출시설, 기타시설의 국산화 비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기타 방송 스튜디오의 PDP 패널들이 납품된 이후에 방송시설 사업자들이 수주하는 것을 유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년에 ○○○○ ○○을 하고 있습니다. ○○○에 전문방송시설을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건축비 ○원이 들고, 거기에 ○원의 기술장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이루지 못했던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 솔루션이나 기타 디지털 테이프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보다 선명한 화질을 보내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UHD 시설까지도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산장비 다양화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술실적과 저희 제작시설 개선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축환경 공사가 장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취재널에이) 대표자

- 실무자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널에이 편성기획팀장

- 죄송합니다. 편성기획팀장 ○○○입니다. 저희 기술 담당이 배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금일 중으로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술 연속되는 질문인데, 본 내용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신생 방송사로서 첨단방송기술의 시작부터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기본 방송을 하기 위한 센터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셨고, 향후 5개년 간의 계획을 보시면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듯이 UHD 제작환경 구축부터 소셜TV방송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TV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UHD 제작환경 구축이라는 명목 하에서는 어떤어떤 기술습득, 어떤어떤 교육 등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연 UHD 제작환경 구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초기에 방송전문기술 회사에 하도급 용역을 줘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교육 역량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4월 1일자로 채널A 미디어텍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모집공고가 완료돼서 선정과정에 있는데, 약 〇명의 인원으로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송기술지원 업무를 자회사로 둘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초기에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다가 2여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발전과 장비 그리고 책임감 등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자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래서 앞으로 기술에 대한 문제는 방송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아이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인력을 소화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있을 뉴미디어, 스마트미디어 그리고 화질 개선이나 UHD 환경에 대해 대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1년~2013년까지 총 투자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향후 투자금액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가까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얼마를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BEP상에서 보시면 초기에 누적적자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총매출 〇원에 〇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〇〇〇〇년~〇〇〇〇년까지는 성장기로 봤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투자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작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드라마에 대한 투자를 여러 가지 정책 변경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〇〇〇〇년부터 저희가 매출액을 추정해 보고 광고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제작비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〇〇〇〇년에 〇원, 〇〇〇〇년에 〇원, 〇〇〇〇년에 〇원, 그리고 〇〇〇〇년부터 연도별 자금운영계획에 따르면 흑자가 나는 원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 투자비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처음에 편성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채널A에서 5.18 북한군 개입 주장 보도 이후에 강도 높은 자체 게이트키퍼 시스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체제를 정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시청자들이 느끼는 느낌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장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신 '〇〇〇〇'의 〇〇〇〇〇의 발언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지적당하고 문제가 돼서 심의를 당하고, 심의내용 〇〇건 중에 〇건이 '〇〇〇〇'의 심의제재 건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연자와 진행자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출연하는 것이 과연 채널 A의 공정성 확보나 아니면 대외적인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출연자들이나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는 패널들이 물론 이 모씨는 아웃시켰다고 보고서에서 봤는데, 그 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왜 방송사에서는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에 대한 출연자 또는 MC의 여러 가지 능력과 자정능력, 제어력, 또 출연자에 대한 결정 및 섭외과정 그리고 검증시스템이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런데 5.18 이후에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대비 강화를 해 왔습니다. 지금 특정한 방송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〇〇〇〇'의 〇〇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 및 교육 그리고 제도적으로 거름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말 논란자와 막말하는 진행자에 대해서 제제한 몇 사례가 있습니다. 사과방송도 했고, 앞으로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키퍼 과정을 통해 나아지리라고 또 개선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출연자 검증을 하고, 극편향적인 출연자를 제재토록 사후 모니터 제도를 향유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신 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성 부분과 출연자의 막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 출연자와 진행자에 관한 채널 A의 자정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자와 진행자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보도 이후에 3단계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서 먼저 제작진이 그 출연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CP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CP는 그동안 출연자가 했던 발언록이나 기타 등등 다른 방송에서 출연했던 것을 검증하고, 세 번째로는 스탠더드 에디터가 만약 그 출연자가 방송에 처음 출연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된 탈북자일 때에는 직접 만나서 사전인터뷰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더 강화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최근에도 논쟁이 저희가 생각할 때 공정성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출연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6월에 방송출연을 자체 내부적으로 금지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에 대한 게이트키퍼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자에 관한 부분은 진행자가 이런 심의에 걸렸을 때에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진행자에 대한 경고와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제재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 경우에는 사내에서 제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 중반기 이후로는 심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5.18에 관한 법정제재를 2013년 7월 12일에 받은바 있습니다. 그 이후 방송된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법정제재는 1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출연자와 진행자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일회적으로 출연하는 출연자보다는 지속적인 나오는 출연자의 진행방법이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전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로 끝나고, '출연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아웃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이라는 평가기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이제까지 채널A에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시행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예방 차원을 듣는 것인데, 채널A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으면 그대로 가겠다는 정도의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적이 있을 때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공정교육을 따로 받도록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보도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보도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의 심의위원님과 시청자 심의팀장이 참석해서 공동보도심의위원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은 계속 전달하면서 주

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편성위원회 산하 보도본부소위에서도 평가자의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데일리 생방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도 있었습니다만 진행자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주의를 주고,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 진행을 하도록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 ○○○○’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 ○○○○’가 ○번의 징계를 받았고, ○번의 내용이 딱 2개로 나누어집니다. 부적절한 발언과 대부분 방송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번 정도, 물론 작년 7월 이후에는 심의제재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번 정도의 심의를 받는 프로그램이면 이제까지 통상적인 방송프로그램이라면 폐지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상파방송의 경우 세 번 정도 심의제재를 받으면 방송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런데 ○번씩 심의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편성책임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생방송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포맷을 바꿔 볼 고민을 해 봐야지요. 생방송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적으로 재발한다면 포맷을 바꿔보자, 예를 들면 완전 녹화는 못 하더라도 한 2시간 전에 녹화해서 약간 걸러지고 내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폐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본인에게 계속 경고하고 주의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사내 규제상 그 정도 이외에는 규제할 수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사실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님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내고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 전부터 제재에 들어갔고, 새로운 ‘○○○○ ○○○○’ 진행자가 2시간짜리를 1시간씩 분리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 ○○○○’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 ○○○○’에 대한 시청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떨치고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행기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널A의 원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외주제작 비율을 ○○~○○%로 당초에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인 수치입니다. 웬만한 방송사가 외주제작을 초기에 ○○%까지 하겠다고 하지 못했는데 실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첫해에 ○○%, 그다음 해에 ○○%, 작년도에 ○○%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초반에 이른바 콘텐츠 사업자와의 공생관계를 강조하고, 사업계획서상에 굉장히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해 과대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보도가 많아지면서 외주제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편성책임자께서도 우리가 개방형 방송사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고, 물론 편성상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비율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도 이런 외주제작을 계속 늘려가거나 원래 그 정도 수치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다른 데보다는 우월한 개방형 방송체제로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의지도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저희 채널A는 보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평균시청률 〇%를 넘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힘을 쓸 것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그동안 외주제작 하도급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드라마였습니다. 그동안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가 교양프로그램을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자체제작비율이 교양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제작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〇〇% 이상 외주제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작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상황에서 외주제작 비율은 자체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채널A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으면 외주제작과의 공생관계, 콘텐츠 상생관계, 제작 상생관계는 꾸준히 유지되리라고 보고 저희 계획대로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 ㈜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주제작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고 피아 열린 기획형 방송사라고 말씀드렸고, 의지는 확고하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외주제작사뿐만 아니라 창작집단과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〇개 정도의 외주제작사와 협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〇개 이상은 개국 초기부터 협력을 맺었던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종편에서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니 외주제작사와의 협력이 아주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사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주와의 공생, 그리고 외주제작비 투자비율은 계속 늘려갈 것이고, 조금 더 수평적이고 장기 지속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

- 아까 심의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과 약간 연관이 되면서 다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의제재 현황을 주로 답변하시면서 대체로 출연자와 진행자의 공정성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생방송이고 보도프로그램인 경우 사전에 자체심의를 하기 어려운 맹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간의 심의제재 현황을 쭉 살펴보면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것이 ‘〇〇〇〇 〇〇 〇〇’인데 그 〇건이 공교롭게도 공정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광고효과제한’, 즉 협찬상품을 과도하게 소개하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광고가 한 프로그램 안에 혼동되게 방송이 되는 경우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편성채널이 향후에 자사 미디어랩 체제를 갖게 될 텐데 이런 자사 미디어랩 체제 하에서 기존의 프로그램 혹은 보도의 기능이 광고판매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광고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채널에이 대표자**

- 곧 설립될 채널A 미디어랩A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미디어랩 창설 때 우려하신,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모기업 동아일보와 또는 채널A의 여러 가지 광고판매에 대한 연계관계 또는 압력, 사실상 요즘 시장을 보면 광고주가 슈퍼갑입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광고를 하고 집행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광고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 간접광고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또 여러 가지 PPL 문제나 보도프로그램에 연결돼서 광고주의 특징점을 소개하고 일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이러한 보도프로그램은 지향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광고기법상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효율적인 광고매체로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감안할 때 광고주가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자 미디어랩을 만드는 것이고, 매체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미디어랩을 만드는 법령 취지에 따라서 저희는 철저히 상호간에 영향력 배제에 대한 독립적인 영업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의 공익성 실현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계획에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익성 실현방안으로 ○○ ○○○○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겠다고 하고, ○○○○ 프로그램으로 '○○○○○'가 평시편성 추진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습니다. ○○시가 아니라 항상 평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본 편성표에 보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방송할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기본편성표에 표시된 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재방비율도 축소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18년까지 정말 이 <표>대로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 검증하는 평가과정도 없이, 모든 것은 계획 대비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고 그것이 실천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프로그램 증가와 재방비율 축소가 완전히 관철되도록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채널A의 공익성 실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성에 상당 부분을 투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현재 지방에 대한 또는 전국 재난이 특정한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도의 우수한 신문들과 여러 가지

협업체제를 가지고 그러한 시급성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속한 보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 재난보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마도 뉴스에 긴급편성을 한다든지, 뉴스특보를 자세하게 한다든지, 저희가 보도 중에서는 심층보도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방송프로그램에 재난방송에 대한 신속한 보도와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편성에 대한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늘려갈 것이고, 또 편성비율을 향상시키다 보면, 즉 보도프로그램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편성비율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익적 기획보도는 저희 모 기업인 동아일보와 캠페인성 공익기획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드림센터, 시동거 반칙운전, 탈북자 관련 보호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아마도 보도체계 구축을 더 우선하고 그다음에 긴급편성, 특보체제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심사위원

- 답변 감사하지만 재난방송 특보는 항상 하는 것이고, 제출하신 것은 ‘○○○○○’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평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편성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바 있습니다. 일단 편성표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 ○○○ ○○○ ○○ ○○ ○○ ○○○ 할 것이냐, 아니면 ○○○○ ○○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는 말씀드리면서 그 포맷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익성 프로그램이 시청률이나 시청자의 호응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공식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또 공익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먹거리 X파일’에서 착한식당을 찾는대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저희가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공익성이 방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익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년까지 전체 방송의 ○○%를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 ○○○○ 그리고 ○○○○ ○○○ ○○, ○○○ ○○○ ○○에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성했던 손정오 선수의 세계타이를 매치, 컬링선수권대회,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같은 스포츠경기를 편성해 왔고 고교야구대회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는 아직은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비인기 종목까지 저희가 관심을 쏟아서 앞으로는 공익적 프로그램에 더욱 편성을 확대하고 이 프로그램이 단지 의무적으로 하는 편성이 아니라 정말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포맷 개발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다른 종편 신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 전 질문에서 나왔던 미디어랩 관련된 질문입니다. 1사 1랩으로 가는 것이고, 직접영업이 2년 동안 유예가 됐다가 1사 1랩으로 되면서 외부에서 그것도 직접영업이 아니겠나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양지에서는 미디어랩을 이용하고 음지에나 예전의 방법을 동일하게 이용해서 약탈적 광고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디어랩이 생기면서 1사 1랩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미디어랩을 만들면서 기존에 광고 영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과연 미디어랩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인원인지, 두 번째는 현재 몇 년간은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구조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미디어랩의 원래 취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의 공정성 그다음에 보도나 다른 신문사의 파워라든지 아니면 보도의 기능을 가지고 기업들을 약탈적으로 위협해서 광고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디어랩이 생겼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랩 운영에 대해서 대표님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미디어랩 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생적으로 생겨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회사사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영업을 하든지,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예기간 이후에 미디어랩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영방송의 미디어랩과 미디어크리에이트 SBS미디어랩의 과정을 보면 독립적인 광고영업 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아이디어있게 미디어랩이 종편에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아이디어한 것은 종편 전부, 그다음에 메이저PP 그리고 IPTV, 스카이라이프 합쳐서 그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KOBACO나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맞는 매출액을 생성할 수 있으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입니다만 KOBACO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랩은 제가 봐서는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현재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디어랩의 출범은 각 매체시간의 판매를 완벽하게 수의 형태로 넘겨서 적정한 재원조달을 받고 그 미디어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제도가 미디어랩의 시초입니다. 저희는 미디어랩을 구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널A 본부의 인원이 미디어랩으로 전이가 되는 과정에서 직업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고, 기존 광고영업의 관행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모기업의 매체영향력에 따라서 광고의 수주가 달라질 것이라고 봤으면 아마도 그간 2년 동안 저희의 실질적인 광고매출을 들여다보시면 그것은 기우에 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는 효율성 없는 광고는 거의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고집행의 예산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광고가 집행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특화된 광고영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법과 데이터와 또 광고주에게 맞춤형의 광고기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몰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널A는 채널A 미디어랩에게 적정한 우리의 매출액과 또 예상 시청률들을 통한 적정한 광고수주에 여러

가지 경영목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광고판매에 대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과 광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보도와 광고의 연계판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회자가 될 것이고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보도프로그램에 관해서 그 다음에 시청자 계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편이 처음 나오면서 보편적 편성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도 있고 이야기도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계층도 있습니다. 40대 중반 이후의 계층, 특히 남성 계층은 사실상 방송시장에서는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종편이 나오고 재정적인 압박이나 또는 모기업들이 주로 신문사 쪽에서 와서 보도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그런 계층들을 실질적으로 방송시장, 또 시청자층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시청자들이 새롭게 방송시장에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는 그런 시청자 계층에게 맞는 개발하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보도프로그램으로 그대로 그 계층을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시청자의 다양성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청자층을 좀 더 포괄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일단 국내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지상파와 PP의 시청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종편의 시청률은 개국 이후 상승해 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새로운 시청층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방송에서 소외 받았던 시청층들이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도프로그램 중심의 특정 시청층만을 위한 방송을 해서는 저희가 어느 성장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파이를 키우기 위한 더 다양한 시청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소외되었던 시청자들이 저희 채널 종편, 특히 종편이 생기면서 많이 TV를 시청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국 초기이기 때문에 포맷이 특히 보도프로그램의 포맷에 있어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포맷 개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획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편성위원회 산하 보도본부 소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맷을 다양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감동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송형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도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고민의 하나로 최근에 '뉴스 TOP10'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녁시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담프로그램과는 조금 차별해서 'Chief Correspondent'라고 해서 전문기자들이 나와서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는 뉴스의 신개념 뉴스 프로그램이라고는 기획을 하고 방송했는데, 역시 시청자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의 시작

이라고 봐 주시고, 앞으로도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좀 더 시청층을 확대해서 정말 매스미디어로서 그리고 방송사로서 갖는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대표님 답하신 것에 보완질문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랩 영업을 하게 되면 광고와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연동시키지 않는다, 의지라고 봐야겠습니다. 무슨 제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의지로 본다면 이번 계획서 내용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광고보다도 더 프로그램과 연동성이 강한 것이 협찬입니다. 협찬이 훨씬 광고 프로그램과의 연동성이 강하지요. 최근에 지상파방송도 협찬수입이 엄청나게 늘어서 프로그램 공정성 문제에 굉장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채널A를 보면 ○○○○년도에 ○원, ○○○○년도에 ○원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년 계획을 보면 ○원이고, ○○○○년에 ○원이 협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도 안 들어가는 순수매출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보더라도 광고수입에 그것보다 적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수입입니다. 이 수입을 이렇게 계속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분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저희가 2년 동안 광고영업을 하면서 제일 딜레마가 4사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광고주들이 종편 매체를 생각하는 인식에 대한 변화를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랩이 생기면 판매규모도 각 사별로 다 달라집니다. 지금 채널A 미디어랩은 ○개사의 PP와 같이 협업 모델을 가지고 채널A 중심으로 해서 광고판매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사별로 지금 다른 규모의,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 성향이나 시청률이나 또 채널인기도 등등에 대해서 차별화된 광고영업전략이 구사되는 원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협찬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방송사의 주수입원이 광고 및 협찬, 그리고 수신료 수입, 프로그램 판매수입으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찬하면 무조건 사이드머니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잊혀야 할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는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도를 넓히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들도 하나의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이 그냥 도와주는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인지되었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 앞으로 프로그램과 연결된 좋은 방향으로의 경제 활성화 등등에 대한 수단으로 봐 주시고, 협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업에서 또는 정부기관에서 그다음에 시혜를 베푸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협찬수입은 그동안 늘어났었던 것은 시청률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매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광고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찬이 늘어났던 것이고, 앞으로의 협찬은 지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한 협찬 프로그램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사업 매출에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

- 비교적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문드린 것이 버겁고 힘들고 그다음에 방송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커다란 틀이었다면 저는 시청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작지만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신청서에 보면 방송소외계층 보호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했다고 이행실적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중간중간에도 어린이프로그램을 얼마만큼 구매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편성표를 보면 어린이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벽 3시 30분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수익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어린이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보고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강조하고 좋은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실행될 것인지 이렇게 단순한 편성표 1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대표자

- 실적 면에서 그리고 편성시간대에 대해서 어린이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 제일 당혹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종합편성채널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연령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계획을 편성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예리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널A 사장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원래 계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국 초기에 저희 채널 A에서는 어린이프로그램을 낮 12시나 저녁 6시에 떠 편성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편성을 변경하면서 새벽시간에 편성된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첨부해 드린 편성표와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한 시간에 편성할 것이고, 이에 관련해서는 수급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제작사나 아니면 배급사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고, 한 ○~○개사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애니메이션 비율, 그리고 어린이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고 편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료요청을 1건 하고 싶습니다.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도 관련 프로그램의 출연진이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채널A가 야당과 진보성향 인사의 출연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그러한 성향의 인사에 대한 채널A의 섭외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둘째 그러한 적극적인 섭외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의 인사들이 출연을 거부해서 그런 것인지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원인인지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예컨대 10명의 야당 진보적 인사를 섭외했는데 1건만 성공했다면 성공률의 10%일 것 아닙니까? 분모와 분자와 성공률 3가지를 만일 가지고 있다면 자료로 요청 받고 싶습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와 더불어서 관련 있으니까 실제 출연자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시간 20분에 걸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유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

-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는 저희에게는 초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서 시청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채널A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는지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채널A는 지난 3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은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외부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서 더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진적인 외주제작 여건을 갖춘 기획집단을 지향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콘텐츠 투자비의 대부분을 외주제작에 투자해 콘텐츠 다양화와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익적이고 공정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채널A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적인 프로그램 제작에는 내부 핵심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단계별 게이트키퍼와 사전·사후심의 등을 통해서 공정성 확보만큼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콘텐츠 해외 유통과 스마트미디어 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기술개발과 방송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와 시스템 개선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펀드투자를 통해서 영화,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 영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은 물론 각계의 의견과 지적을 귀담아 듣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책임 있는 방송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널A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제이티비씨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이어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JTBC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JTBC의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JTBC의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JTBC 대표이신 ○○○님, 맞습니까?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님, 맞습니까?

○ ㈜제이티비씨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님, 맞습니까?

○ ㈜제이티비씨 최대주주

-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몇 가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견청취는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심사위원회가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대표님 맞습니까?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PP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약 3분간 모두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JTBC 대표이사 ○○○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JTBC는 3년 전 방송허가가 나올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기 위한 일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다시 재심사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3년 전 방송허가를 받을 때의 저희들의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세 가지 생각을 크게 했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방송을 하려 하는가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모처럼 나온 방송허가를 이권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의 종합미디어그룹을 구축하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꾸준히 각 분야에 투자해 왔고, 그러한 저희로서는 종합선단의 항공모함적인 방송업에 진출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니다. 저희는 당시 방송법에 진출함으로써 종합미디어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방송을 하려 하는가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들로 정리가 됐습니다. 기존의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서 바람직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하느냐, 다양한 콘텐츠였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간극을 좁혀서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통합을 기여하느냐, 신뢰였습니다. 셋째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무엇으로, 바로 창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른 시일 안에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경쟁력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송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 신뢰, 창조, 글로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셋째로는 당시에 여러 분들이 논의를 모았지만 새로운 방송사 몇 개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미래와 시장이라는 것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인데 어느 누가 미리 1개, 2개, 3개를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숫자로 제한하지 말고 대신 엄격한 진입 기준, 예를 들어 자본금 규모 등 그런 기준을 굉장히 어려운 심사기준을 설정해서 그런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방송사는 새로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방송다운 방송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투자였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실제로 방송업을 영위해 보니까 투자 없이는 수익성을 포함한 어떤 선순환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투자를 신생 방송사 중 유일하게 지속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의 결과가 바로 종합편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보도와 시사토론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했다는 점, 또 그러한 콘텐츠를 글로벌로 갖고 나가 이미 0원 가까운 해외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결과들입니다. 3년 전에 방송사 허가가 4개 나왔을 때 다들 놀라고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 걱정은 지금도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송광고 영업이 여전하고, 그래서 4월 1일 미디어렐이 도입됩니다. 저희는 그간 미디어렐에 반대하지 않았고, 또 미디어렐 출범 이후에도 앞장서서 정상적인 광고시장 정착에 힘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방송다운 방송의 길을 가려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아울러 신생방송사 4곳이 생겨난 지 3년이 지났고 각자 나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재승인 심사가 방송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엄정함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진정성으로 이번 재승인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JTBC 종합편성채널PP 재승인 신청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JTBC는 3년 전 승인심사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당시에 제출했던 계획 대비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리이러한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은 계획 대비 투자액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처음에 제출했던 계획서상의 재방비율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는가 하는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계획 대비 투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방송사 4개가 허가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4,22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자본금으로 출발했고, 또 한 해에 0~0원에 가까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투자가 많이 모자랐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예상했던 투자 대비 광고매출을 중심으로 한 매출액이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킬러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주들에게 소구했을 때 대기업일수록, 큰 기업일수록 초기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관행에서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광고를 차별 집행하지 않고 이른바 N분의 1의 관행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에 있어서 가장 상대적인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이 계획 대비 모자랐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매출액에서 차질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고 현재 0%의 유상증자를 다시 한 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재승인 계획서에 제출한 대로 증자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자금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대로 투자가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재방비율에 대해서는 이런 통계도 저희가드릴 수 있습니다. 프라임타임에 재방이 아닌 본방의 비율은 0%를 넘고 있어서 신생방송사 네 곳 중에 본방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콘텐츠 제작비를 가장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건수도 신생 방송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방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낮 시간대에 다른 방송들처럼 긴 보도·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계획 대비 투자액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과 맞물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투자 대비 매출액이 제대로 오르기 시작하고 이번에 다시 계획을 제출한 것처럼 투자액을 매년 집행해 간다면 콘텐츠 제작건수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재방비율을 훨씬 낮춰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000에 000를 새로 제작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0월 초부터는 금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00 0시부터 00 00 0 00000000을 새로 론칭하기 때문에 000 편성과 00 0~0시대까지의 0000 0000 편성만 가지고도 현재 0% 후반대에 있는 재방비율을 0% 후반대로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답변에서도 숫자로 나타나는 재방비율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타임에서 재방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저도 신청서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다른 종합편성채널보다는 재방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 때문에 항상 지적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재방비율을 0%에서 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셨는데, 재무구조 다시 말해서 적자비율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설명 실현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목표로서의 지표 설정은 재방비율을 낮추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저렴한 프로그램을 대량 생산해서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품질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저희가 새로 밝혀 드린 계획은 아시다시피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현금흐름,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투자, 또 투자에 따른 콘텐츠제작, 능력 등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0% 유상증자를 연내에 완성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예상치를 보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시청점유율 대비 광고매출액 점유율 비율이 0~0%에 불과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신생방송사로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큰 기업일수록 적용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영업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00년, 0000년 가면서 제시했던 매출목표는 저희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청점유율 대비 광고매출 점유율의 비율이 현재 저희가 0~0%에 머무르고 있는데, 가구시청률 기준입니다만 평균 시청률이 0%가 되는 0000년, 0000년쯤에는 그 비율이 0%로 접근하리라고 저희는 비교적 신중하게 예상했습니다. 0%로 본 이유는 현재 SBS가 비율 배수가 0% 정도에 해당하고, MBC는 0%쯤 됩니다. 그리고 중소PP들도 0%는 됩니다. 저희가 0~0%에 해당하는 비율 배수는 당연히 평균시청률 0% 정도를 달성하는 0000년, 0000년에는 0%로 접근할 것이고, 그 0%를 가정했을 때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종편이 차지하는 광고시장을 추산해 내고, 시청점유율에 따른 비율 배수는 적용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출 예상액을 도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현금흐름으로 보면 단순히 재방비율을 낮추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시청률을 올리고 콘텐츠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그만한 가용할 자원을 동원해서 투자를 지속했을 때 당연히 재방비율이 0%에서 0%로 내려가게 된다고 계획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재방비율이 내려간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컨대 드라마 한 편을 더 편성하게 되고, 오후에 시사프로그램도 새로 론칭하고, 현재 밤 프라임타임 때 본방 비율이 0%를 약간 넘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아직 양에 차지 않은 투자입니다. 투자를 더 늘리면 프라임타임의 본방비율이 지상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 계산으로는 재방비율이 분명히 0% 중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일반적으로 종합편성채널 4개가 출범하고 나서 다른 3개의 종합편성채널이 대부분 시사·보도 위주로 되어 있고, 반면에 JTBC는 그 반대로 오락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종합편성채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다른 일반채널들과 달리 보도를 포함한 채널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도의 비율을 계획서에서는 한 〇%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초기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〇%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제시한 재승인 신청서를 보면 다시 〇%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차별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보도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현재까지 그렇게 된 이유와 향후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지금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계획 대비 보도의 비중이 작년 하반기에 〇%대까지 떨어진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희도 자성합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과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오후시간대에 타사 종편들을 중심으로 특정한 연령층이 그 시간에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새로운 현상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매우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첫째 저희는 그런 류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원칙이 확고했고, 그동안 잠시 보도프로그램의 비중이 떨어져 있던 것은 바로 TV뉴스를 하고 정관용 라이브를 낮에 편성하지만 〇%대를 못 채운 것은 시사·토론프로그램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인데, 그동안 저희가 다시 시사·보도 비중을 올리기 위해서 기간을 허비했던 것은 이 사회에 기여하는,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뭔가 사회의 간극을 정말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보도·토론프로그램의 포맷을 찾고 있었다, 또 거기에 합당한 출연진들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엇그제 저희가 보도본부 보고를 받고 상의했습니다만 〇〇 〇~〇시까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시사·보도·토론프로그램을 제대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만으로도 저희 보도 비중은 바로 〇%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네 번째 질문입니다. 9시 뉴스의 시청자 참여를 여쭙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라서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9시 뉴스의 시청자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직접출연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새로운 포맷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이티브이 대표자

- 저희는 <손석희 뉴스9>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9시 뉴스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시킨다는 것은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 방송에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한 걸음 더 들어간 의미부여한 분석까지 결부시켜서 꼭 <뉴스9> 말미 부분에 반드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간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출연하면서 저희 <뉴스9>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포맷을 계속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해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제시했던 'J 카운슬'이라는 법적인 시청자위원회 말고 저희가 구성하겠다는 온라인상의 'J 카운슬'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사후적으로든 또는 사전적으로든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JTBC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종합편성채널로서 뉴스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JTBC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 품질평가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품질평가를 내부 구성원들이 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잘 아니까 평가를 잘할 수 있겠지만 외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내부 구성원이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청자나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같이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서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제이티브이 대표자

- 좋은 지적입니다. 뉴스품질지수는 서울대 이준웅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또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해서 작년 상반기에 TF팀을 운영한 끝에 보도본부의 합의를 통해서 공정성, 오디오 부분, 비디오 부분에 15개 항목의 1~5점까지의 배점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개발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뉴스9를 중심으로 평가해서 지수가 도출이 되면 바로 제작부장이 보도국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 날 보도본부 회의 때 공유해서 서로 반성할 점을 찾고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외부인사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수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또는 때로는 일반시청자도 참여하는 뉴스평가품질지수를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한 번 도출해서 그 결과를 놓고 저희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피드백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여섯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팩트체커나 공정정보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전·사후 공정담보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횟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특별히 계획서상에 차별화되어 있는 계획을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팩트체커 부분은 저희가 사전적으로도 팩크를 체크하지만 사후적으로도 틀린 것들이 발견 되면 저희가 천명했듯이 <뉴스9>에 '뉴스리콜'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매일 편성이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뉴스리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정보위원회는 다른 데와 달리 특별히 차별화시켜서 제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리 많지 않지만 공정정보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저희는 이름에 걸맞은 제대로 된 공정정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도보다도 운영의 문제겠지요.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 9월부터 보도담당 사장직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직접 앵커를 맡으면서 저희 경영진이 보도담당 사장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높은 자율적인 수준의 인사권과 편집권입니다. 그것을 9월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보도담당 사장은 실제 기자들과 2주일에 한 번씩 격이 없는 대화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듣고 더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제재 건수가 크게 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명심해서 심의제재가 별로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왕 질문을 주셨으니 이 기회에 해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점수로만 따진다면 저희가 심의제재 쪽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 0점의 중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보도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곧바로 승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0점이라는 타 종편에 널리 알려진 지난해 5.18 북한군 소행 보도와 같은 수준의 중징계인데, 그것이 형평성 기준에서 볼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재심의를 청구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가능한 한 심의제재를 줄이는 그런 공정보도에 더욱더 힘을 쏟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의제재 횟수를 쭉 살펴보니가 논란이 있는 0건을 빼면 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제재 횟수가 많은 이유를 지금 제출해 주신 재승인 신청서에는 오락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스보다는 교양·오락프

로그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방송언어나 표현, 폭력묘사 그다음에 광고효과, 즉 간접광고나 이런 것들이 심의제재사항으로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JTBC의 경우 보고서상에 대표이사 직할로 시청자정책심의실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락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자제심의 대상일 텐데 자체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의 오락프로그램 심의제재 사항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심의위원회 시스템이 문서로만 잘 작동하고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락·예능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기는 심의제재가 많은 구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오락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심의제재 건수가 많은 것을 변명하거나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보면 역시 제작진이 PD들께서는 시청률에 신경을 쓰다 보니 조금 자극적인 장면의 수위를 높여서 제작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심위에서 심의제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기에 상응하는 내부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고과에 반영하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 인사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영진의 아주 엄중한 질책이겠지요. 예를 들면 심의제재 내용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무정도시’라는 드라마에서 골프채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방심위의 심의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제재가 나오기 전에 저도 마침 드라마 방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다음 날 저희 스스로가 저부터도 정말 제가 화가 나서 ‘도대체 이런 장면이 나간다고 해서 시청률이 더 올라 갈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심의제재 받을 장면을 꼭 필요한 장면도 아닌데 넣어서 하느냐’고 아주 엄히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드라마는 외주제작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주제작사에서 가지고 온 필름을 틀었다고 변명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한 미리 받아서 PD가 봤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작관행 때문에 방영 직전에 가지고 온 제작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외적으로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실제로 경영진의 질책 말고도 심의실의 사전심의 기능을 올초부터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제가 주간심의 보고서 카피 1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사전심의한 내용 중에 총 〇〇편을 심의해서 그중의 〇편에 대한 수정의견을 보냈고 그것이 100% 사전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수정의견의 세부내역을 보면 총 〇건들이 교양과 오락입니다. <님과 함께>, <연예특종> 다음에 교양 쪽에 <닥터의 승부> 이런 부분들입니다. <닥터의 승부>가 방금 전에 지적하신 간접광고 포함 자막고지를 사전에 심의해서 걸러냈고, 제작진은 바로 수용해서 간접광고 포함 자막을 지웠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직접 보고하도록 해서 챙기고 있고, 또 이것을 편성, 제작 쪽에 다 공유해서 사전심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바 있습니다. 언어 부분은 저희가 방송 막말 다루기라는 것을 처음부터 표방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바로 잡아가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〇〇〇〇실을 중심으로 〇〇〇〇〇〇〇〇이라는 〇〇〇〇〇〇〇〇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〇〇교육, 〇〇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적용된 사람은 없습니다만 외부출연자 중에서도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도중에도 막말을 지적하겠지만 어쨌든 막말하는 분들은 삼진제라고

해서 그분들은 영원히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면 사전적으로 언어순화나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 같은 분이 단 한 번도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방송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전심의 기능을 작동시킨 결과라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 심사위원

- 대표자께서는 TV사업의 진출이 종합미디어그룹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JTBC는 ○○○○○○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까지 ○원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 ○○○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편을 또한 운영하기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이 JTBC 사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종합미디어그룹으로서 ○○○○○○ ○○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 업계의 상황도 실제로 초기에 진출해서 후자를 내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진입장벽이 있고, 또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 부분은 바로 지금 적합한 지적을 하셨다시피 종합미디어그룹이라고 해서 상황이 허락지 않은데 이런 저런 데에 무작정 진출하는 것이 꼭 좋은 경영전략이 아닌 만큼 우선 재심사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TV방송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저희들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 ○○은 ○○○○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가 ○○○○년부터는 TV방송의 재무제표상 또 시청률상, 매출액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이후인 ○○○○년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준비된 질문의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질문입니다. JTBC는 자금조달과 운영에 대한 계획에서 ○○○○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제출하셨습니다. 모두에서도 대표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년도에 ○원, ○○○○년도에 ○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연도 ○○○○년도에는 ○원 정도 유상증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르면 ○○○○년도에 ○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향후 5개년의 자금흐름을 산출하셨습니다. ○○○○년도 이후 ○원의 유상증자를 반영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또 자금부족도 예상되는 플랜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가 현재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원

정도 되는 유상증자가 정확히 〇〇〇〇년도 어느 시점에 예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자금조달 계획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〇〇〇〇년도 기초현금에 대한 금액이 조금 오류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따로 있으셨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기초현금을 〇원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〇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오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첫 번째 먼저 물으신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기초현금에 관한 〇〇〇〇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찬용 이사가 대신 답변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초기자본금 4,220억원의 〇%인 〇원에 대한 유상증자입니다. 〇〇에 1차로 기존 주주에 대한 배정을 시행했고, 마침 〇〇 〇〇가 〇월 〇〇일인데 저희가 3차 배정 유상증자를 〇〇 〇〇 클로징합니다. 거기까지 세컨드라운드가 벌어진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〇〇〇에 한번 더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목표를 채울 생각입니다. 목표를 채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회계연도상 〇〇에 〇원 정도 유상증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〇〇 〇〇 클로징을 앞두고 현재 유상증자의 금액상 진전도는 〇%를 약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참여하는 주주 분들과 약속 때문에 아직 공개를 저희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〇월 〇〇일에 〇〇을 하고 그것이 방통위에 신고도 되고 공개가 되면 새로 들어온 주주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의미 있는 주주들이 계신가 하는 것이 차차 알려질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직 마감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〇%의 금액상 진전도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새로 참여하시는 주주 분들 중에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정한 수직적 계열이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매우 의미 있는 방송계의 큰 투자자가 한 분 들어옵니다. 물론 기업입니다. 그것이 만약 알려지면 주가로 치면 대형호재가 되는데, 그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역시 신생방송사 중에서는 JTBC의 미래가 가장 밝고 또 한 군데와 파트너십을 가지려면 JTBC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모시고 있던 주주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해외 자본을 유치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〇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〇〇 본사가 결의해서 들어온 것이고, 〇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〇% 유상증자에 〇〇는 아무런 이의 없이 곧바로 이사회에 결의해서 〇% 유상증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〇〇 쪽 본사의 메시지는 자신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JTBC가 걸어왔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맞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〇%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바로 참여했었고, 〇〇도 저희 쪽 장래를 밝게 봅니다만 이번에 〇〇가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〇〇 지배구조에서 〇〇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〇〇가 들어가는 자기들 내부의 지배구조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〇%를 다 못 들어오고, 〇% 대신 일부 금액만 들어오면서 저희들에게 〇%를 다 못 들어오고 일부 금액만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해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사 4개에 대한 일반의 걱정들이 여전하고, 또 경기상황이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의 주주배정, 곧 이른 3차 배정으로 벌써 금액 대비 진전도가 〇%를 약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투자자나 또는 국내의 큰 전략적 투자자가 의미 있는 투자를 해 준다는 것이 밝혀지면 저희는 〇〇 〇에 나머지 증자금액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〇〇〇〇년에 기초현금 부분은 제찬용 이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JTBC 경영지원실장

- JTBC 경영지원실장 ○○○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년도 기초현금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시점이 2013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년도 기초현금을 예측한 금액이 ○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년도 기초현금은 ○원 정도가 맞고, 차이가 발생한 첫 번째 이유로 저희가 증자를 ○원 정도로 예정했는데 ○원 정도 증자해서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금액의 기초현금 부족분에 대해서 ○○월 말까지 ○원 정도 증자해서 그 부분을 기초현금 예측했던 부분만큼 맞추 계획입니다. 조금 더 차질이 났던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광고매출보다 조금 적은 현금이 유입되다 보니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심사위원

- 연관해서 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말 JTBC의 자기자본이 현재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한 해 동안 입은 손실이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기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조금 전에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대주주 지분율이 30%를 넘을 수 없는 중편회사라는 특성상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년도 이후에도 ○○○○년도, ○○○○년도 못지않게 ○원, ○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년도와 ○○○○년도의 매출 시현을 봤더니 ○원, ○원 정도의 매출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만일에 ○○○○년도 또는 ○○○○년도까지 지속된다면 ○원의 유상증자만으로는 지금 계약하고 있는 ○원, ○원 수준의 투자를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년도나 ○○○○년도에 목표하신 현금의 유입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다시 유상증자를 기획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조달의 방법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에 ○%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추가로 유상증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 분들께도 ○○○○년 이후에는 exit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 유상증자가 되면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자본이 ○원이 넘는데 나중에 IPO를 나갔을 때 시가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SBS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놓고 계산해 봤을 때 EBITDA를 따졌을 때 저희도 최소한 시가총액이 ○원은 되리라고 자신합니다만 만에 하나 저희가 유상증자를 더 해서 자기자본이 ○원, ○원이 된다면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 분들께 그것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번 ○% 유상증자 이후의 유상증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로부터 저희가 모든 선순환이 시작된다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투자한 것에 걸맞게 광고시장이 정상화가 돼서 시청점유율 대비 광고시장 점유율이 ○○○○년부터 ○%에 접근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예측한 매출액은 매우 신중하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오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국내의 광고매출액 말고 저희가 해외유통 쪽에도 매우 힘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현금유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 말까지 방송 개시 2년 만에 ○원의 매출을 올린 적이 있습니

다. 그래서 해외 매출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일은 모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희가 생각한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차질을 빚는다면 당연히 그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를 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차입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입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기 때문에 B플랜, C플랜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회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편이 출범할 당시에 사회적인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산업에 종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유력자들이 뉴스를 하는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일종의 언론에 또는 여론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종편들은 형식적으로나마 대주주와 방송법인의 대표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JTBC는 방송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체제이기는 하지만 ○○○ 대표이사님 말고 ○○○ 대표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고품질이나 공정한 보도를 지향하려는 JTBC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사회에 불식시킬 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저희 방송 출범할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신·방 겸영을, 신문이 방송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지주회사적인 중앙미디어네트워크라는 유한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가 신문에도 투자하고, 방송에도 투자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경영상으로 만약 방송이 어려워졌을 때 신문까지도 어려워지는 차단벽의 이유도 있었지만 바로 신문과 방송을 독립적으로 아까 걱정해 주신 유력지의 영향력이 방송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신문과 방송은 신문의 편집회의와 방송의 보도회의는 완전히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끼리 독자적으로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특히 보도 쪽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담당 사장직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편집권과 인사권까지 거의 다 일임하고 맡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수준의 독립성이라고 할까,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께서 대표이사를 맡으신 이유는 관여하려고 맡은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제도보다는 운영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나서 ○○○ 대표이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아서 보도의 공정성이라고 하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느냐, 안 맡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나 또 철학이나 미디어 전체를 경영하려는 소유주로서의 생각, 태도, 철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JTBC의 사업계획서나 재승인 계획서를 보면 다른 종편도 일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유난히 소유·경영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유·경영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여 안 하고 있다, 독립권을 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도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가야만 실질적으로 다 느껴 집니다. 더군다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심사자지만 굳이 소유·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미디어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철학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JTBC가 사업허가를 딸 때 가장 많이 점수를 받은 부분이 모기업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투자여지도 강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 방송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점수를 땀다면 굳이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줄 의사는 없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보다도 더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마 ○○○ ○○이실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두 가지를 답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업계획서가 다른 데 비해서 유난히 소유·경영을 분리하고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과거 것은 봤지만 이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해서 비교가 잘 안 됩니다만 저희 쪽이 제출해 드린 이번 사업계획서에도 소유·경영 분리는 공정성·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재승인 신청서를 봤습니다만 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유난히 소유·경영 분리를 강조하려고 했던 대목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편성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회사와는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편성위원회가 개국 초부터 구성되어서 작동 중인데 이미 저희는 자율적으로 5:5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사 5:5라는 개념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간부진과 실무진 원활한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5:5 구성을 자율적으로 이미 가지고 왔었습니다. 5:5 구성도 소유주께 보고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간부진과 실무진의 5:5 구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도담당 사장직을 생각하고 설득해서 ○○○ ○○을 영입한 장본인이 바로 ○○○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 때문에 취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이번 주 총에서 ○○○ ○○께서는 JTBC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십니다. 그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내가 이럼으로 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주회사 격인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최대주주가 ○○○ ○○이고,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JTBC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고민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리면 실제로 그동안 방송 운영, 경영, 보도, 제작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실제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 ○○이 취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제 중의 하나는 ○○○ ○○이 워낙 저명한 언론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언론계에 복귀한다는 것이 화제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JTBC 보도의 구조와 논조가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 취임하면서 JTBC가 종편보도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바람직한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 ○○인 소유자가 특정인을 임명함으로써 보도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보도에 대한 소유주의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언론계에 보면 사주의 영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인을 임명함으로써 보도의 방향이나 논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 ○○이 오면서 <뉴스9>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가장 큰 것은 보수냐, 진보냐는 논조보다는 우리나라 뉴스 포맷의 큰 차별화였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존의 방송사들이 메인뉴스를 짧게 짧게 여러 기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리포트를 하는 그런 포맷을 벗어나고 싶어도 잘 못 벗어났던 면이 있는데, 저희는 신생 방송사이기도 하고 또 ○○○ ○○에게 그런 실질적인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뉴스 포맷의 변화가 가능했지요. 그래서 이른바 꼭지 수를 줄이고 뉴스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마치 CNN이 가다피나 후세인을 인터뷰하듯이 그런 뉴스 당사자의 실체를 ○○○ 앵커 특유의 직무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줌으로 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청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저널리즘의 본령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됐고 또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청구 보도 때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이 출연해서 8분 이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못 마땅해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하나 간파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나 하면 김재연 대변인과의 인터뷰 말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는데 그것 김일성이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인 줄 알고 있느냐’ 예컨대 그런 질문들이 나갈 때 그런 인터뷰야말로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정확한 판단을 시청자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널리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사·보도프로그램에는 연극으로 치면 정극이라고 할 수 있는 <손석희 뉴스9> 요즘은 낮 12시대로 옮겼습니다만 <정관용 라이브>가 있고, 그것 외에 시사·보도·토론을 보면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뉴스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참고로 시사·보도 부분도 현재 저희 직제상으로는 ○○○ ○○에게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스콘서트>의 출연자 〇명 중에 출연자의 구성을 보면 보수가 〇%, 진보가 〇%, 중립적인 인사가 〇%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 균형을 저희가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9>에서 꼭지수를 줄이더라도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심층보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출연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만 나오는 편향된 보도가 아니냐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 달, 두 달을 놓고 <뉴스콘서트>처럼 통계를 내보면 보수, 진보의 균형이 분명히 잡혀 있고, 그중에는 양쪽을 다 섭외해도 한쪽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미리 고지하고 ‘양쪽을 다 섭외했습니다만 어느 한쪽에서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인터뷰를 내보낸다’고, 물론 그 고지 때문에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드물게 왕왕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심사위원

-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 답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 씨가 영입되면서 JTBC의 보도 방향이 바뀌었다, 우려하는 것은 그런 바뀐 논조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청자의회>라는 프로그램이 시청자프로그램인데 시청자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책임 있게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편성이 오후 1시 45분~2시 55분 사이에 편성되어 있고, 예전에는 새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회>라는 프로그램의 편성은 결국 시청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시청자들이 좀 더 많이 시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낮 시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을 혹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실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J 카운슬'을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명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그 ○명의 이름의 성만 남겨놓고 사인한 부분이 쪽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필적을 보면 주로 젊은 사람들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 카운슬에 ○명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됐고, 또 앞으로 ○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명과 ○명이 시청자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시청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시청자의회>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자의회> 프로그램은 오후 1시 45분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작년 말까지의 현황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후 1시 45분으로 되어 있고, 올해 들어서는 일요일 아침 6시대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위원회에 제가 항상 참석하고 있고, 작년 초 시청자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왜 <시청자의회> 프로그램들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편성해서 많이 보도록 하지, 왜 잘 안 보는 시간에 편성을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 경영회의에서 제가 직권으로 지시해서 실제로 <시청자의회> 프로그램이 가장 방통위가 평가하는 A급 시간인 금요일 오후 1시 45분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다가 올 초에 들어서 어떤 반성이 일어났느냐 하면 금요일 오후 1시 45분에 편성해도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그 시간에 경쟁이 아주 쎈다. 다른 종편들이 지상파까지도 그런 편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후 시간대에 특정 연령층이 보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1시 45분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성들여 만든 프로그램인데 <시청자의회> 프로그램을 토요일 아침 6시에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옵니다.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보다는 시청률이 더 나올 수 있는 ○○ 〇시, 〇시대로 옮겨보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저희가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방통위가 평가하는 급이 ○○ 〇시, 〇시는 아예 C급입니다. 저희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시청자의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편성해야 하는 취지가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고, 또 시청자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편성을 바꾼 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각별히 편성과 제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J 카운슬은 시청자위원회와 달리 젊은 분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법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 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항상 그다음 달 시청자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J 카운슬은 무슨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젊은층 위주로 방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방송제작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까 필적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인턴교육프로그램인 JTBC 칼리지를 마친 대학생 또는 대졸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JTBC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노력, 또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체적인 승인계획서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 ○○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과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신규 매체를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도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없는 상태에서 재승인 사업자가 향후 이런 매체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분야를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기술분야를 잘 모르거나 정책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약하신 심사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대단한 향후 계획인 것처럼 비취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말 강력한 의지나 오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방송정책의 근간을 모르고 무지에서 나오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서 자체가 신뢰도를 가지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옮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부의 허가도 없이 ○○○에 진출하겠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종합미디어그룹으로서의 다양성을 위해 생각하는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심사위원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 대표에게 3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속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모두발언과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이 자본력과 시간의 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제가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JTBC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신생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계획대로 적자를 내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아, 투자를 계속하고 있구나’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방송의 선순환은 투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자하고 있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드린 것이고, 또 다른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독과점 구조의 방송시장에 신규 진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절실히 깨닫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정보기가 긴 활주로를 전력을 다해서 질주해서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이륙하겠다고 전력 질주하는 유일한 방송사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안 쓰기 위해서 활주로를 전력질주 안 한다면 그 방송사는 영원히 미래가 없고 이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성과 다양성 부분에서 이런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의 ○○○○○이 2012년 전체와 2013년 상반기의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등 1억 3,0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종편과 같은 카테고리인 인식되는 것을 억울하다고 할까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2012년 상반기에 기존 네 곳의 신생방송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대부분 70~82% 사이였습니다. 저희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2013년 상반기의 1억 3,000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놀랍게도 JTBC가 전년도의 65%에서 29%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어떤 경우에는 82%에서 77%, 또 어떤 경우에는 69%에서 78%로 거꾸로 부정적인 인식비율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1년 반 만에 JTBC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시청자들도 다들 인식해 주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시장은 정상화되어야 하고 생태계는 건전하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을 위해서도 이번 재심사가 방송계 질서를 잡는 엄정함으로 진행되기를, 저희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질문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JTBC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0분 폐회】